

2018년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언론분쟁 해결을 위한 각국의 제도와 동향



2018년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언론분쟁 해결을 위한 각국의 제도와 동향



2018년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제1호>

- 일본의 언론보도피해와 민사법상 대응방안 1
고철웅(대법원 재판연구관, 법학박사)
소홍범(도쿄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 부속 비즈니스법·비교법정연구센터 특임연구원)

- 미국의 언론 관련 법제 및 판례 동향 35
김지수(미국 미네소타대학교 저널리즘 스쿨 박사과정)

- 독일의 언론피해 구제 제도와 최근 동향 67
이유진(독일 라이프치히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학 석사)

2018년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제2호>

- Ⅰ 영국 언론표준기구와 개정 명예훼손법 시행 현황 105
황수영(영국 브리스톨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 Ⅰ 프랑스 언론법과 최근 입법 동향 133
진민정(저널리즘학연구소 연구이사)
- Ⅰ 스웨덴과 핀란드의 언론피해 구제 제도와 동향 171
하수정(북유럽연구소 소장)
홍지현(북유럽연구소 선임연구원)
- Ⅰ 호주의 언론피해 구제 제도 225
이지영(캔버라대학교 뉴스 미디어 연구 센터 연구원, 커뮤니케이션 박사)
상윤모(캔버라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조교수)

<기타연구>

- Ⅰ 디지털 단일시장 속 유럽연합의 주요 언론법제 동향 257
이가연(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I. 첫머리에

신문, 방송 등 종래의 미디어가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증대할 도전을 받고 있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일본 또한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다. 2017년 총무성의 정보통신백서의 제1장 제1절의 주제는 “스마트폰 사회의 도래”였다.¹⁾ 스마트폰 개인 보급률이 2011년의 14.6%에 비해, 2016년에는 56.8%까지 상승하였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률은 2012년의 41.4%에서 2016년에 71.2%까지 상승하였다. 20대에 한정한다면 97.7%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총무성의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²⁾ 인터넷 사용시간이 매년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텔레비전 시청시간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한다.³⁾ 스마트폰의 보급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본 사람들은 종래의 언론매체인 텔레비전을 여전히 정보획득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텔레비전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약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함으로써 인해 종래의 미디어가 일정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미디어간의 경쟁이 조금씩 심화되고 있다.⁴⁾ 이로 인한 미디어의 지나친 영리주의는 심각한 인격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고, 정보유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피해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1960

*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학박사. issacgcw@gmail.com

** 도쿄대학 법학정치학연구소와 부속 비즈니스법·비교법정연구센터 특임연구원, 법학박사. cyberhb@gmail.com

1) 総務省「平成29年度情報通信白書」.

2) 総務省情報通信政策研究所「平成28年情報通信メディアの利用時間と情報行動に関する調査報告書」(平成29年7月)9頁.

3)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하루에 텔레비전 시청시간이 평일에는 약 170분, 주말에는 약 225분으로 큰 변화가 없다고 한다.

4) 미디어 개념과 인터넷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浜田純一「メディアの自由・自律と第三者機関」論求ジュリスト2018春号85頁 참조.

년대 중반 일본에서 처음으로 사생활 침해에 관한 하급심 재판례⁵⁾가 등장한 이래로 명예훼손, 초상권 내지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 다양한 인격권 침해 사안으로 나타났다.⁶⁾ 일본에서는 한국과 같이 각종 인격권 침해 문제에 관해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을 입법한다거나 언론중재위원회 등 국가기관 설립을 통한 행정적 해결방안을 도모하지 않고 있으며, 사법영역에서 재판을 통해 사안별로 대처하고 있다.⁷⁾

이하에서는 일본의 언론보도피해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을 살펴보고(II), 이러한 피해에 대응하여 민사상의 법적 구제에 관해 최근에 어떠한 논의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III). 그 뒤 논의를 정리하여 일본에서의 논의의 특징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IV).

II. 언론보도피해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

1. 사생활 침해

(1) 사생활 보호의 법리형성

일본에서 처음으로 사생활 침해가 문제가 된 것은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의 소설 “잔치의 향연(宴のあと)” 사건이다. 해당 소설에서 여성관계 등이 자세히 묘사된 한 정치가가 작가와 잡지사를 상대로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했다며 제소하였다. 이 판결에 의해 프라이버시권이 “사생활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않을” 이익 내지 권리로 법적으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⁸⁾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생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사생활 상의 사실 또는 그와 같이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는 사항일 것, ②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

5) 東京地判1964年(昭和39)9月28日民集15卷9号2317頁(宴のあと事件).

6) 이에 관해 고철웅(2014). 일본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관한 판례동향 - 최근의 최고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언론중재>, 2014년 여름호, 52면 이하 참조.

7) 물론 시민사회로부터의 비판 등을 통해 인격권 보호를 위한 각종 미디어의 자주적인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8) 전계주5) 판결. “이른바 프라이버시권은 사생활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않을 법적보장 내지 권리로서 이해되기 때문에 그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행위의 금지나 정신적 고통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로 봤을 때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항일 것, ③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항일 것(이른바, ‘3요건’)이어야 한다. 이 판결이 등장한 이후로 하급심에서는 프라이버시권을 판례상 용어로 인정하였다.⁹⁾ 그러나 최고재판소 판결은 범위가 불명확한 프라이버시라는 용어 대신 “전과를 함부로 공표당하지 않을 이익”,¹⁰⁾ “함부로 용모·자태를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¹¹⁾와 같이 해당 사안의 보호법익을 구체적으로 판시하였다.¹²⁾

사생활 침해의 경우에 위법성 조각사유로는 저명인의 법리, 공공성·공익성 이론 등이 거론된다. 다만, 사생활은 공개 자체가 권리침해가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과는 달리 진실성의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사생활 침해의 경우에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점은 침해주체에 따라서 사생활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민의 알 권리(미디어의 보도의 자유)가 우선되기 때문에 사생활의 보호 영역이 가장 좁다.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등은 자신들에 관한 모든 정보가 전인격적인 평가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적인 남녀관계조차도 대중에게는 정당한 관심사가 된다. 일반공무원, 대기업경영자, 종교인, 학자 등도 이에 준한다. 다만,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의 경우에는 평가가 나뉘고 있다.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사생활은 존중받아야 한다.¹³⁾ 연예인의 가족의 경우에는 연예인 본인보다는 사생활이 보다 넓게 보호된다.¹⁴⁾

9) 예를 들어 東京地判1987年(昭和62)11月20日判時1258号22頁는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사적인 사항을 함부로 공표당하지 않을 이익”이라 표현하였다.

10) 最判1981年(昭和56)4月14日民集35卷3号620頁[前科照会事件], 最判1994年(平成6)2月8日民集48卷2号149頁[逆転事件]. 전자의 판결은 구청장이 변호사로부터 변호사법 제23조의 2에 의거하여 정보조회를 요청받아 전과 및 범죄경력 제공한 사건. 이 판결에서 이토 마사미(伊藤正己) 재판관은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는 그것이 비록 진실에 합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의 프라이버시로서 법률상의 보호를 받고, 이를 함부로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법하게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 전과 등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중에서도 가장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 중 하나”라고 판시하였다. 후자의 판결은 오키나와에서 일어난 사건 및 재판을 다룬 논픽션 작품 “逆転”에 의해 12년 전의 전과가 공표됨으로 인해 피해자가 소를 제기한 사건. 최고재판소는 “전과 등에 관한 사실을 공표당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 법적보호를 받을 이익이 있다”고 하며, “형사사건 내지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사회일반의 관심 내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사건 그 자체를 공표하는 것에 역사적·사회적 의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그 실명을 밝히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며 비교형량을 한 뒤, 그 결과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11) 最大判1969年(昭和44)12月24日刑集23卷12号1625頁.

12) 최고재판소도 最判2002年(平成14)9月24日判時1802号60頁에서는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3) 東京地判1968年(昭和43)11月25日判時537号28頁, 東京地判1974年(昭和49)7月15日判時777号60頁 등.

한편, 일본에서는 1985년 이후에 미디어를 상대로 한 프라이버시 소송이 증가하였다.¹⁵⁾ 예를 들면, 사생활의 공개, 사생활 침해, 카메라 등에 의한 도촬, 소설에 의한 프라이버시 공개, 소송당사자의 프라이버시 공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침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사진주간지를 중심으로 한 옐로(Yellow) 저널리즘의 융성,¹⁶⁾ 텔레비전 촬영진의 취재를 중심으로 한 팩(pack) 저널리즘의 가열, 시민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증대 등이 작용하였다.¹⁷⁾

최근에는 인터넷에 의한 사생활 침해도 증가하고 있다.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결과에 대한 불만을 일본 미용의료협회의 홈페이지에 적었는데, 그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환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반론하였다. 환자가 실명을 거론한 점에 대해 항의하자 약 1시간 후에 집도 의사는 스스로 그 반론문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판결에서는 “적어도 원고(환자)의 실명을 거론할 필요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며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였다.¹⁸⁾

사생활이 침해당하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가해자의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인정받더라도 배상금을 수령하기 힘들 수 있다. 가해자 내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근래의 한 하급심 사례에서¹⁹⁾ 주간지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자가 형사사건 피고를 도촬한 경우 주간지 발행사의 사장이 회사의 사용자책임과는 별도로 대표이사로서 중과실이 있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는 특기할 만하다.²⁰⁾

14) 東京地判1993年(平成5)9月22日判タ843号234頁(여배우의 남편), 東京地判1989年(平成1)6月23日判時1319号132頁(작가의 재혼상대방), 東京高判1990年(平成2)7月24日判時1356号90頁(작가의 재혼상대방).

15) 山田健太 『法とジャーナリズム[第3版]』(学陽書房, 2014)404頁.

16) 대표적 잡지로 『フォーカス』, 『フライデー』가 있다.

17) 山田 전계서 404면.

18) 東京地判2005年(平成17)4月25日2005WLJPCA04250005.

19) 大阪地判2002年(平成14)2月19日判タ1109号170頁. “사내에서 본건 사진 주간지의 취재나 보도행위에 관해 위법 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관리체제를 정비하지 않은 점”에 중과실이 있다고 보아 이사로서의 책임(회사법 제429조)을 긍정하였다.

20) 일본 회사법 제429조[이사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① 이사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에는 해당 이사 등은 이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범죄보도와 사생활 침해

일본에서는 범죄보도를 할 때 피의자(용의자) 내지 피고인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는 것을 보도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²¹⁾. 실명보도원칙은 1980년대 이후부터 논의되어 왔다. 30년 이상 논의되어 왔는데 처음 논의될 당시와 2010년대 말인 지금은 주요 관심사가 바뀌었다. 초기에는 피의자에 대한 보도피해를 염두에 두고 익명보도를 해야 하는지 여부가 주된 문제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오히려 익명발표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일본에서는 주로 체포당할 때에 많은 보도가 이루어지는데, 중대한 사건은 체포당시 전후로 연일 집중적으로 많은 보도가 이루어지나 그 후 기소나 재판 단계에서는 단편적으로 보도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사건, 사고 보도의 경우 어떻게 보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별매체별로 편집방침을 정하고 있지만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은 대다수의 매체가 공개하고 있다. 물론 이에 관해 1980년대 이후 비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²²⁾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 현재도 여전히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는 이유는 “범죄는 사회의 병리를 나타내는 거울”로서 행위자 개인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사회 일반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²³⁾ 사회적 관심이 많은 범죄보도를 할 때에는 피의자 당사자 뿐 아니라 피의자의 가족과 관계자, 나아가 범죄 피해자와 그 관계자까지 조사하여 보도를 한다. 범죄의 사회적 배경이나 병리를 깊이 파기 위해 범죄나 체포, 자백 등의 사건을 현상적으로 쫓아, 피의자의 성장과정이나 생활, 가족과 친구관계, 성격, 피해자의 울분, 조사실정 등으로 “범죄스토리”를 만들어 흥미위주의 보도가 이루어진다.²⁴⁾ 그 과정에서 피의자,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사생활이 의도치 않게 공개되는 것이다. 실제로 요코하마항 모자살인사건 보도에서는 피해자인 부인의 과거 남자관계와 유흥업소에서 심야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는 등의 사생활이, 동경전력 여성사원 살해사건 보도에서는 살해여성의 퇴근 후의 사생활이 흥미위주로 보도되었다.²⁵⁾

21) 일본신문협회에서 발간한 “재판원제도 개시에 있어서 취재·보도지침”(2008)에 의하면, 언론의 사건보도의 기능으로 ① 진실해명기능, ② 범죄재발 방지기능, ③ 피해예방기능, ④ 사회적 관심 충족기능, ⑤ 수사 및 재판 권력의 감시기능 등이 있다고 한다.

22) 浅野健一 『犯罪報道の犯罪』(学陽書房, 1984), 三浦和義 『情報の銃弾』(日本評論社, 1989) 등.

23) 山田 전계서 410면.

24) 田島泰彦ほか編 『現代メディアと法』(三省堂, 1998)91頁[田島泰彦執筆].

25) 田島の 상계서 91면.

종래, 사건보도는 실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나고야(名古屋) 고등법원은 1990년의 한 판결에서 “보도에서 피의자 특징은 범죄뉴스의 기본적 요소이고, 범죄사실 자체와 함께 공공의 중요한 관심사이다”고 하며, “범죄사실의 양태, 정도 및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특징(공인인지 여부), 피해자 측의 피해심정, 독자의 의식, 감정 등을 비교·형량함과 동시에 인권의 존중과 보도의 자유 내지 알 권리 옹호와의 균형을 감안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²⁶⁾ 그러나 최근에는 실명보도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후쿠오카(福岡) 고등법원은 중학교 교원이 소녀와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체포된 사실이 실명보도 된 사안에서,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한번 실명으로 보도되면 나중에 그 사실이 거짓이었다는 점이 판명되거나 혹은 기소되지 않고 절차가 종료한 경우 사후적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체포된 사실을 보도해 두고는 후속절차의 경과(항소인이 본 피의사건에 대해 기소유예로 처분되었다는 사실 등, 중략)는 더 이상 뉴스로서 가치가 없다고 하여 이를 보도하지 않는 자세는 보도기관의 바람직한 자세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거리가 있다”고 판시하였다.²⁷⁾

살인사건이나 인명피해가 큰 사건 등은 뉴스기사로서 가치가 커서 후속보도를 통해 정정보도를 할 기회도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절도나 치한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이나 무죄로 판결되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판명되었을 때 정정보도를 하더라도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다. 따라서 종래 언론은 체포 당시에는 보도가치가 있어 보도하였으나 나중에 불기소나 가벼운 처분만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도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인권과 보도에 관한 선언”(1987)에서 실명보도의 원칙을 그만두고 익명보도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12년 뒤의 “보도의 본연의 자세와 범죄피해의 방지·구제에 관한 결의”(1999)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최근 일본신문협회가 발간한 “실명보도-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2016)는 행정기관 내지 경찰 등의 익명보도의 폐해를 지적하며, 실명보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²⁸⁾ 본서는 익명보도의 폐해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2015년 9월 지진으로 인한 흥

26) 名古屋高判1990年(平成2)12月13日判時1381号51頁.

27) 福岡高裁那覇支判2008年(平成20)10月28日判時2035号48頁.

28) 日本新聞協会『実名報道—事実を伝達するために』(日本新聞協会編集委員会, 2016). 본서는 2006년 12월에 발간된 “실명과 보도”의 개정판이다.

수, 2014년 10월 화산분화로 인한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행정기관이 행방불명자의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아 언론이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가족이 사는 지역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해 자신의 가족에 문제가 생겼는지 여부를 언론보도를 통해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 관계자들이 불편함을 겪었다고 한다. 또한 2005년 4월에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행정기관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익명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본서는 이러한 익명보도의 문제점을 거론한 뒤 실명보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거론하고 있다. ① 실명은 육하원칙 중에서 “누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점, ② 실명확인 은 독자적인 취재를 보다 깊게 할 수 있는 기점이 된다는 점, ③ 실명이 있으면 잘못된 정보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기사의 진실성이 담보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언론이 실명으로 보도하게 되면, ④ 실명보도가 가지는 사실의 무게와 힘,²⁹⁾ ⑤ 권력부정에 대한 추궁기능, ⑥ 피해사실과 배경을 자신 본연의 입장에서 널리 사회에 알리려는 호소력이 순기능으로 작용한다.

한편 성인과 달리 미성년인 경우에는 언론보도에서 실명공개가 소년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³⁰⁾ 1997년에 발생한 고베시(神戸市) 아동 연속살상사건에서는 주간지 포커스가 피의자 소년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소년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여 문제가 된 바 있다. 포커스 편집부는 이 사건의 경우 사건의 특이성과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소년법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사진공개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보호와 교정”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서 볼 때 사진공개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된 바,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소년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시점 내지 진실 전달을 위한 저널리즘 고유의 성격과 피의자 소년의 인권 내지 사회적 갱생여부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섬세한 이익형량이 필요할 것이다.

피의자가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실명 및 얼굴 사진을 보도하여 피의자가 출판사를 상

29) 일본신문협회 (2016). <실명보도-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24면 참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익명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명으로 보도되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성범죄 피해자의 말은 큰 울림이 있다고 한다.

30) 소년법 61조 “가정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소년 또는 소년이었을 때 저지른 죄로 인해 공소를 제기당한 자에 대해서는 성명, 연령, 직업, 주거, 용모 등으로 그 자가 해당 사건의 본인임을 추측할 수 있도록 하는 기사 또는 사진을 신문 그 외 출판물에 게재해서는 안 된다”.

대로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오사카(大阪) 지방법원은 소년의 “실명 보도 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여 출판사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하였다.³¹⁾ 그러나 2심에서 오사카 고등법원은 “프라이버시권 등의 침해, 특히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생활상의 사정이나 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실명보도 내지는 그에 유사한 보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격권 내지는 프라이버시의 침해와는 별도로, 함부로 실명을 공개당하지 않을 인격적 이익이 법적보호에 합당한 이익으로서 인정되는 것은 그 보도대상이 되는 해당 개인에 대해 사회생활상 특별보호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소년법 제61조의 존재를 존중하면서도, 표현행위가 사회의 정당한 관심사이고 동시에 그 표현내용·방법이 부당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 표현행위는 위법성을 결여하고, 위법한 프라이버시권 등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취소하였다.³²⁾

상기 오사카 고등법원 판결과 같은 시기에 나온 나고야(名古屋) 고등법원 판결은 소년법 제61조 해석과 관련해서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살인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미성년피고인(당시 19세)에 관해 법정방청 등으로 정보를 얻어 추측보도(推知報道)를 한 주간지사를 상대로 소년법 위반 및 소년의 명예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에서, 1심 및 항소심 판결은 잡지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³³⁾ 항소심인 나고야 고등법원은 보도로 인해 침해받은 소년의 피침해이익에 관해 소년법 제61조가 보호하고 있는 “명예, 프라이버시”를 헌법상 보장되는 “소년의 성장발달권(소년의 성장발달과정에서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한 권리)”에 의거하여 법리를 구성하였다.³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년범죄 보도 관련소송은 소년법이라는 특별법과 관련하여 중

31) 大阪地判1999年(平成11)6月9日判時1679号54頁.

32) 大阪高判2000年(平成12)2月29日判時1710号121頁.

33) 名古屋地判1999年(平成11)6月30日判時1688号151頁. 名古屋高判2000年(平成12)6月29日判時1736号35頁. 다만, 이 사건은 최고재판소에서 본건 기사가 소년법 제61조가 금지하는 추측보도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소년에 관한 명예 및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해서도 위법성 조각사유 여부에 관해서 피침해이익 별로 개별 구체적인 비교형량을 하지 않았다고 하며 잡지사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환송되었다(最判2003年(平成15)3月14日民集57卷3号229頁). 최고재판소는 소년법 제61조에 위반하는 추측 보도 여부는 “그 기사 등으로 인해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이 그 자를 해당사건의 본인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4) 최고재판소는 “원심이 소년법 제61조에 의해 보호하려고 하는 ‘소년의 성장발달과정에서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한 권리’도 피침해이익이라고 하여 상기결론을 이끌어내려고 하였는지 판결문으로부터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요한 논점을 지닌 문제영역이 되고 있다.³⁵⁾ 소년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표현의 자유 및 보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앞으로도 더욱 구체화 될 것이다.³⁶⁾

2. 명예훼손

(1) 명예훼손의 구제법리 형성

언론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피해자는 형법 및 민법의 규율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일본 형법 제230조 제1항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人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사실여부에 불구하고”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동법 제231조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공연히 人을 모욕한 자”에게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명예란 사회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에는 형법 제230조에 의거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제231조에 의해 형사적으로 처벌된다. 민사적으로는 일본 민법 제709조와 민법 제710조에 의거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³⁷⁾ 민사상의 불법행위법에서도 명예는 사회적 평가라고 해석된다.³⁸⁾ 따라서 언론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예가 훼손되었을 것, 언론의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할 것, 손해가 발생할 것, 인과관계가 있을 것의 요건을 만족시키면 된다.

한편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면책이 되는 경우가 있다. 형법에서는 제230조

35) 수많은 논문들이 있으나, 예를 들어 広瀬健二「少年法61条で禁じられる推知報道の判断基準」法教277号(2003)103頁, 田島泰彦=新倉修編『少年事件報道と法』(日本評論社, 1999), 松井茂記『少年事件の実名報道は許されないのか』(日本評論社, 2000) 참조.

36) 상기 最判2003年(平成15)3月14日民集57卷3号229頁 참조.

37) 일본 민법 제709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710조 “타인의 신체, 자유 혹은 명예를 침해한 경우 또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둘 중 어느 경우든지 간에 전조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야 한다”.

38) 最判1956年(昭和31)7月20日民集10卷8号1059頁는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이란 人의 사회적 평가를 해치는 것이다”, 最判1970年(昭和45)12月18日民集24卷13号2151頁는 “명예란 人이 그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에서 받는 객관적인 평가, 즉 사회적 명예를 가리키는 것”이라 판시하였다.

의 2에서 ① 공공(공익)성, ② 진실성, ③ 상당성이라는 “면책에 관한 3요건”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상에도 이러한 요건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최고재판소는 1966년에 “민사상의 불법행위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오직 공익을 도모할 목적인 경우,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만약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그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행위는 고의 혹은 과실이 없고, 결국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이하, 1966년 판결이라 한다).³⁹⁾ 학설은 이 판결의 판시사항을 “상당성의 이론” 내지 “상당성의 법리”라 부르며 중요한 면책요건 중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 그 뒤 등장한 판례는 수사당국이 아직 사건보도를 발표하지 않은 단계에서 수사가 진전되고 있던 상황을 언론이 앞서 보도한 사안에서, “신문사로서는 상고인들을 다시 방문하여 취재하는 등 더욱 신중하게 근거를 취재해야 했다”고 판시하며 상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⁴⁰⁾ 이 판결은 언론 측에 엄격한 태도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상당성의 법리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평가가 있다.⁴¹⁾⁴²⁾

1966년 판결은 사실적시를 통한 상대방의 명예훼손 여부가 다루어진 사안이었다. 이와 달리 의견 내지 논평을 통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⁴³⁾ 최고재판소는 다음의 판결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다루었다.⁴⁴⁾ 전단지 배부행위가 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

39) 最判1966年(昭和41)6月23日民集20卷5号1118頁. 본 사안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원고가 원고의 학력사칭 등의 의혹이 있고, 살인전과가 있다고 보도한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최고재판소는 상당성의 법리에 의거하여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지지하였다.

40) 最判1972年(昭和47)11月16日民集26卷9号1633頁.

41) 五十嵐清『人格權法概説』(2003)49頁, 松井茂紀『表現の自由と名誉毀損』(2013)23頁. 사실상 경찰의 공식발표 이외에는 보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매우 엄격한 태도라고 비판한다(松井, 같은 면).

42) 하급심에서는 경찰이 체포한 피의자의 실명을 언론이 보도하였는데, 나중에 피의사실이 성립되지 않은 사안에서, “범죄수사를 하는 경찰서 수사관이 수사결과에 의거하여 판명된 피의사실을 기자회견회장 등에서 공표한 경우, 발표내용에 의심이 들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렇지 않는 한 해당 사실을 진실이라 믿었다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한다”고 상당성을 인정하였다(東京地判1990年(平成2)3月23日判時1373号73頁).

43) 東京大学判例研究会「最高裁判所民事判例研究」法協109卷11号1810頁(山口成樹執筆).

44) 最判1989年(平成1)12月21日民集43卷12号2252頁. 공립초등학교에서 통지표 양식 및 평가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는데 교육문제에 대해 언론활동을 하던 피고가 교사의 개인정보와 통지표 논쟁에 대

항에 관하여 ② 그 목적이 오직 공익을 도모하는 것이며 ③ 그 전제사실이 중요한 점에 관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④ 인신공격에 이르는 등 논평으로서의 영역을 일탈하지 않는 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판, 논평을 주제로 하는 의견표명”으로서 불법행위법상의 위법성을 결여한다고 판시하였다(이하 1989년 판결이라 한다). 이 판결이 등장하기 전의 판례는 사실적시의 경우와 의견 내지 논평의 경우를 나누어 명예훼손 여부를 고찰하지 않았다.⁴⁵⁾ 1989년 판결이 등장한지 8년 후에는 의견표명 명예훼손에 관한 판결이 등장해 상당성의 법리를 보다 심화시키게 된다.⁴⁶⁾

1997년에 나온 최고재판소 판결은 앞서 본 1989년 판결이 제시한 4개 요건을 판시한 뒤, “비록 이 의견 내지 논평이 전제로 하고 있는 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의 증거가 없을 때에는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와 비교하여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것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고의 또는 과실은 부정된다”고 판시하였다(이하, 1997년 판결이라 한다). 또한 “의견 내지 논평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정당성이나 합리성을 특별히 묻지 않고, 인신공격에 이르는 등 의견 내지 논평으로서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할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에 불가결한 표현의 자유의 근간을 구성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두텁게 보장하는 취지에 의한 것이다”고 판시하였다.⁴⁷⁾

1989년 판결은 상당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상당성이 인정되면 면책된다는 사실적시 명예훼손(1966년 판결)과 의견표명 명예훼손 사이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1997년 판결에서는 의견표명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진실성·상당성의 경우 면책된다는 법리를 실시함으로써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의견표명 명예훼손 간에 차이를 극복하였다.

한 비판, 논평을 실은 진단지를 배부한 행위가 초등학교 교사들(원고)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이었다.

45) 예를 들어 最大判1986年(昭和61)6月11日民集40卷4号872頁의 경우, 출판물의 사전금지청구를 한 사안에서 논평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때 사실적시의 경우와 의견 내지 논평의 경우의 차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46) 最判1997年(平成9)9月9日民集51卷8号3804頁. 1981년에서 82년에 걸쳐 로스엔젤레스에서 발생한 총살 및 상해 사건에 관한 석간지(夕刊フジ)의 보도에 대해 당사자인 미우라 카즈요시(三浦和義)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 관해서는 매스컴들이 필요이상으로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는데(이른바 “로스 의혹”), 미우라 본인이 수많은 소를 직접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47) 最判2002年(平成14)7月15日民集58卷5号1615頁.

오신(誤信)상당성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되고 있다. 수사당국이 공적으로 발표한 경우⁴⁸⁾나 법원이 형사사건에서 인정한 사실⁴⁹⁾에 관해서는 오신상당성이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근거조사를 하지 않고 일방적 정보만을 믿고 그대로 게재한 경우는 오신상당성이 부정된다. 그러나 보도기관이 특별한 조사권한을 가지지 않은 채 신속히 보도를 해야 할 경우, 보도기관으로 하여금 일단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자료 또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도 충분할 경우가 있다.⁵⁰⁾ 민사재판의 경우, 보도기관에게는 취재원(源)의 비밀이 인정되지만,⁵¹⁾ “보도내용의 진실성 확보 및 그 근거의 상당성에 관해서는 보도내용이 충분히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실한 수량 및 질 양면에서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할 필요가 있고, 단순히 보도내용에 따른 전문을 주장하는 자 혹은 주관적 억측에 지나지 않는 해석이나 추정을 하는 자의 말이나 정보, 보도전후의 신빙성을 음미할 기회가 부여되지 못한 익명자의 말이나 이른바 비공식 정보를 근거로 하는 것은 불충분”하다며, 검사의 비공식 발언을 기사로 한 사안에서 오신상당성은 인정되지 않았다.⁵²⁾

최근 일본방송협회(NHK)가 방영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편집의 자유에 관한 최고재판소 판결이 등장하였다.⁵³⁾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일본 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가 종군위안부문제를 다루기 위한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NHK 제작진의 취재에 응했는데, 편집에 의해 단체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방송이 되어 NHK와 제작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최고재판소는 취재대상자의 기대가 법적보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협력을 의뢰한 관계업자로부터 방송 프로그램의 소재수집을 위한 취재를 받은 취재대상자가 취재담당자의 언동 등으로 해당 취재로부터 얻은 소재가 일정한 내용, 방법에 의해 방송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또는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대나 신뢰는 원칙적으로 법적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취재에 응함으로써 필연적으로

48) 最判1972年(昭和47)11月16日民集26卷9号1633頁.

49) 最判1999年(平成11)10月26日民集53卷7号1313頁.

50) 東京高判1978年(昭和53)9月28日判夕372号85頁.

51) 일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제3호(직업의 비밀에 관해 심문 받았을 때 증인은 증언을 거절할 수 있다). 最決2006年(平成18)10月3日民集60卷8号2647頁.

52) 東京地判1988年(昭和63)7月25日判時1293号105頁.

53) 最判2008年(平成20)6月12日民集62卷6号1656頁.

취재대상자에게 현격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취재담당자가 이를 인식한 다음 취재대상자를 상대로 취재로 얻은 소재에 대해 반드시 일정한 내용, 방법에 의해 방송 프로그램 중에 거론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그러한 설명이 객관적으로 취재대상자가 취재에 응한다는 의사결정을 하게 된 원인이 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취재대상자가 상기와 같이 기대하고 신뢰한 것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 단체는 정치가가 개입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피력했지만 피고 NHK는 일관되게 정치개입은 없었다고 반론하였다. 이 점에 관해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넘어간 최고재판소 판결에 대해서는 학설의 비판이 있다.⁵⁴⁾ 이 판결을 통해 표현의 자유, 방송에 의한 보도의 자유, 취재의 자유,⁵⁵⁾ 프로그램 편집의 자유란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 시민의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접근)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는 편집의 자유 내지 현장의 자유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프로그램 관여자는 취재당사자 내지 시민의 요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와 같은 저널리즘이나 제작현장의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

또한 TV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결이 등장하였다. 일본방송협회(NHK)는 “NHK스페셜 시리즈 JAPAN 데뷔”라는 시리즈 첫 회에서 “아시아의 ‘1등국’”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다. 1910년 런던에서 개최된 일영박람회에서는 일본의 대만통치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파이완족이 사는 집을 만들어 실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전시를 하였는데,⁵⁶⁾ 방송에서 대만남부에 사는 선주민인 파이완족 10명 가량이 모인 사진을 보여주며 그 아래 “인간 동물원”이라는 문자를 표시하였다. 이에 파이완 족 후손들이 이 방송으로 인해 본인들의 명예 등이 훼손당했다며 일본방송협회

54) 고등법원에서는 “1심 원고들은 정치가 등이 본건 프로그램에 관해 직접 지시하였고 개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면담할 때, 정치가가 일반론으로서 말한 것 이상으로 본건 프로그램에 관해 구체적인 이야기나 시사점을 주었다고까지는 증인들의 각 증언에 의해서도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치 못하다”고 판시하였다. 최고재판소는 정치가에 의한 프로그램에 관한 개입, 관여에 대해 엄격한 검증, 체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였기에 정치가에 의한 개입을 사실상 시인해 버렸다는 주장으로, 田島泰彦ほか『表現の自由とメディア』

(日本評論社, 2012)34頁[田島泰彦執筆].

55) 보도의 자유, 취재의 자유에 관해서 最大判1969年(昭和44)11月26日刑集23卷11号1490頁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보도기관의 보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국정에 관여하는 점에 관해 중요한 판단자료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상의 표현의 자유와 함께, 사실에 관한 보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의 보장 아래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56) 당시 영국이나 프랑스는 식민지 사람들을 박람회에서 전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일본도 그런 것을 따라했다고 한다.

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그 배경이다. 1심은 원고의 부친이 전시된 것을 역사적 사실로서 소개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는 저하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⁵⁷⁾ 그러나 2심은 본건 프로그램에 의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⁵⁸⁾ ‘인간 동물원’이라는 말은 인종차별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피고는 본건 프로그램에 의해 파이완족을 대표해서 영국에 간 소외의 딸인 원고가 파이완 족 사이에서 받고 있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기 때문에 그 명예를 침해하였다고 보았다. 최고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하였다.

먼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는지 여부는 “일반시청자의 보편적인 주의와 시청방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종래 판례법리를 전제로 하면서,⁵⁹⁾ “본건 프로그램을 시청한 일반 시청자는 일본이 약 100년 전인 1910년, 대만통치의 성과를 세계에 보여줄 목적으로 서구열강이 야만적이고 열후한 식민지 인간을 문명화시키고 있다고 선전하기 위해 행하였던 ‘인간 동물원’이라 불리는 전시를 모방하여, 원고의 부친을 포함한 파이완 족을 일명박람회 데리고 가서 사는 모습을 전시한다는 차별적인 취급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라 할 수 있다. 본건 프로그램이 적시한 이러한 사실에 의해 일반시청자가 원고의 부친이 동물원의 동물과 같이 다루어져야 하는 자이며, 그 딸인 원고 자신도 그와 같이 다루어져야 할 자로 받아들인다고는 생각하기 어렵고, 따라서 본건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명예가 저하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본건 프로그램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⁶⁰⁾ 차별적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주목받은 사례이나 최고재판소는 일반시청자가 이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만 판단하였고, “인간 동물원”이라는 표현이 차별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직접 판단하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민족과 관련한 미디어의 취급을 둘러싼 논의가 미성숙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비판이 있다.⁶¹⁾

57) 東京地判2012年(平成24)12月14日判時2216号61頁.

58) 東京高判2013年(平成25)11月28日判時2216号52頁.

59) 最判2003年(平成15)10月16日民集57卷9号1075頁.

60) 最判2016年(平成28)1月21日裁判集民事252号1頁.

61) 『平成27年度重要判例解説』ジュリスト1505号(2016)25頁[山田隆司執筆].

(2)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1990년대 이후 하급심 판결이 등장하였고, 2010년에 몇 건의 최고재판소 판결이 등장함에 따라 어느 정도 논의가 정리되기에 이르렀다. 인터넷상의 표현행위에 의한 명예훼손은 ① 명예훼손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②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혹은 콘텐츠 서비스 프로바이더(Contents Service Provider, CSP)의 책임여부가 주된 논점이라 할 수 있다.

먼저 ①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보기로 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에서 프랜차이즈를 통한 라면 체인 가맹점을 총괄하는 회사에 대해 켈트집단이라는 등의 취지를 기재한 바,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에서 최고재판소는 “인터넷 개인이용자에 의한 표현행위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경우와 같이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오신(誤信)한 것에 대해 확실한 자료, 근거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보다 관대한 요건으로 이 죄의 성립을 부정해야 된다고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⁶²⁾ 이 판시는 最判1969年(昭和44)6月25日刑集23卷7号975頁⁶³⁾의 법리를 따른 것이나, 인터넷 개인이용자의 표현행위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기준의 특수성을 부정하였고, 다른 매체와의 차이를 따로 고려하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②의 책임에 관한 판결도 2010년에 2건 등장했다. 인터넷 게시판에 노동기준법에 위반한다는 등의 익명의 투고로 인해 한 토목회사가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제4조 제1항⁶⁴⁾에 의거하여 NTT Docomo에 발신자 정보공개를

62) 最決2010年(平成22)3月15日刑集64卷2号1頁.

63) “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의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오신하고, 그 오신한 점에 대해 확실한 자료, 근거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범죄의 고의가 없고,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

64) 원 법률명은 ‘특정전기통신역무(役務)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開示)에 관한 법률’이다. 제4조 제1항은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으로 자기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해당 특정 전기통신 용도로 제공되는 특정 전기통신 설비를 사용하는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를 상대로 해당 개시관계역무제공자가 보유하는 해당권리의 침해에 관한 발신자정보의 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

1 침해정보의 유통에 의해 해당 개시의 청구를 하는 자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 명백할 때.

2 해당 발신자 정보가 해당 개시를 청구하는 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외 발신자 정보의 개시를 받아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하에서는 법률 조문, 판결 이외에는 알기 쉽게, 개시(開示)를 공개로, 역무(役務)를 서비스로 번역하기로 한다.

청구한 사건에서, 최고재판소는 “최종적으로 불특정한 자에게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특정전기통신설비의 기록매체에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발신자와 콘텐츠 프로바이더 간의 통신을 매개하는 경우 프로바이더는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공개청구를 인정하였다.⁶⁵⁾ 이 판결은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뿐 아니라, 경우 프로바이더 또한 “개시(開示)관계 역무제공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서, 경우 프로바이더가 “특정 전기통신 역무제공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판례이다.

다음으로 문제된 사안은, 인터넷상 게시판 투고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학교법인 이사장이 발신자 정보공개 청구를 거절한 특정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인 KDDI를 상대로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발신자 정보공개 청구 및 피고가 원고의 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이다. 최고재판소는 “개시관계 역무제공자는 침해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개시청구자의 권리침해가 명백하다는 점 등 해당 개시청구가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제4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요건 모두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상기 요건 모두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견 명백하여 이를 인식할 수 없었던 점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법리를 본건에 비추어 본다면, “본건 투고는 …… ‘미치광이’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데에 그치는 것으로, 그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모욕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원고의 인격적 이익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본건 투고 중 원고를 모욕하는 문언은 상기의 ‘미치광이’라는 표현 한 단어 밖에 없고 특별한 근거를 들지도 않고 본건 투고를 한 자의 의견 내지 감상으로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는 모욕행위라는 것이 언뜻 보기에 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본건 게시판의 다른 투고내용, 본건 투고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원고의 권리침해의 명백성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이러한 판단은 재판 밖에서 본건 발신자 정보의 개시

65) 最決2010年(平成22)4月8日判タ1323号118頁.

청구를 받은 피고에게 있어 반드시 쉬운 것은 아니다 …… . 그렇다면 피고가 본건 투고로 인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 밖에서 원고로부터의 본건 발신자 정보의 개시청구에 대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⁶⁶⁾

III. 민사상의 법적구제에 관한 최근 논의

1. 들어가며

일본 미디어법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광범위한 자율규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⁶⁷⁾ 그 시작은 1945년 이후 연합국 총사령부가 신문사와 통신사 대표를 모아놓고 신문연합회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 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지시한 것에서 출발하였다. 1946년에 “신문윤리강령”이 제정되었고, 이 강령에 따라 일본신문협회가 설립되었다.⁶⁸⁾ 출판에 관해서는 일본서적출판협회가 1957년에 제정된 “출판윤리강령”을, 잡지에 관해서는 일본잡지협회가 1963년에 제정한 “잡지편집윤리강령”을, 출판유통에 관해서는 일본출판증개협회(日本出版取次協會)가 1962년에 제정한 “출판물증개윤리강령”을 각각 만들었다. 방송에 관해서는 일본방송협회(NHK), 사단법인 일본민간방송연맹(민방련), 사단법인 일본방송연합회(방송연합)가 1965년에 방송연합 내에 “방송프로그램향상위원회”를 설치하였고, 1997년에는 제3자기구로서 “방송과 인권 등에 관한 위원회기구(BRO)”를 설치, 2003년 이들을 통합하여 “방송윤리·프로그램향상기구(BPO)”가 발족하였다.⁶⁹⁾

66) 最判2010年(平成22)4月13日判時2082号59頁.

67) 이하는 松井茂記 『マス・メディア法[第4版]』(日本評論社, 2008)342-343頁에 주로 의거하였다.

68) 일본신문협회는 단체규약에 따라 신문윤리강령에 위반하는 회원신문사의 회원자격을 취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이 권한을 한번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한다. ジョン・ミドルトン 「誤報・虚報被害者の救済法—比較メディア法の視点から」法セミ670号(2010)25頁 참조.

69) 2007년에는 BPO, NHK, 민방련의 프로그램 날조로 인해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아, 허위방송이나 방송윤리상 문제를 심사하는 ‘방송윤리검증위원회’를 BPO 내에 설치하였다. 방송인권위원회는 NHK와 민간방송연합회 가맹사에 의해 설립된 방송으로 인한 권리침해에 관련된 고충처리기관이다. 이 위원회는 1997년에 설립된 것으로 방송윤리의 향상을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이 위원회는 학자, 변호사, 저널리스트 등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 방송국 관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방송에서 인권을 침해받은 신청인은 먼저 방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방송국에게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방송국과 인권침해에 대해 협의하여 문제해결이 되면 다행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서 방송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 기한은 방송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 위원회에 심리를 신청한다. 신청절차

영화에 관해서는 1959년에 “영화윤리규정”이, 비디오에 관해서는 일본비디오 윤리협회가 “영상소프트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자주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다. 그 외 광고에 관해서도 “광고윤리강령”, “신문광고윤리강령”, “잡지광고윤리강령”등 업계의 자율규제가 존재한다.

이와 같이 미디어의 자율규제가 많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것이고 법적인 의무를 수반하지 않는다. 반대로 이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자율규제가 일본 사회에 있어서 자유롭고 활발한 언론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⁷⁰⁾ 자율규제가 오히려 법적 규제보다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세밀한 운영이 필요하다.⁷¹⁾

이하에서는 미디어에 의한 침해 받을 경우 당사자가 어떠한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침해를 받기 전에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일본의 논의를 소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과 금지 및 삭제청구

(1) 손해배상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 등으로 피해자가 사생활이나 명예 등을 침해받을 경우에는 민사상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손해배상이란 정신적 손해의 배상, 즉 위자료를 말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침해와 비교해서 그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미디어를 상대로 한 소송이 많아진 1970년대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손해배상액은 수만 엔에서 수십만 엔 정도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 100만 엔을 넘는 판결이 등장했고, 100만 엔 정도가 위자료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1999년 8월에는 집권정당인 자유민주당의 “보도와 인권 등의 이상적 자세에 관한 검

관련해서는 방송인권위원회 운영규칙(2007년 3월 일부개정)에서 정한다.

자세히는 일본 방송윤리·프로그램 향상기구 홈페이지(https://www.bpo.gr.jp/?page_id=1074)참조.

70) 많은 신문사가 설치하고 있는 제3자 기관(예를 들어, 마이니치(毎日) 신문사의 ‘열린’신문위원회나 아사히(朝日) 신문사의 ‘보도와 인권위원회’)은 과거의 취재, 보도 등에 관한 문제점을 논의하여 윤리수준의 향상이나 장래의 보도피해의 방지에 공헌하고 있다고 한다. ジョン・ミドルトン 「誤報・虚報被害者の救済法—比較メディア法の視点から」法セミ670号(2010)25頁 참조.

71) 자율규제의 일반적 문제점에 관해서는 松井 상계서 344-346면 참조.

토회”가 매스 미디어를 상대로 인정되는 배상금액의 부당성을 지적한 것을 계기로 단기간에 정치가, 기업경영자,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을 상대로는 고액(500-1,0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등장했다.⁷²⁾ 2002년 9월에는 사법연수원의 “손해배상 실무연구회”가 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배상금액의 산정과 관련, 교통사고와 같이 ‘점수제’를 도입하고, ② 배상금액의 평균수준을 500만 엔 정도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움직임 등을 배경으로 미디어에 의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고액배상이 많아졌다.

다만, 이러한 고액화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력이 없는 가난한 명예훼손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경제·사회의 제1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터운 보호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고액화는 매스 미디어의 활동을 위축시켜,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한 매스 미디어의 비판력·추급력을 약화시킨다. 의견 및 정보의 다양성이 위축되는 경향성이 있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⁷³⁾ 손해배상의 고액화가 야기하는 병폐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면책요건의 완화, 공익성 요건의 철폐, 상당성 요건에 의한 면책범위의 확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 민법 제723조는 손해배상 대신에 명예회복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사죄광고가 1994년에 헌법상 위헌판결을 받아 금지되었지만, 일본에서는 과거 최고재판소의 판결 이후로 여전히 사죄광고가 허용되고 있다.⁷⁴⁾ 손해배상과 함께 사죄광고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⁷⁵⁾ 인터넷 웹페이지에 작가(피고)가 연재한 일기로 인해 대학교수인 원고와 그 부인이 명예,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당했다며 일기 게재 금지, 위자료 지불, 사죄광고의 게재

72) 예를 들면, 여배우 관련 보도를 하여 문제가 된 주간지에게 500만 엔의 배상명령을 내렸다(東京地判 2001年(平成13)2月26日判タ1055号24頁).

73)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문헌으로, 長谷川貞之ほか編『メディアによる名誉毀損と損害賠償』(三協法規出版, 2011)89頁이하 참조.

74) 最大判1956年(昭和31)7月4日民集10卷7号785頁. 최고재판소 다수의견은 “단순히 사태의 진상을 고발하고 사죄의 뜻을 표명하는 것에 그치는 정도”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75) 방송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조치로서 ‘사죄방송’뿐 아니라 방송법에 의거한 ‘정정방송’도 명령될 수 있다. 방송법 제9조(정정방송 등) ① 방송사업자가 진실하지 않은 사항의 방송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방송에 의해 권리의 침해를 받은 본인 또는 그 직접 관계인으로부터 방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가 있는 때에는 방송사업자는 지체없이 그 방송을 한 사항이 진실하지 않은지 여부를 조사하여, 진실하지 않은 것이 판명된 때에는 판명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그 방송을 한 방송설비와 같은 방송설비에 의해 상당한 방법으로 정정 또는 취소방송을 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에 대해 진실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막는 것이 아니다.

를 청구한 사례에서, 도쿄(東京)지방법원은 웹페이지에 게재한 것은 “전달성이 높은 방법”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라고 인정하였고, “특히 피고가 관리하는 웹페이지를 계속적으로 열람하는자들 사이에는 원고들에 관한 사실이 널리 인식되었을 것이라 추인된다”며,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사죄광고의 게재방법으로는 피고 웹페이지와 일기가 연재되었던 웹페이지 두 군데에 게재하도록 명령하였다.⁷⁶⁾

(2) 금지 및 삭제청구

예전부터 사생활(프라이버시) 혹은 명예훼손 등 인격적 이익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금지청구가 활용되었다. 금지청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이외의 조치를 법적 구제방법으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언론에 의한 법익침해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으로 피해자의 구제가 충분치 못하고, 또한 침해상황이 계속될 경우 금지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계속해서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판례상 명예훼손에 관한 구제수단으로서 사전금지청구를 긍정한 것이 이른바 북방저널(北方ジャーナル) 사건이다.⁷⁷⁾ 잡지발행자인 원고는 홋카이도(北海道) 지역에서 발행되는 북방저널이라는 잡지(예정부수 25,000부)에 도지사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후보자측이 잡지 발행 금지의 가처분 신청을 한 바, 해당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다. 이에 잡지발행자는 후보자, 잡지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으나 1심, 2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최고재판소도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만 금지청구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법리를 실시하였다.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하는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10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동법 제723조)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이외에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의거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또는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같이 배타성을 가지는 권

76) 東京地判2011年(平成23)6月30日2011WLJPCA06308009.

77) 最大判1986年(昭和61)6月11日民集40卷4号872頁(북방저널 사건).

리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현행위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보호(헌법 제13조)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동 제21조)이 충돌하여, 그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침해행위로서 그 규제가 허용되는지는 헌법상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공무원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평가, 비판 등”에 관한 사전 금지는 “그 표현이 사인의 명예권에 우선하는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고 헌법상 특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임을 생각해보면, ……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그 표현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또는 그것이 오직 공익을 도모할 목적이 아니라 하는 점이 명백하고, …… 피해자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곤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떨어지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긍정”되므로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그 뒤 모델소설의 사전금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 등장했다. 아쿠타가와(芥川)상 작가인 재일교포 유미리(柳美里)는 자신의 경험이 바탕이 된 모델소설(石に泳ぐ魚)을 잡지에 발표했다. 태어나면서부터 얼굴에 종양이 있는 외모를 가진 재일한국인 3세 젊은 여성인 원고가 살아가는 일생을 쓴 소설이지만 그 묘사방법에 가혹한 부분이 있어 모델 여성이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명예감정의 침해를 이유로 작가, 잡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출판금지를 청구하였다. 1심과 2심은 위자료와 출판금지 둘 다 인정하였다. 잡지사와 유미리 작가 둘 다 각각 상고하였지만 최고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상고를 기각하였다.⁷⁸⁾ “공공의 이익에 관계하지 않는 원고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을 표현내용으로 포함하는 본건 소설의 공표로 인해 공적인 위치에 있지 않은 원고의 명예, 프라이버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고, 본건 소설의 출판 등으로 인해 원고에게 중대하고 회복곤란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 등에 의거한 원고의 각 청구를 인용한 판단에 위법은 없고, 그 판단이 헌법 제21조 제1항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 법원의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며 원고의 손해를 인정하였다. 금지청구에 관해서는 “인격적 가치를 침해받은 자는 인격권에 의거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또는 장래 발생할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어떤 경우

78) 最判2002年(平成14)9月24日判時1802号60頁(돌에서 해엄치는 물고기 사건). 이 책의 저자는 유미리, <돌에서 해엄치는 물고기>로 2006년 한국에서도 출판되었다(문학동네).

에 침해행위의 금지가 인정되는지는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인물의 사회적 지위나 침해행위의 성질에 유의하면서 예상되는 침해행위로 인해 받는 피해자측의 불이익과 침해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받는 침해자측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침해행위가 명백하게 예상되고, 그 침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중대한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고 동시에 그 회복을 사후에 도모하는 것이 불가능 혹은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다고 인정될 때에 침해행위의 금지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고등법원 판결을 추인하였다.

금지청구의 인정여부와 관련, 이 판결은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한 앞의 북방저널 사건의 판례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공적 인물이 명예훼손의 대상이었던 북방저널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의 경우에는 무명의 사인이었기 때문에 비교형량을 할 때에 인격권 보호 쪽으로 보다 무게중심이 놓여있다.

하급심 판례 중에서는 저명한 정치가의 딸(외할아버지는 前 총리)이 이혼하였다는 기사를 게재한 주간지를 상대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금지청구한 사안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았다.⁷⁹⁾ 1심은 금지청구를 인정하였으나,⁸⁰⁾ 도쿄 고등법원은 1심 결정을 취소하며 금지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혼은 …… 당사자가 선전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당사자의 인격에 대한 비난 등 인격에 대한 평가에 항상 관계하는 것이 아니며, 원래부터 사회제도상 시인되고 있는 사상(事象)으로서 일상생활상 아무렇지도 않게 소식을 듣거나 눈으로 보는 정보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전금지를 인정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곤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금지청구와 더불어 최근에는 인터넷 상의 기사, 검색결과 등의 삭제청구 여부에 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등장한 인터넷 검색결과 삭제가처분 결정에 관한 최고재판소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⁸¹⁾ 종래의 판례는 게시판 관리자나 블로그 관리자를 상대로 투고기사의 삭제의무가 문제 되었으나, 이 판결은 매개자인 검색사이트 관리자를 상대로 제소한 사안이었다. 아동매춘을 한 죄로 아동포르노법 위반으로

79) 東京高決2004年(平成16)3月31日判時1865号12頁.

80) 東京地決2004年(平成16)3月19日判時1865号18頁. 피고가 보전이익을 청구한 소송. 항고심은 보전항고 소송.

81) 最決2017年(平成29)1月31日民集71卷1号63頁.

별금형을 받은 사람이 3년이 경과한 후에도 구글(Google)에 이름과 현(県, 일본의 행정구획)명을 넣으면 체포당시의 범죄보도가 검색결과로 여전히 표시되는 것을 문제 삼아 구글을 상대로 검색결과 삭제의 가치분을 청구하였다. 1심은 “한번은 체포 경력이 보도되어 사회에 알려져 버린 범죄자라 하더라도,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고, 갱생을 방해받지 않을 이익을 가지기 때문에 범죄의 성질 등에 따라 다르나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거의 범죄를 사회로부터 ‘잊혀질 권리’를 가진다고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⁸²⁾ ‘잊혀질 권리’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여 검색결과를 삭제해야 한다는 판시는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⁸³⁾

그러나 항고심은 이러한 판시사항을 뒤집었다. “원고가 주장하는 ‘잊혀질 권리’는 원래 우리나라에서 법률상의 명문의 규정이 없고, 그 요건 및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 …… (잊혀질 권리)의 실태는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명예권 내지 프라이버시에 의거한 금지청구권과 다르지 않다고 해야 한다”, “인터넷은 정보 및 의견 등의 유통에 관해 그 양의 방대함 및 내용의 다양함에 더해 수시로 쌍방향적인 유통도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존의 정보유통수단을 보완할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중요한 사회적 기반의 하나가 되고 있는 점, 또한 방대한 정보 중에서 필요한 것에 이르기까지는 항고인이 제공하는 것과 같은 전문검색형의 로봇형 검색엔진에 의한 검색서비스는 필수적인 것이고, 그것이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에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인터넷을 둘러싼 현대적인 사회상황을 고려하면, 본건에서 명예권 내지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의거한 금지청구(본건 검색결과 삭제 등 청구)의 인정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삭제 등을 구하는 사항의 성질(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인지 여부 등), 공표 목적 및 그 사회적 의의, 금지청구자의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 공표로 인해 금지청구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발생의 명백성, 중대성 및 회복곤란성 등 뿐 아니라, 상기와 같은 인

82) さいたま地決2015年(平成27)12月22日判時2282号78頁. 엄밀히 말하면 이 판결 전에 원고의 신청을 인정하여 가치분명령을 인정한 さいたま地決2015年(平成27)6月25日判時2282号83頁이 있다.

83) 이 사건 담당 변호사의 논문으로 神田知宏「さいたま地裁平成27年12月22日決定における『忘れられる権利』の考察」Law&Technology72号41頁 참조. 잊혀질 권리라는 용어는 다양한 사안에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시간이 경과하여 공공성이 없어졌다”고 하여 명예훼손이 문제가 된 다거나(札幌地判2015年(平成27)12月7日2015WLJPCA12076001), 은퇴한 여배우의 잊혀질 권리가 문제가 된 사안(東京地判2006年(平成18)7月24日2006WLJPCA07240004), 여고생의 중고 교복, 체조복 등을 파는 직업(ブルセラ)에 종사하여 속옷을 팔던 연예인의 잊혀질 권리 등이 문제가 된 사안(東京地判2003年(平成15)6月20日2003WLJPCA06200005) 등이 있었다.

터넷이라고 하는 정보공표 내지 전달수단의 성격이나 중요성, 나아가 검색서비스의 중요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를 전제로 “본건 범행(아동매춘행위)은 아동의 건전한 육성 등의 관점에서 그 방지 및 규제의 철저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행위이고 특히 여자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있어서는 중대한 관심사인 것은 명확하다. 이러한 본건 범행의 성질로 본다면, 그 발생 시부터 이미 5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였고 또한 원고가 시민의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벌금 납부를 끝낸 뒤 아직 5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형의 선고의 효력이 유효한 것(형법 제34조의2 제1항)을 고려하면, 본건 범행은 여전히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다”며,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의 보호가 우월하다고 보아야 하며, 상대방의 프라이버시에 의거한 본건 검색결과와 삭제 등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다.

최고재판소는 과거의 판례를 인용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실을 함부로 공표당하지 않을 이익은 법적보호의 대상이 된다”, “검색사업자가 어떤 자에 관한 조건에 의한 검색청구에 응하여, 그 자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실을 포함하는 기사 등이 게재된 웹사이트의 URL 등 정보를 검색결과와 일부로서 제공하는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해당 사실의 성질 및 내용, 해당 URL 등 정보가 제공됨으로 인해 그 자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실이 전달되는 범위와 그 자가 입는 구체적 피해의 정도, 그 자의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 상기 기사 등의 목적이나 의의, 상기 기사 등이 게재된 때의 사회적 상황과 그 후의 변화, 상기 기사 등에서 해당 사실을 기재할 필요성 등, 해당 사실을 공표당하지 않을 법적 이익과 해당 URL 등 정보를 검색결과로서 제공하는 이유에 관한 제반 사정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하고, 그 결과, 해당 사실을 공표당하지 않을 법적이익이 우월하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검색사업자를 상대로 해당 URL 등 정보를 검색결과로부터 삭제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며 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본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비교형량에 있어서 ‘명백성’을 요건으로 들고 있다는 점이다. 공표당하지 않을 법적 이익(즉, 피해자의 인격권)과 검색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인해 얻어지는 이익(즉, 검색엔진의 권리)을 비교형량하여 어느 한쪽이 우월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우월성이 명백한 경우라야만 공표당하지 않을 이익이 보호된다는 것으로서 검색엔진의 권리 측에 무게중심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요

건은 근래 하급심 판결례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⁸⁴⁾

3. 반론권

일본에서 반론권은 헌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인정되지 않고,⁸⁵⁾ 또한 반론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한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위반의 우려가 강하다는 것이 일본에서의 통설적 이해라고 할 수 있다.⁸⁶⁾ 이러한 견해는 “반론권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거한 것으로, 나아가 피해자에게 반박의 기회를 허용함으로써 언론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향상시키고, 제도로서의 언론보장을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한국에서의 반론권에 관한 이해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⁸⁷⁾ 이하에서 일본의 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본다.

반론권은 매스 미디어의 보도로 인해 비판·공격을 받는 자(보도피해자)에게 무료로 동일한 매스 미디어의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분량·시간의 반론·반박의 기회를 보장할 것을 내용으로 한다.⁸⁸⁾ 반론권은 19세기에 시민혁명을 거쳐 언론·출판의 자유를 획득한 역사를 가지는 프랑스 및 독일에서 인격권의 보호, 구제를 목표로 언론의 난립이나 정부비판에 대한 억제를 의도하여 생성되었다. 이러한 생성배경에 비해 오늘날에는 언론 억제적 성격을 탈피하여 인격권의 보호, 구제에 그치지 않고, 매스 미디어에 대한 접근이나 사상·정보의 다양성 확보의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반론권의 이러한 측면은 일반국민이 매스 미디어를 상대로 자기의 의견발표의 장의 제공을 요구하는 권리인 액세스권(right of access to mass media)의 이념에 부합한다.

일본에서 반론권 제도는 신문지 발행조목(新聞紙發行條目, 1873년)에서 프랑스법의

84)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타나기 전인 札幌地決2016年(平成28)4月25日2016WLJPCA04256006, 그 항고 심인 札幌高決2016年(平成28)10月21日2016WLJPCA10216001, 名古屋地判2016年(平成28)7月20日2016WLJPCA07206013에서도 명백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85) 일본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①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외 모든 표현의 자유는 이를 보장한다.
② 검열은 이를 금지한다. 통신의 비밀은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86) 曾我部 전계서 9頁.

87) 현재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

88) 반론문을 게재할 때에 무상이 원칙이나,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 유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법례도 있다(프랑스 1881년법 제13조 제3항 등). 曾我部真裕 『反論權と表現の自由』(有斐閣, 2013)6頁 注1) 참조.

영향을 받아 처음 시작되었다.⁸⁹⁾ 그러나 그 뒤 신문지 조례(1875년)를 정하여 신문지 발행조목이 폐지됨에 따라 반론권 제도도 폐지되었다. 현재에도 반론권이 법적인 제도로서 보장이 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아래 최고재판소 판결을 계기로 반론권이 다시 주목받기에 이르렀다.

1973년 자민당이 산케이(産経) 신문에 공산당을 야유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하였는데, 공산당이 산케이 신문에 반론문의 무상게재를 요청하였다. 산케이 신문이 이를 거절하자 공산당은 소송을 제기하였다.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 반론권의 유효성이 쟁점이 되었는데, 1심과 2심은 명예훼손의 구제방법으로 반론문 게재여지를 인정하였지만, 자민당의 악의가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원고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다. 최고재판소는 ① 인격권 또는 조리를 근거로 하는 이른바 반론문 게재청구권의 성립여부와 ② 신문지 상에서 정당간의 비판·논평에 관한 의견광고에 관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먼저 전자에 관해서는 “신문기사에 거론된 자가 그 기사게재로 인해 명예훼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자기가 기사에 거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문을 발행·판매하는 자를 상대로 해당 기사에 관한 자기의 반론문을 무수정으로 게다가 무료로 게재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른바 반론권의 제도는 기사에 의해 자기의 명예를 훼손당하였거나 혹은 그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 등에 관해 잘못된 보도를 당하였다는 자에게 있어서는 같은 신문지상에 자기의 반론문 게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로 인해 원 기사에 대한 자기주장을 독자에게 호소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제도로 인해 명예 혹은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기여하는 점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제도가 인정될 때에는 신문을 발행·판매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원 기사가 바람직하고 반론문이 잘못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경우라도 혹은 반론문의 내용이 그 편집방침에 의하면 게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게재를 강요받는 것이고, 이러한 부담이 비판적 기사, 특히 공적사항에 관한 비판적 기사 게재를 주저하도록 만들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위험에 연결될 우려도 다분히 존재한다. 이처럼 반론권의 제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

89) 반론권에 관한 대표적 문헌으로는 韓永学 『報道被害と反論権』(明石書店, 2005), 曾我部真裕 『反論権と表現の自由』(有斐閣, 2013) 참조. 한영학 (2010). 일본에 있어서 반론권의 연혁과 현상. <언론과 법>, 제9권 제1호, 146면 이하도 참조.

를 가지는 신문 등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록 피상고인이 발행하는 산케이 신문 등 전국 일간지에 의한 정보제공이 일반국민을 상대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 기사가 특정한 자의 명예 또는 프라이버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자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반론권의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성문법이 없는 바, 반론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상고인 주장과 같은 반론문 게재청구권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⁹⁰⁾

다음으로 후자에 관해서는 앞서 본 북방저널 판결의 법리를 인용하며 “신문사가 신문 지상에 게재한 정당의 의견광고가 다른 정당의 사회적 평가의 저하를 노린 것이고, 다른 정당을 비판·논평하는 내용의 것이나 동시에 그 기사 중에 다른 정당의 강령 등의 요약 등이 일부 꼭 타당하거나 또는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요약을 위한 강령 등의 인용문언 자체는 원문 그대로이고, 요점을 제외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등 원심의 사실관계 하에서는 그 광고게재는 광고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오직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 것이고 동시에 주요한 점에서 진실의 증거가 있었던 것으로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표적 학설은 산케이 신문사건에서 원고가 경제적 자유의 독점규제의 논리로 반론권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처럼, “언론의 영역에서 반론권이 문제가 될 때에는 사인=출판자에 의한 방해 배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인=출판자에게 다른 사인의 언론활동의 장으로 제공해주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 동일하게 ‘실질적 자유’의 관철이라는 것이 표방되는 경우라도 경제의 영역에서 독점규제의 경우와 내용은 다르다”고 지적하며⁹¹⁾ 반론권을 액세스권적으로 이해하고 있다.⁹²⁾

한편, 인터넷 상의 발언에 대한 반론은 “대항언론”이라는 문제로 검토되고 있다.⁹³⁾ 대항언론이란 언론에 의한 병폐에 대해서 더욱 더 언론(more speech)으로 대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항언론이 기능하지 않는 경우에 이르면 법적인 구제를 인정하게

90) 最判1987年(昭和62)4月24日民集41卷3号490頁(산케이신문 의견 광고사건).

91) 樋口陽一 『司法の積極性と消極性』(勁草書房, 1978)134頁.

92) 曾我部 전개서 4면.

93) 安永正昭 「インターネット上での名誉・プライバシー侵害からの法的保護の現状」 民商133卷4=5号(2006) 588頁.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서 대항언론이 효과를 가지려면 다음과 같이 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다. 반론자의 불특정성, 반론장소의 불특정성, 대항언론에 의한 위법성 조각 가능성 등이다.

신문지상의 명예훼손의 경우 반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 본인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경우 게시판에서 대항언론을 하는 자는 반드시 피해자 본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아무런 관계없는 다른 사람이 마치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것처럼 말할 수도 있다. 대항언론을 인정한다는 것을 가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해자가 (제3자로부터) 대항언론을 받았을 경우 이것이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피해자 본인은 의도치 않게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인터넷의 특성상 반론장소 역시 불특정하므로, 가해자의 글이 여러 사이트에 걸쳐 게재되어 있을 경우, 피해자가 대항언론으로서 한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이트에 그것이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대항언론으로 피해자는 구제받지 못한다.

한 하급심 사례에서는 인터넷상 의견교환을 하는 게시판에서의 명예훼손 등이 문제가 되었다.⁹⁴⁾ 원고는 소외 갑의 발언에 대해, 피고 인터넷 운영관리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를 제소했다. 도쿄지법은 대항언론에 관하여 “언론에 의한 침해에 관해서는 언론으로 대항한다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기본원리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충분한 반론을 하여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게다가 인터넷 매체는 “피해자의 반론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갑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대항언론을 하였다”는 그 사실 자체에 착안한 것으로서, 그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여부는 묻지 않고 있다. 기존의 종이 매체에서의 반론과는 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존재하는 인터넷 상의 대항언론 내지 반론에 대해서는 판례의 집적을 통해 보다 논의가 세밀화 될 필요가 있다.

94) 東京地判2001年(平成13)8月27日判時1778号90頁.

IV. 끝머리에

이상 본문에서는 일본의 언론보도피해와 민사법상의 대응방안과 관련해서,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의 판례 동향을 확인한 뒤, 손해배상과 금지 및 삭제청구, 반론권을 비롯한 민사상의 법적 구제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이 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과 일본은 언론보도피해와 민사법상의 대응방안과 관련해서 상당히 유사한 측면도 많이 있는 반면, 다른 측면도 많이 존재한다.

먼저 양국의 유사한 측면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한다. 사생활의 법적 보호에 관해서는 사생활 자체가 민사상의 보호이익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점, 사생활이 침해되었을 경우, 사생활로서 보호받아야 되는 법적 이익과 표현의 자유로서 공개되어야 할 법적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어느 한쪽이 우월할 경우에 보호받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법리를 판례로 채택하고 있는 점,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을 사회적 평가의 저하로 규정하고, 공공성(공익성), 진실성, 상당성의 면책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례 법리도 한국과 일본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⁹⁵⁾⁹⁶⁾ 또한 언론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자가 민사법상의 대응수단으로 채택할 수 있는 것으로 손해배상, 금지청구, 삭제청구 등을 들 수 있는 점도 공통적이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법리가 다른 측면도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다른 측면을 모두 나열할 수는 없으므로 이하 몇 개만 열거해 본다. 먼저, 사생활 보호의 법적 근거에 관해서 한국에서는 헌법 제17조⁹⁷⁾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개인의 존중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하는 헌법 제13조⁹⁸⁾(한국 헌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조문)에 의거하고 있다.⁹⁹⁾

95)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중요 선례인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은 ‘공익성’과 ‘진실 또는 상당성’의 법리를 채택하였고, 그 후 다수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등)은 상기 1988년 판결을 세밀화하는 법리를 발전시켰다.

96) 김재형 (2012). <언론과 인격권>. 서울: 박영사, 284면 주8)에서도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35718 판결 등 상당성의 증명문제를 고의, 과실 문제로 보는 판례가 일본 판례(最判1966年(昭和41)6月23日民集20卷5号1118頁)의 입장과 동일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97)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98) 일본 헌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된다.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에 관한 국민의 권리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그 외 국정상 최대한의 존중을 필요로 한다”.

99) 통설적 견해. 한편 민법학의 관점에서 사생활의 법적 근거를 달리 볼 수 있다는 비판적 견해도 존재한

다음으로 한국에서 인신공격적 표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해서는 이를 인정한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이 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명예훼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인신공격적 표현의 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하였다. 반면, 본문에서 본 인간 동물원과 관련한 最判2016年(平成28)1月21日裁判集民事252号1頁에서는 차별적 언행에 대해 명예훼손의 법리로서만 문제를 다루었고, 불법행위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¹⁰⁰⁾

민사법상의 구제수단 중 반론권 관련해서는 일본에서 반론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반론권이 현실적인 구제제도로서 이용되고 있다.¹⁰¹⁾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 이외에 사죄광고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반면 일본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명예회복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한국에서는 판례상 아직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인터넷 검색엔진의 검색결과 삭제여부와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최고재판소 판결(最決2017年(平成29)1月31日民集71卷1号63頁)이 등장하여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

한국에서의 언론보도피해에 관한 민사법상의 대응방안이 법리적으로 이미 일정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법리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비판적인 수용자세가 필요하다.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보다 의미 있는 작업이 되기 위해서는 본고에서 다른 개별 테마에 관해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 논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 한 유력 학자는 사생활은 사회생활의 문맥에서 파악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자신이 상정하는 문맥과 다른 문맥에 투입되는 것이 피침해권리·이익의 핵심이라 한다(水野謙「プライバシーの意義に関する序論的考察」学習院大学法学会雑誌45卷2号(2010)1頁).

100) 물론 이는 외양상 그렇다는 것이고, 원고, 피고의 주장 및 입증 등 보다 상세한 검토를 통해 비교해 보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101) 예를 들어,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93. 9. 6. 선고 93카합79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8. 31. 선고 2002나14114 판결 등.

참고 문헌 REFERENCE

- 고철웅 (2014). 일본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관한 판례동향-최근의 최고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언론중재>, 2014년 여름호
- 김재형 (2012). <언론과 인격권>. 서울: 박영사
- 유미리 (1994). 石に泳ぐ魚. 한성례 (역) (2006) <돌에서 헤엄치는 물고기>. 경기: 문학동네
- 한영학 (2010). 일본에 있어서 반론권의 연혁과 현상. <언론과 법>, 제9권 제1호
- 浅野健一 『犯罪報道の犯罪』(学陽書房, 1984)
- 五十嵐清 『人格権法概説』(2003)
- 神田知宏 「さいたま地裁平成27年12月22日決定における『忘れられる権利』の考察」 Law & Technology72号
- ジョン·ミドルトン 「誤報·虚報被害者の救済法—比較メディア法の視点から」 法セミ670号(2010)
- 総務省 「平成29年度情報通信白書」
- 総務省情報通信政策研究所 「平成28年情報通信メディアの利用時間と情報行動に関する調査報告書」(平成29年7月)
- 曾我部真裕 『反論権と表現の自由』(有斐閣, 2013)
- 田島泰彦 = 新倉修編 『少年事件報道と法』(日本評論社, 1999)
- 田島泰彦ほか編 『現代メディアと法』(三省堂, 1998)[田島泰彦執筆]
- 田島泰彦ほか 『表現の自由とメディア』(日本評論社, 2012)[田島泰彦執筆]
- 東京大学判例研究会 「最高裁判所民事判例研究」 法協109卷11号[山口成樹執筆]
- 日本新聞協会 『実名報道—事実を伝達するために』(日本新聞協会編集委員会, 2016)
- 韓永学 『報道被害と反論権』(明石書店, 2005)
- 長谷川貞之ほか編 『メディアによる名誉毀損と損害賠償』(三協法規出版, 2011)
- 浜田純一 「メディアの自由·自律と第三者機関」 論求ジュリスト2018春号
- 『平成27年度重要判例解説』ジュリスト1505号(2016)[山田隆司執筆]
- 樋口陽一 『司法の積極性と消極性』(勁草書房, 1978)
- 広瀬健二 「少年法61条で禁じられる推知報道の判断基準」 法教277号(2003)
- 松井茂記 『少年事件の実名報道は許されないのか』(日本評論社, 2000)
- 松井茂記 『マス·メディア法[第4版]』(日本評論社, 2008)
- 松井茂紀 『表現の自由と名誉毀損』(2013)
- 三浦和義 『情報の銃弾』(日本評論社, 1989)

水野謙 「プライバシーの意義に関する序論的考察」 学習院大学法学会雑誌45卷2号(2010)
安永正昭 「インターネット上での名誉・プライバシー侵害からの法的保護の現状」 民商133卷
4=5号(2006)山田健太 『法とジャーナリズム[第3版]』(学陽書房, 2014)

온라인 자료

일본 방송윤리·프로그램 향상기구 홈페이지.

URL: https://www.bpo.gr.jp/?page_id=1074

국내법령

대한민국 헌법

민법

국내판결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35718 판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93. 9. 6. 선고 93카합79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8. 31. 선고 2002나14114 판결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

일본법령

일본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특정전기통신역무(役務)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開示)에 관한 법률

소년법

회사법

일본판결

最大判1956年(昭和31)7月4日民集10卷7号785頁
最判1956年(昭和31)7月20日民集10卷8号1059頁
最判1966年(昭和41)6月23日民集20卷5号1118頁
最判1969年(昭和44)6月25日刑集23卷7号975頁
最大判1969年(昭和44)12月24日刑集23卷12号1625頁
最判1970年(昭和45)12月18日民集24卷13号2151頁
最判1972年(昭和47)11月16日民集26卷9号1633頁
最判1981年(昭和56)4月14日民集35卷3号620頁
最大判1986年(昭和61)6月11日民集40卷4号872頁
最判1987年(昭和62)4月24日民集41卷3号490頁
最判1989年(平成1)12月21日民集43卷12号2252頁
最判1994年(平成6)2月8日民集48卷2号149頁
最判1997年(平成9)9月9日民集51卷8号3804頁
最判1999年(平成11)10月26日民集53卷7号1313頁
最判2002年(平成14)7月15日民集58卷5号1615頁
最判2002年(平成14)9月24日判時1802号60頁
最判2003年(平成15)3月14日民集57卷3号229頁
最判2003年(平成15)10月16日民集57卷9号1075頁
最決2006年(平成18)10月3日民集60卷8号2647頁
最判2008年(平成20)6月12日民集62卷6号1656頁
最判2010年(平成22)4月13日判時2082号59頁
最決2010年(平成22)4月8日判夕1323号118頁
最決2010年(平成22)3月15日刑集64卷2号1頁
最判2016年(平成28)1月21日裁判集民事252号1頁
最決2017年(平成29)1月31日民集71卷1号63頁
東京高判1978年(昭和53)9月28日判夕372号85頁
名古屋高判1990年(平成2)12月13日判時1381号51頁
大阪高判2000年(平成12)2月29日判時1710号121頁
名古屋高判2000年(平成12)6月29日判時1736号35頁
東京高決2004年(平成16)3月31日判時1865号12頁
福岡高裁那覇支判2008年(平成20)10月28日判時2035号48頁

東京高判2013年(平成25)11月28日判時2216号52頁
札幌高決2016年(平成28)10月21日2016WLJPCA10216001
東京地判1968年(昭和43)11月25日判時537号28頁
東京地判1974年(昭和49)7月15日判時777号60頁
東京地判1987年(昭和62)11月20日判時1258号22頁
東京地判1988年(昭和63)7月25日判時1293号105頁
東京地判1989年(平成1)6月23日判時1319号132頁
東京地判1990年(平成2)3月23日判時1373号73頁
東京高判1990年(平成2)7月24日判時1356号90頁
東京地判1993年(平成5)9月22日判夕843号234頁
大阪地判1999年(平成11)6月9日判時1679号54頁
名古屋地判1999年(平成11)6月30日判時1688号151頁
東京地判2001年(平成13)2月26日判夕1055号24頁
東京地判2001年(平成13)8月27日判時1778号90頁
大阪地判2002年(平成14)2月19日判夕1109号170頁
東京地判2003年(平成15)6月20日2003WLJPCA06200005
東京地決2004年(平成16)3月19日判時1865号18頁
東京地判2005年(平成17)4月25日2005WLJPCA04250005
東京地判2006年(平成18)7月24日2006WLJPCA07240004
東京地判2011年(平成23)6月30日2011WLJPCA06308009
東京地判2012年(平成24)12月14日判時2216号61頁
さいたま地決2015年(平成27)12月22日判時2282号78頁
さいたま地決2015年(平成27)6月25日判時2282号83頁
札幌地判2015年(平成27)12月7日2015WLJPCA12076001
札幌地決2016年(平成28)4月25日2016WLJPCA04256006
名古屋地判2016年(平成28)7月20日2016WLJPCA07206013

I. 첫머리에

미국은 전 세계에서 표현과 발언의 자유가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언론사는 국민이 알아야 하는 사항을 보도하는 기관으로서 정부나 의회가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수정헌법 1조 아래에서 여러 법적, 정책적 제약이나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아 왔다. 이는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미국 내 언론사의 발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정책이 부재한 이유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언론 보도로 인한 갈등이나 피해는 꾸준히 존재해왔다. 이를 중재하기 위해 1973년부터 11년간 언론사와 다른 집단, 공인이나 일반 개인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관이 존재하기도 했으며,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 역시 빈번하게 제기되어 왔다. 최근 가짜뉴스와 알고리즘을 이용한 기사 생산 등의 변화는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둘러싸고 또 다른 법적 쟁점 및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

미국 내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관련 정책 및 법에 대한 검토라는 큰 주제 하에 먼저 본 글은 과거 미국 내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임무를 수행했던 국가 뉴스 위원회(National News Council)를 소개할 예정이다. 해당 기구는 언론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 해결이나 언론의 책임과 자유 보장을 위해 창설되었고, 11년간 존속했다. 뉴스 위원회는 주 단위로도 존재했으나, 본 글에서는 국가 단위로 존재했던 국가 뉴스 위원회에 집중해 설명할 예정이다. 국가 뉴스 위원회는 해당 기구가 언론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언론사의 반발로 인해 사라졌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근거는 발언과 언론을 포함한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First Amendment)였다.

그 뒤 미국 내 언론에 대한 불만 제기는 주로 소송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 글에서는

*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저널리즘 스쿨 박사과정, kjs8918@gmail.com

그 중 수정헌법 1조와 가장 빈번하게 충돌하며 언론사와 개인 간 분쟁 요소가 되었던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 뒤 언론사에 제기된 명예훼손(Defamation)의 최근 소송 관련 판례를 소개할 것이다. 글 말미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최근 문제시된 가짜뉴스(fake news)와 언론사의 자동화 저널리즘(automated journalism)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검토하며 글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II. 언론분쟁 조정기관

1. 국가 뉴스 위원회

국가 뉴스 위원회는 미국에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조정하고 언론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보장하기 위해 1973년부터 1984년까지 운영되었던 독립적인 기구다. 1971년 미국 내에서는 언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대두되었고 언론 보도로 인한 분쟁이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되기 시작했다(McKay, 1977). 이를 기반으로 1972년 미디어의 보도나 뉴스 배포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대책 위원회(Task Force)가 등장했다. 대책 위원회는 국가 내 언론에 대한 불만을 조정하거나 언론의 보도를 감독할 기관 내지는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착안해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사적 위원회를 만들고자 했다(McKay, 1977).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73년 8월 1일 국가 뉴스 위원회가 처음 운영되었다. 미디어와 공중의 시각 모두를 위원회의 결정과 논평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 뉴스 위원회는 일반인과 언론사의 일원으로 구성되었다.

국가 뉴스 위원회의 목표는 언론의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보도로 언론과 공중 간의 심이나 불신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었다(McKay, 1977). 구체적으로 국가 뉴스 위원회는 뉴스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만을 받고, 점검하고, 발표하는 역할을 했다. 동시에 언론의 자율성과 관련된 논평 역시 내보냈다. 국가 뉴스 위원회는 출범 후 약 11년 동안 뉴스 보도에 대한 공중과 뉴스 미디어의 수백 건의 불만을 처리했고, 227건의 보도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Ugland, 2008).

하지만 국가 뉴스 위원회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언론사의 부정적인 시각과 법적 강제성의 부재로 인해 오랜 기간 존속하지는 못했다. 뉴욕 타임스를 포함해 국가 뉴

스 위원회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뉴스 위원회의 규제가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언론사나 기자들은 언론이 자율적으로 스스로를 규제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그들은 위원회의 논평이 아닌 독자가 원하는 방식 내지는 언론사 내 관행을 따라 보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언론사에 불만이 제기됐을 때 뉴스 위원회가 이를 중재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언론사와 기자들은 회의적이었다. 저널리즘의 역할을 언론사와 기자가 아닌 다른 단체 내지는 사람이 수행한다는 것 역시 반감을 자아냈다(Ugland, 2008). 즉, 대다수의 언론사나 기자들은 해당 위원회의 존재를 달가워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저널리즘의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하지만 국가 뉴스 위원회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뉴스 위원회가 언론이 공중에게 신뢰를 얻고 책임성을 갖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조정하기 위해 독자가 편집자에게 편지를 보내 기사 수정을 요청하는 방식이 영향력이 작은 데 비해 언론사에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고소인, 기자, 언론사 모두가 물질적, 감정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벌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를 중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구로 국가 뉴스 위원회를 지지했다(Jenkins, 1997).

2. 국가 뉴스 위원회의 구조와 역할

국가 뉴스 위원회에는 언론에 대한 불만을 주로 처리하는 불만 처리 위원회와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언론 자유 위원회가 존재했다. 두 세부 위원회는 사건이 접수되면 이를 검토해 전체 위원회에 상정할 사안을 결정했다. 불만 처리 위원회에서는 언론에 대한 불만 사례를 세부 원칙에 근거해 상정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했다. 먼저 위원회는 해당 기사에 들어있는 의견이 사실 정보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기사에 언급되어야 하는 중요한 정보가 빠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했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기사의 인용문에서 특정 사항이 언급되지 않아 문장의 의미가 왜곡되지 않았는지를 살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언론사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출처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McKay, 1977). 해당 사건이 전체 위원회에 상정되면 국가 뉴스 위원회는 사건을 확인 후 갈등을 조정하거나 의견을 발표했다.

국가 뉴스 위원회의 구조와 관련해 먼저 국가 뉴스 위원회가 어떠한 강제적인 권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국가 뉴스 위원회는 그들이 발표한 논평에 언론사나 기자, 불만을 제기한 당사자가 동의하게끔 강요하거나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도록 강제할 수 없었다. 이는 국가 뉴스 위원회의 갈등 조정 능력의 한계로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의 근거가 되었다. 또한, 국가 뉴스 위원회가 정부 산하 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기구로 존재했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미국 내에는 정부나 의회가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저해할 수 없다는 수정헌법 1조가 존재한다. 사람들은 국가 뉴스 위원회가 정부에 소속되어 있을 때 수정헌법의 정신이 침해될 수 있음을 염려했다.

국가 뉴스 위원회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위원회가 주요 언론사를 탄압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시각이 사실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어글랜드(Ugland, 2008)는 국가 뉴스 위원회가 제시했던 서면 의견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그는 국가 뉴스 위원회가 언론사, 특히 방송사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음을 밝혀냈다. 어글랜드(Ugland, 2008)에 따르면 CBS는 34건의 불만 사례 중 29개에서 국가 뉴스 위원회의 지지를 얻었으며, ABC는 17개의 불만 접수 사례 중 16개에서 위원회의 우호적인 의견을 받았다. 국가 뉴스 위원회에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뉴욕타임스 역시 접수된 21건의 불만 중 14건에서 우호적인 평을 받았다.

국가 뉴스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일반인과 미디어 구성원의 투표 결과를 비교할 경우 미디어 관련 소속 일원이 언론사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어글랜드(Ugland, 2008)는 두 집단이 결정을 내리는 원칙이나 메커니즘은 유사했다고 주장한다.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국가 뉴스 위원회의 서면 의견 대부분에 수정헌법 1조가 언급 내지는 인용되었다는 점이다(Ugland, 2008). 하지만 국가 뉴스 위원회가 구체적인 법 전문을 언급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는 위원회가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 뉴스 위원회는 그들의 서면 의견에서 윤리적인 권고인지 법적 권고인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법적 강제력의 부재와 언론사의 회의적인 시각으로 인해 국가 뉴스 위원회는 오랜 기간 존속하지는 못했다. 그 뒤 언론에 대한 불만 제기는 주로 언론사의 자율 규제나 소송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글에서는 그 중 언론사의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수정헌법 1조와 관련 법제 및 판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Ⅲ. 언론분쟁 관련 법제 검토

1. 수정헌법 1조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 내지는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들어졌다.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미국의 의회는 종교의 설립이나 종교 활동의 자유, 발언과 출판, 집회,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자유를 제약하는 어떠한 법도 만들 수 없다(Olson, 2017). 여기서 출판의 범주에는 언론사의 보도도 포함된다. 즉, 언론사의 자유로운 보도를 보호함으로써 해당 법안은 정부의 권력 남용을 제약하거나 진실 추구를 장려하고자 한다(Trager, Ross, & Reynolds, 2016). 미국 내 수정헌법 1조의 존재는 언론사의 보도에 가해질 수 있는 제약을 막는 가장 큰 보호막이 되어왔다.

수정헌법 1조에서 보호하는 발언(speech)과 출판(press)의 자유는 각각 입으로 전해지는 말(the spoken word)과 쓰인 글(the written word)을 뜻한다. 초기에 이 둘은 분명히 구분됐으나 최근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사진과 동영상을 포함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등장하며 둘 간의 경계가 흐려졌다(Olson, 2017). 또한, 시민기자의 출현은 언론과 비언론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만들었고, 미디어가 아닌 기업이 소유하는 언론, 영화, 텔레비전 쇼가 등장하며 법원은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는 출판의 자유의 대상을 정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Trager et al., 2016). 일반적으로 법원은 언론 보도부터 페이스북 게시물에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 등의 모든 종류의 표현(expression)을 수정헌법 1조의 보호 하에 두고 있다(Olson, 2017).

하지만 수정헌법 1조가 항상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말하는 대상, 발언의 종류, 사용하는 매체 등에 따라서 제한의 여지가 존재한다(Olson, 2017). 수정헌법 1조에서 보호하는 자유는 일반인이 아닌 공인(public figure)이나 제한적 공인(limited-purpose public figure)에 한해 제한된다. 예를 들면, 언론사가 공인이나 제한적 공인이 아닌 일반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진술을 포함한 보도를 내보냈을 경우 고소인이 언론사의 과

실을 입증한다면 언론사에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예외적이지만 언론사의 보도가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칠 것이 분명하거나 뉴스 미디어가 허용되지 않은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언론사의 보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정부 관료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는 발언이나 출판의 자유를 제약하는 많은 하위법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전제재에 대법원은 대부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Trager et al., 2016).

2. 명예훼손

수정헌법 1조에서 보호하는 언론사의 출판의 권리와 가장 많이 충돌하는 다른 법적 관념은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에 포함되는 두 가지 불법행위에는 글 또는 문서에 의한 중상인 라이블(libel)과 말로 인한 비방인 슬랜더(slander)가 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요건이 필요하다. 라이블의 예를 들면, 먼저 고소인은 본인에 대한 진술이 어떻게 고소인의 다른 사람과의 현재 또는 미래 관계에 피해를 주었고 공적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Youm, 2017). 즉,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 고소인은 실제로 자신이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고소인은 해당 진술을 제3자가 보았으며, 이로 인한 명예 실추가 발행인의 실수 때문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고소인은 해당 진술이 거짓에 기초해 있고,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악물 복용이나 성추행 등과 같은)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역시 밝혀야 한다. 법원은 맥락상 중요한 사실이 진술에서 빠짐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도 명예훼손의 사례로 포함하고 있다(Youm, 2017).

하지만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에서 공인 내지는 제한적 공인이 승소하기는 쉽지 않다. 언론의 출판의 자유를 보호하는 수정헌법 1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수정헌법 1조와 명예훼손이 충돌할 경우 법원은 고소인 당사자가 공인이나 제한적 공인인지와 해당 진술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인지를 먼저 고려한다. 고소인이 공인 내지는 제한적 공인인 경우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서는 언론사가 “현실적 악의

(actual malice)”를 가지고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보도가 책임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언론사가 의도적으로 거짓을 보도했거나 진실을 묵인했다는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지는 않는다(Trager et al., 2016).

1964년 미국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와 설리번(Sullivan) 간의 소송은 언론사가 현실적인 악의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이 아닐 경우 공인은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분명히 한 판결이다(*New York Times v. Sullivan*, 1964). 해당 판례는 언론사가 민주 사회에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기초해있다. 아래 <사례>는 해당 소송에 대해 트래거(Trager)와 동료 학자들의 책 (2016)과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New York Times v. Sullivan*, 1964) 판결을 참고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례> 뉴욕타임스와 설리번 간의 라이블(libel) 소송

1960년대 미국 남부에서는 흑인의 권리를 찾기 위한 시민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하지만 그 당시 시위 지역인 남부의 지역 언론에서는 이런 시위를 크게 다루지 않았다. 대신 뉴욕타임스와 같은 주요 언론사에서는 이를 종종 보도했다. 그러던 중에 한 시민운동 단체가 남부 지역 경찰이 평화적인 시위를 폭력적이고 불법적으로 진압했다는 내용을 뉴욕타임스 전면 광고에 실었다. 해당 광고에 사실이 아닌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당시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 경찰서 설리번 서장은 이에 뉴욕타임스에 언론사의 재정 상태를 위협할 수 있는 5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비록 광고에는 설리번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설리번은 해당 광고에 등장하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진압한 사람이 본인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앨라배마 지방 법원과 주 대법원으로 이어진 소송에서 뉴욕타임스는 계속 패소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설리번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방대법원은 앨라배마 주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으며 그 근거로 정부 관료에 대해 비난했다는 이유로 언론사를 처벌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에 위반된다고 언급했다. 이 사례는 수정헌법 1조가 명예훼손 소송에 적용된 첫 번째 사례였다. 법원은 언론사가 실수로 보도에 오류를 포함했다는 이

유로 처벌당한다면 다른 언론사들이 소송이 두려워 보도를 자제하게 되고, 정부를 비판할 언론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해당 사건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고소인은 뉴욕타임스가 전면 광고를 실을 당시 해당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진실을 묵인했다는 점, 즉 현실적 악의를 입증해야만 했다. 공인 내지는 공적 관료는 뉴스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외의 다른 방법을 통해 해당 정보를 정정할 수 있다는 점 역시 판단에 고려되었다.

그 뒤 공인이나 논쟁 사안과 관련 있는 제한적 공인은 피고인인 언론사가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입증해야 했다. 단순히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재보도하거나, 출처의 신뢰도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해당 정보가 사실이 아닌 혐의라는 점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 저널리즘 하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인용문의 의도적 수정 등은 언론사의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현실적 악의를 증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Lewis, Sanders, & Carmody, 2018). 현실적 악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고소인은 보도의 매 단계 언론사가 어떻게 진실을 보도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고소인이 공인이나 제한적 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고소인은 현실적 악의를 입증할 필요가 없고 언론사의 부주의한 과실(negligence)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언론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을 경우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 언론사는 해당 보도가 철저한 사실에 기반을 두었으며, 인터뷰가 해당 사건과 관련되어 있거나 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졌고, 편견이 있는 정보에 기초하지 않았고, 보도가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관점이 보도에 고려되고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사실이 아닌 정보에 대해서는 수정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Trager et al., 2016). 또한, 고소인에 대한 어떠한 악의적인 감정이 없다는 사실 역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정헌법 1조는 지난 50년 동안 언론사를 명예훼손 소송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왔으며 이는 미국을 다른 국가와 비교해봤을 때 표현과 발언의 자유가 굉장히 높은 국가로 만들었다(Lewis et al., 2018). 이에 더해 언론사는 법으로 보도에 관한 몇 가지 특권을 보장받고 있다(Trager et al., 2016). 먼저, 공정한 보도의 특권(Fair Report

Privilege)은 기자가 공식적인 기록에 기초해 보도한 경우 명예훼손 소송의 위협에서 보호해주는 제도다. 이 특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언론사의 보도는 공적 기록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기록의 출처 역시 보도에 언급되어야 한다. 중립적 보도의 특권(Privilege of Neutral Reportage)은 신뢰할 만한 단체가 공적 인물에 대한 비난이나 고발을 한 경우, 언론 매체가 이를 인용해 보도하였다면 후에 그 고발이 거짓으로 판명 나더라도 명예훼손 책임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이는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보장하기 위함이다(Trager et al., 2016). 보도는 공적 인물에 대한 고발을 담고 있어야 하며, 고발 내용 자체도 뉴스 가치가 있어야 한다. 보도는 반대 입장에 대한 내용 역시 포함하는 중립적인 논조로 이루어져야 하며 즉, 공정하고 정확해야 한다.

이밖에 미국의 법은 언론사가 AP와 같은 통신사의 보도를 인용할 경우 인용된 진술에 대해 발생하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피하는 통신사 기사 인용 면책주장(Wire Service Defense) 역시 명시하고 있다. 이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용한 문구 내지는 진술이 신뢰할 수 있는 통신사의 것이어야 하며 인용 당시 언론사는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모르고 있어야 하고 통신사의 보도를 자의적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Trager et al., 2016).

IV. 언론분쟁 관련 최근 판례 동향

위에서 검토한 관련 법제 사항을 기반으로 아래에서는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2017년 가을 발간한 실라 블루틴(Silha Bulletin, 2017)에 소개된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 소송 사건에 대해 여러 자료를 참고해 요약, 소개할 것이다.

1. 에릭 볼링(Eric Bolling)의 프리랜서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2017년 8월 4일 프리랜서 기자 야샤르 알리(Yashar Ali)는 폭스 뉴스 채널 호스트 에릭 볼링(Eric Bolling)이 동료에게 성적 불쾌감을 자아낼 수 있는 사진을 문자로 보냈다는 혐의를 허핑턴포스트에 보도했다. 알리는 볼링의 전·현직 동료를 포함한 14명

의 비공식적인 출처를 통해 기사를 작성했으며 획득한 정보 확인을 위해 볼링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같은 해 8월 9일, 볼링은 알리에게 명예훼손을 이유로 5천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환장에서 볼링은 알리가 의도적으로 성급하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자신의 명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포춘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알리는 소환장을 받은 사실을 트위터에 공유하며 자신의 기사와 출처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고, 볼링 역시 트위터에서 자신에게 오는 지지에 감사하다며 기사에서 그의 이름을 지워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해당 기사가 게재되었던 허핑턴포스트는 알리가 14개의 출처를 확인했다는 사실과 그가 신중하게 보도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알리를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였다(Bach, 2017).

실라 블루틴(Silha Bulletin, 2017)의 정리에 따르면 알리의 변호사는 볼링의 변호사와 폭스 뉴스의 법률팀에 알리의 기사가 의도적으로 “잘못되고 호도하는” 정보를 포함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알리가 14개의 출처를 통해 그의 정보를 철저하게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알리의 변호사는 볼링의 소송이 알리 개인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용도라며, 본인의 홍보 내지는 평판 관리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알리의 진실 추구를 위한 노력을 보복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9월 폭스 뉴스는 볼링이 진행해오던 쇼를 폐지했다. 2018년 여름 현재 해당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은 미디어 관련 종사자들 간에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디어 종사자 간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서는 결국 장래의 자신의 발언 내지는 출판의 자유를 제약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 역시 존재한다.

2. 미국 제5순회 항소 법원의 뉴욕타임스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재심

2017년 8월 15일 미국 제5순회 항소 법원(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은 뉴욕타임스에 월터 블록(Walter Block)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지방 법원이 내린 판결을 뒤집었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2014년 1월 뉴욕타임스는 자유주의자인 켄터키 주 상원의원 랜드 폴(Rand Paul)의 대선 입후보 가능성과 관련된 기사에서 로올라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 블록이 “노예 제도는 비자발성을 제외하면 나쁘지 않

다”고 말했다며 그가 공민권법(Civil Rights Act)에 반대하는 것처럼 발언을 인용했다 (Stempel, 2017). 보도는 블록의 발언을 두 번 인용했는데 첫 번째 인용에서는 그를 “한 경제학자”로 표현했고, 두 번째 인용에서는 그의 이름과 소속을 밝혔다. 블록은 뉴욕타임스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그의 발언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을 인종 차별주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처럼 묘사했다고 주장하며 사실이 아닌 정보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지방 법원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블록의 소송을 루이지애나의 반(反)전략적 봉쇄소송(Anti-SLAPP: Anti-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법률을 이용해 공격했다. 반(反)전략적 봉쇄소송 법률은 공적 이슈에 대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직자가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이 (법원이 판단하기에) 승소할 확률이 적은 경우 소송을 각하하거나 약식판결로 기각하는 방침을 뜻한다. 이는 언론이나 개인이 해당 소송 과정에서 법적 방어 비용 등을 이유로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또한, 언론사들이 소송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보도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는 것 역시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Silha Bulletin, 2017). 지방 법원은 블록이 해당 진술이 거짓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지 못했다는 뉴욕타임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블록은 이를 제5순회 항소 법원에 제기했다. 2017년 8월 15일 판결에서 항소 법원은 반(反)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한 뉴욕타임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하려면 블록은 해당 진술이 어떻게 그의 명예를 훼손했고 거짓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뉴욕타임스가 중요한 맥락을 생략하고 진술을 인용함으로써 문장의 의미가 왜곡되었고, 결과적으로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블록의 주장에도 동의했다. 또한, 뉴욕타임스가 첫 번째 인용 문구에서 블록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한 경제학자’로 표현했다고 해도, 독자는 그 경제학자가 다음 인용 문구에서 등장하는 블록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뉴욕타임스에게 현실적 악의가 있었다는 블록의 주장이 그르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관점이다.¹⁾

1)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cases.justia.com/federal/appellate-courts/ca5/15-30459/15-30459-2016-03-07.pdf?ts=1457397031>

해당 항소 판정 결과 때문에 뉴욕타임스는 문제된 보도가 노예제도에 대한 블록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였고, 만약 실수가 있었다면 현실적 악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방 법원에서 다시 입증해야 한다. 법률 관계자들은 해당 판결로 인해 반(反)전략적 봉쇄 소송 법률이 그동안 여러 법적 소송을 막아올 수 있었던 점 내지는 지금껏 지켜온 표현의 자유가 흔들리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Silha Bulletin, 2017).

3. 버지니아대학교 학장의 롤링스톤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합의 도달

언론사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본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대중문화 전문지 롤링스톤에 대한 버지니아대학교 학장 니콜 에라모(Nicole Eramo)의 명예훼손 소송을 언급할 수 있다. 롤링스톤은 2014년 11월 19일, “캠퍼스 내 성폭행(A Rape on Campus)”이라는 제목으로 버지니아대학교의 한 학생이 남학생 사교클럽 파이 카파 사이(Phi Kappa Psi)가 주최하는 파티에 참석했다가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기사는 에라모 학장을 포함한 대학교 직원을 비난했고 그 후 국내외의 많은 언론사가 이를 인용해 보도했다.

하지만 그 뒤 다른 언론사들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기사를 작성한 사브리나 어들리(Sabrina Erdely)의 보도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먼저 기자 어들리가 피해자와 학교 관계자들과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가해자들과는 접촉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Yu, 2014). 그 뒤 파이 카파 사이의 회장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바 없다며 기사의 정확성을 의심하는 논평을 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진술했던 성폭행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 뒤 롤링스톤의 편집장은 사과문을 내보내고 기사를 삭제했다. 또한, 콜롬비아 저널리즘 스쿨에 해당 기사의 오류 및 보도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5년 4월 5일 나온 보고서는 기자 어들리가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듣고 기사를 작성했고, 피해자의 진술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집장이 기사를 내보내기로 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기사의 작성, 편집, 편집장의 감독,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Coronel, Coll, & Kravitz, 2015).

2015년 5월과 6월, 버지니아대학교 학장 에라모와 파이 카파 사이의 전 회원 3명은 롤링스톤, 롤링스톤의 모회사인 웨너미디어, 기사를 작성한 기자 어들리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²⁾ 에라모는 기자 어들리가 작성한 롤링스톤의 보도가 본인의 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으며, 그 뒤 이어진 어들리의 인터뷰 기사에서도 그녀의 발언이 잘못 인용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Silha Bulletin, 2017). 그녀는 어들리가 해당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진실을 묵인했으므로 현실적 악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의견서(Memorandum Opinion)에서 기자 어들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며, 피해자인 학생을 발견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었음에도 그 사람과 접촉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가 진술에서 지목한 가해자와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을 보증해줄 수 있는 사람과도 접촉하지 않았다는 점, 즉,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정황적 증거만으로 기사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어들리가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았다. 또한, 피해자가 계속해서 진술을 바꾸는 와중에 이에 대한 조사를 더 진행하지 않은 것 역시 현실적 악의를 보여주는 근거라고 판단했다(*Eramo v. Rolling Stone et al.*, 2016).

2016년 11월 배심원은 에라모에게 3백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그 뒤 비밀리에 진행된 합의 과정을 통해 에라모는 소송을 취하했다. 파이 카파 사이의 회원 역시 비록 그들의 이름이 기사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들을 가해자로 추정하여 본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롤링스톤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Silha Bulletin, 2017). 그들은 2천 5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롤링스톤은 파이 카파 사이의 회원들에게는 165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 뒤 2016년 9월 롤링스톤은 지분의 49%를 싱가포르의 밴드랩에 매각했고, 웨너미디어의 다른 잡지 역시 2017년 3월 다른 미디어 그룹에 넘어갔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2) 워싱턴 포스트에서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washingtonpost.com/apps/g/page/local/eramo-vs-rolling-stone-complaint/1692/?noredirect=on>

해당 소송의 비용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 때문으로 분석되었다(Nicolaou, 2016).

4. 멜라니아 트럼프(Melania Trump)의 영국 언론 데일리 메일에 대한 명예 훼손 소송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Melania Trump)의 영국 언론 데일리 메일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은 국내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된 언론분쟁 사례다. 실라 블루틴(Silha Bulletin, 2017)의 정리에 따르면 2016년 8월 데일리 메일은 멜라니아 여사가 1990년대 전문 모델로 일하며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그해 9월 멜라니아 여사는 데일리 메일과 데일리 메일과 비슷한 내용의 주장을 개시한 메릴랜드 블로거(blogger) 타플리(Tarpley)를 상대로 메릴랜드 주 법원과 영국 런던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멜라니아 여사는 메릴랜드 법원이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담당하지 않자 뉴욕에서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³⁾

뉴욕타임스(2017)의 보도에 따르면 소송문에서 그녀는 백악관이나 미국 대통령 등 그녀의 지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고소인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촬영되는 사람 중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해당 기사가 그녀의 브랜드 사업에 수백만 달러의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멜라니아 여사는 소송문에서 데일리 메일이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 정보가 부족했고, 그 주장을 반박해줄 사람들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으며, 기사를 내보낼 때 데일리 메일이 해당 진술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1억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후 데일리 메일은 자사 신문과 웹사이트에 멜라니아 여사가 성매매했다는 의혹을 입증할 아무 증거가 없다며 멜라니아 여사가 입은 피해에 대해 사과하는 사과문을 내보냈다(Bowcott & Watt, 2017). 런던 법원은 데일리 메일이 멜라니아 여사에게 3백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이는 런던 법원에서 처리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금액 중 가장 높은 액수라고 한다

3) 소송문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documentcloud.org/documents/3455911-Melania-DailyMail.html>

(Bowcott & Watt, 2017). 하지만 영국에서의 승소가 미국에서도 멜라니아 여사가 승소할 것이라는 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본래 영국에서는 책임감 있는 보도를 위해 미디어에 대한 명예훼손에서 고소인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고, 미디어에 높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 해당 명예훼손 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서 멜라니아 여사는 데일리 메일이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밝혀내야 한다. 대다수 저널리즘 교수 및 학자들은 멜라니아 여사가 공인이라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해당 사건이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New York Times v. Sullivan*, 1964) 사건에서 성립된 현실적 악의 관련 판례를 바꿀 만큼 강력하지는 않다고 본다 (Silha Bulletin, 2017).

5. BPI의 ABC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2012년 9월 미국의 비프 프로덕츠(이하 BPI)는 ABC가 2012년 3월부터 4월까지 11차례 방송한 “핑크 슬라임(Pink Slime)” 관련 보도에 대해 ABC, ABC뉴스, 뉴스 진행자 다이앤 소여(Diane Sawyer) 등을 명예훼손으로 제소했다.⁴⁾

ABC뉴스는 방송에서 쇠고기 도살 후 남은 고기를 암모니아 가스로 살균해 제조한 식품 LFTB(Lean Finely Textured Beef)를 핑크 슬라임이라 칭하며 해당 식품이 믿을 수 없는 재료를 사용했고 소비하기에 안전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그 후 BPI는 운영하던 공장 4개 중 3개를 닫았으며, 수익 역시 80%나 감소했다고 한다(Mclaughlin & Huffstutter, 2017).

고소장에서 BPI는 LFTB는 USDA(U.S. Department of Agriculture)로부터 승인받은 안전한 식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BPI는 ABC의 보도가 허위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며 해당 보도가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BPI는 ABC 뉴스가 LFTB를 반복적으로 핑크 슬라임이라고 부르며 식품에 독성을 포함한 액체 물질인 슬라임이라는 이름을 붙여 식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ABC는 LFTB가 고기가 아닌 것처럼 설명했는데 이 역시 잘못된 설명이라

4) 소송문은 다음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consumermediallc.files.wordpress.com/2017/06/finalcomplaint1.pdf>

고 덧붙였다. 세 번째로, ABC가 LFTB가 낮은 품질의 제품인 것처럼 소개하며 개의 사료로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식품으로 묘사하고, 다져진 소고기 사이에 알 수 없는 물질이 들어간 것처럼 표현한 것 역시 문제가 된다고 보았다. 네 번째로는 ABC가 LFTB가 영양가 없는 것처럼 묘사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마지막으로 ABC의 보도가 BPI가 USDA로부터 LFTB 제품에 대한 승인을 부적절하게 받은 것처럼 설명한 부분은 잘못 되었다고 주장했다. BPI는 이에 대해 19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BC는 기사를 정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Hauser, 2017). 또한, ABC가 직접적으로 LFTB를 안전하지 않다고 보도한 적이 없으며, 핑크 슬라임이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 역시 강조했다. ABC는 보도가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며, 수정헌법 1조의 보호 하에 있다고 주장했다(Mclaughlin & Huffstutter, 2017). CNN Money의 보도에 따르면 재판은 2017년 6월 5일에 시작되었고, ABC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전 합의에 도달했다. ABC는 회사의 사업적 이익으로 인해 합의하지만, 보도는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에 대해 알아야 하는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Kludt, 2017). BPI는 자사의 제품이 안전하고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다시 한 번 발표했다. 그 뒤 2017년 8월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는 ABC의 모회사인 월트 디즈니가 합의 금액으로 1억 7천 7백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Hauser, 2017).

대다수의 미디어 전문 변호사와 교수들은 ABC의 결정에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Silva Bulletin, 2017). ABC와 같이 소송을 진행할 능력이 되는 큰 모회사를 가지고 있는 미디어 기업 역시 합의금을 지급하며 재판을 종결하는 경우를 본 다른 개인이나 기업이 차후 미디어의 보도에 대해 더욱 쉽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지아 법과대학에서 수정헌법 1조를 가르치는 소냐 웨스트(Sonja West) 교수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사례는 다른 언론사가 소송을 피하고자 민감한 주제에 대해 보도를 자제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고 결과적으로 공중이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을 표했다(Mclaughlin, 2017).

6. 세라 페일린(Sarah Palin)의 뉴욕타임스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기각

2017년 6월 27일 전 알래스카 주지사이자 2008년 미국 공화당 부통령 후보 세라 페일린(Sarah Palin)은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2011년 아리조나에서 발생한 민주당 하원의원 가브리엘 기퍼즈(Gabrielle Giffords)가 부상을 입은 총기 사고를 본인이 선동한 것처럼 보이게 했으며 뉴욕타임스를 명예훼손으로 제소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타임스는 총기 사고가 발생하기 전 페일린의 정치 활동 단체가 민주당 위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를 공유했다고 보도하며 페일린이 총기 사고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지만, 실제 지도는 선거구를 나타낸 지도로 총기 사고와는 관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도 후 소셜미디어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이 이어지자 뉴욕타임스는 해당 보도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기사를 수정했으며 트위터에서도 총기 사고와 페일린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밝혔다(Hawkins, 2017).

그 뒤 페일린은 뉴욕타임스가 거짓된 보도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뉴욕 맨해튼 남부 지법에 명예훼손 소장을 제출했다. 페일린은 뉴욕 타임스가 페일린과 총기사고 간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가지고 있었음에도 거짓 정보를 포함한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판사의 요청으로 뉴욕타임스 편집장 제임스 베넷(James Bennet)은 페일린을 의도적으로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며, 보도에서 해당 지도가 총기사고의 직접적 원인인 것처럼 묘사할 의도가 없었고 다만 지도는 당시 환경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서술적 예로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Ember, 2017).

최종적으로 뉴욕 맨해튼의 연방 판사 라코프(Rakoff)는 페일린의 뉴욕타임스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뉴욕 법 하에서 라이블 성립을 위해서는 다섯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먼저,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진술이 고소인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제3자에게 노출되어야 하며, 피고인(언론사)이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해당 진술이 거짓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고소인에게 어떤 위해가 가해졌는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라코프 판사는 소송을 기각하며 그 이유로 페일린이 뉴욕타임스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묵인하거나 거짓을 보도했다는 현실적 악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

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베넷의 증언을 토대로 뉴욕타임스가 페일린을 비난할 의도로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뉴욕타임스가 바로 실수를 정정했다는 점과 뉴욕타임스가 기사의 주장과 반대되는 자료를 하이퍼링크(hyperlink)를 통해 제시하며 공정하게 보도했다는 점 역시 소송 기각의 이유가 되었다.⁵⁾ 페일린은 2017년 11월 21일 제2순회 항소 법원에 이를 항소했다.

7. 아야두라이(Ayyadurai)의 테크더트(TechDirt)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기각

2017년 1월 4일, 이메일을 만든 것으로 알려진 시바 아야두라이(Shiva Ayyadurai)는 미국 IT 동향 관련 웹블로그 테크더트가 이메일을 만들었다는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진술들이 포함된 14개의 기사를 2014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내보내며 본인의 개인적, 직업적 명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아야두라이는 테크더트가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했다고 언급하며, 본인의 사업 계약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과 정서적 고통을 호소했다. 아야두라이는 소송문에 본인이 이메일을 만들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며 이메일의 역사를 다룬 여러 학술 저널과 언론 보도에서 이미 이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아야두라이는 1천 5백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2017년 2월 17일 테크더트를 소유하고 있는 플로어64와 기업 최고 경영자 마이클 매스닉(Michael Masnick)은 캘리포니아의 반(反)전략적 봉쇄소송 법률을 들어 소송 각하 신청을 냈다(Silha Bulletin, 2017). 앞서 설명했듯이 반(反)전략적 봉쇄소송 법률은 해당 소송이 공적 사안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어 있을 때 고소인이 승소할 확률이 높지 않은 경우 소송을 각하하는 방침이다. 하지만 세일러(Saylor) 판사는 해당 소송이 매사추세츠 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캘리포니아의 반(反)전략적 봉쇄소송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캘리포니아는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반(反)전략적 봉쇄소송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데 반해 매사추세츠는 개인의 청원권과 관련 있을 때만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 본 사건은 개인의 청원권과 관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플

5) 전문은 다음 주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3983101-ruling-in-palin-times-suit.html>

로어64와 매스닉의 반(反)전략적 봉쇄소송 법률을 적용한 소송 기각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⁶⁾

하지만 세일러 판사는 수정헌법 1조를 들어 해당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수정헌법 1조는 언론사의 보도가 공인에 대한 공중의 알 권리와 관련된 명예훼손의 소송으로부터 언론사를 보호한다.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고소인은 피고인(언론사)이 해당 진술을 작성할 시 그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거나 진실을 묵인했다는 현실적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수정헌법 1조의 보호 대상에는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이 가능한) 명백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주관적인 의견이나 진술 역시 포함된다.

판사는 아야두라이가 책을 출판하고 인터뷰를 진행한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제한된 공인의 범주에 해당하며, 이메일을 발명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여러 차례 기사에 등장하고, 독자들 역시 많은 답글을 달았다는 점에서 해당 사안이 공중의 알 권리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메일을 발명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이메일을 고소인이 발명한 특정 기능을 보유한 프로그램으로 정의하는지 혹은 통신 시스템을 거친 편지 전송으로 넓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사실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해당 진술이 사실을 기반으로 한 비난이 아닌 이메일을 개발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 내지는 가정이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판사는 고소인의 테크더트의 현실적 악의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실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매스닉은 테크더트를 통해 소송 기각 결정은 수정헌법과 표현의 자유의 승리를 보여준다고 말하면서도 반(反)전략적 봉쇄소송 법률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는 언론사에 소송 비용 자체는 큰 부담이 된다면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모든 주에서 해당 법률이 더 강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Masnack, 2017).

6) 전문은 다음 주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ia600807.us.archive.org/7/items/gov.uscourts.mad.185980/gov.uscourts.mad.185980.48.0.pdf>

8. 요약 및 정리

미디어 그룹, 언론사,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은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위 사례들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미국 내 수정헌법 1조의 존재는 언론사가 명예훼손 소송에 휩싸이거나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내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반(反)전략적 봉쇄소송 법률은 언론사가 소송 비용에 대한 두려움으로 중요한 사안을 보도하지 못할 경우를 막기 위해 존재한다. 즉, 공인과 공중이 알아야 하는 사안에 대한 보도에 한해서 미국은 다른 국가에 비교해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Glasser, 2018; Lewis et al., 2018).

수정헌법 1조의 보호 하에 공인 내지 제한적 공인이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은 언론사가 보도가 나가기 전 이미 해당 진술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진실을 묵인했다는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함께 밝혀내야 한다. 대체로 기존의 판례들은 고소인이 이를 구체적인 사실 정보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롤링스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언론사가 상대방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접촉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의심되는 출처의 정보만으로 보도를 작성하는 등 보도 과정 자체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 법원은 언론사나 기자에게 현실적 악의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그 경우 고소인에게 지급되는 손해배상은 매우 큰 편이다. 롤링스톤의 지분 매각은 언론사가 명예훼손 소송에서 합의 조건으로 지급하는 막대한 손해배상금이나 소송 비용 자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짊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ABC의 사례처럼 언론사가 소송 비용을 델 능력이나 사업적 고려로 승소할 확률이 있음에도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테크더트를 포함한 많은 언론사는 언론사를 소송 자체로부터 막아주는 반(反)전략적 봉쇄소송 법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사의 잘못된 보도나 명예훼손에 수정헌법 1조가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 역시 존재한다. 하지만 수정헌법 1조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언론사가 명예훼손 소송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자유로운 언론과 공중의 알 권리가 보호될 수 있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Glasser, 2018). 또한, 고소인이 밝혀내기가 어렵긴 하지만 언론사가 보도 과정에서 진실을 묵인할 경우에는 여전히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수정헌법 1조가 무조건 언론사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소셜미디어상 가짜뉴스(fake news)나 알고리즘을 이용한 기사 생산은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수정헌법 1조를 둘러싸고 새로운 법적 쟁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아래에서는 가짜뉴스와 자동화 저널리즘(automated journalism)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논쟁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V. 가짜뉴스와 자동화 저널리즘 관련 법적 논쟁 검토

1. 가짜뉴스와 명예훼손

법적 관점에서 가짜뉴스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 뉴스 기사처럼 꾸며져 온라인에 발행된 (가짜) 기사로, 기사가 만들어질 당시 해당 정보가 진실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Royster, 2017).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바바라 프리드먼(Barbara Friedman) 교수는 가짜뉴스란 의도적, 전략적으로 거짓을 포함해 공중을 호도하기 위한 뉴스 기사의 형태로 만들어진 정보라고 정의했다(Seidenberg, 2017).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이러한 가짜뉴스가 공중들에게 쉽고, 빠르게 전파되게끔 했다.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워싱턴DC에 있는 한 피자 가게에서 총기사고가 발생했다. 총격범은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이 아동 성 착취 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근거지가 해당 피자 가게라는 가짜뉴스를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Lopez, 2016). 하지만 피자 가게 주인이나 클린턴을 비롯한 관련된 자중에 가짜뉴스를 유포한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제소한 사람은 없었다(Seidenberg, 2017). 이는 가짜뉴스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 가짜뉴스는 익명으로 배포되기 때문에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을 밝혀내기 쉽지 않다. 피고인이 국가 바깥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가짜뉴스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이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할 비용과 소송 결과로 인해 지급하게 될 손해배상금을 가지고 있지 못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Seidenberg, 2017).

또한, 발언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와 통신품위법 230조항(Communication

Decency Act, 47 U.S.C. § 230)을 비롯해 현존하는 법적 체계가 가짜뉴스의 생산을 줄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는 점 역시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어렵게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수정헌법 1조는 공인이나 제한적 공인이 명예훼손에서 승소하기 위해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정보를 만든 피고인이 현실적 악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게끔 하고 있다. 고소인이 공인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에는 현실적 악의를 입증할 필요가 없지만 때로는 일반인도 논쟁 사안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 제한적 공인(limited-purpose public figure)으로 간주하여 현실적 악의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또한, 가짜뉴스에 주로 포함된 의견, 과장, 풍자, 추정 등이 모두 수정헌법 1조의 보호 하에 있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소송을 어렵게 한다. 가짜뉴스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가짜뉴스가 등장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가짜뉴스를 배포하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아래 <사례>는 미국 기업 초바니와 가짜뉴스 및 음모론을 유포하는 사이트 인포워스(infowars) 운영자 간 명예훼손 소송 사건을 보여준다.

<사례> 초바니의 인포워스(infowars) 및 알렉스 존스(Alex Jones)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미국 기업 초바니는 2017년 4월 24일 알렉스 존스(Alex Jones)와 그가 운영하는 음모이론을 유포하는 것으로 유명한 온라인 사이트 인포워스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존스는 본인 이름으로 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초바니 창립자 울루카야(Ulukaya)가 2014년에 5살 소녀를 성폭행한 바 있는 이민자 소년들과 연관되어 있다며, 해당 기업이 범죄 가능성이 높은 난민을 채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배포했다. 이 채널을 구독하는 사용자 수는 2백만 명이다. 이 영상은 인포워스의 트위터 계정에서도 공유되었으며 존스는 이를 재공유했다.

초바니는 인포워스가 초바니의 명예를 훼손한 게시물을 추정이 아닌 사실처럼 보도하여 기업의 명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게 했으며, 사용자들에게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장려해 결과적으로 기업의 사업적 이익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존스와 그의 사이트가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할 당시 이미 해당 진술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며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 뒤 존스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재공유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과하는 메시지

를 전달했다(Montero, 2017).

위의 사례는 (웹사이트가 정보 제작에 참여한 경우) 웹사이트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모든 플랫폼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New York Times v. Sullivan*, 1964)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언론사는 신문에 실린 모든 정보에 대해 (언론사나 직원이 그 정보를 직접 생산하지 않았더라도) 정보 제공자로서 법적 책임을 지고 있다. 하지만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경우는 다르다. 통신품위법 230조항(Communication Decency Act, 47 U.S.C. §230, 이하 § 230)은 상호 컴퓨터 서비스(interactive computer service)가 정보 생산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제3자의 정보를 배포하기만 한 경우 웹사이트는 정보 배포자(distributor)로서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다(Royster, 2017). 예를 들면 익명의 제3자가 웹사이트를 통해 배포한 광고에 거짓이 포함되어 있어 당사자에게 삭제 요청을 받았음에도 웹사이트가 해당 광고를 지우지 않은 경우에도 웹사이트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는 자유롭게 정치적, 문화적 담론이 오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함이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때로 거짓이나 불법적인 발언이나 게시물을 보호하는 문제 역시 가지고 있다(Royster, 2017).

로이스터(Royster, 2017)는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에 가짜뉴스 배포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며 세 가지 방법을 논의한다. 첫 번째 방법은 법정이 § 230의 면책특권을 보다 제한적으로 웹사이트에 적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물론 웹사이트가 정보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 한 웹사이트는 여전히 § 230의 보호 하에 있지만, 법정이 정보 생산자에 대해 보다 폭넓게 정의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짜뉴스의 생산 및 배포가 여전히 헌법에서 보호받는 발언 및 출판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법적 논쟁이 생길 여지가 존재한다.

두 번째 방법은 웹사이트에 발행인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적용하는 것이다. § 230이 만들어지기 전 모든 플랫폼 제공자는 해당 플랫폼에서 발행되는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하지만 로이스터(Royster, 2017)는 해당 변화가 웹사이트에 법적 소송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해 사람들이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모든 게시물과 정보를 검토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세 번째는 웹사이트가 해당 정보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알아야만 했던 경우에 한해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웹사이트가 플랫폼에 올라온 모든 정보를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로이스터(Royster, 2017)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의 통지-삭제(notice and takedown) 방침처럼 사용자의 신고 및 요청에 따라 부적절한 게시물을 삭제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웹사이트는 의심스럽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출처의 정보에 대한 알람을 받거나 감시하는 구조를 만들고, 해당 정보를 평가한 뒤 합당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정보의 최종 삭제 여부를 웹사이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Royster, 2017). 다른 방법으로는 공인 및 제한적 공인의 명예훼손에 적용되는 현실적 악의 원칙과 비슷하게 플랫폼 제공자나 웹사이트가 거짓을 포함한 정보가 플랫폼에 존재함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이를 남겨둔 경우에 법적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다.

2. 자동화 저널리즘과 명예훼손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언론사 내에서는 컴퓨터 기술과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을 활용한 컴퓨테이셔널 저널리즘(computational journalism)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저널리즘이 등장했다(Coddington, 2015). 기사에 들어갈 정보 처리와 분석, 기사 작성과 배포를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으로 처리하는 자동화 저널리즘(automated journalism) 역시 이에 해당한다. 자동화 저널리즘에서 사람의 역할은 데이터 분석 내지는 기사 작성을 위한 초기 프로그래밍 단계를 제외하고는 다소 제한적이다(Carlson, 2015). 이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나 AP와 같은 언론사 및 통신사는 알고리즘을 이용해 뉴스를 작성하기 시작했다(LeCompte, 2015). 이러한 변화는 로봇이나 알고리즘을 통해 작성된 기사와 관련해 새로운 법적 쟁점을 만들어냈다. 최근 루이스(Lewis)와 동료들은 알고리즘을 통해 작성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누구에게 법적책임이 있는지를 분석한 논문을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에 발간했다.

그동안 학자들은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진 다양한 종류의 커뮤니케이션 및 산출물이 수정헌법 1조의 보호 대상이 되는지를 논의해왔다(Lewis et al., 2018). 우(Wu, 2013)

는 사람들 간 대화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인 “커뮤니케이션 도구(communication tool)”와 블로그 포스트, 트윗, 비디오 게임, 신문 기사 등의 발언자의 생각이 담겨 있는 산출물인 “말(speech product)”을 구분한 뒤, 후자는 수정헌법 1조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밤바우어(Bambauer, 2014)는 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는 대상이 정보의 한 종류인 데이터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컴퓨터 코드의 경우 해당 데이터가 사람들이 정보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수정헌법 1조가 이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두 관점으로 미루어볼 때 알고리즘으로 작성된 기사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도구보다는 생각이 담겨 있는 “말”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수정헌법 1조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몇 가지 법적 쟁점이 존재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헌법에 따라 공인 내지는 제한적 공인이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제소하기 위해서는 언론사가 명예를 훼손한 진술의 책임을 지고 있고, 언론사가 해당 진술이 거짓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거나 진실을 묵인하는 현실적 악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루이스(Lewis, 2018)와 그의 동료들은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기사의 경우 고소인이 알고리즘이 해당 진술이 거짓임을 사전에 알았거나 진실을 묵인했는지를 밝혀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알고리즘은 단순히 짜인 프로그램대로 기사를 작성하기 때문이다.

또한, 알고리즘 자체가 기사 작성 전 정보를 확인하거나 인용문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경우 이를 설계한 개발자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역시 명확하지 않다. 개발자가 알고리즘이 거짓 진술을 포함한 기사를 작성할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알았는지를 증명하기도 쉽지 않다(Lewis et al., 2018). 루이스(Lewis, 2018)와 동료들은 언론사에 사전에 알고리즘으로 작성된 기사를 검토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언론사가 알고리즘이 작성한 기사의 사전 검토 과정에서 실수했다는 사실이 언론사의 현실적 악의를 보여주지는 않는다고 덧붙인다.

공인이나 제한적 공인이 아닌 경우 고소인은 보도에서 언론사의 부주의한 과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언론사에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루이스(Lewis, 2018)와 그의 동료들은 이 원칙이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일반인에 대한 기사에 적용될 경우 언론사들이 알고리즘이 작성한 기사에 데이터 처리나 사실 확인 과정에서

합당한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에 쉽게 휩싸일 수 있다고 언급한다.

또 다른 법적 쟁점은 § 230에 따른 면책 특권이 언론사가 알고리즘으로 작성한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피하고자 사용될 수 있는가이다. 구글처럼 제3자가 만든 정보를 알고리즘을 통해 배포하거나 사람들 간 대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소셜미디어의 경우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루이스(Lewis, 2018)와 그의 동료들은 언론사는 정보 배포자(distributor)가 아닌 제공자(provider)로서 이러한 면책 특권을 받기 어렵다고 덧붙인다. 비록 알고리즘이 기사를 작성하더라도 법원은 언론사가 그 과정에서 기존의 편집 관행과 저널리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사는 § 230에 의존하기보다 수정헌법 1조를 통해 알고리즘이 생산한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위험으로부터 본인을 방어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저자들은 덧붙인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변화하는 저널리즘의 모습에 맞춰 수정헌법 1조의 보호 범위와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Lewis et al., 2018).

VI. 끝머리에

본 글은 미국 내 언론분쟁이 어떻게 조정되고 해결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기관과 법제 및 판례를 검토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정부나 의회가 개인의 발언과 출판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세계에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Lewis et al., 2018). 수정헌법 1조의 존재로 인해 미국 내에는 언론 보도로 인한 갈등 조정 및 피해를 구제하는 정부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 뉴스 위원회라는 독립적인 기구가 1973년부터 11년간 존속했으나 법적 강제력의 부재로 효과적으로 언론분쟁을 해결하지는 못했다.

미국 내에서 언론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대부분의 시도는 법적 소송으로 이루어진다. 본 글은 수정헌법 1조와 가장 빈번하게 충돌하는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관련 사건 및 판례를 소개했다. 미국 내 수정헌법 1조는 공인 또는 제한적 공인에 대한 보도로 언론사가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막아준다. 특히 공인 또는 제한적 공인인

고소인이 언론사가 사전에 해당 진술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거나 진실을 묵인했는지, 즉 언론사의 현실적 악의를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입증해야 한다는 사실은 고소인이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에서 승소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여전히 언론 보도로 입은 피해나 갈등을 모두 법적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은 고소인과 언론사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양상이 나타나면서 가짜뉴스나 알고리즘을 이용한 언론사의 기사 작성 등은 수정헌법 1조의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새로운 법적 쟁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나 판례는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다(Lewis et al., 2018). 법적 소송이 많은 시간과 비용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빠르게 변화하는 커뮤니케이션과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한 언론 보도를 둘러싼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법적 소송 외에도 이를 보완할 절차나 제도가 필요해 보인다.

- Bach, N. (2017, 8, 10). Fox News host Eric Bolling hits HuffPost journalist with \$50 million lawsuit. <Fortune>. Retrieved from <http://fortune.com/2017/08/10/fox-host-eric-bolling-sues-huffpost-jouranlist-for-50-million>
- Bambauer, J. (2014). Is data speech?. *Stanford Law Review*, 66, 57-120.
- Bowcott, O., & Watt, H. (2017, 4, 12). Melania Trump accepts Daily Mail damages and apology in libel case. <The Guardian>. Retrieved from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17/apr/12/melania-trump-accepts-damages-and-apology-from-daily-mail>
- Carlson, M. (2015). The robotic reporter: Automated journalism and the redefinition of labor, compositional forms, and journalistic authority. *Digital Journalism*, 3, 416-431.
- Coddington, M. (2015). Clarifying journalism's quantitative turn: A typology for evaluating data journalism, computational journalism, and computer-assisted reporting. *Digital Journalism*, 3, 331-348.
- Communications Decency Act, 47 U.S.C. § 230 (2016).
- Coronel, S., Coll, S., & Kravitz, D. (2015, 4, 5). Rolling Stone and UVA: The Columbi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journalism report. <Rolling Stone>. Retrieved from <https://www.rollingstone.com/culture/culture-news/rolling-stone-and-uva-the-columbia-university-graduate-school-of-journalism-report-44930>
- Ember, S. (2017, 8, 16). A Times Editor Testifies in Defamation Suit Filed by Sarah Palin.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https://www.nytimes.com/2017/08/16/business/media/a-times-editor-testifies-in-defamation-suit-filed-by-sarah-palin.html>
- Eramo v. Rolling Stone et al*, 209 F. Supp. 3d 862, 871 (W.D. Va. 2016).
- Glasser, C. J., Jr. (2018, 6, 28). Is the first amendment an excuse for sloppy, awful journalism?. <The Daily Caller>. Retrieved from <http://dailycaller.com/2018/06/28/first-amendment-excuse-for-sloppy-journalism>

- Hauser, C. (2017, 8, 10). ABC's 'Pink Slime' report tied to \$177 Million in settlement costs.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https://www.nytimes.com/2017/08/10/business/pink-slime-disney-abc.html>
- Hawkins, D. (2017, 6, 28). Sarah Palin sues New York Times for defamation over editorial on mass shooting. <The Washington Post>. Retrieved from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morning-mix/wp/2017/06/28/sarah-palin-sues-new-york-times-for-defamation-over-editorial-on-mass-shooting/?utm_term=.e4b02cfccabb
- Jenkins, E. (1997). News councils: The case for and against. *Columbia Journalism Review*, 35, 38-39.
- Kludt, T. (2017, 6, 28). ABC settles suit over what it had called 'pink slime'. <CNN Money>. Retrieved from <http://money.cnn.com/2017/06/28/media/abc-bpi-settlement/index.html>
- LeCompte, C. (2015, 9, 1). Automation in the Newsroom. <Nieman Reports>. Retrieved from <http://niemanreports.org/articles/automation-in-the-newsroom>
- Lewis, S. C., Sanders, A. K., & Carmody, C. (2018). Libel by algorithm? Automated journalism and the threat of legal liability.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Advanced online publication. doi: 10.1177/1077699018755983
- Lopez, G. (2016, 12, 8). Pizzagate, the fake news conspiracy theory that led a gunman to DC's Comet Ping Pong, explained. <VOX>. Retrieved from <https://www.vox.com/policy-and-politics/2016/12/5/13842258/pizzagate-comet-ping-pong-fake-news>
- Masnick, M. (2017, 9, 6). Case dismissed: Judge throws out Shiva Ayyadurai's defamation lawsuit against Techdirt. <Techdirt>. Retrieved from <https://www.techdirt.com/articles/20170906/13431338159/case-dismissed-judge-throws-out-shiva-ayyadurais-defamation-lawsuit-against-techdirt.shtml>
- McKay, R. B. (1977). National news council as national ombudsman. *Saint Louis University Law Journal*, 21, 102-112.
- Mclaughlin, T. (2017, 6, 28). ABC TV settles with beef product maker in 'pink slime' defamation case. <Reuters>. Retrieved from <https://www.reuters.com/article/us-abc-pinkslime-idUSKBN19J1W9>

- Mclaughlin, T., & Huffstutter, P. J. (2017, 6, 5). Meat packer blames ABC's 'pink slime' for nearly killing company. <Reuters>. Retrieved from <https://www.reuters.com/article/us-abc-pinkslime-idUSKBN18W0KJ>
- Montero, D. (2017, 5, 17). Alex Jones settles Chobani lawsuit and retracts comments about refugees in Twin Falls, Idaho. <Los Angeles Times>. Retrieved from <http://www.latimes.com/nation/la-na-chobani-alex-jones-20170517-story.html>
- New York Times (2017, 4, 12). Melania Trump and Daily Mail settle her libel suits. Retrieved from <https://www.nytimes.com/2017/04/12/business/media/melania-trump-daily-mail-libel.html>
- New York Times v. Sullivan*, 376 U.S. 254 (1964).
- Nicolaou, A. (2016, 9, 25). BandLab buys 49% stake in Rolling Stone. <Financial Times>. Retrieved from <https://www.ft.com/content/a83158e8-8360-11e6-8897-2359a58ac7a5>
- Olson, K. K. (2017). The First Amendment in theory and practice. In W. Wat Hopkins (Ed.), *Communication and the law*, 23-36. Northport, AL: Vision Press.
- Royster, L. K. (2017). Fake news: Potentials solutions to the online epidemic. *North Carolina Law Review*, 96, 270-296.
- Seidenberg, S. (2017). Lies and libel: Fake news lacks straightforward cure. <ABA Journal>. Retrieved from http://www.abajournal.com/magazine/article/fake_news_libel_law
- Silha Bulletin (2017). University of Minnesota. Retrieved from <http://hdl.handle.net/11299/193038>
- Stempel, J. (2017, 8, 16). NY Times must face defamation lawsuit over professor's slavery comments. <Reuters>. Retrieved from <https://www.reuters.com/article/us-new-york-times-lawsuit/ny-times-must-face-defamation-lawsuit-over-professors-slavery-comments-idUSKCN1AV2FM>
- Trager, R., Ross, S. D., & Reynolds, A. (2016). *The law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Washington, DC: CQ Press
- Ugland, E. (2008). The legitimacy and moral authority of the national news council (USA). *Journalism*, 9, 285-308.

- Wu, T. (2013). Machine speech.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61, 1495-1534.
- Youm, K. H. (2017). Defamation. In W. Wat Hopkins (Ed.), *Communication and the law*, 85-120. Northport, AL: Vision Press.
- Yu, R. (2015, 4, 5). Columbia issues scathing report on 'Rolling Stone' rape story. <USA TODAY>. Retrieved from <https://www.usatoday.com/story/money/2015/04/05/columbia-report-on-rolling-stone-coverage/25338141>

I. 언론자유규제기구 독일 언론평의회

독일에서 언론피해 구제는 대표적인 언론자유규제기구인 ‘독일 언론평의회(Deutscher Presserat)’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언론계 내부의 자발적인 의지로 설립된 조직이었다. 설립 초기 언론평의회는 최우선 목적은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을 막고 언론자유를 수호하는 것이었고, 언론의 잘못을 바로잡고 언론 보도로 인한 불만을 처리하는 기능은 부차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1973년 ‘언론윤리강령(Pressekodex)’을 제정하고 불만처리위원회를 만들면서 언론피해 구제를 위한 기능을 체계화했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언론윤리강령을 수차례 개정해왔다. 하지만 자율규제기구로서 독일 언론평의회는 결정은 법적구속력이 없어 그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언론 보도의 영향력과 파급력, 지속력이 갈수록 커지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실효성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자율 규제에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 독일 언론평의회 설립과 발전

독일 언론평의회는 언론자유를 천명한 독일 <기본법(Grundgesetz)>을 근간으로 1956년 11월 20일 당시 서독의 수도였던 본(Bonn)에서 설립됐다. 콘라드 아데나워 총리가 이끄는 보수 정부는 소위 연방언론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의 언론규제기구를 설립하려고 했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출판인 5명과 기자 5명이 모여 영국의 ‘언론평의회(The Press Council)’를 본뜬 독일 언론평의회를 설립하게 된다. 초창기 언론평의회는 목적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언론 자유를 수호하고 둘째, 언론 방종을 스스로 막으면서 언론 윤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 독일 라이프치히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학 석사, yujina.lee@gmail.com

독일 언론평의회는 소위 '렉스 소라야(Lex Soraya)' 사건을 통해서 대중에게 처음 이름을 알리게 된다. 독일 주간지 《슈테언(stern)》이 1958년 4월 19일 보도한 페르시아의 왕비 소라야에 대한 기사가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자 독일 정부는 외국 원수의 사생활 보도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형법개정안을 통과시킨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이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거부하는 동시에 《슈테언》의 해당 기사에 대해 '견책(Missbilligung)' 처분을 내린다.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입법을 거부하면서 언론계 내부의 자정 기능을 본보기로 보여준 것이다. 결국 이 법안은 폐기되었지만, 정작 '견책' 처분을 받은 《슈테언》은 독일 언론평의회 결정에 반발했다. 《슈테언》 편집장인 헨리 난넨(Henri Nannen)은 독일 언론평의회 조직과 '견책' 결정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이라며 함부르크 법원에 제소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함부르크 법원은 1959년 12월 17일 언론평의회 활동은 언론 자유의 기본권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오히려 언론평의회 존재 의의를 확인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1960년대 주언론법이 제정될 당시 '주언론법을 위한 기본원칙(Leitsätze für ein Landespressegesetz)'을 제출함으로써 각 연방주 언론법의 형식과 내용에도 영향을 준다. 현재 독일 각 주의 언론법은 그 내용과 형식이 거의 동일하며, 이는 언론평의회가 선구적으로 제안한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독일 언론평의회는 독일의 대표적인 언론자율규제기구로서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초창기 독일신문발행인연방협회(Bundesverband Deutscher Zeitungsverleger, BDZV), 독일기자협회(Deutscher Journalisten-Verband, DJV), 독일잡지발행인협회(Verband Deutscher Zeitschriftenverleger, VDZ) 등 세 단체로 이루어졌다가 1960년 독일 기자노조(Deutsche Journalistinnen- und Journalisten-Union(dju) in ver.di)가 합류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다. 1972년에는 언론 보도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불만처리위원회(Beschwerdeausschuss)를 설치하고 불만처리규정을 제정한다. 이어 1973년 12월에는 언론윤리강령을 제정해, 불만처리 심의의 기준이자 근거로 삼는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불만 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독일 연방의회는 1976년 8월 25일 <독일 언론평의회에 설치된 불만처리위원회 독립성 보호를 위한 법안>¹⁾을 통과시킨다. 독일 연방정부는 이 법에 따라 언론평의회에 조건 없이 매

1) Gesetz zur Gewährleistung der Unabhängigkeit des vom Deutschen Presserat eingesetzten Beschwerdeausschusses (1976. 8. 18).

년 22만 3천 유로²⁾를 지급하고 있다. 다만 정부 지원금을 통한 독립성 훼손을 막기 위해서 이 지원금은 언론평의회 전체 운영 예산의 49%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머지 51%는 언론평의회 소속 각 회원사들의 분담금으로 충당한다. 이로써 언론평의회는 법제도적으로 재정을 확보해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갈 기반을 다지게 된다.

1980년대 초 독일 언론평의회는 언론 발행인과 기자 사이에 ‘공개경고(öffentliche Rüge)’를 둘러싼 갈등으로 한차례 위기를 맞이한다. 불만처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개 경고’ 결정을 받은 언론사는 이 사실을 해당 매체에 게재해야 하는데 당시 많은 언론사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1981년 언론평의회 소속 기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의석을 내려놓았고, 언론평의회는 결국 1981년 12월 공식적인 활동을 중단하기에 이른다. 이 갈등은 3년이 넘도록 이어졌고 1985년 12월이 되어서야 언론평의회는 새로운 운영원칙을 세워 다시 출발할 수 있었다. 변화된 운영원칙의 핵심은 독일 언론평의회 소속 언론사가 공개 경고의 게재를 약속하는 ‘자기의무서약서(Selbstverpflichtungserklärung)’를 제출하는 것이었다. 2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난 1988년, 언론평의회 소속 대부분의 언론사가 자기의무서약서를 제출하면서 독일 언론평의회는 다시 정상궤도에 오르게 된다. 이후 독일 언론평의회는 1985년에서 1989년 사이의 언론평의회 심의결과와 통계를 모은 ‘흑백서(Schwarzweißhandbuch)’를 처음으로 펴낸다. 이후에는 심의 통계와 조직의 성과 등을 모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1990년 10월 독일 통일 이후에는 언론평의회 영역이 자연스럽게 전 독일로 확장되었다. 언론평의회는 1991년 9월 통일 이후 베를린 장벽을 지키던 동독 군인에 대한 형사소송 과정에서 장벽 희생자들의 사진을 계속해서 보도하는 언론 행태에 대해 비판하면서 동독 역사 청산과정에서 개인의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1993년 11월 26일 언론의 주요 취재 대상인 경찰 취재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 기본원칙을 제정한다. 이는 언론평의회 소속 언론 단체와 독일 공영방송인 ARD, ZDF, 민영방송협회(Verband Privater Rundfunk) 등이 독일 연방정부의 내무부회의에 모여 결의한 것이다. 독일 언론평의회 활동이 조직 내부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언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과 상호작용하면서 조직의 위상을 높이는 과정이었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1990년대 후반 독일 연방정부가 추진한 용의자 전화도청 관련 법, 범죄 수사과정

2) 법률 제정 당시 지원금은 매년 8만 마르크였으며, 2010년 이후 매년 22만 3천 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에서 언론인들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을 언론인과 정보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제도로 판단하고 이를 저지하는 데 앞장섰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1999년 6월 영국 런던을 기반으로 한 ‘유럽 독립 언론평의회 연합(AIPCE, Alliance of Independent Press Councils of Europe)’ 창설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2000년 유럽지역 15개 언론자율규제기구의 대표들이 독일 본에 모여 유럽연합의 언론자유 및 기본권 관련 논의를 이어갔으며,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의 언론평의회와 함께 <유럽연합 기본권헌장(Die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에서 정보와 언론의 자유를 강화하는 조항을 넣는 데 기여했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이처럼 독일 국내뿐 아니라 유럽연합 차원의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노력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독일 <연방개인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개정과 함께 또다시 중요한 변화를 맞이한다. 독일은 2001년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방법을 개정했다. 유럽연합의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언론, 예술, 문학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개인정보는 엄격한 개인정보보호의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³⁾ 이에 독일 연방정부와 언론평의회는 언론 취재의 자유와 언론이 활용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등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감시 및 규제제도가 아닌 자율규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한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언론의 취재 정보 활용에 대한 자율규제기구의 역할을 위임 받고, 언론의 편집정보 보호에 관한 불만 심의만 전담하는 별도의 불만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독일에서도 디지털을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독일 언론평의회는 역할은 온라인 언론 매체에까지 확대된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2009년 1월 1일 정관과 불만처리규정 개정을 통해서 온라인 영역의 언론 보도도 심의 대상임을 밝히고, 언론윤리강령 개정 등을 통해서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3) Richtlinie 95/46/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4. Oktober 1995 zum Schutz natürlicher Personen bei der Verarbeitung personenbezogener Daten und zum freien Datenverkehr (1995. 10. 24).

2. 독일 언론평의회의 조직과 임무

독일 언론평의회는 네 개의 언론 조직이 연합한 형태의 비영리기관으로 2018년 7월 현재 독일 베를린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연합협의회(Trägerverein), 총회(Plenum), 불만처리위원회(Beschwerdeausschuss)로 구성되어 있다. 연합협의회는 독일신문발행인연방협회(BDZV), 독일기자협회(DJV), 독일잡지발행인협회(VDZ), 독일 기자노조(dju in ver.di) 등 네 개의 기관에서 각 2명씩 파견한 8명으로 이루어진다. 연합협의회는 1년에 최소 1회 회의를 개최하고 만장일치로 의결권이 있으며, 독일 언론평의회의 조직과 재정을 책임지는 최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독일 언론평의회의 총회는 총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행인 기관과 언론인 기관에서 절반씩 의석을 나누어 가진다. 총회 의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총회 의원은 모두 언론 분야에 종사해야하며, 이는 독일 언론평의회가 철저한 언론 내부의 자율규제 기관임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불만처리위원회는 독일 언론평의회에 접수되어 사전심사를 거친 불만 사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2018년 6월 현재 3개의 불만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심의위원 8명과 대리인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한 곳은 편집정보 보호(Redaktionsdatenschutz) 분야를 다루는데 언론이 취재과정에서 획득한 개인 정보와 관련한 불만 사안만 집중적으로 담당한다. 이곳은 독일 언론평의회 소속 심의위원 5명과 독일광고신문연방협회(Bundesverband Deutscher Anzeigenblätter)에서 파견한 심의위원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만처리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재선이 가능하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현재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 심의를 주된 임무로 삼고 있지만, 언론 관련법 개정안 등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의견표명서(Stellungnahme)’를 발표함으로써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독일 언론평의회 정관에 명시된 주된 임무는 첫째, 언론의 폐해를 직시하고 바로잡으며, 둘째, 개개의 신문, 잡지의 보도 및 인터넷의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을 심의하고 근거가 있는 경우 주의, 질책, 경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셋째, 언론 활동에 대해 조언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넷째, 뉴스 정보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을 지지한다. 다섯째,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과 생각의 자유를 해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는 독일 언론평의회 소속 단체 전원의 합의로 이를 저지하며,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및 편집정보보호 분야에서 자율규제 및 감시기

구를 조직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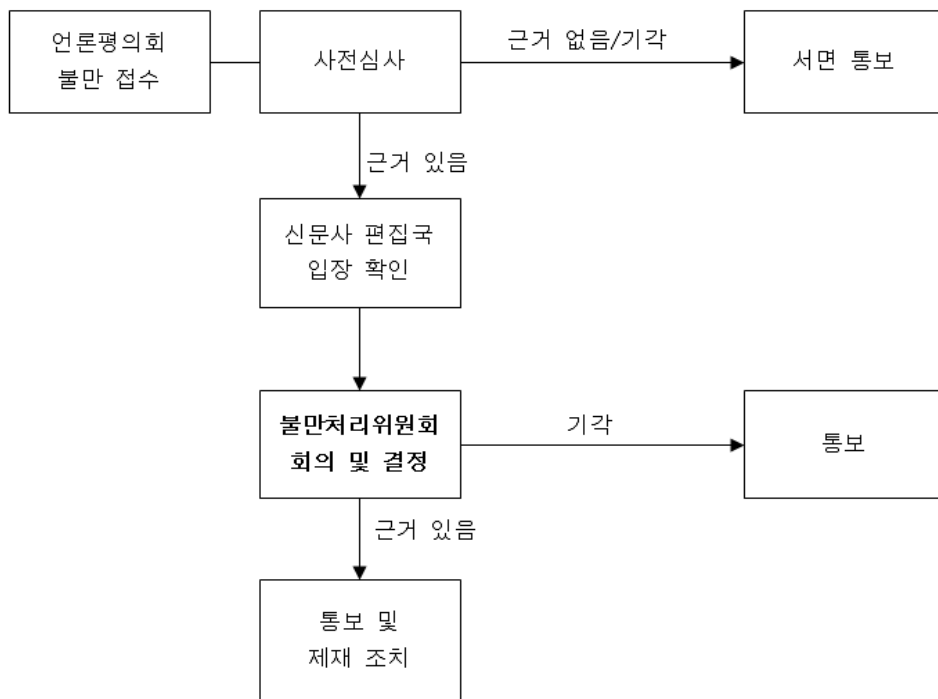
3. 독일 언론평의회의 피해 구제 절차

독일 언론평의회는 신문,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과 온라인의 언론 콘텐츠에 대한 불만 사안을 심의한다. 방송 언론과 손해배상, 광고에 관한 사안은 언론평의회의 소관이 아니다. 언론 보도에 불만이 있는 독자들은 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해서 불만을 접수할 수 있으며 언론 보도가 이루어진 지 1년 안에 불만을 접수해야 한다. 불만 심의는 총 3단계로 나뉘는데 사전심사와 불만처리위원장 직권결정, 불만처리위원회의 구두 회의로 분류된다. 접수된 사안이 접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경우 언론평의회는 불만 접수를 기각한다. 불만 접수자는 기각 된 이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사안이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불만처리위원회로 이관된다. 불만처리위원회는 해당 언론사에 불만 접수 사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요청하고, 해당 사안이 언론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이후 불만처리위원회 의장이 직권으로 접수 사안에 대해 ‘근거 없음(unbegründet)’으로 결정하거나, 근거는 있지만 제재 없음, 혹은 가장 낮은 단계의 제재인 ‘주의(Hinweis)’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불만처리위원장의 직권 결정에 대해서도 불만 접수자는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 구두 회의는 불만 접수자와 해당 언론사 관계자 및 증인 등이 함께 출석할 수 있다. 불만처리위원회는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관련 증거자료 및 증언 등을 종합해 결정을 내린다. 해당 보도가 언론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주의(Hinweis)’, ‘견책(Missbilligung)’, ‘비공개 경고(nicht-öffentliche Rüge)’, ‘공개경고(öffentliche Rüge)’를 내릴 수 있다. 비공개 경고는 주로 피해자 보호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결정된다. 해당 언론사가 불만처리위원회의 결정 이전에 이미 문제가 되는 보도를 정정했을 경우에는 ‘근거 있음(begründet)’으로 판단되어도 제재 결정을 하지 않는다.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인 ‘공개경고’를 받은 경우 언론사는 이 사실을 독자들에게 명백한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하지만 언론평의회의 이 같은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집행을 강제할 수 없다. 언론평의회는 ‘공개경고’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속 언론사로부터 언론평의회의 공개경고 결정을 따르겠다는 ‘자기의무서약서’를 받는다. 2006년 기준으로 약 855개의 언론 발행사가 ‘자기의무서약서’를 제출했으

며 이는 독일에서 발행되는 언론의 약 90%에 이르는 수준이다(Heimann, 2009). 독일 언론평의회는 ‘이빨 없는 호랑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자율규제기구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강제적인 제재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Bermes 1989; Stapf 2010).

[그림 1] 독일 언론평의회 불만심의절차



* 출처: 독일 언론평의회

4. 언론윤리강령

독일 언론평의회가 1973년 제정한 언론윤리강령은 오늘날까지 독일 언론의 대표적인 직업 윤리로 인정받고 있다. 언론윤리강령은 언론평의회 불만접수위원회 심의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언론 업계의 업무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한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1973년 12월 12일 언론윤리강령을 당시 연방 대통령인 구스타프 하이네만(Gustav W. Heinemann)에게 제출한다. 언론윤리강령은 이후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맞게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독일 통일 이후 1990년 2월 28일 언론윤리강령을 새롭게 썼으며,

독일 언론평의회는 2001년 11월 28일 개정된 언론윤리강령을 당시 연방 대통령인 요하네스 라우(Johannes Rau)에게 또다시 제출한다. 이는 언론윤리강령이 국가의 대표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았음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이며 특별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절차는 아니다. 언론윤리강령은 이후 디지털 환경에 따른 변화를 감안해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현재 언론윤리강령은 총 16조 47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언론윤리강령의 각 조에서는 선언적인 윤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각 항에서 세부적인 행동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제1조에는 언론 최고의 사명으로 진실 존중과 인권 존중, 진실 보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이러한 언론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언론은 보도에 신중함을 기해야 하며, 보도된 내용이 이후에 오보로 판명될 경우 이를 즉시 정정해야 한다. 이어 제4조~제7조 및 제15조에는 언론의 취재 방법에 대한 윤리를 다루고 있다. 언론은 개인 정보 및 뉴스, 취재 정보, 사진 등을 획득할 때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직업 기밀과 취재원 등과 합의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기자와 발행인은 언론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직무를 행해서는 안 되며 예를 들어 정부 기관이나 경제 단체 등의 소속으로 동시에 일할 수 없다. 언론은 기사와 광고를 명백하게 구분해야 하며, 보도의 독립성과 신뢰도를 해칠 수 있는 그 어떤 종류의 혜택도 받아서는 안 된다. 언론윤리강령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개인의 인격권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언론 보도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존중할 것이며, 종교와 세계관, 관습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언론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폭력과 잔인함, 고통에 대한 자극적인 묘사를 피해야 한다. 성별과 장애, 인종적, 종교적, 사회적, 국가적인 소속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언론윤리에 어긋난다.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보도할 때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고 편견에 주의해야 한다. 의학 관련 사안을 보도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공포감 또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과장된 묘사는 피해야 한다. 언론윤리강령의 마지막 제16조는 공개 경고 발행에 관한 것으로 언론평의회 경고 결정에 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 언론평의회가 언론윤리강령을 개정한 시기와 그 내용을 보면 당시 주요한 언론 이슈를 엿볼 수 있다. 언론평의회는 2017년 3월 22일자로 언론윤리강령 제12조 ‘차별’ 부문에 새로운 행동지침을 추가했다. 이 행동지침에 따르면 범죄행위에 대해 보도

할 때 용의자의 인종, 종교나 또 다른 소수자 그룹의 소속을 언급함으로써 개인의 범죄를 일반화해서는 안 되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한 용의자의 소속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 이 개정안은 2015년 12월 31일 독일 쾰른에서 발생한 집단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많은 언론이 사건의 용의자들이 북아프리카 출신이라고 밝히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강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처럼 독일 언론평의회는 언론윤리강령 보완을 통해서 해당 이슈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⁴⁾ 언론윤리강령은 독일 언론평의회 소속 인쇄 및 온라인 매체뿐 아니라 독일의 최상위 방송법인 <방송국가협약(Rundfunkstaatsvertrag, RfStV)>에도 명시되어 방송 언론 보도에서도 유효하게 적용된다. 이뿐만 아니라 언론 관계 소송에 있어서도 보도 윤리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

II. 방송 언론의 피해구제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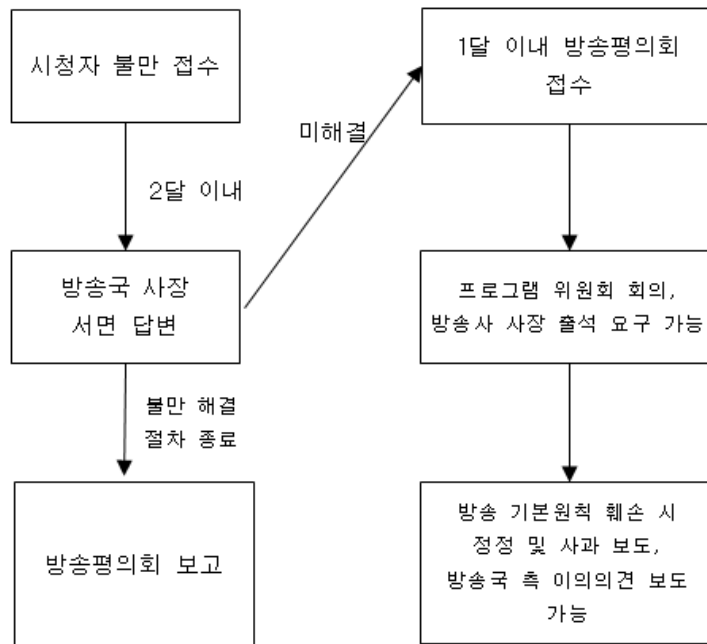
독일의 대표적인 언론자율규제기구인 독일 언론평의회는 방송 보도로 인한 시청자들의 불만 사항은 심의하지 않는다. 독일에서 방송 보도로 인한 불만 심의 시스템은 독일 방송 관련법에 따라 법적 규제 하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대부분 각 방송국이 직접 불만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독일은 <방송국가협약>을 통해서 공영 및 민영방송국의 기본 원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방송국가협약>에는 언론 보도를 할 때는 독립성, 사실성, 진실 보도와 출처 확인, 뉴스와 의견의 분리 등 필수적인 언론 윤리를 준수하고 언론윤리강령에 맞게 보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시청자들의 불만 심의 시스템에 대한 내용도 방송국의 하위 규정으로 명시되어 규제된 자율규제 형식으로 이뤄진다. 방송 언론의 불만 심의 시스템은 크게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독일 공영방송은 각 주를 근거로 한 8개 공영방송과 이들의 연합체인 제1공영방송 ARD, 제2공영방송 ZDF가 모두 개별적으로 시청자들의 불만 접수를 받는다. 다만 공

4) 이 사건은 반난민 및 반이민자 정서가 커지던 독일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오히려 반난민 정서를 막기 위해서 언론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컸으며, 독일 언론평의회는 언론윤리강령 개정 조항이 여론의 정서와는 맞지 않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영방송협의체인 ARD는 불만접수를 받으면 시청자가 속해있는 지역의 공영방송국으로 불만 사항을 이관한다. ‘서독일방송(Westdeutschland Rundfunk)’⁵⁾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영방송의 불만심의 절차를 알아보면, 먼저 언론 보도에 불만이 있는 시청자들은 방송국 시청자센터에 불만을 접수할 수 있다. 불만 접수는 해당 보도가 이뤄진 지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 해당 방송국 사장(Intendant/in)은 불만 사안에 대해 두 달 이내에 서면으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하며, 불만처리가 두 달 이내에 끝나지 않거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청자는 한 달 이내에 방송국의 최고 의결기구인 방송평의회(Rundfunkrat)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방송평의회는 이 사안의 근거와 타당성을 논의하고, 보도 내용이 프로그램의 기본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정정 및 사과 보도가 이루어진다. 만약 방송국 사장이 방송평의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의견도 함께 보도할 수 있다. 방송국 사장은 방송평의회에 불만 접수 상황과 처리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 내용은 방송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야 한다.

[그림 2] 독일 방송국의 불만 심의 절차



* 출처: 서독일방송법 참고

5) Gesetz über den Westdeutschen Rundfunk Köln (2013. 12. 31).

독일 민영방송의 경우 각 방송국과 민영방송을 관리하는 주미디어청(Landesmedienanstalt), 주미디어청연합(die medienanstalten)을 통해서 불만 심의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공영방송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는 개별 방송국에서 먼저 불만을 접수 및 심의하며, 방송국은 불만 심의가 이루어진 지 한 달 이내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한 달 이내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시청자는 주미디어청에 불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주미디어청은 해당보도가 방송의 기본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면 기록으로 남기고 이는 추후 민영방송의 인허가 등의 결정에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독일 방송국의 불만 심의 절차는 일차적인 결정을 각 방송국에 위임하면서 방송국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불만심의라는 제도가 방송국에 대한 비판적인 사안이 많은 만큼 불만 심의 활동이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으며, 자율규제 기능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또한 독일 언론평의회와 같은 통합적인 심의 기관이 없고, 언론윤리강령을 지키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해석의 여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독일방송은 2017년 1분기 불만처리 보고서에서 “언론윤리강령은 출판업자와 기자협회의 자율적인 직업윤리로 근본적으로 공영방송을 위한 것은 아니며 프로그램 불만 접수 처리에 고려해야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Wehner, 2017, 8쪽).

한편 독일 언론평의회는 매년 접수되는 사건의 절반 이상을 심의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접수 내용이 심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방송 보도 관련이거나 접수 기한을 넘긴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5년 기준 독일 언론평의회에는 총 2,358건의 불만이 접수되었는데 그 중 1,219건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016년에는 총 1,851건 중 1,123건이 심의에서 제외되었다. 이 중 정확히 몇 건이 방송 보도로 인한 불만 접수인지는 공개되지 않지만, 방송 보도에 관련한 불만도 독일 언론평의회에 꾸준히 접수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III. 소송을 통한 법적 구제

독일 언론평의회의 불만 심의와는 별개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자는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독일 <형법(Strafgesetzbuch)>상 ‘모욕(Beleidigung)’ 죄는 언론 보도 행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피해 중 하나다. 독일 <형법> 제 185조에 따르면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모욕이 행위를 통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186조 ‘비방(Üble Nachrede)’에 따르면 타인을 경멸하거나 세간의 평가를 저하시키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유포한 경우 1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이 행위가 공연히 또는 문서⁶⁾의 반포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197조 ‘증상(Verleumdung)’ 죄는 확실한 인식에 반해 타인을 경멸하거나 세간의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혹은 신용을 위해하기에 적합한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경우로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연히 또는 문서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 5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제188조 정치인에 대한 모욕죄는 처벌 수위가 더 높는데, 최대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모욕 행위가 신문이나 잡지 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형벌을 받은 경우 <형법> 제200조에 따라 모욕 행위가 이뤄졌던 동일한 매체를 통해 판결을 공시해야 한다.

독일에서 언론 보도의 ‘초상권(Recht am eigenen Bild)’에 관한 사항은 <조형예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⁷⁾에 규정되어 있다. 해당 법률 제22조와 제23조에 따르면 초상은 피사체가 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배포 혹은 공개 전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진이 시사적 영역에 있거나, 풍경 및 기타 장소의 사진에서 부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당사자가 참여한 집회, 행렬 및 유사한 행사 사진인 경우에는 초상권에서 제외된다. 언론 보도로 인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법에 근거해 고소할 수 있다. 위법사항이 인정된 경우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언론 보도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 받고자 할 때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독일 <민법(Bürgerliches Gesetzbuch)> 제823조는 개인의 삶과 신체,

6) 여기서 ‘문서(Schriften)’는 독일 형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음성 및 그림에 의한 기록, 전자 기록, 사진 및 기타 표현물 형태를 의미한다.

7)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bildenden Künste und der Photographie (2001. 2. 16).

건강, 자유 및 재산 등에 부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독일 각 주의 언론법⁸⁾에서는 언론피해 구제를 위한 ‘반론보도청구권(Gegendarstellungsanspruch)’을 보장한다. 반론보도청구권에 따라서 언론사는 보도된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개인이나 단체의 반론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다만 반론의 내용이 불법적이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광고의 목적이 있거나, 기존 보도와 비교해 반론의 분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언론사는 반론 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반론 보도 요청은 해당 보도가 처음 이루어진 이후 3개월 안에 서면 형식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언론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반론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밖에 <형법> 제131조에 따라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폭력행위를 미화하고 퍼뜨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현대사나 역사적 사건으로서 언론 보도가 되는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된다. 디지털 언론 미디어 환경에서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혐오 발언에 대해서는 <형법> 제130조 ‘국민선동(Volksverhetzung)’죄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한 국가나 종교, 인종이나 민족에 따른 소속 집단에 대해 혐오 발언을 하고 폭력 및 자의적인 조치를 선동하는 행위, 한 집단에 속한 이들을 모욕하고 악의적으로 비방하면서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해진다. 특히 이러한 혐오 발언과 선동 행위를 공공장소에서 퍼뜨리거나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조항에 근거한 판결 사례를 보면 가해자는 언론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인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 피해와 구제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8) 독일에서 언론에 관한 사항은 연방법이 아닌 주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독일 16개 주에서 각각 주언론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그 내용과 형식은 거의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 작센주 언론법(Sächsisches Gesetz über die Presse)을 참고해 소개한다.

IV. 독일 언론피해 구제 제도의 새로운 동향

1. 독일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

독일은 유럽에서 신문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나라로 매일 일간 신문 1,470만 부, 주간 및 일요신문 400만 부가 판매되는 곳이다.⁹⁾ 이미 형성된 인쇄 매체의 규모와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온라인 언론 환경도 인쇄 매체 주도로 발전되어 왔다. 독일신문발행인연방협회(BDZV)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 699개의 독일 신문이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¹⁰⁾ 온라인에서 E-Paper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문사는 총 1,227 곳에 이르는데, 독일의 주요 신문사들이 지역판을 따로 발행하고 지역판도 E-Paper 형태로 서비스되기 때문에 그 수가 많다. 또한 125개의 언론사가 모바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224개 언론사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자체 제작이나 외부 제작된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론사도 605곳에 이른다. 이처럼 독일의 수많은 언론사들이 디지털 및 모바일 환경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료 콘텐츠 등을 통한 수익구조 확대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신문발행인연방협회에 소속된 204개 언론사가 현재 월 정기구독, 건당 결제 등 다양한 형태로 유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위 통계에서 유의해야 하는 점은 조사 대상이 독일신문발행인연방협회에 소속된, 즉 기본적으로 종이 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에 한정된 정보라는 점이다. 독일에서는 지면 없이 운영되는 순수한 인터넷 언론 시장이 의미 있는 규모로 형성되지 못했다. 특히 2000년 독일 최초의 인터넷 신문으로 관련 업계에 화제가 되었던 ‘넷차이퉁(Netzeitung)’이 9년 뒤 경제난으로 폐간되면서 인터넷 언론의 사업모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기도 했다. 출판사나 종이신문 없이 운영되는 인터넷 언론은 블로그와 혼용되는 등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으며, 이 분야만을 따로 다루는 협회나 체계적인 통계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순수한 온라인 언론에 대한 동향은 개별 사례를 통

9) Bundesverband Deutscher Zeitungsverleger (2017). Die deutschen Zeitungen in Zahlen und Daten 2018. Retrieved from http://www.bdzv.de/fileadmin/bdzv_hauptseite/aktuell/publikationen/2017/ZDF_2017.pdf

10) Bundesverband Deutscher Zeitungsverleger (2017). Märkte & Daten. Retrieved from <http://www.bdzv.de/maerkte-und-daten/digitales/zeitungswebsites>

해서 분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면 발행을 하지 않고 운영되는 인터넷 언론은 독일에서 크게 두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기존 언론사가 디지털 세대를 겨냥해서 만든 별도의 인터넷 플랫폼으로 《슈피겔(Spiegel)》의 ‘벤토(<http://www.bento.de>)’, 《차이트(Zeit)》의 ‘체(<https://ze.tt>)’, 《빌트(Bild)》의 ‘노이즈(<https://noizz.de>)’ 등이 그 예다. 둘째로는 지역 및 대안 매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 곳으로 ‘라이프치히인터넷차이퉁(<https://www.l-iz.de>)’, ‘라인넥카블로그(<https://rheinneckarblog.de>)’, ‘크라우트리포터(<https://krautreporter.de>)’, ‘코렉티브(<https://correctiv.org>)’ 등이 있다.

2. 독일 언론평의회 및 언론윤리강령의 변화

독일 언론평의회는 2008년 11월 정관과 불만처리규정 개정을 통해 불만 심의 대상에 인터넷 언론을 포함시켰다. 독일 언론평의회 정관은 “언론(Presse)이란 전자적 언론매체도 포함하는 개념이며, 불만 접수는 인터넷 매체의 보도뿐만 아니라 뉴스 보도의 성격을 지닌 인터넷 서비스 모두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사의 인터넷 사이트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재되는 내용도 언론평의회와 자율규제 대상이 되었다. 언론의 디지털 환경을 감안한 언론윤리강령의 개정도 이루어졌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2015년 3월 인터넷 이용자가 언론사 사이트의 댓글이나 토론 게시판에 올린 의견이 언론윤리강령을 지키기 못했을 경우 이를 바로 잡는 책임은 편집국에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온라인으로 보도된 뉴스에 대해 정정보도를 할 때는 기존의 뉴스 보도와 연결되어 독자들이 정정보도 사실을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추가했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공개경고’를 발행할 때도 경고를 받은 뉴스 보도에 바로 연결되어 독자가 공개경고를 받은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인터넷의 특성을 감안한 언론사의 관리 및 책임 소재, 형식에 관한 내용으로 인터넷 언론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윤리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지면 매체를 운영하지 않는 순수 인터넷 언론의 경우 ‘자기의무서약서’를 제출했을 때만 자율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종이 신문을 근간으로 한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이미 해당 출판사가 언론평의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기의무서약서’ 없이도 자율규제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인쇄 매체가 없는 순수 인터넷 언론의 경우 이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율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언론평의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자기의무서약서를 제출한 인터넷 언론은 16곳이다.

한편 독일 언론평의회는 2018년 3월 총회를 열어 언론사 사이트에서 즉석으로 진행되는 설문조사의 대표성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독일 언론사 사이트에서는 보도된 주제와 관련해 기사 말미에 독자들의 찬반여부를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독일의 한 독자는 뮌헨 지역신문인 《뮌히너 메르쿠어스(Münchener Merkurs)》가 온라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뮌헨 공항의 세 번째 활주로 건설에 대한 설문조사가 대표성이 없다며 언론평의회에 제소했다. 이 독자는 해당 설문조사에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할 수 있어 대표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스로 컴퓨터의 쿠키 자료를 지우고 인터넷 전원을 재부팅하면서 같은 설문조사에 192번을 투표했고, 그 결과 해당 사안에 대한 찬성이 43%에서 39%로 줄었고, 반대는 54%에서 58%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언론평의회는 2018년 3월 22일 대표성이 없는 이러한 온라인 설문조사는 대표성이 없음을 적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해당 불만 심의에서 따로 제재 결정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 사안이 온라인 언론의 새로운 현상에 관한 것이며 언론사 측에서도 불만처리위원회가 아닌 언론평의회 차원에서 기본 원칙을 세울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이 나타나면서 언론평의회가 고민하고 원칙을 세워야 할 과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3. <네트워크집행법> 제정

독일은 2010년대 이후 난민 문제로 인한 극심한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었다. 독일 정부의 난민 수용 정책에 반대하고 반 이슬람 성격을 보이는 극우단체 ‘페기다(Pegida)’¹¹⁾를 선두로 반이슬람 및 외국인 혐오 분위기가 퍼지기 시작했고,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혐오 발언과 가짜 뉴스의 등장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됐다. 특히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논쟁이 공격적이고 모욕적, 혐오적인 경향을 보이면서 이에 관한 규정이 필요

11) 페기다(Pegida)는 ‘서양의 이슬람화를 반대하는 애국 유럽인들의 모임(Patriotische Europäer gegen die Islamisierung des Abendlandes)’의 줄임말로 2014년 10월 창립된 극우성향의 반이슬람, 반난민 단체다.

하다는 공감대가 생겨났고, 독일 법무부는 2015년부터 온라인상의 혐오 범죄를 제대로 관리 혹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해왔다. 이 고민의 결과물인 <소셜네트워크에서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일명 네트워크집행법)>¹²⁾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강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2017년 9월 1일 제정, 10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네트워크집행법>의 주요 골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혐오 발언과 불법적인 게시물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네트워크집행법> 제1조에서 정의 내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인터넷 상에서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리고 타인과 공유하며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한정된다. 언론사가 관리 책임을 지는 언론사 사이트의 경우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법적인 게시물’이란 독일 형법상 국민 선동 및 모욕, 신앙 및 종교단체에 대한 모욕, 음란물 배포 및 사생활 침해 등 온라인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불법 행위를 포함한다.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는 사용자가 올린 불법적인 게시물에 대해 신고하거나 불만을 접수할 수 있는 조직 및 기구를 만들어야 하며,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해당 분야 및 언어의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업무에 걸맞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신고된 게시물이 명백하게 위법적인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온 이후 24시간 이내 삭제하거나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금지시켜야 한다. 그 외의 위법적인 게시물은 신고가 들어온 지 7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네트워크집행법> 제2조 ‘보고 의무’ 조항에 따르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는 불법 게시물 신고 및 불만 접수 처리 결과에 대해 6개월마다 독일어로 된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해당 법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서비스 사업자에게 최대 50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내에서 공유되는 게시물에 대한 관리 책임을 일차적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한 것이다. 이 법이 겨냥하는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인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이 미국을 기반으로 한 업체라는 점을 감안해 담당 인력의 전문성 및 보고서 발행에 있어서 독일어를 강조했다. 이 법으로 인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는 해당 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불만 접수 기구를 신설하고 반년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12)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2017. 9. 1).

이 법에서 눈에 띄는 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가 불법 게시물 관련 업무를 ‘인정받는 규제된 자율규제 기구’에 맡길 수 있다고 밝힌 부분이다. 여기서 ‘규제된 자율규제 기구’의 조건은 심의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7일 이내에 심의가 가능한 물리적 환경, 심의 절차 및 재심의 가능성이 규정되어 있으며, 불만 접수 기구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한 기구가 여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플랫폼의 심의를 함께 맡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확실하게 보장될 때만 가능하다. 이 조항에 따르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전담하는 자율규제 기구가 새롭게 설립되거나 기존의 미디어 자율규제 기구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긴 것이다.

하지만 <네트워크집행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강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독일잡지발행인협회(VDZ), 디지털 관련 산업분야 협회인 비트콤(Bitkom), 독일의 국경없는기자회 등 관련업계는 해당 법률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밝혔으며, 여야와 좌우를 막론한 정치권의 비판도 거세다. <네트워크집행법>이 강한 벌금으로 사업자를 압박하면서 신고된 게시물을 제대로 심의하기보다는 일단 삭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페이스북 등 운영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삭제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검열 기능으로 사용될 위험성도 있다. 독일 기사당(CSU)은 불법적인 게시물의 경우 직접 삭제하기보다는 사업자가 형사 고발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불법 게시물의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고 고소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며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¹³⁾ <네트워크집행법>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관리와 관련법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 주목된다.

13) CSU (2018, 1, 23). Netzwerkdurchsetzungsgesetz (NetzDG) verstößt gegen die Verfassung. Post von Staat sanwalt oder Richter macht mehr Eindruck als ein gelöschter Tweet. Retrieved from <https://www.csu.de/partei/partearbeit/arbeitskreise/csunet/aktuelles/2018/netzwerkdurchsetzungsgesetz-netzdg-verstoest-gegen-die-verfassung>

V. 최근의 언론 분쟁 및 해결 사례

1. 독일 언론평의회 불만 심의 사례

독일 언론평의회 설립 이래 불만 심의 건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0년 이후에는 매년 최소 1,300여 건에서 2,000건 이상의 불만 사안이 접수되고 있다. 대규모 참사나 테러 사건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불만 접수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독일 언론평의회에 접수된 불만 건수는 2014년 2,009건, 2015년 2,358건, 2016년 1,851건, 2017년 1,788건으로 집계되고 있다.¹⁴⁾

〈표 1〉 독일 언론평의회 불만 접수 및 처리 건수

| 연도 건수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접수된 불만 건수 | 1,500 | 1,347 | 2,009 | 2,358 | 1,851 | 1,788 |
| 처리된 불만건수 | 670 | 465 | 765 | 1,139 | 728 | 474 |

* 주: 독일 언론평의회에 접수된 불만 사항 중 심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건수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불만 심의가 이뤄진 건수가 '처리된 불만건수'이다.

* 출처: 독일 언론평의회

2015년에는 저먼윙스(Germanwings) 비행기의 추락 참사가 발생했고, 이 사건 보도에 대해서만 430건의 불만이 접수되었다. 당시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고의로 추락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황색신문으로 분류되는 《빌트》 등 일부 미디어가 조종사와 희생자들의 사진을 실으면서 언론 윤리적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다. 이에 대해 독일 언론평의회는 조종사의 신원에 대한 보도는 공공의 관심 및 이익 차원에서 허용될 수 있지만, 희생자와 유가족의 신원과 사진은 공인이거나 유가족의 허락이 있을 때만 보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015년 연말과 2016년 신년 사이 독일 쾰른에서 발생한 대규모 성폭력 사태에서는 피의자들의 신원 및 출신 지역을 보도하는 것에 대한 윤리 논쟁이 치열했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피의자들의 출신 지역 및 종교적 배경을 알리는 보도는 성급한 일반화를 야기할 수 있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피의자의 출신 및 집단

14) 독일 언론평의회 불만 심의 관련 통계는 해마다 발표되는 언론평의회 연감을 참조했다.

의 특징을 밝히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따른 새로운 언론윤리강령을 추가하기도 했다. 2016년에는 독일 뷔르츠부르크, 프랑스 니스와 파리, 벨기에의 브뤼셀 등 유럽지역에서 일련의 테러 사건이 발생했고 관련 보도에 대한 불만이 다수 접수되었다. 대형 사건사고를 보도할 때 발생하는 인격권 관련 문제 이외에 광고와 기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보도도 독일 언론평의회에 자주 접수되는 불만 사항 중 하나다. 광고와 보도 기사의 명확한 구분을 규정한 언론윤리강령 제7조를 위반해 ‘공개경고’를 받은 건수는 2015년 전체 경고 횟수 35건 중 15건, 2016년 총 33건 중 9건, 2017년 총 21건 중 9건에 이른다. 이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수익구조에 대한 언론사들의 고민과 여러 시도들이 자주 언론 윤리와 충돌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한편 독일 언론평의회에 불만 사항이 접수되는 보도 대상은 지면 보도보다는 온라인보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언론평의회에 접수된 사안 총 1,148건¹⁵⁾ 중 332건이 지면으로 보도된 사안이었고 726건이 온라인 보도, 90건은 지면과 온라인으로 함께 보도된 건이었다. 이 통계는 온라인 보도가 지면 보도보다 더 품질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독자들의 미디어 수용행태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언론평의회는 해석하고 있다. 즉 독자들이 온라인 보도를 더 많이 접할 뿐 아니라 온라인 보도를 캡처하거나 링크를 이용해 접수하는 것이 지면 보도를 복사해서 우편으로 부치는 방법보다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1) 가짜뉴스 보도

2018년 3월 25일 오후 3시 47분, 독일 만하임을 기반으로 운영 중인 온라인 신문 ‘라인넥카블로그(Rheinneckarblog)’에서 “만하임에서 대규모 테러공격”이라는 제하의 단독 기사를 보도했다.¹⁶⁾ 기사 첫 문단은 이렇게 시작된다.

“서유럽에서 가장 큰 테러공격이 만하임에서 발생했다. 현재 136명이 사망했고, 237명이 크게 다쳐 일부는 생명이 위급하다. 약 50여명의 테러리스트들은 마체테 칼과 다

15) <표 1> 수치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한 가지 보도를 대상으로 여러 건의 불만이 접수된 경우 중복으로 접수된 건수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독일 언론평의회에 따르면 2017년 총 166건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 모두 1건 이상의 불만이 중복으로 접수되었다.

16) Prothmann, H. (2018, 3, 25). Massiver Terroranschlag in Mannheim. <Rheinneckarblog>. Retrieved from <https://rheinneckarblog.de/25/massiver-terroranschlag-in-mannheim/137678.html>

른 종류의 칼을 들고 사방에서 시내 쪽으로 들이닥쳤다. 이들은 동시에 두 명씩 짝을 지어 25곳을 공격했고, 묵시록적인 피바다를 야기했다.”

언론사는 이 기사를 게재하면서 언론사의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기사 링크를 공유했다. 하지만 이 기사는 마치 소설을 쓰는 것처럼 완전히 꾸며낸 가짜 뉴스였다. ‘라인넥카블로그’가 기사를 올린 지 15분 만에 만하임 경찰은 트위터를 통해 해당 뉴스는 가짜 뉴스라고 밝혔다. 하지만 가짜 뉴스는 이미 다른 미디어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게 전파된 이후였다. ‘라인넥카블로그’도 경찰의 트위터 게시물을 캡처한 후 해당 기사에 다시 삽입했지만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았다. 온라인 언론이 발행한 대범한 가짜 뉴스에 대해 독일 언론평의회에 총 4건의 불만이 접수되었다. ‘라인넥카블로그’는 해당 뉴스는 픽션이 가미되고 문학적인 성격을 지닌 ‘곤조 저널리즘(Gonzo-Journalismus)’이라며 편집국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적인 상황과 가짜 뉴스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확인 없이 거짓 뉴스를 퍼뜨린 다른 매체에 더 큰 잘못이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독일 언론평의회는 해당 매체의 거짓 뉴스가 언론의 신뢰성을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라며 2018년 7월 불만처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인 공개경고 결정을 내렸다. 독일 언론평의회 불만 심의에서 특히 지적되었던 부분은 ‘라인넥카블로그’의 유료 콘텐츠 운영에 관한 것이었다. ‘라인넥카블로그’는 특정 기사의 경우 중간에 결제를 요구하는 팝업창을 띄우면서 결제를 해야만 기사를 끝까지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논란이 되었던 가짜 뉴스도 유료 기사 중 하나였는데, 기사가 가짜 뉴스라는 설명이 이 결제 팝업창 뒤로 가려져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 가짜 뉴스는 ‘라인넥카블로그’ 측의 주장과는 달리 해당 매체에 대한 시선을 끌고 결제를 유도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데 더 힘이 실리게 되었다. 이 사안은 인터넷 언론과 가짜 뉴스, 가짜 뉴스에 대한 반응 및 대처, 온라인 매체의 유료 콘텐츠 등 디지털 환경에 따르는 언론의 이슈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을 끌었다.

한편 이 가짜뉴스 사건은 만하임 법원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리면서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독일 만하임 법원은 2018년 7월 12일 ‘라인넥카블로그’가 가짜뉴스를 발행한 것은 사기 및 인격권을 침해하고 공공의 평화를 위협한 행위라면서 9,000유로 벌금형을 내렸다. ‘라인넥카블로그’ 측은 즉시 이의를 제기해 이 가짜뉴스에 대한 판

단은 정식재판으로 회부된 상태다. 이 사건은 언론사의 ‘가짜뉴스’에 대한 독일 법원의 첫 판결이 될 예정이다.

(2) 범죄사건의 피해자 및 가해자 보도

독일 언론평의회는 2016년 7월 23일 “이들이 총기난사의 희생자다”¹⁷⁾라는 제하로 독일 뮌헨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희생자들의 사진을 게재한 《빌트》 일요판과 《빌트》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 불만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경고 제재를 내렸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희생자들의 사진을 유가족 동의 없이 공개했고, 일부 피해자들은 청소년으로서 더욱 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가해자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가해자의 인격 보호보다 공공의 관심이 더욱 큰 사안이라고 밝혔다. 빌트는 공개 경고를 받은 이후 해당 기사에 피해자들의 사진을 삭제하고 언론평의회에 공개 경고를 받은 사실을 명시했지만 편집국 측의 이의 의견도 함께 게시했다. 《빌트》 측은 “피해자의 사망 사진이 아니라 생전의 밝은 모습을 공개한 것으로 인간존엄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엄을 지킨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범죄 피해자의 신상과 사진의 경우 유가족의 동의 하에서만 공개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으며, 가해자 신상의 경우는 대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다만 가해자가 받아야 할 처벌을 모두 받았을 때는 판단이 달라진다.

《빌트》는 2018년 3월 9일 “데고브스키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건 참담한 일입니다”¹⁸⁾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30년 전 독일 글라드벡(Gladbeck) 인질극 사건 생존자와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 사건은 1988년 8월 글라드벡에서 디터 데고브스키(Dieter Degowski)와 한스-위르겐 뢰즈너(Hans-Jürgen Rösner)가 여러 명의 인질을 붙잡고 독일과 네덜란드 일대를 돌며 이틀간 인질극을 벌인 일로 ‘글라드벡 인질극’이라고 불리는 독일의 역사적인 범죄사건 중 하나다. 이 사건으로 10대 인질 두 명과 경찰관 한 명이 사망했다. 당시 기자들이 가해자를 인터뷰하고 가해자들이 도망치는 과정

17) Bild (2016, 7, 23). Das sind die Opfer des Amoklaufs. Retrieved from <https://www.bild.de/regional/muenchen/amoklauf/opfer-muenchen-amok-46959308.bild.html>

18) Fromm, R. (2018, 3, 9). Es ist eine Schande, “dass Degowski frei herumläuft”. <Bild>. Retrieved from <https://www.bild.de/unterhaltung/tv/gladbecker-geiseldrama/es-ist-eine-schande-dass-degowski-frei-herumlaeuft-55049368.bild.html>

을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근접 취재해 언론 역할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경찰 또한 인질 구조 과정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빌트》는 이 사건의 30주년 관련 보도를 하면서 인질범의 과거 및 현재 사진, 당시 사망한 피해자의 현장 사진을 함께 보도했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인질극 범인이었던 데고브스키의 현재 사진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며 《빌트》에 공개경고 결정을 내렸다. 경고 결정의 근거가 된 언론윤리강령 제8조 제1항에서는 이미 지나간 범죄사건에 대해서 다시 보도할 때는 재사회화의 이익을 위해서 범죄자의 이름을 언급하고 사진을 공개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중의 공분을 샀던 범죄자라 하더라도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모두 받은 이후에는 재사회화를 위해 인격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뜻이다. 이 사건 가해자인 데고브스키와 뢰즈너의 현재 사진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언론 차원에서 이를 보도하고 전파하는 것은 언론 윤리에 어긋난다는 평가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피해자 사진 공개에 대해서도 “사건이 발생한 지 30년이 지났다고 해도 피해자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유가족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3) 기사와 광고 구분

독일 청소년 잡지 《브라보(Bravo)》는 언론사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커피 관련 사진 20장과 온라인에 발행한 커피 브랜드 관련 기사로 2017년 3월 공개 경고 조치를 받았다. 《브라보》 온라인은 2016년 6월 6일 “스타벅스: 한정 기간-프라푸치노 미니 사이즈가 나온다!”¹⁹⁾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는 이모티콘을 이용해 기자가 직접 작성한 기사처럼 보이지만 명백한 브랜드 광고 기사였다. 《브라보》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사진도 평범한 일상 사진을 올린 것 같지만 브랜드의 로고가 확연히 드러났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광고와 기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브라보》의 인터넷 기사와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대해 ‘공개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 결정은 언론사의 온라인 사이트뿐만 아니라 언론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의 게시물도 함께

19) Becker, A. (2017, 3, 24). Presserat beschäftigt sich mit Breitscheidplatz-Berichten und rügt Schleichwerbung bei Bravo Online. <Meedia>. Retrieved from <https://meedia.de/2017/03/24/presserat-beschaefigt-sich-mit-breitscheidplatz-berichten-und-ruegt-schleichwerbung-bei-bravo-online>

심의하면서 독일 언론평의회의 영역 확장을 보여준 사례였다. 다만 《브라보》의 기사와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이후 모두 삭제되었으며, 독자들이 《브라보》가 공개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타게스슈피겔(Tagesspiegel)》의 온라인 사이트는 2017년 5월 15일 독일 설탕산업협회의 “제대로 맛보세요!”라는 캠페인의 토론 기사로 “설탕을 다루는 것에서부터”²⁰⁾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는 《타게스슈피겔》의 토론 사이트에 게재되었고, 독자들은 기사 마지막에 가서야 ‘파트너 제공(Partnerangebot)’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었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해당 기사가 광고비를 받고 보도한 내용임에도 토론의 일부로 편집되어 독자로 하여금 혼란을 줬다며 ‘공개경고’ 결정을 내렸다. 《포커스(Fokus)》 온라인 사이트도 광고 기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기사로 ‘공개경고’를 받았다. 《포커스》는 “만약에 당신의 은행이 돈을 원한다면, 레드카드를 보여주세요”²¹⁾라는 기사에서 은행의 계좌 유지비용에 대해 보도했다. 기사 화면의 위쪽에는 ‘파트너 기사(Partnerinhalt)’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그 바로 아래에는 “특집-진지한 조언”이라고 머리말을 달았다. 기사 본문에는 다양한 은행의 계좌 상품을 비교해 놓은 한 은행 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는 링크가 삽입되어 있었다. 특정 은행으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집행한 광고 기사였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이 기사가 은행 계좌의 유지비용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보도 기사로 보이고, 독자들이 광고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도록 편집되어 있다며 언론윤리강령 제7조 광고와 기사의 구분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최근 독일 언론에서는 기사 형식으로 광고하는 이른바 ‘내러티브 광고’가 많이 보이는데, ‘파트너기사’, ‘-로부터 제공받은 기사’, ‘스폰서 기사’ 등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독일 언론평의회는 ‘파트너 제공’이라는 표현 또한 언론윤리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것으로 명확하게 ‘광고(Anzeige)’라고 표시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20) Spahl, T. (2017, 5, 15). Vom Umgang mit Zucker. <Tagesspiegel>. Retrieved from <https://causa.tagesspiegel.de/opendebate/schmeckrichtig-zuckerwirtschaft/kennen-sie-ihre-kalorienbilanz/vom-umgang-mit-zucker.html>

21) Fokus (2017). Wenn Ihre Bank die Hand aufhält, zeigen Sie ihr die rote Karte. <Fokus>. Retrieved from https://www.focus.de/regional/nuernberg/ehrlich-beraten/girokonto-gebuehren-das-muss-nicht-sein-wenn-ihre-bank-die-hand-aufhaelt-zeigen-sie-ihre-die-rote-karte_id_6578135.html

(4) 풍자의 경계

독일 언론평의회에 자주 접수되는 불만 사안 중 하나는 풍자에 관한 것으로, 만평 및 잡지 표지의 풍자가 언론윤리를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풍자를 다루는 독일 언론평의회 판단은 대체로 관대한 편이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2018년 5월 15일 《쥐드도이체차이퉁(Süddeutsche Zeitung)》이 발행한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만평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쥐드도이체차이퉁》은 유럽 최대의 음악 경연 대회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최종 우승한 이스라엘 출연자의 얼굴을 네타냐후 총리의 얼굴처럼 그리고 미사일을 들고 있는 만평을 게재했다.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라는 문구도 덧붙였다. 이 문장은 당시 우승자가 팔레스타인과 분쟁지역으로 있던 예루살렘을 언급해 비판 여론이 일었던 부분이었다. 하지만 독자들은 이 만평이 ‘반유대주의(Antisemitismus)’를 조장하며 나치 독일 당시 발행된 잡지 《슈튀머(Stürmer)》의 만평을 떠올리게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만평에 대해 총 8건의 불만이 독일 언론평의회에 접수되었다. 만평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쥐드도이체차이퉁》은 만평을 발행한 것을 사과하고 만평가 디터 하니치(Dieter Hanitzsch)와의 계약을 해지했다.²²⁾ 하지만 독일 언론평의회 판단은 여론과 달랐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이스라엘 총리의 얼굴이 과장되긴 했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로 허용되는 수준으로 한 집단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언론윤리강령 제12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나치 전범의 역사가 있는 독일에서 ‘반유대주의’는 비교적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데도 불구하고 풍자의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유의 여신상의 목 부분을 절단해 들고 있는 2017년 2월 4일자 《슈피겔》의 표지 그림에 대해서도 언론윤리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슈피겔》의 이 표지 그림으로 총 21건의 불만이 접수되었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해당 만평이 자극적이지만 정치 보도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언론사는 미국 대통령의 논란이 되는 행동과 자유에 대한 그의 생각을 풍자로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22) ARD (2018, 5, 17). “SZ” trennt sich von Karikaturisten. Retrieved from <https://www.tagesschau.de/inland/hanitzsch-karikatur-presserat-101.html>

[그림 3] 《퀴드도이체차이퉁》이 2017년 5월 15일 발행한 만평



[그림 4] 2017년 2월 4일 발행된 《슈피겔》 표지



(5) 혐오 게시물에 대한 뉴스포털의 책임

독일의 온라인 포털사이트 중 하나인 'OVb24.de'에서는 지역의 정당이나 협회가 회원가입을 한 후 조직의 보도자료나 기고문을 직접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제3자가 올린 게시물은 '외부제공 게시물(Inhalte Drittanbieter)'로 표시된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2017년 12월 이 사이트에 올라온 독일 정당 AfD²³⁾ 소속 정치인의 국민선동적인 게시물에 대해 '공개경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언론윤리강령은 인터넷에서 사용자가 직접 올린 게시물이라고 하더라도 언론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는 사이트를 관리하는 언론사의 책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AfD 소속 정치인이 올린 혐오적 발언이 담긴 게시물을 그대로 올린 것은 언론윤리강령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독일 언론평의회는 지적했다. 또 사용자의 게시물이 언론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게시물을 발행해서는 안 되며 '제3자 제공'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 사례는 독일 언론평의회가 특정 언론사 사이트뿐만 아니라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도 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언론사가 직접 생산하는 기사가 아닌 제3의 사용자가 생산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공개경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소송을 통한 언론 분쟁 및 해결 사례

(1) 혐오 발언 처벌

독일에서 혐오 발언은 <형법> 제130조 '국민선동(Volksverhetzung)'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독일 나치의 전쟁 범죄를 옹호하는 발언이나 행위, 다른 소속 집단에 대한 혐오를 나타내는 발언이나 행위도 모두 금지된다. 독일에서는 최근 반난민과 반이슬람, 반외국인 정서로 인해 국민선동죄에 해당하는 혐오 발언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더 빨리 전파되고 있다. 혐오 발언에 대한 법적 분쟁과 처벌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23) AfD는 '독일을 위한 대안(Alternative für Deutschland)'의 줄임말로 2013년 6월 창당된 민족주의 극우성향의 정당이다. 페기다(Pegida)와 함께 독일의 반난민, 반이슬람 정서를 확대하고 있다.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2014년 8월 페이스북 그룹 페이지에 수차례 홀로코스트를 옹호하는 발언을 올린 34세 남성에게 대해서 국민선동죄로 벌금형 5천 유로를 선고했다.²⁴⁾ 이 남성은 페이스북의 한 공개 그룹에 “이 모든 거짓말 이후에는 나는 점점 홀로코스트의 진실에 대해 의심이 든다!!”, “그런데 쫓기는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모두 거짓이다! 모두 선전이다! 증거는 어디 있는가?”, “유대인들은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스스로도 책임이 있다(후략).” 등의 코멘트를 달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나치 전범이 유대인에게 저지른 대량 학살을 부정했으며 이러한 표현은 공공의 평화를 해치는 것으로 피고인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코멘트 뒤에 이모티콘을 함께 사용했고, 그만큼 진지한 발언이 아니었으며 사람들을 자극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올린 페이스북 코멘트를 34명만 읽은 것으로 확인되어 확산 범위가 크지 않다고 하며 벌금을 5천 유로로 책정했다.

2016년 1월 25일, 독일에서 직업 군인으로 일하던 한 남성은 평소 즐겨 보던 언론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범죄를 저지른 난민에 대한 기사를 보고 기사가 링크된 페이스북에 난민과 외국인에 대한 혐오 발언을 여러 차례 남겼다. 그는 “독일은 국경을 단장막고 불법적인 이주자나 난민들을 단장 쫓아내야 한다”면서 ‘원숭이’, ‘벌레’, ‘천민’ 등의 경멸적인 단어로 난민들을 지칭했다. 그는 이틀에 걸쳐 6건의 혐오 댓글을 작성해 국민선동죄 혐의로 기소되었고 독일 데트몰트 지방법원은 2016년 10월 26일 피고인에게 3,750유로의 벌금형을 부과했다.²⁵⁾ 피고인은 상위 법원에 항소했지만 데트몰트 주법원, 주고등법원 모두 이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나 난민을 악의적인 방법으로 비난해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했으며, 혐오적인 단어를 이용해 외국인과 난민을 천대시하고 비인격적으로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이 페이스북 프로필에 본인이 직업 군인이라는 것을 공개한 이상 그의 발언은 개인의 의사표현이 아니라 외국인의 헌법적 권리도 보호해야 할 기대를 지닌 군인의 의사표현이라고 강조했다.

24) Rechtsindex (2015, 11, 13). “Juden sind am Holocaust selber schuld” - Nach Facebook-Hetze folgt 5000 Euro Geldstrafe. Retrieved from <https://www.rechtsindex.de/recht-urteile/5294-juden-sind-am-holocaust-selber-schuld-nach-facebook-hetze-folgt-5000-euro-geldstrafe>

25) 독일 판례: *LG Detmold*, 27.04.2017 - 25 Ns-21 Js 242/16, *OLG Hamm*, 07.09.2017 - 4 RVs 103/17

독일 《노드베스트차이퉁(Nordwest Zeitung)》은 자사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외국인 혐오 댓글을 단 사용자를 직접 검찰에 고발해 주목을 끌었다. 《노드베스트차이퉁》은 2016년 5월 25일 창가에 매달려 떨어질 위기에 처한 흑인 아이를 구한 환경미화원들의 사연을 보도했다. 《노드베스트차이퉁》은 기사를 보도하며 페이스북에도 링크를 달아 함께 게시했다. 이 사연은 당시 독일 전역에 알려져 화제가 된 미담 기사였지만 한 인종주의자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이 사용자는 언론사 페이스북에 “환경미화원이 그 아이를 쓰레기처럼 생각하고 처리하는 게 더 나았을 것”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언론사 편집국은 해당 댓글을 발견한 직후 삭제했으며, 더 나아가 해당 사용자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올덴부르거 지방법원은 2017년 8월 국민선동죄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²⁶⁾하고 사회봉사활동 60시간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아직 1심 판결만 난 상태이지만, 온라인의 혐오 발언을 단순히 삭제한 것뿐만 아니라 언론사 측이 직접 고발한 사례로 언론사의 대응 범위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2) 개인의 명예훼손, ‘라바우케 사냥꾼’

2014년 6월 3일 독일 지역 신문사 《노드쿠리어(Nordkurier)》는 지역 언론에서 화제가 되었던 사진 한 장을 싣는다. 한 운전자가 자동차 뒤에 노루를 매달고 도로를 달리는 장면이었다. 목격자는 뒤에서 이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렸고, 《노드쿠리어》도 이 사진을 보도하면서 “라바우케 사냥꾼(Rabauken Jäger)”이라는 표제를 달았다. ‘라바우케’는 주로 사고를 치고 다니거나 허세를 부리는 아이를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다. 운전자는 그 노루는 이미 죽어있었고 교통에 방해가 될 것 같아 100미터 정도를 끌고 가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밝히며 자신을 ‘라바우케’라고 표현한 언론사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파제발크 지방법원은 2015년 5월 20일 이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기자에게 벌금 1천 유로를 선고했다. 법원은 ‘라바우케’라는 단어는 주로 어린이에게 쓰이는 것으로 성인 남성에게 쓰기에 적절한 표현이 아닌데다가 강하고 거친 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드쿠리어》 언론사와 기자는 즉각 반발하며 항소했지만 2심의 판결도 1심과 같았다.²⁷⁾ 이 판결은 ‘라바우케 판결’이라고 불리

26) Schwerdtfeger T. (2017, 8, 24). Nach Hasskommentar im Netz verurteilt. <NWZ Online>. Retrieved from https://www.nwzonline.de/blaulicht/oldenburg-prozess-gegen-oldenburger-nach-hasskommentar-im-netz-verurteilt_a_32,0,2696642693.html

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연관되어 독일 전역의 관심을 끌었다. 언론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1심 판결 이후 《빌트》는 《노드쿠리어》 기사를 캡처한 이미지를 그대로 실으면서 “결국에는 무죄”라는 표제를 달았다. 해당 보도에 대한 연대를 표현한 것이다. 2심 판결 이후에는 독일 신문발행인연방협회가 ‘라바우케’라는 단어는 명백하게 표현의 자유로 허용되는 단어이며, 그래서 이때까지 처벌된 적이 없는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라바우케’라는 표현을 쓴 기자는 최종심에서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로스톡 주고등법원은 2016년 9월 9일 이 단어는 거친 행동을 하는 성인 남성을 묘사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독자 입장에서는 문학적이고 냉소적인 방식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며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작은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이 사건은 법원이 기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오히려 대중의 관심이 극대화된 경우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로 인식되면서 언론계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결국 무죄 판결이 난 이 사건에 대해 독일 판사 출신 변호사 데트레프 부르호프(Detlef Burhoff)는 ‘별 것 아닌 일이 요란했다’²⁸⁾고 평가하기도 했다.

(3)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요르그 카헬만의 잃어버린 명예²⁹⁾

독일 공영방송 ARD의 기상 전문 앵커였던 요르그 카헬만(Jörg Kachelmann)은 2000년 3월 옛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카헬만은 2010년 7월 구속적부심으로 석방 결정이 나기까지 약 14개월간 구금되었으며, 2011년 5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그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체포되는 극적인 첫 장면부터 무죄판결이 나기까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빌트》, 《분테(Bunte)》 등 독일의 대중 언론은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그의 사생활과 구금 생활을 일거수일투족 보도했다. 《빌트》는 2010년 4월 10일 “요르그 카헬만이 교도소에서 햇볕을 즐기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그가 교도소 마당에 있는 사진을 보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독일에서 가장 사랑받던 기상 전문가, 지금은 가장 유명한 재소자의 새로운 일상을 엿

27) 독일 판례: *OLG Rostock*, 09.09.2016 - 20 RR 66/16, 1 Ss 46/16

28) Burhoff, D. (2016, 10, 17). Rabaukenjäger - das war es, oder: Viel Lärm um nichts?. Retrieved from <https://blog.burhoff.de/2016/10/40874>

29) 독일 판례: *LG Mannheim*, 31.05.2011 - 5 KLS 404 Js 3608/10, *OLG Köln*, 12.07.2016 - 15 U 175/15

보자. 어제 낮, 이 TV 사회자는 교도소 마당에서 시간을 보냈다. 햇볕이 비치고, (섭씨 16도, 북동쪽에서 부는 약한 바람) 재소자들은 운동장을 돌았다. 그들 뒤에 ARD 앵커가 있다. 카헬만은 청바지와 어두운 청자켓을 입고 있다(후략).”

이외에도 《빌트》는 “그의 성생활은 매우 다채로웠다”, “그와 사랑을 나눈 7명이 말한다”, “그는 감옥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 “그는 웃고, 그의 전 연인은 울고 있다” 등 수차례에 걸쳐 자극적인 보도를 일삼았다. 무죄판결이 났지만 카헬만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이후였다. 형사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그는 ARD에서 해고되었고, 그동안 쌓아온 기상학자 및 공인으로서의 커리어는 사실상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그는 《빌트》, 《분테》, 《포кус(Fokus)》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다. 《분테》와 《포кус》를 발행하는 ‘후베르트 부르다 미디어(Hubert Burda Media)’ 기업과는 재판 전 조정과정에서 손해배상액을 합의했지만, 《빌트》와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이 사건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먼저 2015년 9월 30일 쾰른 주 법원은 《빌트》에게 손해배상금 63만 5천 유로를 카헬만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당시 독일 법원이 한 명의 피해자에 대해 판결한 가장 높은 금액의 손해배상금이었으며,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했다. 카헬만 측은 《빌트》에게 이 손해배상금은 매우 적은 금액이라고 비판했으며, 《빌트》 또한 1심 판결 이후 “카헬만에게 100만유로는 안 되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반목을 이어갔다. 2심인 쾰른 주고등법원에서는 《빌트》가 보도한 40여건의 기사를 근거로 손해배상액이 51만 3천 유로로 책정되었다. 1심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수치로 이중 39만 5천 유로는 손해배상액이며, 11만 8천 유로는 이자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법원은 “《빌트》 신문과 《빌트》 온라인 보도는 허용된 선을 자주 넘었고, 카헬만의 인격권을 심하게 손상시켰다”면서 “특히 카헬만이 교도소 마당에 있는 사진을 보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쾰른 주고등법원은 이 판결과 함께 연방대법원에 대한 상고도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빌트》는 연방대법원에 상고 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기에 이른다. 2018년 4월 14일 연방대법원은 《빌트》의 항고를 기각, 쾰른 주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언론 보도로 인해 삶이 파괴된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하인리히 뵐(Heinrich Böll)의 소설 〈카타리나 볼름의 잃어버린 명예〉에 빗대어 ‘요르그 카헬만의 잃어버린 명예’로 불렸다. 독일 언론 분야 전문매체인 《MEEDIA》³⁰⁾는 “사람들이 좋아 하든 좋아하지 않든 황색신문은 그들이 늘 하던대로 보도했다”면서 “언론이 소극적으로

보도했었다면 카헬만은 무죄 판결 이후 ARD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거의 불가능하다. 이걸 사회적 문제였고, 언론 보도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언론이 보도를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보도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였으며 빌트는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4) 외국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훼손, ‘뵘머만 스캔들(Böhmermann-Affäre)’

2016년 3월 31일 독일 제2공영방송 ZDF의 하위 채널인 ‘ZDFneo’에서 방영하는 시사 풍자 프로그램 〈Neo Magazin Royale〉에서 코미디언 얀 뵘머만(Jan Böhmermann)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터키 대통령을 비하하는 풍자시를 낭송했다.

“비겁하고 고집스러운 놈, 그는 에르도안, 대통령. 그의 거시기는 역겨운 되너(케밥) 냄새가 나, 차라리 돼지 방귀 냄새가 더 좋아. 가면을 쓰고서 소녀를 때리고, 염소들과 성교하며 소수자를 짓누르는 걸 가장 좋아하는 사람. 쿠르드족들을 밟아버리고, 기독교도들을 후려치며, 아동 포르노를 보기도 하지(후략).”

표현 수위가 높은 풍자시로 뵘머만은 국내외로 강한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2016년 4월 8일 뵘머만을 형법상 외국 원수 모욕죄로 고소하기에 이른다. 당시 형법상 외국원수에 대한 모욕죄는 독일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형사소추 대상이 되는데, 독일 정부가 4월 13일 뵘머만에 대한 형사소추를 전격 허용하면서 이 사건은 ‘뵘머만 스캔들’로 불리며 세계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4월 14일 공영방송국 ZDF는 뵘머만이 낭독한 풍자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형법의 경계를 넘지 않았다는 공식적인 의견표명서를 발표한다. ZDF 측은 헌법에 보장된 풍자의 자유는 공공의 관심에 따라 거친 표현 형식도 포함하고 있으며, 풍자는 의도적으로 과도한 묘사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감정과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한 이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중들의 시선이 집중된 이 사건에 대해 독일 검찰은 결국 10월 4일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³¹⁾ 하지만 뵘머만은 형법적 판단과 별개로 민사

30) Altroge G. (2015, 9, 30). Die verlorene Ehre des Jörg Kachelmann - und welche Rolle die Medien dabei (nicht) spielten. 〈Meedia〉. Retrieved from <https://meedia.de/2015/09/30/die-verlorene-ehre-des-joerg-kachelmann-und-welche-rolle-die-medien-dabei-nicht-spielten>

소송을 피해갈 수 없었고, 민법상의 판단은 다르게 나왔다.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2016년 5월 17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제기한 뵈머만의 풍자시 낭독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풍자시의 일부 표현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예술과 표현의 자유와 신청자의 인격권을 고려했을 때 풍자시의 일부 표현은 완전한 비방이며, 틀을 갖춘 모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인종적인 편견과 종교적 비방, 성적 표현들은 경계를 넘어선 부분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을 조롱했고, 에르도안은 이 모욕을 감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적시했다.

이에 에르도안 대통령은 풍자시 일부가 아닌 전체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안 소송을 제기했으며, 뵈머만은 시의 전체적 맥락을 평가하고 에르도안이 그를 비판하는 이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고려되어야 한다고 항변했다. 2017년 2월 10일 함부르크 주법원은 예술과 풍자의 자유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면서 가처분 인용 부분을 그대로 인정했다. 특히 에르도안을 성도착적으로 묘사한 것과 무슬림에게 돼지고기가 지니는 의미를 고려했을 때 돼지를 이용한 표현은 에르도안에게 더욱 모욕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2018년 5월 15일 함부르크 주고등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³²⁾ 뵈머만은 이 판결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며 독일 연방대법원은 물론 필요하다면 연방헌법재판소에도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인해 외국 원수의 모욕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해서는 연방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형법 조항이 폐지되었다. 그동안 독일 사회에서 표현 수위가 강한 풍자도 폭넓게 인정되었던 만큼 앙겔라 메르켈 정부가 뵈머만에 대한 형사소추를 허용한 것에 대한 비판도 거세게 일었다. 메르켈 총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중시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긴 했지만, 검찰에게 형사소추를 허가한 것 자체가 이미 뵈머만의 풍자시를 범죄적 행위로 보는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에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기사를 구속하는 등 언론탄압으로 대외적인 비판을 받고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목소리에

31) Keller, A. (2016, 10, 4). Pressemeldung Staatsanwaltschaft Mainz. Retrieved from <https://stamz.justiz.rlp.de/de/startseite/detail/news/detail/News/pressemeldung-staatsanwaltschaft-mainz-1>

32) 독일 판례: *OLG Hamburg*, 15.05.2018 - 7 U

더 힘이 실렸다. 이 사건은 현재 형사적 판단과 민사적 판단이 엇갈리면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풍자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은 계속해서 진행 중인 상태이다.

(5) 반론권 청구권, 《슈피겔》과 토마스 고트샬크(Thomas Gottschalk) 판결

《슈피겔》은 2013년 1월 독일 제2공영방송 ZDF의 유명한 TV쇼 ‘베텐 다스(Wetten, dass...?)’의 진행자인 고트샬크가 의도적으로 특정 회사의 광고 문구를 말하는 등 불법광고(Schleichwerbung)를 했다고 보도했다.³³⁾ 슈피겔은 기사 발행 전 고트샬크 측의 해명을 듣고자 했지만, 고트샬크의 변호사는 이를 거부했고 통화상의 대화도 기사에 신지 말 것을 요구했다. 결국 기사는 고트샬크 측의 해명 없이 보도되었고 이후 고트샬크는 정식으로 반론보도를 요청했다. 슈피겔은 이를 거부했다. 기사 보도 이전에 충분히 해명의 기회를 줬다는 이유였다. 결국 이 사건은 ‘반론권(Gegendarstellung)’을 둘러싼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먼저 함부르크 주법원은 2013년 3월 주언론법의 반론권 청구 조항에 따라 《슈피겔》이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다. 법원은 《슈피겔》이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도 역시 고트샬크의 반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보도 이전에 의견표명의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론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은 함부르크 고등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슈피겔》은 법원의 결정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연방헌법재판소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지만 2018년 4월 9일 《슈피겔》의 제소를 기각하면서 당사자의 반론권에 손을 들어줬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언론 보도의 당사자가 보도 이전에 의견을 표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면서 “반론권 청구는 오직 사실을 주장할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³⁴⁾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진실이 아닌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반론권’에 힘을 실어준 판결

33) Spiegel (2013, 1. 12). Schleichwerbung bei “Wetten, dass..?”

Die dubiosen Deals der Gottschalk-Brüder. <Spiegel> Retrieved from <http://www.spiegel.de/wirtschaft/unternehmen/spiegel-die-gottschalks-boten-schleichwerbung-bei-wetten-dass-an-a-877200.html>

34) 독일 판례: BVerfG, 09.04.2018 - 1 BvR 840/15

로 해석되고 있다. 언론 보도의 대상자들은 보도 전 언론의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고, 실제로 이루어진 언론 보도와 그 보도를 접한 독자들의 반응을 먼저 살펴본 후 반론 보도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공인에 대한 비판 및 고발 보도를 할 때 ‘사전에 해명할 기회를 제공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는 식의 표현을 많이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독일의 반론권 해석에 따르면 보도의 당사자는 언론에 미리 해명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언론 또한 단순히 해명의 기회를 준 것만으로 언론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VI. 결론

독일 언론평의회를 ‘언론평화 구제 제도’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언론 피해자보다는 언론 내부의 윤리와 자정작용을 위한 시스템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독일 언론평의회에 접수되는 불만 사례는 언론과 독자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언론 윤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가 많으며, 언론 보도로 인해 손해를 본 피해자가 직접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드물다. 독일 언론평의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인 ‘공개경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배상이나 피해 구제를 해주지 못한다. 독일 언론평의회 ‘공개경고’를 자주 받는 언론사 중 하나인 《빌트》는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성실히 알리면서도 해당 보도를 수정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언론 피해자가 언론 보도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결국 민형사상의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실제로 독일 사회나 언론계에서 이슈가 된 많은 사건들이 독일 언론평의회 심의보다는 언론 관계 소송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알려졌으며, 사안의 중요성도 더 무겁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시스템과 그 효력이 가지고 있는 차이 때문일 것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함께 언론과 온라인 플랫폼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와 책임 소재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독일이 2017년 9월 〈네트워크집행법〉을 제정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조함에 따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언론사의 책임 소재는 오히려 불분명해지거나 역할이 중복되고 있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온라인 언론 환경에 발맞추기 위해서 조

직과 언론윤리강령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제도를 바꾸기에는 현상의 속도가 더 빠르며 변화의 폭도 큰 게 사실이다. 독일 언론평의회가 좀 더 실효성 있고 강력한 시스템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법적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 자율규제기구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독일 언론평의회는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독일 언론평의회가 담당하지 않는 영역을 규정하기 위해 강력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오히려 사회 전반적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위험성이 높아진 것이다. 레거시 미디어가 자신들의 시스템 안에서 외부 개입을 막는 데 치중하는 동안 언론의 경계가 불분명해진 네트워크 시대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인격권의 충돌 양상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독일 언론평의회가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 역할과 의미는 점점 더 축소되고 또 다른 언론피해 구제 시스템에 그 자리를 내줘야 할 것이다.

- Baum, A. (2010). Deutscher Presserat. In C. Schicha, & C. Brosda (Hrsg.), *Handbuch Medienethik* (186-216).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 Bermes, J. (1989). Deutscher Presserat nach der Reform. *Ohne Biß auch mit den dritten Zähnen*. In *Die Feder*(10), 43-47.
- Bermes, J. (1991). *Der streit um die presse-selbstkontrolle: Der deutsche presserat: eine untersuchung zur arbeit und reform des selbstkontrollorgans der bundesdeutschen presse*. Baden-Baden: Nomos.
- Deutscher Presserat (1993). Verhaltensgrundsätze für Presse/Rundfunk und Polizei zur Vermeidung von Behinderungen bei der Durchführung polizeilicher Aufgaben und der freien Ausübung der Berichterstattung. Retrieved from https://www.presserat.de/fileadmin/user_upload/Stellungnahmen/Verhaltensgrundsätze_Presse_Polizei.pdf
- Deutscher Presserat (2012). *Jahrbuch mit der spruchpraxis des jahres 2011*. Konstanz: UVK.
- Deutscher Presserat (2015). Satzung und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Presserats. Retrieved from http://www.presserat.de/fileadmin/user_upload/Downloads_Dateien/Satzung_StandSep.2015_web.pdf
- Deutscher Presserat (2016). Jahresbericht 2016. Retrieved from http://www.presserat.de/fileadmin/user_upload/Downloads_Dateien/Jahresbericht_2016.pdf
- Deutscher Presserat (2017). Beschwerdeanleitung. Retrieved from https://www.presserat.de/fileadmin/user_upload/Downloads_Dateien/Beschwerdeanleitung.pdf
- Deutscher Presserat (2017). Chronik des Deutschen Presserats 1956 - 2013. Retrieved from http://www.presserat.de/fileadmin/user_upload/Downloads_Dateien/Chronik2013_web.pdf
- Deutscher Presserat (2017). Die Finanzierung der Presseselbstkontrolle. Retrieved from http://www.presserat.de/fileadmin/user_upload/Downloads_Dateien/FinanzierungPresseselbstkontrolle.pdf

- Deutscher Presserat (2017). Jahresbericht 2017. Retrieved from https://www.presserat.de/fileadmin/user_upload/Aktuelles/Jahresbericht_2017_web.pdf
- Deutscher Presserat (2017). Publizistische Grundsätze (Pressekodex). Richtlinien für die publizistische Arbeit nach den Empfehlungen des Deutschen Presserats. Retrieved from http://www.presserat.de/fileadmin/user_upload/Downloads_Dateien/Pressekodex2017light_web.pdf
- Heimann, F. (2009). *Der Pressekodex im Spannungsfeld zwischen Medienrecht und Medienethik*. Frankfurt am Main: Lang.
- Münch, H. (2002). *Freiwillige Selbstkontrolle bei Indiskretionen der Presse: Ein Vergleich des deutschen und englischen Rechts(1. Aufl.)*. Baden-Baden: Nomos.
- Musialek, H. (1980). *Press Council und Deutscher Presserat: Form und Funktion der Presseselbstkontrolle in Großbritannien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Philipps-Universität zu Marburg.
- Schade, M. (2017. 03, 23). "Auch die neue Richtlinie ist tendenziös": Redaktinnen kritisieren die Aktualisierung der Pressekodex-Ziffer 12.1. <Meedia>. Retrieved from <http://meedia.de/2017/03/23/auch-die-neue-richtlinie-ist-tendenzioses-redaktionen-kritisieren-die-aktualisierung-der-pressekodex-ziffer-12-1>
- Schiwy, P., Schutz, W., Dorr, D., Barton, D., & Di Fabio, U. (2010). *Medienrecht: Lexikon für Praxis und Wissenschaft (5. Aufl.)*. Köln: Heymann.
- Soehring, C. (1999). *Vorverurteilung durch die Presse: Der publizistische Verstoß gegen die Unschuldsvermutung*. Baden-Baden: Nomos.
- Stapf, I. (2006). *Medien-Selbstkontrolle: Ethik und Institutionalisierung*. Konstanz: UVK.
- Tillmanns, L. (1998). *Probleme der Kriminalberichterstattung in der Arbeit des Deutschen Presserates*. In D. Dölling, & E. Behrschmidt (Hrsg.), *Kriminalberichterstattung in der Tagespresse: Rechtliche und kriminologische probleme*. Heidelberg: Kriminalistik-Verl.
- Wehner, O. (2017). Vierteljahresbericht des Intendanten über Programmbeschwerden und wesentlichen Eingaben zum Programm, *Westdeutscher Rundfunk Köln*, p.8.

I. 첫머리에

영국은 ‘명예훼손 소송의 천국’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전통적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유리한 명예훼손법을 운용해온 나라이다. 수정헌법 1조에 근거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과 달리 영국의 명예훼손법은 당사자의 명예 보호에 치중하는 쪽으로 발전해왔다. 보통법(common law)에 따라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는 기사나 출판물 등에 등장한 표현 중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있다는 점만 입증하면 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Bennett, 2018; Groppo, 2016). 그래서 소송에서 패소할 소지가 높은 미국보다 원고에게 유리한 영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며 사법 절차를 남용하는 ‘명예훼손 소송 투어(libel tourism)’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됐다(Nielsen, 2015).

하지만 2014년을 기점으로 영국의 명예훼손법과 언론중재제도는 큰 변화를 맞이했다. 2014년 1월 1일,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보호에 중점을 둔 ‘2013 명예훼손법(The Defamation Act 2013)’이 시행됐고, 같은 해 9월, 언론분쟁 중재처리기관인 독립언론표준기구(Independent Press Standards Organisation, 이하 IPSO)가 새롭게 출범했다. 2013 명예훼손법은 제1조에 “중대한 손해(serious harm)”라는 문구를 넣어 명예훼손 성립 조건을 과거보다 까다롭게 만들었고, 제4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명예훼손 표현이 공익(a matter of public interest)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피고가 입증하면 면책이 가능한 조항을 삽입했다(The Defamation Act 2013). IPSO는 언론분쟁 중재처리기관인 언론고충처리위원회(Press Complaints Commission, 이하 PCC)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 단체의 역할을 대체하기 위해 설립됐다.

본 글 제2장에서는 먼저 IPSO의 설립 과정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IPSO가 언론분

* 영국 브리스톨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surisuri0@gmail.com

쟁 중재처리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7년 IPSO의 주요 중재 사례를 분석하고, 자율규제 시스템의 한계를 짚어본다. 제3장에서는 2013 명예훼손법의 핵심 내용인 ‘중대한 손해’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또 2013 명예훼손법 시행 이후 중대한 손해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최근 소송 두 건(쿡·선 데이머러 소송, 라쇼·인디펜던트 소송)의 판례를 분석하고, 이 법이 어떻게 영국 언론의 자유에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II. 영국 언론표준기구(IPSO)

1. 영국 언론표준기구(IPSO)의 설립

2014년 9월 8일, 영국 언론분쟁처리기관인 PCC를 대체할 기관으로 IPSO가 출범했다. 지난 23년 8개월 동안 PCC는 영국 언론의 자율규제 시스템을 대표하는 모델로서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PCC는 영국 주요 언론사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자율규제로 언론 분쟁을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PCC가 사라진 가장 큰 이유는 독립성 부족이었다. 언론계에 재원을 의존하는 등 PCC가 독립적인 언론 규제 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그 대안으로 새 규제 시스템인 IPSO가 등장했다(Middleton, 2017).

IPSO의 활동 현황에 대해 논하기 전에 IPSO의 설립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IPSO의 설립은 ‘레비슨 청문회(Leveson Inquiry)’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2011~2012년 열린 레비슨 청문회에서 자율규제 기구인 PCC의 심각한 비효율성이 드러났고, 그 결과 IPSO가 PCC의 자리를 대체했기 때문이다. 레비슨 판사가 위원장으로 임명된 레비슨 청문회를 통해 영국 언론사인 ‘뉴스오브더월드’의 기자가 살인 사건 피해자의 휴대전화 음성 사서함을 해킹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 사건 이후 영국에서는 언론의 취재 윤리와 자율규제 시스템을 둘러싸고 큰 논란이 일었다. 이 청문회에서 언론분쟁처리기관인 PCC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됐는데, 그 주요 원인이 앞서 언급한 PCC의 독립성 부족이었다.

레비슨 판사는 청문회 최종 요약보고서(Executive summary)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PCC는 언론 규제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그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 현실에서는 언론 불만처리기관일 뿐이다. 독립성 부족이 문제다. PCC의 규칙을 만드는 기자윤리위원회(Editors’ Code Committee)는 언론을 위한 집단이며, 이 단체는 PCC와는 분리된 기관이다. 하지만 기자윤리위원회 위원이 PCC의 재원을 담당하는 언론표준재정위원회(the Press Standards Board of Finance)에 의해 임명되고, 이 조직은 언론사의 임원급 기자들로 구성돼 있다. 또 언론표준재정위원회는 PCC의 예산과 위원장 임명권까지 갖고 있다. 재정적으로도 PCC는 빠듯한 예산으로 운영됐으며,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데도 자원 부족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¹⁾

레비슨 청문회 이후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자율규제 기구’의 탄생이 시급해졌고, 왕실칙령(Royal Charter)을 근간으로 PCC를 대체할 새 규제기관을 설립하기로 하면서 IPSO가 탄생했다.

2. 영국 주요 매체들의 IPSO 가입 거부

IPSO는 영국 법에 따라 공동체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로 등록됐다. 공동체이익회사는 자산이나 이익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 기업 같은 조직을 말한다. 가입을 원하는 신문사, 온라인 매체 등은 자발적으로 IPSO에 가입해 회원계약(Scheme Membership Agreement)을 맺는다. 자발적 계약이지만 일단 회원이 되면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 이 계약을 맺은 회원사들은 자율규제 시스템인 IPSO의 규칙을 법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바꿔 말하면, 과거 PCC와 달리 IPSO는 언론 윤리를 위반한 경우 회원 언론사를 조사하고, 제재를 가하는 식으로 엄격한 규제자(strict regulator)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IPSO 취임식에서 앨런 모스 의장은 “IPSO는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통해 언론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우리의 역할은 독립 규제 기관으로서 언론의 권력 남용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돕고, 언론이 대중을 대상으로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Duffy, 2015).

1) GOV.UK (2012). An inquiry into the culture, practices and ethics of the press, Executive summary.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n-inquiry-into-the-culture-practices-and-ethics-of-the-press-executive-summary>

IPSO가 2015년 처음 발간한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운영 첫해인 2014년 회원사로 가입한 언론사는 총 2,668곳으로 이중 인쇄 매체가 1,503곳, 온라인 매체는 1,165곳이었다. IPSO는 연간보고서에서 “더 선과 데일리메일, 텔레그래프, 타임즈 등을 비롯해 영국 언론사 90%가 회원사로 등록돼 있다”고 설명했다(IPSO, 2015). 2017년 말 기준으로 IPSO 가입 언론사는 인쇄 매체 1,500여 곳, 온라인 매체 2,500여 곳으로 온라인 매체 회원사 숫자가 2014년보다 1,000곳 이상 증가했다(IPSO, 2017).

그러나 IPSO는 출범 초기부터 영국의 유력 일간지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서 영향력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영국의 주요 매체인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 가디언(The Guardian),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 옵저버(The Observer) 등이 IPSO 회원사로 가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언론 분쟁을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Duffy, 2016). 이들이 내세운 표면적 이유는 뉴스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 유통되면서 뉴스 독자가 영국 국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당시 파이낸셜 타임즈의 편집국장이었던 리오넬 바버는 “우리 독자의 4분의 3 이상이 영국에 거주하지 않는다. 우리의 주요 경쟁사는 글로벌 미디어이며, 그들 역시 자체적인 독립 규제 시스템으로 언론 분쟁을 처리하고 있다”고 영국에만 국한된 IPSO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Press Gazette, 2014). 가디언 역시 “영국 국경 안에 제한된 언론 규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서 뉴스가 글로벌 독자에게 유통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The Guardian, 2014).

하지만 이들이 IPSO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IPSO의 독립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출범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영국 의회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Middleton, 2017). IPSO가 출범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는 왕실칙령(Royal Charter)이었다. 왕실칙령은 영국 의회의 동의 없이 왕실자문위원회(Privy Council)의 승인을 얻어 효력을 인정받는 법이다. 이에 가디언 등 언론사들은 언론 규제기관을 설립하는 결정 과정임에도 언론사의 참여가 배제됐다고 줄곧 불만을 표출해왔다. 또 이들은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언론을 보호하는 것과 거리가 먼 왕실칙령을 통해 설립된 IPSO에 가입한다면 언론의 자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The Guardian, 2014).

3. IPSO의 역할

IPSO의 핵심 역할은 IPSO에 가입한 회원 언론사들이 언론인 실천 강령(Editors' Code of Practice)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IPSO에 가입하지 않은 가디언, 파이낸셜 타임즈 등 언론사들도 자발적으로 언론인 실천 강령을 준수한다. 언론인 실천 강령은 기자윤리위원회(Editors' Code of Practice Committee)가 제정하고 수정한다. 위원회는 매년 내용을 개정하는데, IPSO를 비롯해 언론인, 일반 대중, 의회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개정안을 IPSO가 수용하면 그때부터 수정된 언론인 실천 강령이 시행된다. 또 언론 취재 관행과 기술 발전, 독자들의 요구 등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실천 강령을 수정한다.

기자윤리위원회는 IPSO와 별도 조직이지만 IPSO 회장과 대표가 기자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된 조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IPSO; Middleton, 2017; Duffy, 2015). 게다가 언론인 실천 강령 헌장(Editors' Code of Practice Committee Constitution)에 따르면 기자윤리위원회에는 총 15명의 위원이 있는데, 10명은 신문사, 잡지, 온라인 매체에 종사하는 임원급 기자들이고 이 중 5명만 언론에 종사하지 않는 독립 위원들이다. 이 때문에 기자윤리위원회가 언론의 입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Editors' Code of Practice Committee Constitution, 2018).

언론인 실천 강령은 1991년 이후 30차례 넘게 개정됐고, 가장 최근 개정된 강령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언론인 실천 강령은 총 17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Editors' Code of Practice, 2018).

- 1) 정확성: 기사 오류 또는 오도하거나 왜곡된 내용은 신속하고 빠르게 수정해야 하며, 사과문을 게재해야 한다. IPSO가 중재에 개입할 경우, 규제기관인 IPSO가 요청하는 대로 수정해야 한다.
- 2) 사생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과 가족생활, 가정, 의료 정보, 인터넷 사생활 등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3) 성추행: 취재원이 원치 않으면 기사는 질문, 전화 인터뷰, 사진 촬영 등을 강요할 수 없고, 취재원이 취재 장소에서 떠나라고 할 경우 그 장소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취재원이 요청하면 소속 매체와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 4) 개인의 슬픔과 충격에 대한 보도: 보도 내용이 개인적 슬픔과 관련이 있을 경우 조의를 표하며 취재에 임해야 하며, 기사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다만, 이 조항 때문에 기사가 소송 절차를 보도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생겨서는 안 된다.
- 5) 자살 보도: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 모방 자살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자살 방법 등을 묘사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 6) 아동: 기자는 아동의 사생활에 대해 구체적인 보도를 하기 위해 자신의 명성이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 7) 아동 성범죄 사건 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언론은 16세 이하 아동이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이거나 목격자일 경우 절대 이들의 신분을 기사를 통해 노출할 수 없다.
- 8) 병원: 기자는 병원 비공개 지역 또는 유사한 성격의 기관에 출입하기 전에 신분을 밝히고 병원 관계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 9) 범죄사건 보도: 기사 내용과 관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범죄 혐의를 받는 인물의 가족이나 친척의 신분을 그들의 동의 없이 공개해선 안 된다.
- 10) 취재 시 몰래카메라 등의 장치 사용 금지: 언론은 몰래카메라 또는 도청 장치를 이용해 취재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휴대·유선 전화를 도청하거나 메시지, 이메일을 몰래 훑쳐봐서도 안 된다. 또한 디지털 정보라고 할지라도 동의 없이 접근할 수 없다.
- 11) 성범죄 사건 피해자 보도: 언론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성범죄 사건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할 수 없다.
- 12) 차별: 언론 보도 시 개인의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취향 또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이나 장애에 대한 경멸적 언급을 피해야 한다.
- 13) 금융 정보와 언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언론인은 기사 취재를 통해 알아낸 금융 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도 안 된다.

- 14) 기밀 정보의 보호: 언론인은 기밀 정보의 출처를 보호할 도덕적 책무가 있다.
- 15) 범죄자와 금전 지급: 특정 범죄를 활용하거나 범죄를 미화하여 보도해서는 안 되고, 사진·정보를 얻기 위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 또는 범죄자의 주변인에게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 16) 공익: 공익보도에는 범죄 사실 보도,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보도,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보도, 오심(miscarriage of justice) 공개, 대중과 관련된 부도덕적인 행동에 대한 보도 등이 해당된다.

IPSO가 PCC와 다른 점은 스탠다드(Standards)라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스탠다드 제도는 IPSO 가입 언론사가 언론인 실천 강령을 어떻게 준수하고 있으며, IPSO가 개입해 중재한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매년 연차보고서(annual statement)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IPSO는 “스탠다드 같은 제도는 지금까지 어떤 언론 규제기관도 도입하지 않았던 제도다. 언론사들이 기자윤리강령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언론중재기관인 IPSO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IPSO, 2015).

IPSO는 회원사들이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와 모니터링을 한다. 이 과정에서 언론인 실천 강령을 위반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IPSO는 해당 언론사를 대상으로 스탠다드 조사(Standards Investigation)를 실시한다. 만약 위반 정도가 심각하면 IPSO가 제재를 가하기도 한다.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는 신문이나 해당 매체에 IPSO의 결정문을 게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최대 100만 파운드(한화 14억 4,000만 원 상당) 벌금 부과, 스탠다드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청구, IPSO 요구 사항 준수 여부 내용을 담은 분기별 보고서 제출 요구, IPSO 회원 자격 박탈 등 다양한 강도의 제재가 있다.

4. 중재 절차

IPSO 언론 중재 서비스의 주된 목적은 중재 신청자와 언론사 등 양측이 분쟁을 빠르게 합의해 피해자가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IPSO의 조정 및 중재

과정은 크게 2단계로 나뉜다. 언론 중재 신청자와 언론사가 IPSO의 개입 없이 직접 조정하는 단계와 IPSO가 개입해 중재하는 단계다. 양측이 신속한 조정에 실패하면 그때 IPSO가 해당 사건에 개입해 언론사가 보도 과정에서 언론인 실천 강령을 준수했는지 면밀하게 조사한다.

일단 IPSO에 접수된 모든 사건은 중재 사무관(Complaints Officer)에게 배정되며, 중재 사무관은 해당 기사의 언론인 실천 강령 위반 사항을 먼저 확인한다. 만약 기사에 어떠한 위반 사항도 발견되지 않으면 중재 신청을 기각하고 중재 신청자에게 기각된 이유를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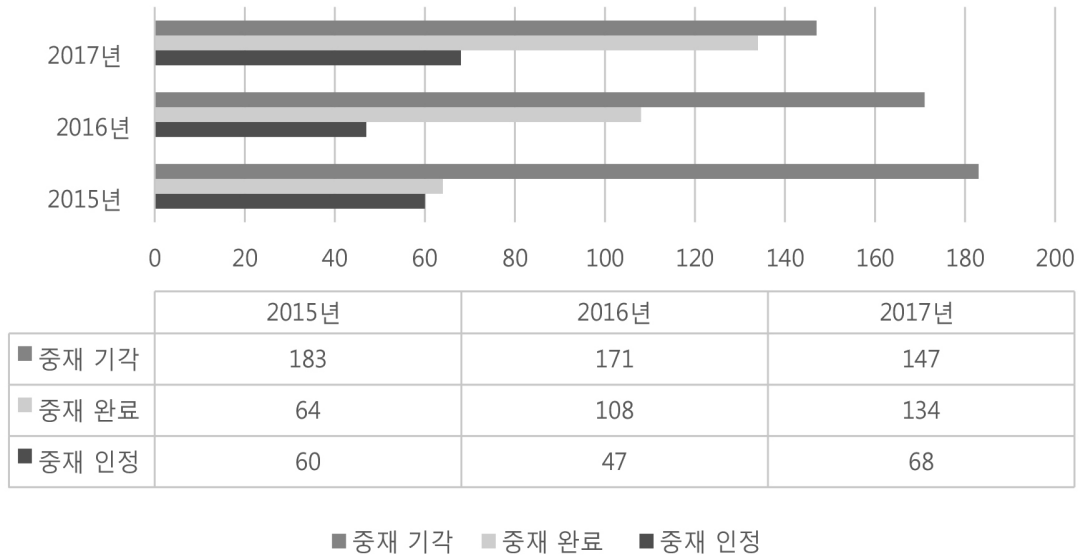
또 중재 신청자가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에 먼저 접촉하지 않고 IPSO에 바로 신청한 경우에는 IPSO가 언론사에 연락해 직접 합의를 하도록 장려한다. IPSO는 “중재 신청자와 언론사간 직접 협상하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IPSO가 개입하는 것보다 더 빨리 합의에 이를 수 있고, 배상 과정도 빨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측이 28일 안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때에는 IPSO가 중재에 개입한다(IPSO, 2015).

5. IPSO 2015~2017년 언론 조정·중재 신청 통계

IPSO에 접수된 조정·중재 사건을 다루는 곳은 언론분쟁위원회(IPSO Complaints Committee)다. 언론분쟁위원회는 의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과 5명의 업계 대표(언론인 출신)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언론분쟁위원회의 역할은 기자윤리강령 위반 소지가 있는 IPSO 회원사의 보도에 대한 불만을 중재하는 것이다. 또한 이 위원회는 기자윤리강령을 위반한 기사에 대한 제재 수준을 결정하고 기사 수정 요구 결정 등을 내린다(IPSO, 2015).

2015년 한 해 동안 IPSO에 접수된 언론조정·중재신청 건수는 총 12,278건으로 이중 IPSO가 개입해 중재한 분쟁은 총 307건이었다. 가입 언론사 숫자가 늘면서 매년 IPSO에 접수되는 언론조정·중재신청 건수도 급격하게 늘었다. 2016년에는 전년도보다 17.7% 포인트 증가한 수치인 14,455건이 접수됐고, 2017년에는 20,903건으로 2016년보다 44.6% 포인트나 증가했다.

[그림 1] IPSO가 개입한 언론 중재 사건 연도별 통계



출처: IPSO 연간 보고서 (IPSO Annual Report), 2015; 2016; 2017.

[그림 1]은 지난 3년간 IPSO가 발행한 연간보고서를 분석해 도출한 IPSO 개입 중재 사건의 연도별 통계다. ‘중재 인정’은 IPSO가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언론사에 사과문 등 시정 조치를 내린 것이고, ‘중재 완료’는 IPSO가 중재에 직접 개입해 피해자와 언론사 양측이 합의하도록 이끈 것이다. ‘중재 기각’은 피해자의 주장을 기각하고, 언론사의 손을 들어준 결정이다. 지난 3년간 전체 언론 중재 신청 건 중 인정된 비율은 약 17.7%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전체 307건 중 19.5%(60건)가 인정됐고, 2016년엔 326건 중 14.4%(47건), 2017년은 19.4%(68건)가 인정됐다.

6. 2017년 IPSO의 주요 중재 사례

(1) 사생활 침해 사례

2017년 IPSO는 공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보도는 언론의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대중에게 공개되는 행사가 아닐 경우 공인의 사생활이라 할지라도 언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2017년 5월, 영국 해리 왕자는 메일 온라인(Mail Online)이 자신이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여 수영복 차림으

로 개인 소유의 해변에 있는 모습을 동의 없이 보도했다며 IPSO에 중재 요청을 했다. 메일 온라인은 “해리 왕자의 사진을 찍은 곳은 대중에게 개방된 해변”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IPSO 중재위원회는 해리 왕자가 개인 소유의 해변에서 사적인 휴가를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공인이라도 이 같은 상황에서 사생활은 지켜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언론의 사진 보도는 용납될 수 없고, 공익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위원회는 언론인 행동 강령(Editor’s Code) 제2조 ‘사생활’ 규정에 따라 불만이 이유 있음을 받아들였고, 메일 온라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결정 내용을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반면 일반인이라도 공공장소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있다가 언론에 보도됐을 경우엔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는 조정 결과가 나왔다. 2017년 7월, 홀리 헌터라는 여성은 영국 언론사 더 선(The Sun)이 공공장소에서 자신이 비키니 차림으로 일광욕을 즐기는 모습을 촬영해 보도하는 바람에 사생활이 침해됐다고 사건 중재를 요청했다. 홀리는 더 선이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고 보도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더 선은 “당시 홀리가 있었던 영국 브라이턴의 해변은 개인 소유의 해변이 아니며, 많은 사람으로 북적이는 공공 해변이었다”며 해당 기사가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여름철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도하는 것은 영국 언론의 전통적인 취재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IPSO 중재위원회는 홀리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은 점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사생활 침해 부분은 기각했다. 위원회는 “사진이 촬영된 장소는 공공장소였고, 중재 신청 당사자 역시 공공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길 때 높은 수준의 사생활 보호를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재 신청을 기각했다. 해리 왕자 수영복 사건은 언론인 윤리 강령 제2조 사생활 보호 규정에 어긋나는 반면, 홀리 사건은 정황적 증거를 볼 때 언론이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림 2] 2017년 7월, 더 선(The Sun)이 영국 브라이턴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도한 사진



출처: 더 선(The Sun), 2017.²⁾

(2)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신상 노출 사례

성폭행 사건 보도 시 언론이 피해자의 사진이나 이름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구체적 정보를 공개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추론할 수 있다면 언론의 잘못이라는 중재 결과도 나왔다. 2017년 한 남성이 성폭행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파이슬리 데일리 익스프레스(Paisley Daily Express), 가제트 파이슬리(The Gazette Paisley), 이브닝 타임즈(The Evening Times)가 사건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중재 신청을 했다. 이 남성은 중재 신청 이유로 기사에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가족의 반응, 피해자 나이, 사건이 미친 영향 등이 포함돼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 가능하다는 점을 문제 삼

2) Sandeman, G. (2017, 7, 16). TEMPERATURES SOAR Blighty can expect a 'perfect summer's day' as Brits gear up to bask in hot temperatures for the next three months. <The Sun>. <https://www.thesun.co.uk/news/4030139/brits-to-bask-in-hot-temperatures-for-the-next-three-months-with-mercury-rising-as-high-as-36c/>

았다. 또한 성폭행 사건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한 것도 언론이 보도 윤리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사들은 “중요한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보도하는 것이 마땅하며, 대중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언론사들은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는 일부러 뺐고, 기사를 통해서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IPSO 중재위원회는 “언론은 사회적 정의 추구의 원칙에 따라 사건을 보도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해당 사건이 성폭행이라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은 보도를 자제해야 하며, 언론이 공개한 정보가 조각조각 맞춰져 피해자를 추론할 수 있다면 이것은 언론 윤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다. 위원회는 해당 언론사들에 “중재 결과를 지면신문과 인터넷에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7. IPSO의 독립성 확보 필요성

IPSO가 출범한 지 4년이 됐지만 자율규제 시스템의 독립성을 둘러싸고 여전히 의문이 존재한다. IPSO가 독립성 부족이라는 비판에 시달리며 사라졌던 PCC의 출범 당시 모습과 비슷해 PCC와 비슷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1991년 1월 활동을 개시한 PCC도 IPSO처럼 이전에 존재했던 기관을 대체하기 위해 출범했다. PCC는 인쇄 매체 언론들이 보도한 기사에 대한 불만과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1990년 6월 언론위원회(Press Council)를 대체할 기관으로 설립됐고, 이후 PCC는 ‘빠르고, 자유롭고, 공정하게(fast, free and fair)’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사용자 친화적인 언론 분쟁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Middleton, 2017).

IPSO의 독립성 부족에 대해 제기되는 논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PCC가 그랬던 것처럼 IPSO 역시 규제 대상인 회원 언론사들이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IPSO가 회원 언론사에게 자금을 직접 지원받는 것은 아니다. IPSO의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규제자금 조달회사(The Regulatory Funding Company, 이하 RFC)라는 조직이 언론사들에 지원금을 받은 뒤 IPSO의 재원을 조달한다(Middleton, 2017; IPSO, 2018). IPSO는 운영비와 관련하여 “규제 대상인 언론

사와 직접 협상하지 않고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RFC가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운영비를 회원 언론사들의 지원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언론규제기관의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둘째, IPSO 이사회 위원에 전직 언론인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점도 IPSO의 독립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IPSO의 이사회는 전 항소법원 판사였던 앨런 모스 의장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의장을 포함한 7명은 언론계에 몸담지 않은 일반 위원이며, 나머지 5명은 규제 대상인 언론사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던 전직 언론인들이 업계 대표(industry representatives)로 선정돼 이사회에 참여한다. IPSO는 언론인 출신 위원 비율을 비언론인 출신 위원보다 줄여 이사회에서 언론 편향적인 결정이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으나, 여전히 언론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대해 앨런 모스 의장 역시 2016년 2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자율규제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고, 예전 시스템(PCC)보다는 훨씬 개선됐다고 생각한다.”며 IPSO의 태생적 한계를 시인했다(The Guardian, 2016).

셋째, IPSO의 근간인 언론인 윤리 강령을 만드는 기자윤리위원회(Editors' Code of Practice Committee) 의장도 언론인 출신이다. 현 기자윤리위원회 의장인 네일 밴슨은 2017년 7월 의장으로 임명될 당시 영국 미디어 그룹인 트리니티 미러(Trinity Mirror)의 편집장이었다. 밴슨 의장이 취임하기 전에는 데일리 메일(Daily Mail) 편집국장 출신인 폴 다크러가 2008년부터 9년간 기자윤리위원회 의장을 맡았다. 2008년 폴 다크러가 의장으로 지명되자 일부 언론에서 비판 목소리가 거세게 나왔다. “PCC 회원사인 데일리 메일 편집국장 출신인 폴 다크러가 언론인 윤리 강령을 만드는 기자윤리위원회 의장을 맡는 것은 객관성의 상실”이라는 것이다. 이는 IPSO가 PCC와는 다른 새로운 조직이라고 해도 여전히 회원 언론사의 압력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시사한다.

III. 영국 2013 명예훼손법과 주요 판례

1. 2013 명예훼손법과 ‘중대한 손해(serious harm)’

영국의 명예훼손법은 2014년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맞이했다. 당사자의 명예 보호를 중시했던 영국이 2013 명예훼손법(The Defamation Act 2013)을 개정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포함해 표현의 자유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2013 명예훼손법의 핵심은 제1조, ‘중대한 손해(serious harm)’에 대한 부분이다. 원고가 중대한 손해를 입증했을 때만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으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의 문턱을 높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2013년 명예훼손법 제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The Defamation Act 2013).³⁾

- (1) 진술이 원고의 명예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없으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 (2) 영리를 추구하는 누군가의 명예에 대한 손해는 그것이 그 당사자에게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야기했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면 중대한 손해가 아니다.

법 개정 전에는 원고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기사가 어떤 식으로 명예를 훼손했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Groppo, 2016). 하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원고가 재정적 손실이나 재정적 손실 가능성을 포함한 중대한 손해를 증명해야 명예훼손이 성립되므로 개정 이전보다 명예훼손 성립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제1조와 함께 제4조도 당사자의 명예보다 언론의 자유에 초점을 맞춘 조항으로 해석된다. 명예훼손법 제4조 ‘공익 사항에 관한 공표(Publication on matter of public interest)’에 따르면 피고가 명예훼손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 공익과 관련이 있거나 합리적인 이유로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음을 증명하면, 법원은 사건의 그러한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

영국 의회는 명예훼손 성립 기준을 높인 이 법안의 개정 목적을 “표현의 자유와 당사자의 명예 보호 사이에 공정한 균형을 잡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Parliament UK,

3) 2013 명예훼손법 전문: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3/26/contents/enacted>

2013)⁴⁾. 즉, 의회의 법안 개정 취지로 미뤄보면 영국 의회는 명예훼손 성립 요건의 문턱을 높이고(제1조), 공익 보도를 한 언론사의 면책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을 삽입해(제4조) 무분별한 소송으로 사법 절차가 남용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2013 명예훼손법 시행을 앞두고 이 법의 이해 당사자인 영국 언론은 “표현의 자유 보호 가능성을 높인 법”, “명예훼손 소송 투어(libel tourism)⁵⁾는 끝났다”라고 평가하는 등 명예훼손법 개정안 시행을 환영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BBC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언론인과 과학자, 연구자들은 과거에 기업이나 개인 등을 공정하게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불공정한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2013 명예훼손법이 시행되면 정당한 비판과 토론,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 법을 해석했다(BBC, 2013). 가디언도 당시 영국 법무부 장관의 인터뷰를 인용해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와 당사자의 명예 보호 사이에 공정한 균형을 유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The Guardian, 2013).

영국은 ‘명예훼손 소송의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전통적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명예훼손법을 시행해왔다. 닐슨(Nielsen, 2015)은 ‘명예훼손 소송 투어, 영국과 유럽연합 국제사법’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영국에서 명예훼손 소송이 끊이지 않는 주된 이유는 “영국 명예훼손법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기 때문”(269쪽)이라고 꼬집었다. 2013 명예훼손법 시행 전에는 원고는 기사나 출판물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있다는 점만 입증하면 되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됐다. 닐슨은 또 영국 법적 절차에 따라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재력이 있는 원고가 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그는 “재력가, 경제력을 갖춘 유명인들이 승소하기 위해 영국에 와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다”면서 “명예훼손 소송 투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270쪽)이라고 비판했다.

부호인 원고가 영국의 명예훼손법을 남용한 사례로 종종 거론되는 것이 미국 작가 레이첼 에른펠드(Rachel Ehrenfeld) 사건이다. 에른펠드는 ‘악마에게 자금 대기: 테러에 자금을 대는 방법과 이를 막는 법(Funding Evil: How Terrorism Is Financed and

4) 영국 의회 홈페이지에서 2013 명예훼손법의 주요 내용 요약본을 볼 수 있다.
<https://services.parliament.uk/bills/2012-13/defamation.html>

5) 다른 나라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원고가 승소할 확률이 높은 영국에 와서 소송을 제기하는 현상(Nielsen, 2015).

How to Stop It)이라는 책을 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재력가가 테러집단인 알카에다에 자금을 댔다고 주장했다. 책에 거론된 재력가가 미국 작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건 곳은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었다. 에른펠드의 책은 영국에서 단 23부만이 판매됐으나, 이 재력가는 승소 가능성이 높은 영국에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영국 법원은 에른펠드의 책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금으로 1만 파운드와 소송비용 8만 파운드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미국에서는 영국의 명예훼손법이 자국민의 표현을 자유를 위협한다며 비판 여론이 끊어올랐다(박아란, 2015).

2. 주요 판례: 쿡·선데이미러 소송 & 라쇼·인디펜던트 소송(Cooke v MGN & Lachaux v Independent Print Ltd)

본 글은 제4조 ‘공익 사항에 대한 공표’와 관련된 영국 법원의 판례가 부족하고, 2013 명예훼손법의 핵심 쟁점이 제1조인 점을 고려해 중대한 손해에 관한 판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013 명예훼손법 시행 후 중대한 손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주요 소송이 두 건 있다. 첫 번째 소송은 영국에서 ‘Cooke v MGN’으로 알려진 주택 임대업자 쿡과 영국 신문사 선데이미러(Sunday Mirror) 간 발생한 소송(이하 쿡·선데이미러 소송)이다. 2014년 8월 13일 고등법원⁶⁾ 판결이 나온 이 사건은 영국의 주택임대연합인 미드랜드 하트(Midland Heart)의 대표였던 원고 쿡 씨가 2014년 1월 선데이미러 기사를 명예훼손으로 제소한 것을 일컫는다. 고등법원(High Court) 판결로 종결된 이 소송은 영국에서 2013 명예훼손법 시행 이후 법원에서 중대한 손해에 대한 지침을 내린 첫 판례로 종종 거론된다. 사건을 담당한 빈 판사는 예심⁷⁾에서 “중대한 손해는 과거 명예훼손법보다 손해의 정도를 더 높인 것으로서, 상당한 손해가 아니라 중대한 손해를 입증했을 때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6) 우리나라에서 고등법원은 2심인 항소심을 다루는 법원을 뜻하지만, 영국(잉글랜드, 웨일즈) 사법 제도에서 고등법원은 1심을 담당한다. 즉, 민사 사건의 경우 고등법원(The High Court of Justice)이 1심을 맡고, 2심은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 상고심은 대법원(The Supreme Court)이 담당한다.

7) 예심(preliminary issue)은 본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판사가 재량권을 발휘해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에 의한 중재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예심에서 분쟁이 해결될 경우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 소송은 ‘라쇼·인디펜던트 소송’으로 2018년 11월 기준으로 현재도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⁸⁾ 이 사건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2013년 명예훼손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항소심 판결이 나온 사건이기 때문이다. 쿡·선데이미러 소송은 예심에서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라는 판결이 나온 뒤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지만, 라쇼·인디펜던트 소송은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아직도 사건이 현재 진행형이다. 이 두 소송의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영국 법원에서 어떻게 2013 명예훼손법의 핵심 규정인 중대한 손해를 해석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1) 쿡·선데이미러 소송

1) 사건 개요

주택 임대업자이자 주택임대업체 미드랜드 하트의 대표인 원고 쿡은 2014년 1월 26일자 선데이미러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선데이미러는 1면과 4면, 5면 전면을 할애해 “보수층 억만장자들, 베네피츠 스트리트에서 떼돈을 벌다 (MILLIONAIRE TORY CASHES IN ON TV BENEFITS STREET)”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기사 제목에 등장한 베네피츠 스트리트는 방송에 등장했던 영국 버밍엄 시의 제임스 터너가(James Turner Street)를 의미한다. 2014년 1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영국 방송사 채널 4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베네피츠 스트리트(Benefits Street)’는 제임스 터너가에서 정부보조금을 받으며 사는 저소득층의 삶과 이들에게 임대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건물주들에 대해 보도했으며, 방영 이후 영국 전역에 정부보조금 지급을 둘러싼 토론이 일어났다.

3면에 걸친 기사가 원고인 쿡과 미드랜드 하트를 겨냥해 비판한 것은 아니었다. 선데이미러가 중점 보도한 인물은 정부보조금을 받는 저소득층 밀집 지역인 제임스 터너가에 여러 건물을 소유한 임대업자 폴 니스칼이었다. 선데이미러는 니스칼이 “수리 상태가 열악하고, 곰팡이가 핀 방을 주당 215파운드(한화 약 32만 원)를 받고 임대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해 그가 저소득층을 상대로 부도덕하게 이윤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8) 이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2018년 11월 13~14일에 걸쳐 최종심인 대법원 재판이 진행됐고,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원고 쿡과 미드랜드 하트가 문제 삼은 부분은 5면에 등장한 기사의 두 문장이었다. 선데이미러는 국회의원의 인터뷰를 인용, “채널 4에서 저소득층, 약탈자로 묘사된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 세 채가 미드랜드 하트 주택 연합의 소유다. 그리고 이 단체 대표인 쿡 씨는 매년 17만 9천 파운드(한화 약 2억 6천 300만 원)를 벌고, 글로스터셔에 있는 대저택에서 산다”라고 보도했다. 쿡과 주택임대연합 미드랜드 하트가 위 문장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선데이미러를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⁹⁾

2) ‘중대한 손해’ 증명하지 못하면 명예훼손 불성립 판결 나와

쿡·선데이미러 소송은 고등법원 예심에서 선데이미러의 신문 2면에 해당 기사 내용과 관련한 사과문을 게재하라는 판결이 나면서 끝이 났다. 빈 판사는 해당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거나, 명예훼손을 야기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는 판결문에서 “사과문은 합리적인 독자들이 원고에 대한 비호의적인 이미지를 최소화하거나 없애기에 충분한 조치다. 또 이 사과문은 인터넷 상에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원고의 명예훼손 여부와 관련, 빈 판사는 “해당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특정한 증거를 찾을 수 없고, 중대한 손해를 추론할 수 없다. 또한 미래에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2013 명예훼손법 제1조의 ‘중대한 손해’ 삽입으로 인해 명예훼손 성립 조건이 예전보다 엄격해졌음을 증명하는 판례를 남겼기 때문이다(Bennett, 2018; Groppo, 2016). 빈 판사는 판결문에서 “중대한 손해가 상당한 손해보다 손해의 기준을 더 높인 것이 명확하다”며 “(2013 명예훼손법은) 손해의 기준을 높인 것으로 원고는 과거보다 높은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판결했다. 명예훼손법 개정 직후 언론에서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초점을 맞춘 법”이라는 해석 보도가 쏟아져 나왔지만, 영국 법원이 국회의 법안 개정 의도를 반영하는 판결을 내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빈 판사의 이번 판결로 인해 2013 명예훼손법의 ‘중대한 손해’가 과거보다 명예훼손 성립 기준을 높인 것이 증명됐다.

9) 이 소송의 1심 법원 판결문 전문은 이곳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www.5rb.com/wp-content/uploads/2014/08/1-Cooke-2-Midland-Heart-Ltd-v-1-MGN-Ltd-2-Trinity-Mirror-Midlands-Ltd.pdf>

이 판결은 의회의 법안 개정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3 명예훼손법 초안(The draft Defamation Bill)에는 원래 원고의 명예에 상당한 손해(substantial harm)를 야기한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¹⁰⁾ 그러나 법안을 심사한 국회 합동위원회는 초안에 있었던 “상당한 손해(substantial harm)”를 더 높은 수준의 손해를 의미하는 “심각하고 상당한 손해(serious and substantial harm)”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이후 영국 정부는 초안을 수정해 “중대한 손해(serious harm)”를 삽입했고, 수정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됐다. “상당한 손해”를 삭제하고 “중대한 손해”로 문구를 바꾼 것은 양측 당사자 간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피하기 위해서였다.¹¹⁾

3) 판결의 의미와 비판

쿱·선데이미러 소송은 중대한 손해에 대한 정의를 내린 첫 판례였지만, 이 판결 이후 여러 비판이 제기됐다. 보통법과 2013 명예훼손법에서 각각 정의하는 명예훼손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쿱·선데이미러 소송 판결은 2013 명예훼손법 제1조의 ‘중대한 손해’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원고가 손해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가 중대한 손해인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Groppo, 2016). 또한, 빈 판사는 ‘중대한 손해’는 ‘상당한 손해’보다 더 심각한 것이라고 판결했으나, 중대한 손해가 상당한 손해보다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설명하지 못해 법리적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

10) 2013 명예훼손법 초안 전문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jt201012/jtselect/jtdefam/203/203.pdf>

11) 영국 법무부가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Report of the Joint Committee on the Draft Defamation Bill’이란 제목으로 발간한 보고서 전문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parliament.uk/documents/joint-committees/Draft-Defamation-Bill/Government%20Response%20CM%208295.pdf>

(2) 라쇼·인디펜던트 소송

영국에서 ‘Lachaux v Independent Print Ltd’로 알려진 이 소송은 프랑스인인 브루노 라쇼가 영국 신문사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 이브닝 스탠다드(The Evening Standard), 허핑턴 포스트(Huffington Post) 등 3개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이하 라쇼·인디펜던트 소송)을 일컫는다. 이 소송은 쿡·선데이미러 소송만큼이나 중요한 판례로 거론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라쇼·인디펜던트 소송은 2013년 명예훼손법이 시행된 뒤 진행된 소송 중 처음으로 항소법원에서 판결이 난 소송이다. 둘째, 이 소송은 항소법원에서 기각됐으나 재판 결과와 별개로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에서 2013 명예훼손법의 핵심인 제1조의 ‘중대한 손해’에 대해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놔 법조계에서 큰 논란이 됐다(Bennett, 2018; Groppo, 2016). 고등법원에서는 쿡·선데이미러 소송 판결과 비슷하게 “손해를 증명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명예훼손 성립 기준을 예전보다 더 높은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법원에서는 손해를 증명하지 않고 추론하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는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1) 사건 개요

프랑스 국적의 원고 브루노 라쇼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일하는 항공우주 공학자였다. 그는 인디펜던트지 등 영국 언론사 3곳을 대상으로 이들의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원고가 소송 근거로 삼은 것은 자신에게 가정폭력범 혐의를 제기한 2014년 1~2월의 기사 5개였다. 인디펜던트지 등 언론사 3곳은 “원고가 영국인 국적의 전처를 폭행해 전처가 아들을 데리고 도망쳤으며, 이후 그가 부당한 방식으로 아들을 빼앗아 온 뒤 아들 납치 혐의를 씌우는 바람에 전처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유괴 혐의로 기소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쿡·선데이미러 소송은 기사에 원고와 관련된 내용이 두 문장에 불과할 만큼 사안이 가벼웠지만, 라쇼·인디펜던트 소송은 대상이 된 기사 5건 모두 원고에 대해 직접 거론했다.

〈표 1〉 ‘라쇼·인디펜던트 소송’의 원고 라쇼가 소송을 건 기사 5건

| 기사 게재일 | 언론사 | 기사 제목 |
|--------------|-----------------|---|
| 2014년 1월 20일 | 허핑턴 포스트 |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정 폭력 피해자인 영국 여성이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해” |
| 2014년 1월 24일 | 인디펜던트 온라인판 | “영국 여성 아프사나 라쇼, 아들을 유괴했다는 남편의 주장으로 두바이에서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하다” |
| 2014년 1월 25일 | 인디펜던트 지면 | “영국인 여성 아프사나 라쇼, 아들을 유괴했다는 남편의 주장으로 두바이에서 수감 위기” |
| 2014년 2월 10일 | 이브닝스탠다드(온라인/지면) | “두바이는 작은 도시, 전 남편이 내 아들 즉시 데려가” |

출처: 영국 고등법원, 2015.

2) 고등법원 판결: 쿡·선데이미러 소송 판결처럼 ‘중대한 손해’ 증명해야

하지만 고등법원(High Court)은 원고 라쇼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중대한 손해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라쇼·인디펜던트 소송을 담당 한 와비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¹²⁾

“원고의 주장과 반대로, 2013 명예훼손법 제1조(중대한 손해)에 따르면 해당 기사가 다른 사람들이 원고를 대하는 태도에 어떻게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원고는 해당 기사가 원고의 명예에 어떤 중대한 손해를 야기했는지, 아니면 그 가능성을 증명해야 하거나 미래에 끼칠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

와비 판사는 판결문에서 “명예훼손의 성립은 중대한 손해가 야기되거나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증명될 때만 가능하다”며 중대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사소한 사건은 앞으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설시했다.

이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이 판결은 손해를 증명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 손해를 추정만 할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남겼다. 둘째, 영국 보통법에 따르면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기사에 대해서 원고가 피해나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청구원인

12) 이 소송의 1심 법원 판결문 전문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judiciary.uk/judgments/lachaux-v-independent-print-ltd-evening-standard-ltd-and-aol-uk-ltd-final/>

(cause of action)이 발생하지만, 이 판결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요건이 엄격해졌다. 과거엔 구체적인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원고가 기사에 불쾌감을 주는 내용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었으나, 이 판결에 따르면 외적인 증거를 제시해야만 명예훼손이 성립된다(Bennett, 2018). 원고 입장에서 소송 전부터 기사나 출판물이 자신의 명예에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물이 많아진 셈이다. 즉, 와비 판사 역시 쿡·선데이미러 소송 판결처럼 명예훼손 기준을 높여 무분별한 소송으로 사법 절차가 남용되는 것을 막고,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국회의 개정 취지에 동의한 것이다.

3) 항소법원 판결: 중대한 손해 증명하지 않아도 명예훼손 성립할 수 있어

항소법원은 원고가 문제 삼은 5개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이 언론사의 손을 들어주긴 했으나 판결 내용을 보면 중대한 손해에 대한 해석이 고등법원 판결과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등법원에서는 국회의 법안 개정 의도를 반영해 중대한 손해를 증명할 수 없으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 다비 판사는 실제 손해에 대한 증거를 증명하지 않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는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 추정(the presumption of damage)은 기사나 출판물이 어떻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느냐가 핵심이다. 이 단계에서 지속적이거나 결과적인 명예훼손이 발생하는 것이다.”¹³⁾

고등법원은 2013 명예훼손법 제1조에 대해 외적인 손해를 증명하지 않고 명예훼손을 추론할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으나, 다비 판사는 구체적인 손해를 증명하지 않고 명예훼손을 추론하는 것으로도 손해를 증명할 수 있다는 상반된 해석을 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항소법원은 고등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국회가 제1조 ‘중대한 손해’를 삽입한 이유가 명예훼손의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점에는 동의했다. 다비 판사는 판결문에서 “제1조의 의도는 명예훼손 성립 기준을 높임으로써 사소한 소송이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비 판사는 국회의

13) 이 소송에 대한 항소법원의 판결 전문은 이곳에서 볼 수 있다.

<http://www.5rb.com/wp-content/uploads/2017/09/Lachaux-Section1.pdf>

의도에도 불구하고, 제1조에 사용된 문구가 개정 의도를 충족하기엔 부족하다고 내다 봤다.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가능성(is likely to)’이라는 문구가 불명확하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손해를 야기할 경향(tendency to cause)과 발생할 가능성(a likelihood of causing)이라는 두 문구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즉,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원고가 명예훼손에 의한 피해 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뜻이다.

4)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하지만 일각에서는 항소법원의 판결이 국회의 법안 개정 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판례를 증시하는 영국에서 혼란을 낳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회가 2013 명예훼손법을 발의한 것은 ‘상당한 손해’를 더 높은 수준의 ‘중대한 손해’로 기준을 높여 사소한 손해로 사법 절차가 남용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였다.

베넷(Bennett, 2018; 15쪽)은 ‘2013년 명예훼손법 제1조를 근거로 본 라쇼 사건과 중대한 손해의 하한 요건’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항소법원의 판결은 의회가 2013 명예훼손법 제1조를 삽입한 의도와 상반되는 해석을 제공했고, 중대한 손해에 대한 해석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저자는 항소법원이 ‘문제 있는 지침(problematic guidance)’을 내려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꼬집었다.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2013 명예훼손법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피해를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이 소송은 원고가 항소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최종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라쇼·인디펜던트 소송은 2013 명예훼손법 시행 이후 대법원 재판이 진행되는 첫 사례로, 대법원 판례가 중대한 손해의 의미를 정의하는 주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중대한 손해 기준, 아직도 명확하지 않아

제1조 중대한 손해의 명확한 정의는 아직도 모호하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의회가 2013 명예훼손법을 개정한 취지다. 국회가 제1조에 중대한 손해를 삽입한 것은

원고가 사소한 내용으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영국에서 ‘명예훼손 소송 투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막고자 함이다.

쿡·선데이미러 소송, 라쇼·인디펜던트 소송의 판결로 중대한 손해에 대한 해석이 나오기는 했으나, 법원에서는 원고가 중대한 손해를 어떻게 입증하는가를 두고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했다. 라쇼·인디펜던트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언론의 관심이 쏠려 있는 것도 만약 대법원에서 ‘실질적 손해를 입증할 때만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앞으로 원고가 사소한 기사 내용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행 5년째인 지금 2013 명예훼손법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은 분명하다. 영국 온라인 언론 프레스 가제트(Press Gazette)는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 조사 자료를 인용, 2017년(6월 말 기준) 영국에서 재판이 이뤄진 명예훼손 소송은 총 49건으로, 3년 전에 86건이었던 것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2017년 전체 명예훼손 소송 중에서 피고가 신문사인 비율은 22%로, 10년 전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프레스 가제트는 기사를 통해 “2013 명예훼손법이 명예훼손 성립 기준을 ‘상당한 손해’에서 ‘중대한 손해’로 높였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Press Gazette, 2018).

IV. 끝머리에

본 글은 영국의 언론분쟁처리기관인 IPSO의 운영 및 활동 내용과 2013 명예훼손법 시행 이후 주요 판례를 분석해 명예훼손법 개정이 영국 언론의 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2014년 1월 1일 개정된 명예훼손법이 시행되고, 그해 9월 IPSO가 출범하는 등 2014년은 영국 언론 환경에 여러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시기였다.

출범 5년째를 맞이하는 IPSO의 성과를 판단하는 것이 아직 이르지만, 언론 규제 방식 측면에서 자율규제의 틀을 깨지 못한 IPSO는 독립성 부족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IPSO는 규정을 위반하는 언론사를 상대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스탠다드 조사(Standards Investigation)와 벌금 부과, 회원 자격 박탈 등 다양한 처벌 제도를 운

영하고 있으나, 운영비를 회원 언론사들에 의존하는 재정 구조는 자율규제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2013 명예훼손법은 영국 언론의 자유 보호에 방점을 찍은 법안임이 분명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보통법의 원칙을 따라온 영국은 미국과 달리 당사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쪽으로 명예훼손법이 발전해왔다. 이 때문에 수정헌법 1조에 의해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호하는 미국과 비교하면 영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증대한 손해를 둘러싼 법적 해석은 지금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Groppo, 2016), 앞으로 더 많은 명예훼손 판례가 축적돼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개정안을 근거로 영국은 당사자의 명예 보호와 언론의 자유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맞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박아란 (2015). <미디어와 명예훼손>.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BBC (2013, 12, 31). Defamation Act 2013 aims to improve libel laws. <BBC>. Available from: <https://www.bbc.co.uk/news/uk-25551640>
- Bennett, T. D. (2018). Why so serious? Lachaux and the threshold of ‘serious harm’ in section 1 Defamation Act 2013. *Journal of Media Law*, 10(1), 1-16.
- Defamation Act 2013 [online] The National Archives (2013). Available from: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3/26/contents/enacted>
- Duffy, N. (2015). IPSO one year on. *Journal of Media Law*, 7(2), 116-129.
- Editors’ Code of Practice Committee (2018). The Code In Full. Available from: http://www.editorscode.org.uk/the_code.php
- Editors’ Code of Practice Committee (2018). Editors’ Code of Practice Committee Constitution [online]. London: Editors’ Code of Practice Committee. Available from: <https://www.editorscode.org.uk/downloads/minutes/Editors-CC-Constitution-2018.pdf>
- Greenslade, R. (2014, 9, 4). Why the Guardian’s decision not to sign up to Ipsos makes sense. <The Guardian>. Available from: <https://www.theguardian.com/media/greenslade/2014/sep/04/press-regulation-ipsos>
- Groppo, M. (2016). Serious harm: A case law retrospective and early assessment. *Journal of Media Law*, 8(1), 1-16.
- IPSO (2015). Annual Report 2015. Available from: <https://www.ipso.co.uk/media/1300/ipso-ar.pdf>
- IPSO (2016). Annual Report 2016. Available from: https://www.ipso.co.uk/media/1462/ar_2016_.pdf
- IPSO (2017). Annual Report 2017. Available from: https://www.ipso.co.uk/media/1569/ipso_annual_report_2017e.pdf
- Martinson, J. (2016, 2, 14). Ipsos chair: ‘We’re much, much better than nothing’. <The Guardian>. Available from: <https://www.theguardian.com/media/2016/feb/14/ipso-chair-alan-moses-regulation-press>

- Mayhew, F. (2018, 4, 23). Higher threshold of harm has seen number of UK defamation cases drop as celebs look to privacy actions to fight libel. <Press Gazette>.
Available from: <https://www.pressgazette.co.uk/higher-defamation-threshold-has-seen-number-of-uk-cases-drop-as-celebs-look-to-privacy-actions-to-fight-libel/>
- MIDDLETON, J. (2017). BRITAIN'S CHANGING MEDIA ACCOUNTABILITY SYSTEMS: THE ESTABLISHMENT AND ACTIVITIES OF THE INDEPENDENT PRESS STANDARDS ORGANISATION (IPSO). *Hitotsubashi journal of law and politics*, 45, 1-12.
- Ministry of Justice (2012).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Report of the Joint Committee on the Draft Defamation Bill [online]. London: Ministry of Justice Available from: <https://www.parliament.uk/documents/joint-committees/Draft-Defamation-Bill/Government%20Response%20CM%208295.pdf>
- Nielsen, P. A. (2013). Libel Tourism: English and EU Private International Law. *Journal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9(2), 269-288.
- Press Gazette (2014, 4, 17). Financial Times opts out of IPSO regulator in favour of its own system. <Press Gazette>. Available from: <https://www.pressgazette.co.uk/financial-times-opts-out-ipso-favour-its-own-system-regulation/>
- The Guardian (2013, 12, 31). Libel: new Defamation Act will reverse 'chilling effect', ministers claim. <The Guardian>. Available from: <https://www.theguardian.com/law/2013/dec/31/trivial-libel-claims-targeted-new-law>
- The Stationery Office (2012). An inquiry into the culture, practices and ethics of the press: report [Leveson] Volume 4 [online]. London: The Stationery Office (TSO).
Available from: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20140122145023/http://www.official-documents.gov.uk/document/hc1213/hc07/0780/0780_iv.asp
- The Stationery Office (2012). AN INQUIRY INTO THE CULTURE, PRACTICES AND ETHICS OF THE PRESS EXECUTIVE SUMMARY [online]. London: The Stationery Office (TSO) Available from: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29039/0779.pdf

The Stationery Office (2011). Joint Committee on the Draft Defamation Bill [online]. London: The Stationery Office (TSO) Available from: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jt201012/jtselect/jtdefam/203/203.pdf>

Tonybee, P. (2015, 9, 10). The press regulator Ipso is a year old - and it's a total failure. <The Guardian>. Available from: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5/sep/10/press-regulator-ipso-pcc-rupert-murdoch>

UK Parliament (2013). Defamation Act 2013.

Available from: <https://services.parliament.uk/bills/2012-13/defamation.html>

I. 첫머리에

프랑스 언론은 1881년 제정된 ‘언론 자유에 관한 법률(La 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이하 언론법)’에 의해 그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 이 법률은 1798년 8월 26일 프랑스 대혁명 당시 선포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e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11조¹⁾를 성문화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원칙을 천명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텍스트로 인정받고 있다(박진우, 2007).

1881년 7월 29일 제정된 프랑스 언론법은 137년 동안 51번 개정을 거쳤고, 오늘날에도 언론 활동 전반에 대한 원칙을 확립하고 동시에 세부 사항을 규제하는 기본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아울러 언론법은 언론에게 정보 제공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언론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가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수 있어야 하며, 언론인도 자신이 주장하는 바와 선의를 입증해야 함을 규정했다. 또한 이러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남용이 언론인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에게도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안문희, 2017).

가장 최근의 개정은 ‘평등 및 시민권에 관한 2017년 1월 27일 법(Loi n° 2017-86 du 27 janvier 2017 relative à l’égalité et à la citoyenneté, 이하 평등 및 시민권 법)’이 제정되면서 이루어졌다. 평등을 강화하고 모든 종류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를 제시하고 있는 이 법은 1881년 언론법의 개정과 관련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언론법이 ‘언론 자유의 위배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한 주요 행위들과 이러한 남용에 대해 독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인 피해구제책, 즉

* 저널리즘학연구소 연구이사, minjjin@gmail.com

1) 이 원문은 다음과 같다: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 중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로이 발언하고 기술하고 인쇄할 수 있다. 다만, 법에 따라 규정된 경우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반론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또한 ‘평등 및 시민권법’에 의해 개정된 언론법의 주요 조항 및 언론법 개정 방향과 2018년 들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정보조작대처법’을 둘러싼 주요 논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언론 자유의 위배에 해당하는 주요 행위

프랑스 언론법의 특징은 ‘언론 자유의 남용’ 혹은 ‘언론 자유의 원칙 위배’에 해당하는 언론의 행위를 대단히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법에 명시된 언론 자유의 위배에 해당하는 행위는 크게 허위 뉴스,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정보의 전달, 그리고 선동적인 발언 등 세 부분으로 분류된다(Dreyer, 2018). 허위 뉴스는 말 그대로 사실에 근거 하지 않은 정보를 보도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정보의 전달은 명예훼손, 중상, 모독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달한다거나 범죄(추정)자 혹은 범죄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아울러 선동적인 발언에는 테러나 차별을 부추기는 발언, 반인도적 범죄를 옹호하거나 부정하는 발언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이 밖에도 언론 자유의 위배 행위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존재하나, 극히 드물기에 여기에서는 이 세 경우만을 다루기로 한다.

1. 허위 뉴스

일반 형법에서 정보의 왜곡은 넓은 의미에서 가장 다양한 범죄 유형의 근원이다(Bilger, 2003). 그러한 범죄의 예로는 허위광고, 선거기간 동안 투표에 영향을 미치고자 생산된 허위 뉴스, 공중이 테러를 믿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허위정보 전달 등이 있다.

당연히 1881년 법은 ‘허위 뉴스(fausse nouvelle)’라는 개념을 무시할 수 없었고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제를 마련해야 했다. 언론법 제27조는 허위 뉴스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하나는 공공의 안녕을 해치거나 해칠 가능성이 있는 허위 뉴스, 또 다른 하나는 군의 사기를 흔들거나 국가의 전쟁 수행을 방해하는 성격의 허위 뉴스다. 이러한 허위 뉴스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사실과의 연관성

제27조의 “뉴스”는 감상, 논평, 판단 또는 견해와 구별된다. 뉴스는 현재 벌어지는 일이나 과거에 있었던,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실과 관련되어야 한다. 범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 요소가 있을 때만 구성되며, 이는 주장된 사실을 입증할 물리적 자료 또는 객관적인 요소와 관련이 있다. 법원은 이 개념을 엄격하게 적용하지만, 때로는 허위 뉴스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누락돼 법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검찰은 당연히 뉴스의 허위 사실을 입증해야 할 부담을 지게 된다.

(2)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협

원래 제27조는 “공공의 안녕을 실질적으로 해치는” 허위 뉴스에 대한 규정이었다. 따라서 유죄판결의 조건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1944년 5월 6일 명령(L'ordonnance du 6 mai 1944)에 의해 이 조항이 보완되면서 오늘날에는 “공공의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기소가 가능하다(Bilger, 2003). 여기에서 ‘공공의 안녕’이라는 개념은 ‘공공질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집단적 무질서를 유발하거나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허위 뉴스는 규제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3) 악의적인 의도

언론의 경우, 일반적으로 악의적인 의도는 추정되지 않는다. 사실, 제27조는 “악의적인 의도로 제작된” 출판, 배포 또는 복제만을 처벌한다. 저널리스트들은 수없이 쏟아지는 정보에 둘러싸여 있고, 신속하게 뉴스를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뉴스를 생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편집국에서 체계적인 정보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법원 또한 경박함과 부주의를 그 자체로 악의적인 의도로 단정 짓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여기고 있다. 형사 기소가 가능하려면 기만행위, 즉 잘못된 뉴스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성을 입증해야 한다(Bilger, 2003).

(4) 허위 뉴스 전달시 기소와 양형

언론법 제27조는 일체의 수단을 통한 허위 뉴스나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조작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출판, 유포 또는 복제한 경우 4만5천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만약 해당 허위 뉴스가 전시에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군의 사기와 기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3만5천 유로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조항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거짓 정보와 오보를 구별하고, 조작된 정보의 의도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박진우, 2007). 정치학자면서 표현의 자유 전문가인 제랄딘 뮐만(Géraldine Muhlmann)은 이 분야에서 유죄 판결이 드문 이유에 대해 거짓 뉴스보다 공정한 뉴스를 증명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Muhlmann, 2018, 8, 9). 또한 저널리스트들은 같은 법 제2조가 보장하듯 출처를 밝히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보다 제27조에서 훨씬 더 많은 보호를 받는다.

2. 명예훼손

(1) 명예훼손의 구성요소

언론 자유의 위배 행위를 규정한 가장 대표적인 조항으로서 처벌 사례가 많은 것은 명예훼손이다. 1881년 언론법 제29조는 명예훼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어떤 사실에 대하여 개인 혹은 단체를 언급함으로써 그의 명예나 평판을 침해하는 모든 주장과 비난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러한 주장 혹은 비난을 직접 발행하거나 인용의 형태로 발행하는 것은 설사 그것이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혹은 명시적으로 해당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비난을 담은 연설, 고함, 위협, 서면, 인쇄물, 벽보 또는 포스터를 통해 당사자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다면 처벌할 수 있다.”

이처럼 언론법 제29조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까지도 명예훼손 행위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의혹 제기는 저널리스트의 주요 작업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저널리스트에게 해당된다. 또한 인쇄매체나 웹 사이트, 블로그, 토론방에서 비록 신중한 어조로 의혹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나아가 항소법원은 저널리스트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지라도, 누군가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 그것이 명확한 형태이건 혹은 교묘히 감춰진 형태이건, 범죄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Duhen, 2010, 12, 29).

물론 단순 질문만으로는 명예훼손을 구성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질문을 의혹 제기로 보는 것은 사상의 토론과 수사학의 근본적인 요소인 표현과 질문의 자유를 상당 부분 제한하게 되기 때문이다.

(2) 명예훼손의 예외: 진실 적시(Exceptio Veritatis)

언론이 진실 적시를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 물론 모든 진실 적시가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사면되었거나 또는 해당 법률에 의해 이미 처벌을 받은 경우 및 사생활 관련 사건의 경우가 그러하다. 판례는 진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상당히 까다롭게 판단한다. 제출된 증거는 확실해야 하고, 사실에 기반해 조목조목 진술되어야 한다. 진실 적시에 해당해 명예훼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1%밖에 되지 않는다(Goetz, 2017, 6, 12).

대표적인 사례가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부정하는 주요 인물 중 한 사람인 로버트 포리슨이 르몽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례다. 르몽드의 저널리스트인 아리안 슈망(Ariane Chemin)은 2014년 자신의 기사를 통해 포리슨의 주장은 ‘헛소리’라고 썼는데, 이에 대해 포리슨이 르몽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슈망은 재판에서 자신의 주장이 진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증언들, 언론 기사들, 포리슨의 저서에서 발췌한 내용, 그리고 포리슨이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고 가장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을 때의 판결문 등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했다. 2017년 파리 지방법원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심판은 재판부의 몫이 아니지만 제시된 증거들을 통해 포리슨이 지속적으로 지극히 분명한 역사적 사실인 유태인 학살에 대해 오명을 씌우는 작업을 늦추지 않았고 (...) 그의 작업에는 과학적인 속성이 부재하다”라며 슈망의 손을 들어줬다²⁾. 2018년 4월, 파리 항소법원 역시 저널리스트가 포리슨을 ‘진실 날조자’로 규정한 것은 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의 역사상 상당히 드문 사례에 해당하는 ‘진실 적시로 인한 예외’라고 판결했다(Le Monde, 2018, 10, 22).

2) TGI Paris, 6 juin 2017, n° 14356000489.

(3) 차별·혐오 발언에 의한 명예훼손

차별과 혐오 혹은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증상, 명예훼손과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옹호는 언론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특히 차별적 명예훼손이나 증상의 경우, 그 형벌을 가중해 부과하고 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은 그 행위가 공연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1만2천 유로의 벌금을,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38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면, 인종차별, 성차별,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혹은 장애를 이유로 증오나 폭력을 조장하는 발언을 한 경우, 언론법 제24조에 의거, 일반적인 명예훼손에 비해 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인종차별적 명예훼손이란 “특정 지역·집단 출신 여부 혹은 특정 민족·국가·종교 소속 여부에 따라 개인 혹은 그룹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차별, 혐오 혹은 인종주의적 폭력을 조장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을 때, 1년의 징역과 4만5천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며, 이러한 행위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최고 1천5백 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앞서 열거한 성차별,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된다.

이처럼 프랑스 언론법은 차별, 혐오 발언에 의한 명예훼손을 심각한 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이는 반유대주의적 혹은 반이슬람주의적 혐오 발언의 급증으로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촉발된 조치이기도 하다. 아울러 프랑스 정부는 테러 선동 및 옹호 메시지처럼 온라인을 이용해 인종차별적 메시지를 유포한 경우 형법상 범죄로 규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3. 증상

(1) 증상의 구성요소

언론사에 적용되는 증상행위는 무엇보다도 과도한 언어 표현을 통한 증상을 의미한다. 언론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증상에 해당하는 표현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는 모욕적인 표현, 즉 경멸적이거나 욕설에 해당하는 용어의 사용이며, 두 번째는 그것이 식별 가능한 대상을 향한 경우다. 증상에 대한 소송에서는

해당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만약 당사자가 이미 고인이 된 경우에는 유족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증상은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범법행위가 될 수 있으며 구금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처벌의 경중은 공연성 여부와 증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사람이 도발을 먼저 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진다. 아울러 피해를 주장하는 이가 일반 개인인지 혹은 공무원 또는 기관인지 등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예컨대 피해자가 단순한 개인일 경우 벌금은 1만2천 유로이지만, 공직(공무원, 군인, 법관, 정부관료 및 이에 준하는 직위)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4만5천 유로로 높아진다. 아울러 공연한 증상인지 비공개적인 증상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비공개적인 증상의 경우 38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차별·혐오 발언에 의한 증상

명예훼손의 경우처럼, 차별 혹은 혐오 발언에 의한 증상은 언론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언론법 제33조는 인종차별적 혹은 반유대주의적 증상과 관련된 여러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인종차별적 증상이란 “특정 지역·집단 출신 여부 혹은 특정 민족·국가·인종·종교 소속 여부에 따라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하여 모욕적인 표현, 경멸적이거나 욕설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만약 한 개인 혹은 한 그룹에게 그들이 속한 종교를 이유로 증상을 했다면 이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종교적 비판, 신성 모독은 증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프랑스는 세속주의 사회이므로 종교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종교적 숭배 대상을 재현할 자유가 동시에 주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평등 및 시민권법이 제정되면서 언론법 제33조 제3항에 특정 민족, 국가, 인종 또는 종교에의 소속 혹은 비소속, 성별,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또는 장애를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향한 증상의 범죄를 행한 경우에 대해 형벌을 가중시키는 조항이 삽입됐다. 이전에는 6개월의 징역과 2만2천5백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이제는 1년형과 4만5천 유로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개적인 증상과 명예훼손은 일반적으로 3개월 후에 시효가 만료된다. 즉, 관련 기사가

발행된 지 3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인종, 민족 또는 종교를 이유로 명예훼손 또는 중상을 한 경우에는 ‘범죄의 발전에 따른 사법적 대응을 위한 2004년 3월 9일법(Loi portant sur l’adaptation de la justice aux évolutions de la criminalité)’, 일명 ‘페르벵(Perben)법’에 따라 시효 만료 기간이 1년으로 연장된다.

4. 모독

프랑스 대통령, 외국의 국가원수 및 행정 수반, 외국 정부의 외무부 장관에 대한 모독 행위는 언론법 제26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었다. 모독은 프랑스 판례에 의하면 “선출 전 대통령의 사생활뿐 아니라 국가원수로서의 임무 수행을 이유로 대통령의 명예나 존엄성이 훼손되는 성격의 모욕이나 멸시의 표현, 중상적 비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³⁾ 이를 위반할 경우 언론사는 민법 혹은 형법에 의해 벌금을 물거나 배상해야 했으며,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4만5천 유로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2013년 8월 5일 폐지되었다.

사실 모독 조항은 오랫동안 비판의 대상이었다. 언론사의 정치적 비판과 모독의 경계가 어디인지, 또한 중상이나 명예훼손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박진우, 2007). 판례에 따르면 모독은 중상 및 명예훼손의 사례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보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만평이나 사진 이미지를 통한 당사자의 존엄성이나 신중함을 공격하는 경우 또한 해당된다.

모독 조항은 드골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6번 적용되었으며, 1981년 미테랑의 집권 이후 사실상 적용이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다가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의 재임 기간에 부활했다. 2008년 8월, “꺼져, 빌어먹을 새끼야(Casse-toi, pauvre con!)⁴⁾” 사건으로 당시 사르코지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던 에르베 에옹(Hervé Eon)이 기소되

3) Cass. Crim., 1966년 12월 21일, Bull crim. no 302.

4) 2008년 2월 23일, 프랑스의 가장 큰 박람회 중 하나인 농업박람회에 참석한 사르코지는 수많은 인파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러던 중 악수를 청한 한 사람에게 “안 돼. 나는 만지지 마! 날 더럽히지 마!”라고 거부당하자, “그럼 꺼져, 빌어먹을 새끼야!”라고 말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한 저널리스트에 의해 비디오로 촬영된 이후 인터넷에서 급속도로 확산돼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르몽드를 비롯한 프랑스 언론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업무상 과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여당이었던 대중운동연합(UMP)은 대통령에 대한 ‘린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었고⁵⁾, 2009년 11월 4일의 판결에서, 파기원은 에옹의 항소를 기각했다. 에옹은 국가원수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30유로의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는 ‘인권에 관한 유럽협약’ 제10조 언론 자유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2013년 3월 14일 에옹 대 프랑스 판결에서 프랑스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난했다(Le Monde, 2013, 3, 14).

2013년 5월 15일, 프랑스 하원은 프랑스 형법을 유럽연합(EU)의 7개 문안 및 다양한 국제법에 맞게 다듬은 법안을 마련했고, 이후 국가원수 모독죄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채택되면서 언론법 제26조는 폐지되었다. 개정안을 발의한 사회당의 마리에타 카라만리(Marietta Karamanli)는 “만약 공화국 대통령이 시민들의 존경을 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그런 관습법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완벽하게 비생산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Le Monde, 2013, 5, 15). 공화국 대통령이 모욕감을 느낀 경우, 명예훼손과 같이 일반법을 통해 고소가 가능하기에 이 법조항 자체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모독죄는 폐지됐지만, 외국의 수반이나 외국대사, 외국 외무부장관이나 프랑스 정부가 공인한 외교공무원에 대한 공개적인 모독은 여전히 처벌 대상이다. 이 경우 언론법 제37조에 의거, 4만5천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전달이 금지된 정보

(1) 재판 및 수사 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의 전달 금지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수사나 재판에 관련된 공식 자료(경찰의 수사 기록이나 검사의 기소장 및 기타 모든 형사소송 혹은 경범죄 재판 관련 문서)의 일부 혹은 전체를 공개 법정에서 밝히기 전에 기사화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아울러 언론법 제38조는 저널리스트가 취재 과정에서 획득한 경찰이나 검찰의 비공개 자료 혹은 비밀정보를 보도를 통해 공개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언론사는 3,750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5) 2008년 8월 사르코지 대통령이 한 지방도시를 방문했을 때, 영접 인파 속에서 에르베 에옹이 “그럼 꺼져, 빌어먹을 새끼야!”라는 표현이 적힌 작은 팻말을 흔들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6년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의 파트리샤 투랑쇼(Patricia Tourancheau)가 보도한 살인사건 관련 기사다. 당시 투랑쇼는 형사 수사가 진행 중이고, 두 명의 용의자가 기소된 상태에서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용의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이로 인해 투랑쇼와 당시 리베라시옹의 편집국장이었던 세르쥬 쥘리(Serge July)를 대상으로 형사소송이 이루어졌고, 이들은 10만 프랑(약 1,525유로)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들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언론법 제38조가 유럽인권선언 제10조에 위배된다면서 프랑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05년 11월 24일 프랑스 대 쥘리와 투랑쇼 판결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언론법 제38조의 규정은 “재판일까지 모든 형사소송 및 경범죄 재판 과정의 보도를 금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럽인권선언 제10조에 의해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이 보도로 인해 용의자들의 평판과 권리 보호 및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되고, 재판부 구성원들의 공정한 재판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재판소는 신청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타인의 평판과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권의 공정성과 권위를 보장하기 위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개입이라고 결론지었다⁶⁾.

다만 언론법 제38조는 진행 중인 수사나 소송의 분석이나 논평을 금하지는 않는다. 또한 그 내용이 수사나 소송 절차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경우라면 관련 보도를 일절 제한하지 않는다.

이와는 별도로 언론법 제38조 제2항은 사법최고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의 활동 및 결정 일체에 대한 보도 역시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은 사법부의 결정이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3,7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사법최고위원회의 위원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내용은 기사화할 수 있다.

6) 사건번호 53886/00, 2005년 11월 24일 프랑스 대 투랑쇼와 쥘리 사건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 판결문 (Arrêt de la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affaire Tourancheau et July c. France, requête n° 53886/00 du 24 novembre 2005).

(2) 용의자 및 범죄희생자의 이미지 전달 금지

언론법은 재판 및 수사의 대상자와 관련한 이미지나 범죄 희생자의 이미지, 혹은 사법 재판의 이미지를 배포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다. 언론법 제35조의 부록 조항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형사소송 중인 사람이 수갑을 차고 있거나 혹은 구금에 처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미지의 배포를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00년 6월 16일 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 보호와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법률’⁷⁾, 이른바 ‘기구(Guigou)’법에 의해 언론법 제35조에 삽입된 것이다. 이 조항은 구체적으로 해당 이미지가 해당 범죄자(범죄자로 추정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거나 나아가 그가 수갑이나 포승을 착용한 상태 혹은 구속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 이를 배포한 자에게 1만5천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기구법은 범죄 희생자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이미지의 배포 역시 금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1998년 발생한 클로드 에리낙(Claude Erignag)의 피살 사건에 대한 이미지 보도다. 1998년 2월, 코르시카의 도지사였던 에리낙은 코르시카 분리주의자들에 의해 암살당했는데, 당시 주요 언론들은 도로에 놓여있던 그의 시신을 찍어 앞다투어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시신을 촬영하여 보도하는 것은 희생자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01년 2월 20일 대법원은 시신일지라도 그의 ‘인격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이미지 전달은 언론법 제35조에 의해 1만5천 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그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해당 언론사를 대상으로 민사 및 형사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마지막으로 사법 재판 시 사진 촬영 역시 금지되어 있다. 언론법은 법정에서 들어선 청중에게 녹음, 촬영, 전송이 가능한 모든 장치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언론법 제38조 부록 조항에 따르면, 이런 장치를 통해 촬영되거나 녹음된 이미지나 음성을 보도하는 경우, 해당 언론사에 4만5천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사용된 장치들은 재판장이 법정에서 압수할 수 있고, 해당 촬영 및 녹음의 원본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재판 전 요청이 있을 경우, 재판장은 당사자 또는 그의 대리인 혹은 검찰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사진 촬영을 허락할 수 있다.

7)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6. 선동

(1) 범죄 및 일탈의 선동

언론법에 의해 규정된 ‘범죄 및 일탈의 선동’은 직접 선동과 간접 선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직접 선동은 다른 사람들이 특정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장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언론법 제23조에 의거, 이 행위는 공공장소에서 연설이나 발언, 위협, 또는 글이나 인쇄물, 조각, 그림, 판화, 사진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해 직접적으로 선동한 경우에 해당한다. 언론법 제23조는 또한 언론보도가 범죄나 일탈을 선동하여 실제 그런 결과를 초래했을 때에는 물론이고, 단지 그러한 시도가 행해졌을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결과를 초래한 선동의 경우, “선동한 자”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시도한 “선동된” 사람의 공범으로 인식된다. 이 행위가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먼저, 선동 사실과 선동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의 밀접한 연관과 구체적인 관계, 그리고 선동의 의도성, 즉 다른 이들이 범법행위를 저지르도록 의도적으로 선동을 했는지의 여부, 마지막으로 범죄 혹은 경범죄를 다루는 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범죄로 규정된 행위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선동이 비록 직접적인 것이었지만 범죄의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다. 언론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선동 내용이 다음 열거한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것의 실현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언론사는 징역 5년 및 4만5천 유로의 벌금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생명에 대한 의도적인 위협, 개인의 인격 전체에 대한 의도적인 위협, 성적인 폭력, 개인에게 위협적인 절도, 강도, 파괴, 훼손 및 손상 행위, 국가의 근본적인 이해를 위협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범죄 및 일탈.

(2) 범죄에 대한 옹호

언론법 제24조 제5항에 따르면 범죄행위를 실질적으로 선동하지 않더라도 언론이 심각한 범죄를 칭송할 만한 고귀한 행동으로 표현한 경우라면 이 역시 언론 자유의 위배에 해당한다. 이 행위는 일반 범죄행위에 대한 옹호와 수정주의적 발언으로 분류된다.

‘옹호’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이것이 범죄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이 공개적인 옹호는 형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 ‘옹호적 발언’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는 부재하다. 그러나 관련 판례는 “범죄적 행위를 옹호한다는 것은 이를 소개하면서 완전히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행위처럼 정당화하거나 혹은 영광스럽고 칭송할 만한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Dreyer, 2018).

언론법 제24조 제3항은 언론이 심각한 범법행위를 옹호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노예화 혹은 노예가 된 사람의 착취, 적군과의 내통 범죄를 옹호한 경우에는 열거된 범죄를 저지른 이에 대해 유죄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뿐 아니라 끔찍한 행위를 옹호하는 의견을 배포한 경우에도 희생자에 대한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해 처벌하고 있다.

오랫동안 ‘옹호’에 대한 처벌은 제한적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그 대상 범위가 확장되는 추세다. 2014년 11월 13일 대테러법이 발효되면서 테러 옹호 메시지가 테러 범죄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형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용의자에게 즉각적인 출두를 요구할 수 있고, 신속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사적 공간에서의 테러 선동 및 옹호 발언도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 공중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테러 행위를 선동하거나 옹호하는 메시지를 포스팅한 경우, 관련 메시지뿐 아니라 관련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테러 옹호 메시지는 언론법 제24조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 조항이 급증하는 테러 옹호 메시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공공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입법자들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처벌의 수위도 변화했다. 언론법 제24조에 따르면 테러 옹호 메시지를 유포한 경우, 5년의 징역과 4만5천 유로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2014년 11월 대테러법에 따라 개정된 형법 제421-2-5조는 테러 옹호를 “테러 행위를 직접적으로 선동하거나 이 행위를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이 범죄를 저지른 자는 최고 “5년의 징역과 7만5천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테러 행위의 선동이나 옹호”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다. 테러 선동과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비판 사이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테러를 선동하는 사이트

뿐 아니라 프랑스의 정책을 자유롭게 비판하는 사이트 역시 검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편 온라인 공중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해 테러를 옹호한 경우에 대한 처벌은 오프라인에서보다 훨씬 가혹하다. 이 경우 최고 10만 유로의 벌금과 7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테러 옹호 메시지로 인한 유죄 판결은 2015년 1월 샤를리 엡도 테러 이후 급증하고 있다. 샤를리 엡도 테러와 관련된 소송은 251건이었는데, 이중 117건이 테러 옹호 및 선동 발언 혐의와 관련된 것이었다(L'express, 2015, 1, 20).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유명 코미디언 디유도네(Dieudonné)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샤를리 엡도 테러가 일어난 날,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샤를리-쿨리발리’인 것처럼 느껴진다”⁸⁾는 글을 남겼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파리고등법원은 2016년 6월 21일 디유도네에게 집행유예 2개월과 1만 유로의 벌금을 선고했다. 지난 3월에는 프랑스 앵수미즈 당의 국회의원 후보였던 스테판 푸시에(Stéphane Poussier)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2018년 3월 23일 프랑스 남부 오드(Aude)지역 테러 당시 사망한 경찰관의 죽음을 자축하는 메시지를 올린 이유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Gamba, 2018, 3, 30).

(3) 수정주의적 발언

‘수정주의(négationnisme)’란 역사적 사실을, 그 명확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적 혹은 정치적 목적으로 부정하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수용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우다. 이러한 수정주의적 발언은 1990년 7월 13일 제정된 이른바 게소(Gayssot)법에 의해 처벌되고 있다. 유대인 학살과 인종학살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은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및 타인종 혐오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고 있으며, 언론법 제24조의 부록으로 첨부되었다.

이러한 수정주의적 발언으로 게소법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인물 중 가장 유명한 이는 로버트 포리슨(Robert Faurisson)이다. 수정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인 그는 오랫동안

8) 이 표현은 프랑스 시민이 샤를리 엡도 테러 희생자와 연대를 위해 외치는 “나는 샤를리다”라는 구호에 같은 날 파리 식료품점에서 인질극을 벌여 4명의 인질을 살해한 지하디스트 쿨리발리 이름을 교묘하게 엮은 것이다.

프랑스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쳤고, 1960년대 초반부터 유대인 대학살의 역사에 대해 연구를 해왔다⁹⁾. 그는 1990년 9월, 월간지 르 속 뒤 무와(Le Choc du mois)와의 인터뷰에서 나치 강제수용소의 가스실 존재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후 11개의 레지스탕스 협회와 옛 나치 수용소 수감자들은 포리슨과 르 속 뒤 무와(Le Choc du mois)의 편집국장 보와조를 고소했고, 1991년 4월 13일 파리 지방법원은 두 피의자 모두 “반인류 범죄를 부인한 혐의에 있어 유죄”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들에게는 326,832프랑의 벌금형이 내려졌다(Dhommeaux, 1997). 이 사건은 이후 르 속 뒤 무와의 발행이 중단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III. 언론에 의한 피해 구제책

프랑스에는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구제를 관할하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구제는 그 보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이를 사법부에 제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프랑스의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구제제도의 근본 원칙은 “사법 원칙(principe juridique)”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저널리스트가 자신의 직무에 있어서 실책을 저지른다 해도 이를 규제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법적 판결을 통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에 국가나 언론계 모두가 동의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언론사가 언론법에 명시된 언론 자유의 위배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이에 대한 피해 구제절차는 보통 민사소송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몇몇 위배행위에 대한 조항들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담고 있지만 저널리스트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사례는 사실상 없다(박진우, 2007). 그런데 1990년대부터 언론 관련 소송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언론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작업 현장에서 직업윤리를 제대로 엄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중재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9) 그는 자신의 논문에서 나치가 인종 몰살의 목적으로 가스를 살포한 것이 아니라 이를 잡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언론윤리위원회’ 창설 논의 역시 이러한 논리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물론 프랑스의 저널리스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스스로 자체적인 직업 규율을 통해 자신들의 오류나 비윤리적 관행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왔다¹⁰⁾. 그러나 프랑스 미디어의 소유구조와 범람하는 수많은 정보 사이트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급증하고 있는 허위정보 등으로 인해 ‘정보 위기론’이 확산되면서, 이제는 저널리스트들이 자신들의 작업 방식을 성찰하고, 저널리스트와 시민, 언론사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가 언제 설립될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현재로서는 독자들이 언론의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행사 가능한 권리로 반론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이 있다.

1. 반론권

프랑스의 반론권(le droit de réponse) 제도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프랑스에서 반론권이 법제화된 것은, 대혁명으로 인한 정치적 격변기에 신문 수가 늘어나고 발행부수가 비약적으로 증대되어 신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저질적인 비방과 공격으로 개인의 명예나 신용이 침해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김병국, 2002). 이러한 배경 하에서 1799년, ‘500인 회의(Le Conseil des cinq-cents)’에서 언론에 의해 명예를 침해당한 자에게 반론 기사를 허용하는 최초의 법안이 제시되었다.

1881년 언론법 제13조에 명시된 반론권 조항은 모든 언론 매체의 보도에 대해 독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확립되었으며, 1993년 1월 1일자 부분 개정을 통해 방송에 대한 반론권 행사도 가능해졌다. 또한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도 반론권 행사가 가능하다.

10) 프랑스는 각 매체 유형별 저널리스트 노조가 상당히 발달해 있는 나라다. 이들은 단지 저널리스트 지위의 문제뿐 아니라 저널리스트의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국 저널리스트 노조(SNJ)가 13개 조항으로 구성된 저널리스트 윤리강령을 마련해 저널리즘 직무 수행에 있어서 지켜야 할 규약으로 규정한다거나, 인터넷 독립 언론 노조(SPIII)가 인터넷 독립 언론들이 보다 건강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인터넷 독립 언론들의 직업적, 경제적, 윤리적 문제들을 연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1) 반론권 개시

정기간행물에 대한 반론권과 그 절차는 언론법 제13조와 제13-1조에 명시되어 있다. 인터넷 매체의 경우에도 2007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법 시행령에 따라¹¹⁾ ‘디지털 경제의 신뢰에 관한 법(loi n° 2004-575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 제6-IV조에 인터넷 매체에 대한 반론권 행사 조항을 삽입하면서 반론권이 인정되고 있다.

반론권은 일간지 및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모든 매체, 즉 모든 정기간행물을 대상으로 자연인과 법인은 물론, 사자(死者)에게까지 인정되고 있다. 또한 단순한 사실보도에 국한하지 않고 논평, 르포기사, 의견, 가치판단 등 모든 종류의 기사가 반론대상에 해당되며 이러한 기사에 자신이 거명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반론권의 개시가 가능하다. 아울러 반론권은 영상매체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거나 중대한 오류를 범했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다.

프랑스 파기원(Cour de cassation) 역시 오랫동안 반론권을 ‘일반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해왔다(Simonnot, 1996, 6, 11). 그러나 반론권의 남용 가능성이 제기되자 1990년대 이후부터는 관련 판례가 반론권의 남용을 경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1994년 파리 항소법원이 반론권에 대한 거부권을 인정한 것이 그 사례라 할 수 있다.

(2) 반론권의 행사

인쇄매체의 경우, 반론권은 언론법 제13조에 의거, 해당 기사가 발행된 이후 3개월 이내에만 행사가 가능하다. 인터넷 매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¹²⁾. 방송에 대한 반론권 역시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된 지 3개월 이내에 행할 수 있다.

독자 혹은 시청자의 반론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제기된 경우, 언론사의 발행인에게 이를 게재할 의무가 생긴다. 인쇄매체나 인터넷 매체의 경우, 반론은 반론권을 야기한

11) ‘Décret n° 2007-1527 du 24 octobre 2007 relatif au droit de réponse applicable aux services de communication’.

12) 원래는 1년이었으나 2000년 6월 15일 방송과의 형평성을 위해 3개월로 변경되었다.

해당 기사와 동일한 수준의 길이로 제한되며, 최소 50줄에서 최대 200줄로 제한된다. 즉 문제가 된 기사의 길이가 200줄을 넘긴 경우라도, 반론문은 최대 200줄까지만 게재 가능하다.

방송의 경우, 1987년 방송법 시행령¹³⁾에 의거, 반론문의 텍스트는 30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반론 메시지의 방송 시간은 2분을 넘길 수 없다. 아울러 방송에 대한 반론권 개시는 다른 매체와 달리 특정 프로그램이 자신의 명예나 평판을 실추시킨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간지와 인터넷 매체의 발행인은 반론 청구를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주간지 이상의 정기간행물은 접수 다음날로부터 가장 최신 호에 이를 게재해야 한다. 만약 그 사안이 선거기간 중 후보자와 관련된 것이라면 일간지와 인터넷 매체에 한해 24시간 이내에 반론문을 게재해야 한다.

인터넷 매체의 경우, 디지털 경제의 신뢰에 관한 법 제6-IV조에 따르면 반론문을 게재하는 것과 별개로 문제가 된 기사를 삭제하거나 혹은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2004년 6월 10일 헌법위원회 제2004-496호의 결정에 따라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언된 조항이다. 그러므로 문제가 된 기사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도록 요청한 기사에 대해서는 반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방송의 경우, 방송 책임자는 반론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8일 이내에 접수 사실을 반론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반론권을 야기한 방송이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반론을 방송해야 한다(1987년 방송법 시행령 제5조). 반론문의 형식은 문제의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기술적 조건과 동등한 조건에서 방송해야 하며, 문제가 된 프로그램의 제목과 방송 날짜 및 시간을 자막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반론 게재 거부시 양형 기준

언론매체는 반론문을 수정해서는 안 되며 전체 내용을 게재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진다. 법률에 정해진 기한 내에 혹은 규정된 형식으로 반론문을 게재하지 않은 경우, 언

13) 'Décret n°87-246 du 6 avril 1987 relatif à l'exercice du droit de réponse dans les services de communication audiovisuelle'.

론사 발행인은 1881년 언론법 제13조에 의거(인터넷 매체의 경우는 디지털 경제의 신뢰에 관한 법 제6-IV조에 의거), 3개월의 금고 및 3,750유로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적 기한 내에 반론문을 게재하지 않거나 게재를 거부한 경우, 반론청구인은 반론문 게재 거부에 대해 형사 고소할 수 있다. 청구인은 언론매체가 법적으로 반론을 게재해야 하는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에 의해 관련 언론사에 반론문을 게재할 것을 명령하는 약식기소 절차가 이루어진다. 아울러 반론청구인은 자신의 반론문이 게재되지 않은 경우,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반론문이 지나치게 길거나 불규칙적인 경우에는, 언론사 발행인에게 이를 수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반론 게재 거부가 정당화될 수 있다. 아울러 반론문이 법에 저촉되거나, 공공질서 혹은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저널리스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에도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Deryer, 2018: 477).

또한 반론은 그것을 야기한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판례는 반론권을 “정보의 모순적인 부분을 바로잡고, 저널리스트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연인 또는 법인의 표현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¹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담은 사실 혹은 의견에 대해서만 반론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언론사 발행인은 해당 기사와의 상관관계가 부분적으로 없는 반론권 또는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오늘날에는 프랑스 언론에서 정치적 논쟁으로 개인을 공격하는 일은 드문 반면, 상업적 언론의 등장으로 언론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이에 따라 반론권의 행사가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논평과 의견에 대한 ‘논쟁적 반론’보다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적 착오, 즉 오보나 왜곡된 보도에 대한 ‘정정적 반박’으로 그 성격을 바꾸어가고 있다(김병국, 2002).

14) TGI Nanterre, 17 avril 1996, JD n° 604164.

2. 정정보도청구권

반론권과는 별개로 언론법 제12조는 공권력의 보유자(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즉 정부 기관들에게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해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에 잘못된 기사가 발행됐을 때 이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공권력 집행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다(김병국, 2002).

정정보도청구권은 현행법상 인쇄매체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을 다룬 법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박진우, 2007). 또한 인쇄매체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개시 방법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언론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가장 최신 발행호의 1면 머리기사로 게재”해야 하며, 그 크기가 “관련 기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다.

프랑스에서는 1981년 프랑소와 미테랑이 집권한 이후 정부의 국내 언론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 행사가 중단된 상태다. 정정보도청구권 행사 중지는 당시 미테랑의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고, 이후 프랑스 정치권의 관례로 자리잡으면서, 그 어떤 후임 대통령도 프랑스 언론에 대해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한 사례는 없다. 다만 외교적 관계 유지를 위해 외국 국가원수에 대한 프랑스 언론의 보도에 대해 프랑스 정부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한 사례는 존재한다(박진우, 2007). 초기에는 반론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이 너무 “개인의 법익보호에 편중되어 언론매체에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언론계로부터 비판을 받았으며, 실제 이를 남용하는 사례도 많았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에는 반론권 행사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역시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수많은 정보를 취급하는 언론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보에 대한 반론권이 보도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김병국, 2002).

IV. 언론법 개정의 최근 동향

1. 평등 및 시민권법에 의해 개정된 언론법의 주요 내용

평등 및 시민권에 관한 2017년 1월 27일 법의 제정은 상당한 진통을 거친 후 이루어졌다. 정부 주도로 2016년 4월 13일 하원에 최초로 제출된 법안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이후 2017년 1월 27일 법으로 공포되기까지 하원과 상원에서 수차례 심의 및 위원회의 소집이 있었으며,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법안은 여러 차례 수정되었다(안문희, 2017). 2016년 10월, 르몽드, 르피가로, 레제코, 미디어파르트를 비롯한 26개 언론사들과 법조 저널리스트 협회, 사회 정보 분야 저널리스트 협회, 경제와 금융 정보 분야 저널리스트 협회 등은 평등 및 시민권에 관한 법안의 내용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일제히 비판했다(Le Monde, 2016, 10, 14). 상원 및 하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¹⁵⁾. 이러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2016년 12월 27일 해당 법안의 채택과 관련한 절차 및 해당 법안의 몇몇 규정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로, 60명의 상원의원과 60명의 하원의원이 헌법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에 헌법위원회는 2017년 1월 26일 부분적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위원회로부터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결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들이 가결되면서 평등 및 시민권에 관한 법이 2017년 1월 27일 제정되었다(안문희, 2017).

평등 및 시민권법은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이 규정하고 있던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중요한 몇몇 부분을 개정하게 했다. 명예훼손이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성(sex)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젠더(gender) 정체성’으로 대체하였고, 인종적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와 관련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두 배로 가중했다. 또한 인

15) 논쟁이 된 조항들은 먼저 시효에 관한 것이다. 1881년 언론법은 언론 기사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온라인상의 기사에 대해서는 1년이라는 기간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기간 규정이 충돌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다음은 언론인의 방어권 상실에 있다. 예전에는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졌다. 그러나 평등과 시민권에 관한 법안은 판사 또는 검사가 위반되는 사항을 찾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언론인은 자신에게 소가 제기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되어, 방어권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하다고 비판 받은 부분은 손해배상의 범위 확대에 관한 것이다. 누구든지 언론 기사나 논평에 대해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다만 이러한 책임은 해당 기사나 논평으로 인해 손해가 야기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물론 이러한 손해에 대한 인정을 전문적 언론인에게만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언론인을 보호하고 있으나, 언론사가 누락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안문희, 2017).

류애에 반하는 노예제도와 같은 특정 범죄의 축소, 선동 또는 일반화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종차별주의, 반유대주의, 동성애 혐오, 성차별 관련 혐의 재심리 가능성

평등 및 시민권법에 의해 언론법 제54-1조가 추가되었다. 이 조항은 언론법 위반 시 피고소 대상의 과죄가 기소 행위에 의해 확정되는 것에 대한 예외 조항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인종차별적 명예훼손, 인종차별적 중상 및 인종 차별적 혐오에 대한 선동 혐의에 한해 재심리가 가능하다. 동성애 혐오 및 성차별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메커니즘이 적용된다(제32조 제3항, 제33조 제4항, 제24조 제8항). 그러나 단체, 공무수탁사인 및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위임자와 관련하여 명예훼손 및 중상을 포함한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재심리가 여전히 불가능하다(Légipresse, 2017).

(2) 인종차별주의, 반유대주의, 동성애 혐오 또는 성차별주의자의 명예훼손 시 명예훼손 사실의 증거 제공 가능성

명예훼손 행위의 사실 증거 제공에 관한 언론법 제55조가 보완되었다. 제55조는 차별적 동기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 혐오 유발 및 중상으로 죄목이 부과된 범법행위를 재심리하는 경우, 피고소인은 언론법 제35조에 의거, 명예훼손 사실의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동성애 혐오나 성차별, 인종차별, 반유대주의 성격의 명예훼손에 있어 사실의 증거 제출은 일체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헌법위원회는 2017년 1월 26일의 결정(2016-745 DC)에서 변호권이라는 명목으로 이 조항의 법적 유효성을 인정하였다(Légipresse, 2017).

(3) 협회의 행동할 권리

평등 및 시민권법에 의해 언론법 제48-1조가 개정되고 제48-1-1조가 추가되었다. 제48-1조에 의거, 피해자가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인종에 대한 혐오, 명예훼손, 인종차별적 중상 혹은 인종차별적 범죄나 범법행위를 행하도록 선동한 경우 협회 혹은 단체가 손해배상 청구인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했다.

아울러 언론법 제48-1-1조로 인해,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이제 제24조 및 제 24조 제2항에 규정된 노예가 된 사람의 착취 및 노예화 범죄의 보편화, 축소, 부정 및 찬양의 범법 행위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제48-2조 또한 개정되어 전쟁 범죄 또는 반인류 범죄 희생자를 지원하고, 그들의 역사를 보존하거나 또는 차별과 맞서 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 전쟁 범죄, 반인류 범죄를 옹호 혹은 부인하는 행위에 맞서 시민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Légipresse, 2017).

(4) 몇몇 처벌의 추가 및 수정

평등 및 시민권법은 언론법 제24조 제2항에 “반인류 범죄, 노예화 및 노예로 전락한 사람에 대한 착취 및 전쟁 범죄를 부정, 축소, 보편화한 이들에게” 징역 1년 및 4만5천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처벌을 추가했다. 또한 언론법 제24조, 제32조 및 제 33조에 규정된 범죄(특정 민족, 국가, 인종 또는 종교에의 소속 혹은 비소속, 성별,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또는 장애를 이유로 한 개인이나 집단을 향한 중상 혹은 명예훼손,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노예화 혹은 노예가 된 사람의 착취, 적군과의 내통 범죄에 대한 옹호 혹은 선동, 생명에 대한 의도적인 위협, 개인의 인격 전체에 대한 의도적인 위협, 성적인 폭력, 개인에게 위협적인 절도, 강도, 파괴, 훼손 및 손상 행위, 국가의 근본적인 이해를 위협하는 범죄 및 일탈에 대한 옹호 등)에 대해 시민교육 프로그램이라는 보완적 처벌을 추가했다(Légipresse, 2017).

(5) 시청각 커뮤니케이션법 개정

인종차별주의와 맞서 싸우는 것 외에도, 이 법은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지위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법(loi du 30 septembre 1986 portant statut de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에 대한 개정을 포함하고 있다. 2017년 1월 27일 법은 모든 종류의 차별적인 메시지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시청각최고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이하 CSA)에 대해서 동법 제1조의 범위 내에서 교양, 독립성, 정보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보장하며,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방송국들에서 이러한 다양성이 보장되고 있는지를 감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CSA에 방송

프로그램에서 프랑스 사회의 다양성이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추가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양성의 표출에서 선입견이나 편견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배제되어 있는지를 감독하게 했으며, CSA에게 광고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의 존엄이나 여성의 이미지에 대한 존중을 감독할 권한을 부여했다(안문희, 2017).

V. 정보조작대처법과 언론평의회 창설

1. 정보조작대처법

2018년 11월 20일 프랑스 하원은 선거기간의 허위정보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조작 대처에 관한 법안들(Les propositions de loi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 이하 정보조작대처법)’을 통과시켰다. 상원에 의해 지난 7월 26일과 11월 6일 두 번 연속 부결된 법안들이 긴 진통 끝에 가결된 것이다.

마크롱의 중도신당 LREM(전진하는 공화국, 308석)과 Modem(민주노동당, 42석)의 다수파 여당 연합의 활약으로 선거기간 내의 허위정보는 강력한 법적 규제 하에 놓이게 됐다. 나머지 좌·우파 정치세력은 이 법안들을 “쓸모없고”, “잠재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서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정보조작대처법은 크게 두 가지 법안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조직법 차원에서 발의됐다. 즉, 허위정보 대처에 관한 통상법에 의해 이미 확립된 법적 조치들을 대선 캠페인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 제6조에 따라 공화국 대통령 선거 방식은 조직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은 조직법의 개정안으로 간주된다. 나머지 하나는 통상법의 범주에서 선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허위정보를 이용해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시도들을 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거기간(선거 이전 3개월부터 선거일까지) 동안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의 정보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은 허위정보의 배포를 판사가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사적인 정보는 그것이 선거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혹은 언론이 보도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허위정보의 유포를 중

지시하기 위해 짧은 시간 내에 법원이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판사가 아무 때나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보조작대처법에 의해 삽입된 선거법 제 163-2조에 의하면, 판사의 개입이 정당화되기 위해서 정보는 “‘명백하게 허위’여야 하고, 인위적이며, 대량으로 배포되어야 하며”, “다가오는 투표의 진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확하거나 허위인 사실의 주장이나 비판”이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행정부의 기구들, 후보자, 정당, 시민단체들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유포된 이러한 정보에 대해 판사가 개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판사는 48시간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CSA는 한 외국 국가의 통제 하에 있는 ‘서비스’가 허위정보의 유포를 통해 국가 기관의 일상적인 기능을 포함, 국가의 기본 이익을 해친다면, 그 국가의 영향 아래 통제 되는 방송서비스에 한해, “방송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또한 정보조작대처법은 허위정보와 맞서 싸우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해 투명성 의무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선거기간 동안, 이들이 수수료 받는 콘텐츠, 즉 광고콘텐츠에 한하여 그것이 공적 토론과 관련이 있는 정보라면 이 정보의 대규모 배포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다. 이외에도 이 법은 온라인 공중 커뮤니케이션 사용 방식, 비판적으로 정보 읽기 등을 의무적으로 교육하게 하는 등 미디어 교육에 관한 조치들을 포함한다.

2. 정보조작대처법을 둘러싼 논란

이 법이 통과되기 앞서 대다수 언론사와 언론단체, 언론학자, 야당 정치인은 이 법안에 대해 “적용이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이며,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이 법안을 둘러싼 주요 논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허위정보 정의의 모호함

이 법안에 대한 주요 비판 중 하나는 “허위정보”라는 용어의 광범위한 정의와 관련되어 있다. 허위정보의 정확한 정의는 법의 예측 가능성과 범죄 및 형벌의 합법성의 원칙을 고려할 때 중요할 수밖에 없다. 문화교육위원회에 의해 수정된 법안은 허위정보를

“거짓정보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는, 검증 가능한 요소가 부족한 사실에 대한 모든 주장이나 비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허위정보의 정의가 매우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검열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어떤 장치도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인식이 많다. 또한 이 법안에 따르면 단순히 풍자적인 주장도 판사에 의해 허위정보로 인식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러한 발언이 “다가오는 투표의 진정성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 사실”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2) 허위정보에 대한 판사의 전문성

법안에 따르면 만약 누군가 선거기간(선거 3개월 전부터 선거일까지) 동안 “다가올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허위정보”를 공표한 경우, 판사는 긴급하게 플랫폼에 “허위정보의 배포를 막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정보의 진실성과 관련해 이의가 제기된 이후 판사는 48시간 이내에 관련 콘텐츠의 진실성 여부를 파악한 후, 이에 대한 삭제 명령을 내려야 한다. 선거기간 동안 허위정보의 파급력이 크긴 하지만, 48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유럽민주사회연합(RDSE)의 의원들은 “공표된 정보들이 모두 허위이고, 그것들이 인위적이고 자동적으로 배포가 됐다면, 판사가 48시간 내에 이를 간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판사는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서 이러한 발언이 가져올 파장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판사가 판결을 내릴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프랑스 앙수미즈(France Insoumise)의 소속 의원들은 “허위정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판사 혼자서, 그토록 짧은 시간 내에 사안을 이해하고, 양측의 상반된 주장을 듣고, 추가 서류 등을 요청하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있나? 이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적어도 72시간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공화당은 “판사는 가능한 한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소셜네트워크에 대한 허위정보의 확산은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라면서 24시간으로 단축할 것을 주장했다(Rees, 2018, 11, 6).

그러나 전문가들은 72시간이든 48시간이든 판사에게 이런 권한을 맡기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프랑스 언론연구소의 교수인 아르노 메르씨에(Arnaud Mercier)는 “판사에게 사실의 진실성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것은 저널리즘의 영

역이기 때문이다”라면서 정보의 진실성 입증은 법관의 영역이 아님을 강조했다(Carasco, 2018, 11, 22).

정치학자 제랄딘 뮐만(Géraldine Muhlmann)은 관련 판사를 신뢰할 수만 있다면 문제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1881년 법의 범위 내에서 형사판사가 “허위 뉴스”를 규정해야 할 때와 마찬가지로 판사들이 이 새로운 법적 조치들을 적용하고자 할 때 동일한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한다. 더구나 1881년 언론법은 저널리스트에게 ‘취재원 보호법’을 적용했지만, 개정안에 이러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비판했다(Muhlmann, 2018, 8, 9).

(3) CSA의 권한 확대

법안은 CSA에 정보 조작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즉, CSA에게 “외국에 의해 통제되거나 외국의 영향 하에 있는” TV 방송이 프랑스의 근본적인 이해를 침해하는 경우, 이들의 증계를 중단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CSA의 행정적 권한 강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제랄딘 뮐만은 “CSA가 ‘통제 하에’ 있거나 ‘외국의 영향력 아래’, ‘국가의 근본적인 이익을 훼손하고’ 있는 채널과 사이트에서 정보 게시를 금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외국 출판물을 국내 출판물처럼 취급한다는 1881년 언론법의 외국 발행물 취급 조항에 대한 예외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Muhlmann, 2018, 8, 9).

좌파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의원들 역시 인터넷에서 CSA의 권한 확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시청각 콘텐츠의 규제 원칙을 인터넷에 확장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서 시청각 분야의 특수성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외국의 영향력에 대한 기준이 너무 애매하고 따라서 임의적”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에는 “영향력”으로 판단할 어떤 근거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영향력이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Rees, 2018, 11, 6). 아울러 이 조항은 선거기간이 지나더라도 유효하다. CSA는 “관련 서비스가 허위정보의 보급을 통해 기관의 정규 운영을 포함하여 국가의 기본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협약을 종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과 정보에 대한 의무’ 조항의 문제

이 조항은 공적 토론과 관련된 정보의 홍보와 관련하여 개인 데이터 사용에 대한 공정하고 명확하며 투명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온라인 플랫폼은 제안된 법률이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해 관련한 모든 기록을 전자적 방식으로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정보 추천, 배열 또는 검색 알고리즘을 활용한 경우, 몇몇 특정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시청각최고위원회(CSA)와 협력하여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투표의 진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허위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상원은 ‘전자상거래의 법적 측면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디렉티브(Directive on electronic commerce 2000/31/EC)¹⁶⁾에 플랫폼에 대한 유럽의 책임 규정이 정의되어 있으므로 이 디렉티브가 현재 상황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국가 차원이 아닌 유럽 차원에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필연적으로 사용자에게 대한 (형식적으로는 사기업에 의한 자율적인 형태를 띤) 검열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좌파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조치가 검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가 독일처럼 엄청난 벌금을 내야하는 위협에 처하게 된다면,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 회사들은 차라리 엄청난 검열을 선호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Rees, 2018, 11, 6).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트위터 등 주요 거대 디지털 플랫폼이 모여 만든 협회인 ASIC(Association des Services Internet Communautaires, 인터넷 커뮤니티 서비스 협회) 역시 지난 10월 CNIL(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과 유럽위원회에 이 조항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서한을 보냈다(Rees, 2018, 10, 22). 이들은 이 법안이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상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중요한 투표를 앞둔 선거기간 동안, 정보조작대처법은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에게 ‘공적 토론과 관련된 정보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해 기금을

16) 공식명칭은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이다.

지불한 이의 신원에 대해 공정하고 명확하며 투명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ASIC은 “이 의무는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자연인에게도 적용된다”면서 “자연인의 신원에 관한 투명성에 대한 의무는 기존의 법률과 상충될 수 있다”라고 지적한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이 규제 대상 콘텐츠를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배포되지 않은 콘텐츠를 포함, 정보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인 성격의 정보 콘텐츠가 공개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5) 이미 존재하는 허위정보 관련법과의 관계

허위정보의 유포를 차단하기 위한 ‘정보조작대처법’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허위정보에 관한 법적 규제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다. 허위 뉴스를 규제하는 언론법 제27조가 대표적인 조항이고, 아울러 선거법 제97조는 투표의 진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규제하고 있다¹⁷⁾.

법안을 발의한 대표 발의자 중 한 명인 레퓌블리크 앙마르슈 소속 의원 브뤼노 스투더(Bruno Studer)는 이 법안이 1881년 제정된 언론법을 시대에 맞게 수정한 것이라 주장한다. 허위정보가 과거와는 달리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법 27조가 실질적으로 허위정보의 확산을 막는 데 무력한 조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 맞게 선거기간 동안 인위적이고, 대량으로 유포되는 허위정보의 확산을 차단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법 전문 변호사인 바질 아데르(Basile Ader)는 굳이 새로운 법을 제정할 필요 없이 1881년 언론법으로도 지금 벌어지는 허위정보를 둘러싼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언론법의 허위 뉴스 전달과 명예훼손 범죄 조항으로도 선거기간 동안의 허위정보에 대처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허위 뉴스가 공공의 안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면 검찰은 언제든지 이를 기소할 수 있는데, 바로 선거 결과에 관한 허위 뉴스가 그 사례일 것이다. 그리고 언론법은 선거기간에 한해 그러한 허위 뉴스에

17) 선거법 제97조에 따르면 “허위뉴스, 비방적인 소문 혹은 다른 사기 조작을 통해, 선거를 중단시키거나 선거의 향방을 바꾸거나 혹은 유권자의 기권을 유도”한 경우, 1년의 징역 및 1만5천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해 긴급한 조치를 할 것을 이미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정보의 경우, 그것이 개인의 명예나 평판을 해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될 일이다”라고 주장한다(Le Nouvel Observateur, 2018, 1, 4).

게다가 제랄딘 뢰만은 언론법의 허위 뉴스 조항의 경우처럼, 정보조작대처법이 도입하고자 하는 허위정보에 대한 법적 대처가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Muhlmann, 2018, 8, 9). 명예훼손의 경우처럼 대부분의 약식기소는 판사에게 아직 확립조차 되지 않은 범죄를 가지고 잠재적 손해의 예외적인 증대성을 고려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단순한 위험을 이유로 판사가 긴급하게 근본적인 자유를 침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3. 정보조작대처법에 대한 상원의 대응

11월 21일, 정보조작대처법이 통과된 그 다음날, 프랑스 상원의 중도파 연합(Union centriste)과 공화당(Les républicains) 그룹에 속하는 60명 이상의 상원의원들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라는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헌법위원회에 제소했다¹⁸⁾. 9명의 헌법위원회 위원들은 한 달 이내에 정보조작대처법에 관한 위헌여부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정보조작대처법은 정부 주도가 아닌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고, 법안의 합헌성과 기존 협약들과의 일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콩세이데타(Conseil d’État, 국사원)의 의견을 듣거나 그 효과에 대해 연구하는 준비 과정이 미흡했다는 것이 상원의원들이 이 법안을 부결하면서 주장했던 내용이다(Rees, 2018, 11, 21). 이들의 제소장에 등장한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표현과 커뮤니케이션의 자유 침해

헌법위원회에 제소한 상원의원들은 이 법안의 제1조, 즉 허위정보에 대한 판사의 약

18) 프랑스 헌법 제61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조직법은 공포되기 전에, 제11조에 규정된 의원발의 법안은 국민투표에 회부되기 전에, 의회 의사규정은 시행되기 전에 헌법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합헌성에 대한 재결을 받아야 하며, 동일한 목적으로 대통령, 총리, 하원의장, 상원의장, 하원의원 60명 또는 상원의원 60명은 공포하기 전에 법률을 헌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식기소 절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은 “표현과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필요하고, 적절하지 않으며, 불균형적인 조항”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판사가 “투표의 진정성을 바꾸는 성격”의 허위정보의 진위여부를 48시간 내에 입증할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아직 실시되지 않은 투표의 의미가 손상되었음을 48시간 이내에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의원들은 판사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명확하게 정의내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므로 이 법은 “공공의 안녕을 방해하지 않거나 방해할 가능성이 없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럴 생각도 없는, 사생활을 침해하지도 혹은 그 어떤 손해도 끼치지 않는, 그래서 투표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한 주장의 유포를 제한하게 되어 사상의 자유로운 전달의 원칙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정확한 주장이 아니라 단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인, 그러나 민주적인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주장의 유포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균형적이라고 주장한다. 단순한 패러디나 풍자적인 정보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원들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정보에 대한 기준은 포함되지 않았기에 그러한 정보들이 확산되어 미래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들은 허위정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 유럽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 법률의 제정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 범죄 및 처벌의 합법성 침해

이들은 정보조작대처법이 다른 원칙, 즉 ‘범죄와 형벌의 합법성에 관한 헌법적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혹은 “공적 토론과 관련된 정보콘텐츠”의 광고에 지불된 금액의 출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정보조작대처법에 의해 새로 삽입된 선거법 제112조는 징역 1년과 7만5천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위법행위 구성 요소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모호한 개념들로 인해 그 적용 대상이 공적 경제주체 혹은 정보콘텐츠의 상업적 광고에 기대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언론평의회의 창설

정보조작대처법 이외에 허위정보 혹은 정보 조작에 맞서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문화커뮤니케이션부는 언론평의회를 창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0월 10일, 정보조작대처를 위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기 전 이루어진 국회토론회에서 당시 문화커뮤니케이션부 장관, 프랑수와즈 닛센(Françoise Nyssen)은 ‘언론윤리위원회’를 창설할 것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마크롱 대통령이 허위정보와 관련해 언론사들에게 직업 윤리적 ‘성찰’을 주문한 것과도 연관이 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언론의 자율적 감시기관으로서 언론평의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7년 12월 5일, 프랑스의 좌파연합을 이끄는 장 퓌크 멜랑송이 객관적 정보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언론이 침해하지 않도록 문화커뮤니케이션부에 ‘저널리즘 윤리위원회’ 설치를 청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Herreros, 2017, 12, 18). 당시 서명자는 2017년 12월 18일을 기준으로 16만 명을 넘어섰다. 신문, 방송, 인터넷 언론들이 기사나 르포, 토론 등을 통해 허위 내용을 전달하거나, 악의적인 보도를 하거나, 대중을 속이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언론 불신을 이유로 프랑스에서 저널리즘 윤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2006년에는 APCP(Association pour la Préfiguration d'un Conseil de Presse, 프랑스 언론평의회준비협의회)가 마련된 적이 있었고, 2014년 ODI(Observatoire de la déontologie de l'information, 정보윤리관찰소)의 조사에 의하면 대다수의 저널리즘 행위자들 역시 이러한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2월 13일 문화커뮤니케이션부 장관에게 제출된 마리 시리넬리(Marie Sirinelli, 2014)의 보고서, ‘정보의 자기 규제: 어떻게 윤리를 구현할 것인가?’ 또한 언론평의회 창설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언론인들의 자율규제와 공적기관의 개입을 조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나 파리1대학 교수인 도미니크 칼리파(Dominique Kalifa)에 의하면 이 두 축의 불균형, 그 개입 속성의 문제(권고적 속성인가 아니면 강제적 속성인가의 여부), 그리고 언론인들 간 동의의 부재로 인해 언론평의회는 창설되지 않았다(Kalifa, 2018, 10, 10).

영국, 독일, 스위스, 벨기에, 캐나다 등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평의회가 독립적인 윤리 및 중재기구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직접적으로 저널리즘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만드는 도구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언론평의회 창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프랑스 역시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언론평의회 창설 책임자는 AFP의 전 사장인 엠마누엘 오그(Emmanuel Hoog)가 맡았다. 명칭을 대다수의 나라들처럼 ‘언론평의회(Conseil de presse)’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기능을 이름에 반영한 벨기에처럼 ‘저널리즘 윤리위원회(Conseil de déontologie journalistique)’로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언론평의회 기능에 대해서는 이미 구체적인 안들이 등장하고 있다.

ODI 소장 파트릭 에브노(Patrick Eveno)를 비롯해 프랑스에서 언론평의회 창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제시하는 언론평의회 모델은 언론인, 언론인 노동조합과 언론인 협회, 언론 매체 그리고 시민 대표들로 구성된 기구로서,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자율규제 기관이며, 언론사, 편집국 그리고 시민 사이의 중재기관인 동시에 전문 저널리스트의 역할에 대한 성찰 및 협의의 기구이다. 이들은 언론평의회가 정치기관도, 행정기관도, 협동조합 형식도 또는 언론 규제 기관도 아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론인과 언론의 법원이 아니라 윤리적 문제에 관한 언론과 일반 대중 간의 중재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Mindnews, 2018, 10, 23).

언론평의회는 대중으로부터 불만 사항을 접수하거나 스스로 언론의 문제를 파악해 자율규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편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편집 방향이나 편집 선택에 관한 모든 불만 사항은 기각하며,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불만 사항(예를 들어 명예훼손, 중상 등)은 제외하고 저널리즘의 실천에 있어서의 직업윤리 존중과 관련한 불만들을 취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언론평의회는 형사적 처벌이나 재정적 제재 등을 부과하지는 않지만, 자신들의 결정 사항을 언론평의회 사이트나 해당 언론사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그것이 언론사에게는 실질적인 제재가 되기 때문이다.

언론 평의회 창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한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미디어 전문가, 장 마리 샤롱(Jean-Marie Charon)은 언론평의회가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언론에 대한 심판 기구로 기능할 수도 있다면서, “편집국의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언론인들에게 있으며, 이들 스스로 자신들의 실책을 해결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언론평의회를 구성할 사람들의 대표성 문제, 정부와 정치인 주도로 설

립된 중재기관의 정당성 문제를 지적했다(Duroch, 2018, 10, 12).

VI. 마치며

프랑스의 언론법은 오랫동안 ‘언론 자유의 남용’과 ‘언론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완벽한 원칙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균형이 깨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프랑스 언론법의 개정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점점 더 제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평등 및 시민권법의 제정과 더불어 개정된 언론법은 인종이나 종교적 이유로 인한 차별뿐 아니라 성적 취향, 장애로 인한 차별, 젠더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 등 혐오를 조장할 만한 다양한 차별적 발언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언론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치이자 동시에 민주주의적 가치인 인권의 보호일 것이다.

그러나 언론법의 개정이 비판적인 표현마저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 역시 부인하기 힘들다. 테러 선동과 옹호 메시지에 대한 처벌이 그런 사례다. 테러 선동과 옹호 메시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처벌이 급증했다는 비판이 많다. 더구나 선동과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비판 사이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프랑스의 정책을 자유롭게 비판하는 목소리 역시 검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보조작대처법 또한 마찬가지다. 이 법이 명시하고 있는 ‘허위정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로 인한 처벌 역시 정당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법을 둘러싼 논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몇몇 법적 조치들은 오히려 이를 위협에 빠트리거나 가장 근본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헌법위원회에 제소됨에 따라 이 법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이를 둘러싼 논란을 통해 허위정보에 대한 법적 규제가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이를 시도하는 나라들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단행본

- Bilger, P. (2003). *Le droit de la presse*. Paris: PuF.
Dreyer, E. (2018). *Droit de la communication*. Paris: LexisNexis.

논문

- 김병국 (2002). 한국과 주요국가의 반론권제도의 특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2(3), 43-69.
박진우 (2007). 프랑스의 언론법제: 언론 자유의 위배에 대한 법적 규정. <언론중재>, 겨울호, 52-64.
안문희 (2017).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프랑스민법상 사생활보호. <법학논총>, 39, 61-80.

Dhommeaux, J. (1997). Liberté d'expression et négationnisme. La Loi Gaysot et le Pacte international relatif aux droits civils et politiques. *Revue Juridique de l'Ouest*, Vol.3. 251-264.

Sirinelli, M. (2014). Autorégulation de l'information: Comment incarner la déontologie?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URL: <https://www.ladocumentationfrancaise.fr/var/storage/rapports-publics/144000105.pdf>

온라인 기사

- Bardo, A. (2018, 11, 5). Loi sur les fake news : le Sénat rejette à nouveau le texte. <Public Sénat>. URL: <https://www.publicsenat.fr/article/parlementaire/loi-sur-les-fake-news-le-senat-rejette-a-nouveau-le-texte-135105>
Carasco, A. (2018, 11, 22). Les députés adoptent les textes controversés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 <La Croix>. URL: <https://www.la-croix.com/Economie/Medias/deputes-adoptent-textes-controverses-contre-manipulation-linformation-2018-11-21-1200984518>

- Duhen, W. (2010, 12, 29). Diffamation, une infraction de presse sur Internet. <Droit & Technologie>. URL: <https://www.droit-technologie.org/dossiers/diffamation-une-infraction-de-presse-sur-internet/>
- Duroch, A. (2018, 10, 12). Faut-il créer un conseil de déontologie de la presse en France? <Le Journal du Dimanche>. URL: <https://www.lejdd.fr/Societe/faut-il-creer-un-conseil-de-deontologie-de-la-presse-en-france-3777188>
- Gamba, D. (2018, 3, 30). Apologie du terrorisme : que prévoit la loi ? <Europe1>. URL: <http://www.europe1.fr/societe/apologie-du-terrorisme-que-prevoit-la-loi-3613634>
- Goetz, D. (2017, 6, 12). Diffamation : négationnisme et reconnaissance de l'exception de vérité. <Daloz Actualité>. URL: <https://www.daloz-actualite.fr/flash/diffamation-negationnisme-et-reconnaissance-de-l-exception-de-verite#.W-waBDgzaUk>
- Herreros, R. (2017, 12, 18). Mélenchon profite de l'interview de Macron par Delahousse pour promouvoir son conseil de déontologie du journalisme. <Huffingtonpost France>. URL: https://www.huffingtonpost.fr/2017/12/18/melenchon-profite-de-linterview-de-macron-par-delahousse-pour-promouvoir-son-conseil-de-deontologie-du-journalisme_a_23310742/?fbclid=IwAR0yLenHWPXZKpGMjbQnSKlXbVytmB2yNxd6F3DWfv91-sQiPZUtaCrRpxA
- Jacquot, G. (2018, 3, 26). Lutte antiterroriste: comment la législation a évolué au cours des 5 dernières années. <Public Senat>. URL: <https://www.publicsenat.fr/article/politique/lutte-antiterroriste-comment-la-legislation-a-evolue-au-cours-des-5-dernieres>
- Kalifa, D. (2018, 10, 10). Médias : de 1881 aux fake news, l'obsession de la régulation. <Libération>. URL: https://www.liberation.fr/france/2018/10/10/medias-de-1881-aux-fake-news-l-obsession-de-la-regulation_1684519
- Légipresse (2017, 1, 6). Modification de la loi de 1881 par la loi Egalité et citoyenneté: en attendant le verdict du Conseil constitutionnel. <Légipresse>, N°345. URL: <http://www.legipresse.com/011-48956-Modification-de-la-loi-de-1881-par-la-loi-Egalite-et-citoyennete-en-attendant-le-verdict-du-Conseil.html>
- Le Monde (2013, 3, 14). Affichette "Casse-toi pov' con": la France condamnée par la CEDH. <Le Monde>. URL: <https://www.lemonde.fr/societe/article/2013/>

- 03/14/affiche-casse-toi-pov-con-la-france-condamnee-par-la-cedh_1847686_3224.html
- Le Monde (2013, 5, 15). Le délit d'offense au chef de l'Etat abrogé. <Le Monde>. URL: https://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13/05/15/le-delit-d-offense-au-chef-de-l-etat-abroge_3241977_823448.html
- Le Monde (2016, 10, 14). Loi égalité et citoyenneté : «Le Sénat poursuit sa guerre contre la liberté d'expression». <Le Monde>. URL: https://www.lemonde.fr/actualite-medias/article/2016/10/14/loi-egalite-et-citoyennete-le-senat-poursuit-sa-guerre-contre-la-liberte-d-expression_5013686_3236.html
- Le Monde (2018, 10, 22). Robert Faurisson, dernière figure du négationnisme, est mort. <Le Monde>. URL: https://www.lemonde.fr/disparitions/article/2018/10/22/le-negationniste-robert-faurisson-est-mort_5372781_3382.html
- Le Nouvel Observateur (2018, 1, 4). Fake news: la loi permet déjà en France de sanctionner, assure un avocat du barreau de Paris. <Le Nouvel Observateur>. URL: <http://www.nouvelobs.com/en-direct/a-chaud/45658-fakenews-macron-permet-france-sanctionner-assure-avocat.html>
- Mindnews (2018, 10, 23). “Un conseil de presse est l'une des réponses aux tentatives de manipulation de l'information en ligne”. <Mindnews>. URL: <https://www.mindnews.fr/article/13477/un-conseil-de-presse-est-l-une-des-reponses-aux-tentatives-de-manipulation-de-l-information-en-ligne/>
- Muhlmann, G. (2018, 8, 9). Loi sur les «fake news» : «Il faut refuser ce bidouillage juridique». <Le Monde>. URL: https://www.lemonde.fr/idees/article/2018/08/09/loi-sur-les-fake-news-il-faut-refuser-ce-bidouillage-juridique_5340670_3232.html
- Politi, C. (2015, 1, 20). Apologie du terrorisme: peines d'exception ou justice exemplaire? <L'express>. URL: https://www.lexpress.fr/actualite/societe/apologie-du-terrorisme-peines-d-exception-ou-justice-exemplaire_1642597.htm
- Rees, M. (2018, 10, 22). Loi anti-fake news: l'Asic interroge la Commission européenne et la CNIL. <Next Inpact>. URL: <https://www.nextinpact.com/news/107199-loi-anti-fake-news-asic-interroge-commission-europeenne-et-cnil.htm>

Rees, M. (2018, 11, 6). Le Sénat rejette encore la proposition de loi contre les «fake news». <Next Inpact>. URL: <https://www.nextinpact.com/news/107108-le-senat-rejette-encore-proposition-loi-contre-les-fake-news.htm>

Rees, M. (2018, 11, 21). Loi contre les «fake news» : à peine votée, déjà attaquée devant le Conseil constitutionnel. <Next Inpact>. URL: <https://www.nextinpact.com/news/107324-loi-contre-les-fake-news-a-peine-votee-deja-attaquee-devant-conseil-constitutionnel.htm>

Simonnot, D. (1996, 6, 11). Le droit de réponse, un droit à consommer avec modération. Seule une jurisprudence réfléchie peut éviter les abus. <Libération>. URL: https://www.liberation.fr/evenement/1996/06/11/le-droit-de-reponse-un-droit-a-consommer-avec-moderation-seule-une-jurisprudence-reflechie-peut-evit_174443

언론법 관련 사이트

정보 조작에 관한 대처 법안(Proposition de loi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 URL: <http://www.assemblee-nationale.fr/15/ta/ta0151.asp>

1881년 언론자유법. URL: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LEGITEXT000006070722>

상원의 정보조작대처법 관련 헌법위원회 제소장. URL: <https://cdn2.nextinpact.com/medias/saisine-uc-lr-fake-news.pdf>

I. 들어가는 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 등 북유럽 나라는 매년 발표하는 언론 자유지수에서 수위를 달린다. 이들 국가는 세계자유보고서, 부패인식지수, 청렴지수 등 표현의 자유와 정보공개, 정보접근성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실례로 해당 나라별로 언론 자유 침해와 관련한 사건이 일 년에 한 건 일어날까 하는 수준이다. 국가총생산의 절반가량이 공공에서 나오고 관련 정보는 국가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이상 대부분 공개된다.

누구 말마따나 ‘언론인의 유토피아’라고 불릴 만하다. 하지만 폭넓은 정보공개와 언론의 자유는 개인의 사생활 또는 다른 나라에서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이 북유럽에서는 언론에 공개될 여지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언론 보도로 인해 개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 증재기관에 구제를 요청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 건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적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이번 연구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언론 행태와 피해 구제 제도를 다룬다. 앞부분에서는 두 나라에서 언론의 자유가 형성된 시기를 공통으로 다룬다. 1809년까지 스웨덴과 핀란드가 한 나라였기 때문에 언론 자유의 개념의 등장과 발전을 묶어서 다뤘다. 현재는 물론 각각 독립된 나라이고, 언어와 민족도 다르지만 핀란드와 스웨덴은 문화, 제도, 법제와 언론 환경까지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지금은 옛말이 되었지만 인구수 대비 신문 구독자가 많고, 지역지가 발달한 것도 비슷하다. 언론 환경과 뉴스 이용 행태가 디지털로 전환됨에 따라 종이신문 구독자가 줄고 대부분이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뉴

* 하수정 북유럽연구소 소장(hasoojeong@gmail.com)

** 홍지현 북유럽연구소 선임연구원(jihyuna.mohae@gmail.com)

스를 접하지만 여전히 타 대륙, 심지어 유럽 안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뉴스 소비가 많은 편이다. 이런 공통점을 배경지식으로 놓고 스웨덴과 핀란드 두 나라의 언론피해 사례와 구제 사례를 중심으로 각각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스웨덴은 온라인 미디어라고 해도 전통 미디어의 온라인 버전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신문 중심으로 사례를 수집했다. 2017년 노벨위원회 위원의 성폭력 사건의 피의자 명시로 본 언론의 보도 행태, 스웨덴에서 시작된 언론 옴부즈만 제도와 소송 사례를 통해 스웨덴의 구제 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2018년 9월 스웨덴 총선 직전 퍼진 가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구분하는 방법도 정리했다.

핀란드 편에서는 요즘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 언론과 혐오 발언이 언론 선진국 핀란드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법체계에서 이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살폈다. 2014년 5월에 도입된 유럽연합의 ‘잊힐 권리에 대한 법’을 적용한 첫 사례가 흥미롭다. 온라인 괴롭힘, 오보와 정정보도 사례, 명예훼손 사건의 핀란드 법정과 유럽인권 재판소의 판결을 자세히 담았다.

II. 스웨덴과 핀란드 언론의 자유

1. 언론의 자유 역사의 시작

1809년까지 스웨덴의 동부 지방으로 스웨덴과 하나의 나라였던 핀란드와 스웨덴은 언론의 자유 역사의 시작이 동일하다. 1766년에 귀족, 성직자, 시민, 농부로 구성된 스웨덴 왕국의 의회를 거쳐 스웨덴 왕 아돌프 프레드릭(Adolf Fredrik)이 공포한 언론의 자유와 정보 공개를 보장한 세계 최초의 법(His Majesty's Gracious Ordinance relating to Freedom of Writing and of the Press)¹⁾이 그 시작이다(Helsingin Sanomat Foundation & Anders Chydenius Foundation, n.d.).

이 법은 사전 검열을 폐지하여 정치적 논쟁을 야기하였다. 사전 검열 폐지는 글의 저자가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출판인이 글의 내용에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했

1) 영어로 번역된 1776년 법안 전문: <http://www.peterforsskal.info/documents/1766-translation.pdf>

다. 예외적으로 종교에 관련된 글들은 사전 검열이 시행되었으며, 왕과 신 그리고 종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일반 예절에 어긋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되었다. 정보의 자유를 보장한 세계 최초의 법으로 시민들에게 행정과 사법 문서의 열람권을 보장하였다. 이 법은 그 당시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는 정치적 상황이 낳은 우연의 결과물로 인식되기도 한다(ibid.).

성직자이면서 핀란드 지방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었던 안데르스 쉬테니우스(Aders Chydenius)가 이 법의 근간이 되는 위원회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 제정에 중추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개방성과 토론이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언론자유법은 6년간만 유효했으며 1772년 구스타프 3세(Gustav III)에 의해 폐지되었다. 하지만 이 법은 현재 북유럽 사회의 개방성과 투명성의 기반이 되었다(ibid.).

언론자유법 제정은 여론이 나타나기 시작한 그 당시의 유럽의 시대적 상황이 이끌어 준 기회라는 점에서 법 제정에 관여한 의회나 정치인인 쉬테니우스의 역할보다는 또 다른 핀란드인인 페테르 포르스콜(Peter Forsskål)이 쓴, 1759년에 출판된 시민 자유에 대한 생각(Thoughts on Civil Liberty)²⁾이라는 21절로 된 팸플릿에 공을 돌리기도 한다. 포르스콜의 팸플릿은 종교의 자유와 종교적 신념에 대한 의문 제기 및 특권 폐지를 촉구하는 등 위험한 생각을 지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출판과 동시에 바로 판매 금지되었지만, 1766년 언론자유법 제정에 지대한 영감을 주었다(Goldberg, 2017).

2. 스웨덴과 다른 핀란드의 역사: 제정 러시아, 소련, 러시아가 핀란드에 미친 영향

1809년 스웨덴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하여 스웨덴의 동쪽인 지금의 핀란드는 러시아 대공국의 자치령으로 러시아의 지배하에 놓였다. 이로써 핀란드와 스웨덴의 언론의 자유 역사가 각자의 길을 걷게 된다. 러시아는 1804년부터 검열법을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핀란드도 점차적으로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스웨덴은 1809년의 새로운 언론자유법 제정 후, 영국과 함께 유럽에서 언론이 가장 자유로운 나라로 발전하게 되었다(Nordenstreng, 2017).

2) 포르스콜의 팸플릿 영문 번역본: <http://www.peterforsskal.com/thetext.html>

러시아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역사적 친밀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핀란드의 민족주의를 장려하기도 했다. 러시아의 지배 시절 핀란드에는 사전 검열이 때로는 느슨하게 때로는 엄격하게 적용되었는데, 이러한 러시아의 행동은 핀란드의 민족주의를 고취시켜 하나의 독립된 나라의 꿈을 키우게 했다. 이후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과 레닌의 개인적 지지로 핀란드는 1917년 독립하게 된다. 독립 후에도 핀란드는 내전, 소련과의 두 번의 전쟁, 그리고 냉전시대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독립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소련의 눈치를 봤다(ibid.).

안정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발달해온 스웨덴과 달리 핀란드는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언론의 자유가 정치적 상황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 냉전시대에 소련과의 대립을 회피하기 위해 정부와 언론에게 강요된 중립적 태도와 1968년에 설립된 대중매체협의회, 율끼쎌 썬넨 네우보쓰또(Julkisen sanan neuvosto, JSN, in English, Council for Mass Media)의 언론 자율규제의 경험이 오늘날 핀란드의 발달된 언론환경의 밑거름이 되었다. 굳건한 공교육, 러시아와 균형을 이룬 오랜 역사를 통해 길러진 국민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 정부의 종합적이고 일괄된 대응은 최근 몇 년 간의 러시아 트롤 공격에 다른 서방 국가들과 달리 핀란드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였다(Standish, 2017).

1766년 언론의 자유와 정보 공개를 세계 최초로 보장한 법의 개념은 핀란드의 언론과 정보에 관한 핵심적인 역사적 유산으로, 시대별 정치적 상황에 따라 1766년에 제정된 법과 현실의 거리가 멀어지기도 가까워지기도 했지만, 핀란드인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 기준의 하나가 되었다. 현재 언론의 자유와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한 투명한 핀란드 정부의 가장 큰 밑거름이 1766년에 제정된 법이라 할 수 있다.

III. 스웨덴의 언론구제 제도와 주요 판결

1. 스웨덴 미디어의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 현황

2018년 10월 1일은 노벨상 수상자 발표가 시작되는 날이다. 이날 수상자 발표보다 주목 받은 뉴스가 있었다. 스웨덴 노벨 위원회 위원이자 문화계 유력 인사의 강간 유죄 판결³⁾이었다.

[그림 1] “18명 여성: 문화계 유력인사의 성폭력을 털어놓다.”
2017년 11월 24일 스웨덴의 유력 일간지 ‘다겐스 뉘헤테르’에 실린 기사



UPPDATERAD 2017-11-24 PUBLICERAD 2017-11-21

Arton kvinnor anklagar en central person i svenskt kulturliv för sexuella trakasserier och övergrepp.

2017년 ‘미투(#METOO)’ 운동이 사회 각 분야로 번지는 가운데 한 여성이 2011년 10월 스톡홀름에서 문화계의 유력인사인 한 남성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그 이후 무려 18명의 여성이 같은 인물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스웨덴의 유력 일간지인 다겐스 뉘헤테르(Dagens Nyheter)를 통해 공개했다⁴⁾. 이후 법원은 여러 정황 증거와

3) Russell, D. (2018, 10, 1). Cultural profile linked to Swedish Academy found guilty of rape. <Sverige Radio>. <https://sverigesradio.se/sida/artikel.aspx?programid=2054&artikel=7056689>

4) Gustavsson, M. (2017, 11, 21). 18 kvinnor: Kulturprofil har utsatt oss för övergrepp.

증언을 토대로 혐의가 입증되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달이 걸렸다. 피해자의 증언을 종합해 유추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문화계 인사는 노벨위원회 위원으로 스웨덴 한림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사라고 알려졌다. 스웨덴 한림원은 매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기관이다. 피해 사실이 퍼지고 진위를 가리는 사이 한림원은 내분으로 뿌리까지 흔들렸다.

그도 그럴 것이 피의자는 노벨상 수상자 선정의 실무를 담당하는 노벨위원회 위원이고, 그의 부인은 한림원의 종신회원이었다. 피의자는 노벨 재단의 재정지원을 받아 문학 클럽을 운영했는데 다수의 피해자가 그 클럽에서 함께 활동했던 젊은 회원들이었다⁵⁾. 몇몇은 피의자에게 노벨상 후보와 수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사전에 들었다고 말했다. 노벨상 선정 과정에 대한 정보는 향후 50년간 일체 기밀로 유지하는 것이 노벨 재단의 원칙이다. 일련의 사건이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자 노벨상에 대한 신뢰 문제가 곳곳에서 제기되었다. 스웨덴의 왕까지 나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설 정도로 수개월을 끈 대형 뉴스였다. 결국 스웨덴 한림원은 2018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연기하기로 했다.

그런데 강간 사건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명을, 때로는 얼굴까지 공개한 반면 기사 어디에도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의 이름이 없었다. 신문, TV, 라디오 가릴 것 없이 피의자는 줄곧 ‘문화계 인사(Kulturprofilen)’로 불렸다. 간혹 ‘문화계 핵심 인사’, ‘한림원의 회원과 밀접한 관계’이라는 설명이 붙었지만 다른 개인적인 정보는 일절 없었다. 신문이든 방송이든 요즘은 다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 뉴스를 제공한다. 어느 한 곳에서 특종을 터뜨리면 다른 곳에서도 거의 실시간으로 소위 ‘받아쓰는’ 것이 대한민국의 뉴스 제작 풍토다. 하지만 스웨덴의 경우 같은 사안이라도 매체마다 가이드라인과 접근법이 달라 공개 범위와 시기도 각기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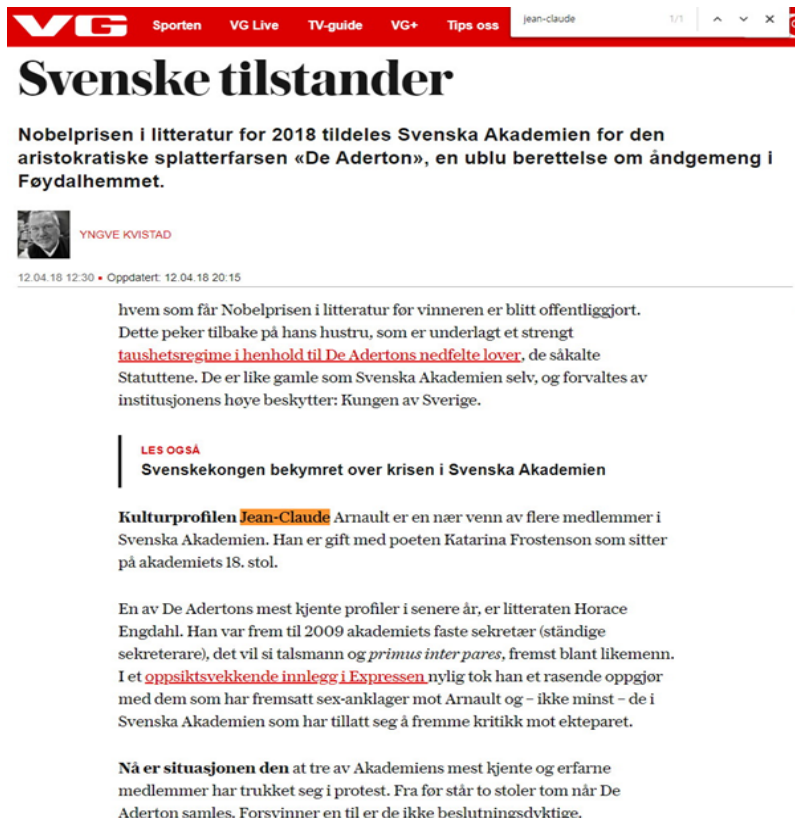
매체의 특성에 따라 공개 시기가 달랐는데, 문화계 인사의 성폭력 사건의 경우 2018년 6월 12일 검사가 해당 인물을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된 후에야 ‘아프톤블라데트(Aftonbladet)’

<Dagens Nyheter>. <https://www.dn.se/kultur-noje/18-kvinnor-kulturprofil-har-utsatt-oss-for-overgrepp>

5) Farran-Lee, L. (2017, 11, 22). Kulturprofilens klubb håller stängt - hänvisar till sjukdom. <SVT>. <https://www.svt.se/kultur/bok/sara-danius-vill-kapa-samarbete-med-kulturprofilens-klubb-1>

같은 대중지에서 피의자의 이름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스웨덴의 고급지인 ‘다겐스 뉘헤테르’ 같은 전통 미디어에서는 10월 1일 법원 판결이 나고서야 실명을 쓰기 시작했다. 텔레비전이 가장 빨랐다. 2018년 5월 4일 스웨덴 국영방송인 SVT에서 18명의 피해자의 고백을 취재한 ‘다겐스 뉘헤테르’의 기자 마틸다 구스타프손(Matilda Gustavsson)을 인터뷰하는 가운데 피의자의 실명이 나왔다. 같은 날 SVT는 뉴스를 통해 “만약 장 끌로드 아노가 그 문화계 인사가 맞다면 스웨덴 한림원의 신뢰도는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실명을 언급했다. 국경을 맞댄 이웃나라 노르웨이는 더 빨랐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보는 뉴스 사이트인 ‘베르덴스강(Verdens Gang)’은 스웨덴 TV보다 빠른 2018년 4월에 문화계 유력인사의 이름을 공개했다⁶⁾.

[그림 2] 2018년 4월 12일자 노르웨이 미디어 ‘베르덴스강’에 스웨덴을 뒤쫓는 노벨 위원회 강간 사건의 피의자 이름이 먼저 공개되었다



6) Kvistad, Y. (2018, 4, 12). Svenske tilstander. <Verdens Gang>. <https://www.vg.no/nyheter/meninger/i/l1blKe/svenske-tilstander>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각기 다른 언어를 쓰지만 상대의 언어를 읽고 이해하는 데 아무 무리가 없다. 이미 노르웨이 매체가 4월에 공개한 이름인 데다, 시간차를 두고 이미 온라인 뉴스 사이트에서 공개한 내용이다. 인터넷에서 검색 몇 번만 하면 나오는 자료인데 스웨덴 신문이 고집스레 피의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2. 명예훼손과 모욕죄

스웨덴 형법은 명예훼손과 모욕죄⁷⁾를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1) 형법 제5장 제1조 명예훼손

누군가를 범죄자, 비난받을 만한 존재로 지목하거나 타인에게 무시당할 수 있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공표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벌금형에 처한다.

그런 경우 정황상 공표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공표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하고, 그 정보가 사실이거나 그렇게 여길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책임을 면한다.

만약 내용이 심각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다수에 전파될 경우 이것이 가져올 피해를 계산해 가중처벌하며 벌금 또는 최장 2년의 금고형에 처한다.

(2) 형법 제5장 제3조 모욕

상대를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로 비방하거나 불명예스러운 행위로 비난할 경우, 이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어려울 때 모욕죄로 규정하며 벌금형에 처한다. 모욕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최대 6개월의 금고형에 처한다.

모욕은 상대의 앞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명예훼손은 대상이 현장에 있지 않은 경우에 성립한다.

7) 스웨덴 ‘형법’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국제언론기구 영문 번역본을 따랐다.
International Press Institute (2015). ‘Criminal Defamation’, Media Laws Database.
<http://legaldb.freemedia.at/legal-database/sweden>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두 종류의 법에서 다루고 있다. 스웨덴은 헌법으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각각 인쇄 매체와 시청각 미디어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담고 있다. 헌법의 내용도 형법과 같으며 처벌은 형법에 따라 이뤄진다.

(3) 왕족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입헌군주제인 스웨덴은 왕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형법 제18장 제2조에 따로 정의하고 있다. 내용은 같으나 왕족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최장 4년, 가중처벌의 경우 6년까지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

(4) 명예훼손 판결 현황

2015년 기준 스웨덴에서 1년간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총 14건이며 명예훼손 가중처벌은 10건, 모욕은 19건이다. 여기서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것은 1건이다. 스웨덴에 명예훼손으로 법정까지 가는 사례가 적은 것은 ‘당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는 ‘얀테 라겐⁸⁾’이 사회 규범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나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고소를 할 정도로 명예를 훼손당해 고소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미디어의 보도 내용에 불만이나 반론이 있으면 법정에 가기보다는 프레스 옴부즈만(Press Ombudsman)이나 스웨덴 방송공사(Myndigheten för radio och tv)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보통이다. 프레스 옴부즈만은 이럴 경우 정정보도나 사과를 지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신문과 잡지 등 인쇄매체와 해당 신문과 잡지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기사에 대한 중재는 프레스 옴부즈만이, 방송과 라디오 뉴스에 대한 중재는 스웨덴 방송공사가 담당한다. 여기서는 프레스 옴부즈만을 중심으로 다루기로 한다.

8) 얀테라겐(Jantelagen), 즉 얀테의 규범은 20세기 초 덴마크 출신 작가 악셀 산테모세의 소설에서 처음 나왔다. ‘당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를 시작으로 하는 ‘얀테’라는 마을의 사람들이 지키는 11가지 도덕률이다. 북유럽식 평등을 상징하는 말이다.

3. 언론중재기구

(1) 프레스 옴부즈만

옴부즈만(Ombudsman)이 스웨덴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옴부즈만은 대리인(Agent)이라는 뜻이며 행정 감찰관으로도 불리는데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과거 조선의 암행어사와 비슷한 역할이다.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을 옴부즈만이라 부르며 비사법적 시민권익 보호제도이다.

1969년부터 운영한 프레스 옴부즈만(Press Ombudsman, 이하 PO라고 한다)은 개인과 언론사 사이의 1단계 중재 역할을 맡는다. 시민이 신문을 비롯한 인쇄매체의 보도 때문에 피해를 입었거나 불만이 있을 경우 이를 PO에게 제기한다. PO는 인쇄매체의 보도 행태가 저널리즘 윤리에 벗어났는지 그 사안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중립에 서서 판단한 후 스웨덴언론위원회(Pressens Opinionsnämnd, 이하 PON이라고 한다)에 회부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PON은 최고 2,000크로나(약 2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신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한국의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한다.

개인이 미디어의 보도 내용에 대응해 법정까지 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경우 PO에게 요청하면 된다. 비용 부담이 없으며 사법적 구제수단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PO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통해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뉴스로 인한 여타 피해사실을 바로잡음으로써 사법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수석 국회 옴부즈만⁹⁾, 스웨덴 법조인회 의장, 출판연합위원회 의장이 협의해 PO를 임명한다. PO는 자율적 비정부기관으로 운영 재원은 언론인클럽(Publicistklubben), 스웨덴기자협회(Svenska Journalistförbundet), 스웨덴 발행인협회(Svenska Tidningsutgivareföreningen), 스웨덴 잡지 발행인협회(Sveriges Tidskrifter)에서 나온다.

9) Chef JO(Chefsjustitieombudsmannen): 스웨덴 국회에는 언론, 재정, 건강/복지, 법조 등 총 네 가지 영역을 각기 관할하는 옴부즈만이 있는데 수석 옴부즈만은 이들을 대표하는 옴부즈만을 뜻한다.

(2) 프레스 옴부즈만의 역사

언론에 대한 불만은 언론의 탄생 때부터 있었다. 1916년 PON이 발족했다. 언론 종사자 내부의 문제의식과 언론윤리 정비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자체적으로 형성한 조직이다. 시민이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불만이 있을 경우 좀 더 손쉽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1969년 프레스 옴부즈만을 시작했다. 이후 크고 작은 불만이 계속 접수되었고 1975년에는 인원을 늘려 기능을 확대했다. 초기에는 PO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지만 1990년 이후부터는 사안을 정리하고 의견을 담아 PON에 보냈다. 1993년부터 PO의 권한이 커졌다. 개인이 문제를 제기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발행된 뉴스에 한해 PO가 사건을 조사하고 문제 제기자와 언론사 간의 중재를 시도해 언론사에 요청하면 언론사는 2주 안에 PO의 중재 내용에 따라 정정보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 프레스 옴부즈만은 2011년에 임명된 올라 식바르손(Ola Sigvardsson)이다. 식바르손은 전 '다겐스 뉴헤테르' 편집장이다. 1969년부터 임명된 PO는 지금까지 7명으로 평균 재임기간은 7년이며 초기에는 변호사가 PO를 맡았으나 1993년부터는 줄곧 언론인이 맡고 있다. 1969년부터 2009년까지 40년간 PO에 접수된 정정보도 요청은 14,500건¹⁰⁾이다. 현재 한 해에 평균 450여 건의 불만이 접수되는데 대부분 기각된다.

4. 언론사 소송 판례

(1) 페르스브란트 vs. 엑스프레센(2006년 12월, 스톡홀름)

2005년 스웨덴의 대중지 '엑스프레센(Expressen)'에는 영화배우인 미카엘 페르스브란트(Mikael Persbrandt)가 알코올 중독으로 읍살라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는 뉴스가 실렸다. 엑스프레센¹¹⁾은 스웨덴에서 최대 부수를 자랑하는 타블로이드판 신문이다. 페르스브란트는 뉴스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했고 엑스프레센은 실수를 인정하며

10) Bergling, M. & von Krogh, T & Nejman, F. 40 år av övertramp PO/PON 1969-2009(2009), Juridisk reportagebyrå, ISBN 978-91-85333-28-8.

11) The statistics Portal (2014). Ranking of daily newspapers in Sweden by circulation in 2014. <Statista>.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543045/ranking-of-daily-newspapers-in-sweden-by-circulation>

잘못된 정보였다고 사과 보도를 했다. 페르스브란트는 사과 보도 후 엑스프레센에 손해 배상액 500,000크로나(약 6,328만 원)를 요구했다. 검사는 손해배상과 별도로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형사 심의도 동시에 진행했다. 엑스프레센의 편집장인 오토 회베리(Otto Sjöberg)는 법정에서 신문사의 명성에 타격을 주는 심각한 잘못이었다고 인정했다. 엑스프레센의 변호사는 페르스브란트가 과음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은 이미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비록 병원에 입원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 해도 그 기사로 페르스브란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9명의 배심원은 엑스프레센을 대표해 출석한 회베리에게 증대하지는 않으나 명예훼손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80,000크로나(약 1천만 원)의 벌금과 별도로 페르스브란트에게 손해 배상으로 75,000크로나(약 950만 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 휘만 vs. 엑스프레센

2001년 스웨덴 좌파당의 대표인 구드룬 휘만(Gudrun Schyman)이 엑스프레센의 헤드라인에 등장했다. “구드룬 휘만이 전남편과 함께 에로틱 영화 ‘흥분할 수밖에’에 출연했다(Gudrun Schyman spelar in erotisk film tillsammans med sin ex-man: ‘Man ska bli kåt)’는 자극적인 내용이었다. 제목을 보면 마치 휘만이 포르노에 출연한 것 같은 뉘앙스였다.

사실 이 영화는 휘만의 전남편이 감독한 다큐멘터리로 휘만과의 친밀한 대화를 담은 것이다. ‘흥분할 수밖에’는 사실 화가 나서 흥분한다는 의미였는데 엑스프레센이 교묘하게 오도했다는 것이다¹²⁾. 이 기사가 나간 후 사람들은 휘만이 포르노영화에 출연한 줄 알고 걱정하며 묻거나 당대표에서 내려오라는 항의성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엑스프레센은 에로틱 영화는 포르노와 다르며 ‘흥분할 수밖에’는 휘만의 전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항변했다. 또 개인이 불편하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으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스웨덴 대법원은 엑스프레센의 제목이 휘만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았다. 엑스프레센은 휘만에게 손해배상으로 50,000크로나(약 630만 원)를, 벌금으로 60,000크로나(약 760만 원)를 내라고 판결했

12) Ritzén, J. (2003, 3, 1). ‘Schyman föll i gråt i rätten. <Aftonbladet>
<https://www.aftonbladet.se/nyheter/a/ngWkKL/schyman-foll-i-grat-i-ratten>

다¹³⁾. 한편 휘만은 언론사를 상대로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며 심리적인 압박이 심했으며 경제적으로 소송비용을 대는 것도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3) 휘테달 vs. 다겐스 뉘헤테르

최근 스웨덴 기독교민주당 의원인 사라 휘테달(Sara Skyttedal)과 스웨덴 유력지 ‘다겐스 뉘헤테르’ 사이에 법정 다툼이 있었다. 휘테달은 다겐스 뉘헤테르가 허락 없이 자신의 SNS에서 개인적 사진을 가져다 실었다며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다겐스 뉘헤테르는 총 열 장의 사진을 온라인 기사에 사용했는데 그 중 휘테달이 이스라엘 장갑차 앞에서 자세를 잡은 이미지가 있었다. 사진이 공개된 후 휘테달이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비난의 여론이 들끓었다.

법원은 두 가지 근거를 들어 다겐스 뉘헤테르의 손을 들어주었다. 먼저 휘테달은 전체 공개로 사진을 올렸으며, 다겐스 뉘헤테르는 중동 분쟁을 다룬 기사에 사진을 사용했으므로 기사의 내용과 상관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당의 핵심 인물이 중동의 군용 차량 앞에서 찍은 사진을 기사에 공개하는 것은 대중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 판결 요지¹⁴⁾다.

5. 언론 보도 준칙

스웨덴 언론의 신중함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스웨덴 뉴스를 보면서 늘 의아하게 여겼던 점이 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 기사에 용의자의 이름이 없다. 기껏 지칭하는 표현이 나이 정도다. “서른 두 살짜리”, 스웨덴에 서른 두 살짜리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별의 구분도 없이 나이로만 지칭한다.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최근에 도입한 규정도 아니다. 수십 년 된 전통이다.

13) TT (2003, 12, 5). Expressens löpsedel om Schyman var förtal. <Expressen>.

<https://www.expressen.se/nyheter/expressens-lopsedel-om-schyman-var-fortal>

14) Jeppsson, J (2018, 10, 5). Sara Skyttedal tvingas betala 522 000 kronor: Oerhört tungt. <Aftonbladet>

<https://www.aftonbladet.se/nyheter/a/0Ey59G/sara-skyttedal-tvingas-betala-522-000-kronor-oerhort-tung>

1986년 당시 스웨덴의 총리였던 올로프 팔메(Olof Palme)가 수도인 스톡홀름 시내 한복판에서 총에 맞아 암살당했다. 언론은 초기에 검거된 용의자를 “서른 두 살짜리(32-åringen)”라고 명기했다. 그러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생일이 지나 더 이상 서른 두 살이 아니게 되어 그 이후부터는 “서른 세 살짜리”로 바꾸어 보도했다.

스웨덴 언론이 피의자나 용의자를 비롯한 개인의 신상 정보 공개에 특별히 조심하는 것은 법이 정한 강제성 때문이 아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대한 처벌은 다른 나라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약하다. 미국같이 어마어마한 징벌적 손해배상 판례도 없다. 법원도 사회의 안전과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에 관대한 편이다. 오히려 기자들 스스로가 깐깐하게 자기 검열을 한다. 스웨덴 언론이 개인 정보 공개를 특별히 조심하는 것은 스스로가 정한 자체 규율과 언론윤리 때문이다.

스웨덴은 1923년에 언론인 윤리규범을 채택하였으며, 현재의 언론인 윤리규범은 1997년에 개정된 것이다. 언론평의회(Press Council)를 설치한 목적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의 남용을 방지하는 데 있다. 한편 1969년에는 프레스 옴부즈만(Press Ombudsman)을 설치하였다.

브리트 보르예손(Britt Börjesson) 예테보리대학 미디어 윤리 교수는 “용의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전통은 진실을 호도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재범을 방지하고 피의자가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스웨덴은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언론을 통해 이름이 드러나면 낙인이 찍혀 사회생활이 힘들어진다. 이들이 과거를 씻고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의 이름을 신지 않는 일종의 합의를 이룬 것이다¹⁵⁾.

2018년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서 스웨덴은 노르웨이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자유로운 언론 환경을 갖춘 나라에 올랐다¹⁶⁾. 스웨덴은 1766년 세계 최초로 언론의 자유를 헌법에 규정한 나라로, 기타 여러 통계로 볼 때 언론이 권력이나

15) Landes, D. (2009, 2, 23). What's in a name: crime suspects and the Swedish press. <The Local>. <https://www.thelocal.se/20090223/17716>

16) Reporters without borders for Freedom of Information (2018). 2018 World Press Freedom Index. <https://rsf.org/en/ranking>

자본으로부터 독립해 최대한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고 볼 수 있다. 개인 정보라도 공익을 위해 공개할 가치가 있으면 보도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예외를 둘 수 있다. 하지만 스웨덴 미디어가 실제로 보도하는 방식을 보면 자체 규율이 법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조심스럽고 보수적이다.

이 자체 규율의 단초는 1923년 일명 PK라 불리던 스웨덴 언론클럽(Publicistklubben)에서 찾을 수 있다. 1965년 스웨덴언론노조(Svenska Journalistförbundet)는 언론인 행동강령을 채택했고, 이어서 옴브즈만과 함께 윤리 규정을 강화했다. 피의자의 이름을 적시할 때 각별히 주의하라는 내용은 이때부터 담겨 있었다. 아래는 윤리 규정의 일부다.

“만약 이름을 공개함으로써 당사자에게 해로운 결과를 미치게 될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약 공개하는 것이 명백하게 공공에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에게 해가 될 경우 이름을 쓰지 않는다.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철저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과도하게 주목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규율은 오랜 시간 편집국은 물론 언론사 전체와 사회에 뿌리내렸다. 직업윤리에 충실한 것은 언론인이 전문직이라는 자부심에서 나온다. 의사나 변호사가 반드시 해당 과정을 전공한 후에야 자격을 얻게 되는 것과 같이 스웨덴의 기자는 대부분 저널리즘 과정을 거친 후 언론사에 들어간다. 스웨덴은 1960년대부터 저널리즘 학과 또는 저널리즘 학교가 개설되었다. 저널리즘 과정은 언론인의 윤리와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데, ‘사회의 감시사이자 어떤 계층에도 속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 제3자로서 사안을 대해야 한다’¹⁷⁾는 것이 핵심이다.

6. 보도 준칙에 대한 평가와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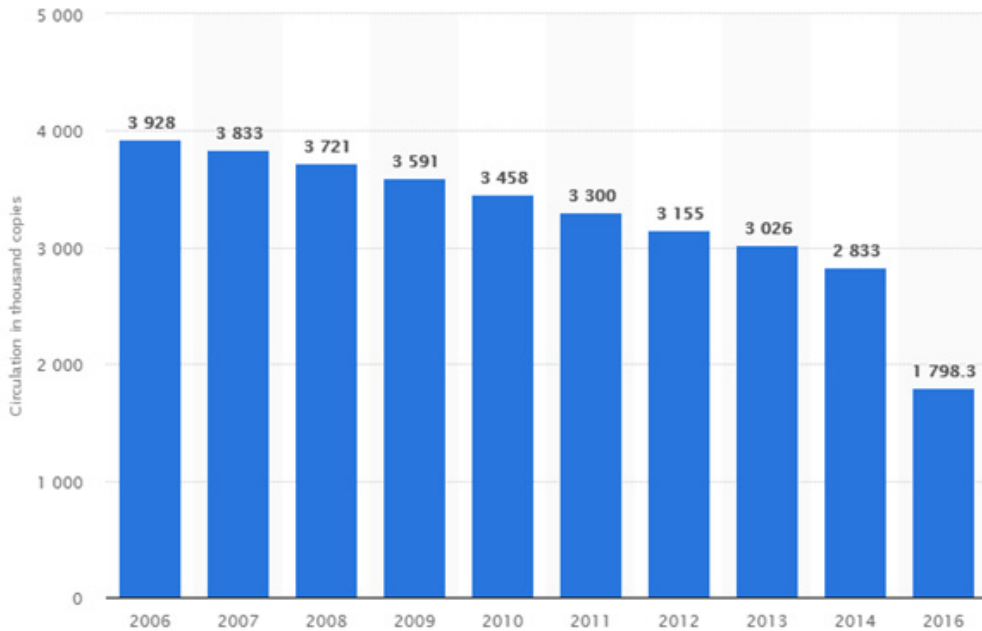
보수적인 보도 관행은 안정적인 수익구조 덕이 크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스웨덴 인구의 절반가량이 신문을 구독했는데 중앙지와 지역지를 함께 구독하는 경우가

17) Wadbring, I & Ohlsson, J (2018). Media Landscapes Expert Analysis of the state of media: Sweden. <European Journalism Centre>. <https://medialandscapes.org/country/sweden>

많았다. 구독하지 않더라도 가판 구입이 많아 최근까지도 퇴근 무렵 편의점 앞에 줄을 서서 석간신문을 사는 풍경이 흔했다. 하지만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종이신문 구독의 하락세가 이어지다 2015년을 기점으로 급감해 현재 일간지 발행부수는 약 1,798,300부로 인구의 18% 정도가 신문을 구독¹⁸⁾한다.

[그림 3] 스웨덴 일간지 유료 부수(2006~2016년)

(단위: 천)



Data visualized by + a b l e a u

© Statista 2018

현재는 다수의 독자가 디지털 뉴스로 넘어갔다. 디지털 뉴스의 수익구조는 대중지와 고급지가 확연하게 갈린다. 1830년에 창간한 스웨덴 최초의 신문이자 지금도 가장 많은 부수를 자랑하는 타블로이드판인 아프톤블라뎃(Aftonbladet)과 그 뒤를 잇는 익스프레센(Expressen)은 기사를 전문 공개하는 대신 광고로 수익을 얻는다. 반면 고급지인 다겐스 뉘헤테르(Dagens Nyheter)나 스벤스카 다그블라뎃(Svenska Dagbladet)

18) The statistics Portal (2014). Ranking of daily newspapers in Sweden by circulation in 2014. <Statista>.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543045/ranking-of-daily-newspapers-in-sweden-by-circulation>

은 유료 구독자만 기사를 볼 수 있다. 그러다보니 속보 경쟁이나 자극성 대결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앞서 언급한 성폭력 사건의 ‘문화계 인사’는 워낙 유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유죄 판결 전에 몇몇 미디어에서 이름을 공개했다. 기소가 확정된 후였고 정보공개제도가 활성화된 사회라 법원 문서에 실명이 다 나와 있어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찾아 볼 수 있는 자료이니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제가 될 일도 아니다. 하지만 종이 신문과 같은 전통 미디어는 여전히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내려진 후에야 공식적으로 기사에 이름을 썼다. 현장 기자들은 이것을 언론인의 윤리라고 표현한다. 이미 다른 매체에서 이름이 다 공개된 상황에도 전통 미디어는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별스러운 자기검열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기사의 기본이 사실 적시인데 의도를 갖고 주요 정보를 누락하는 것은 언론 윤리에 맞지 않는다는 학계의 주장도 있다. 올로프 팔메 암살 사건을 예로 들어 당시 스웨덴의 모든 서른 두 살짜리를 용의자로 보기보다 이름을 적시하는 것이 더 윤리적이지 않냐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언론에서 용의자의 이름을 먼저 밝히고 나서면 오히려 독자와 시청자가 나서서 기사가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한다.

최근 스웨덴 뉴스에 총기 살인 사건이 자주 등장했다. 스웨덴 경찰청의 통계를 보아도 총기를 이용한 살인 사건과 범죄조직의 활동이 크게 늘었다. 그런데 총기 사고를 전할 때에도 여전히 나이와 성별 이외에 용의자에 대한 정보는 없다. 이름을 쓰지 않더라도 인종이나 직업 등의 개인 정보가 따라 붙기 마련인데 찾기 어렵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충실하다. 시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무고한 개인의 인권에 무게를 둔 것이다.

스웨덴의 유력 일간지 다겐스 뉘헤테르의 기자인 클라스 스반(Clas Svahn)은 “사건 기사를 쓸 때 용의자의 나이와 성별 이외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스웨덴 기자는 용의자가 법정에서 유죄로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명제에 충실하다. 피의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한 스웨덴 기자는 사건을 다룰 때 일부러 용의자 또는 범인의 인종적 배경을 쓰지 않는다고 했다. 이민자 범죄가 느는 것은 사실이나 자칫 사람들 사이에 ‘이민자는 곧 잠재적 범죄자’라는 인식이 싹트면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7. 보도 행태의 기준이 되는 정부의 노력

이런 태도는 스웨덴 당국과 국영 매체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스웨덴의 당국과 국영 매체는 ‘이민자’라는 단어 대신 ‘해외 배경(Utländsk bakgrund)’이라는 용어를 쓴다. 통계청 인구 자료에도 이민자 대신 ‘해외 배경’이라는 명칭으로 구분한다. 스웨덴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이민자를 꾸준히 받아왔다. 2000년대 이후에는 쿠르드, 이라크, 시리아 등 주로 중동의 분쟁지역에서 난민자격으로 스웨덴에 오는 사람 수가 크게 늘었다. 2015년 한 해에만 무려 16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였다. 1천만 인구 스웨덴에 일 년 사이 1.6%의 이민자가 들어온 셈이다. 주로 분쟁지역의 인도주의적 이민인데 현재 전체 인구의 25%가 이민자 또는 이민 2세대 출신이다.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동질성이 높은 사회였다. 인종도 단일하고 합의주의 전통이 깊어 문화와 가치관을 공유한다. 여기에 다른 생김새에 다른 문화를 가진 다수가 사회에 흡수되다 보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민자의 수가 늘어나자 언어나 종교가 비슷한 그룹이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경우도 생겨났다. 스톡홀름 교외 지역의 학교에는 전교생이 이민자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스웨덴의 극우 정당이 약진하는 배경에는 이민자들이 스웨덴 사회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복지 예산을 거덜내고 있다는 식의 자극적인 선동 탓도 크다. 하지만 사회 문제를 특정 그룹의 탓으로 돌리며 분열된 채 살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가 사회 통합에 온 힘을 쏟는 이유다.

스웨덴 정부는 사회통합부를 신설해 전방위로 사회통합을 위해 애쓰고 있다. 이민자 대신 ‘해외 배경’같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노력의 하나다. 이 외에도 국영방송을 중심으로 통합적 언어 사용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다수의 매체가 동참하고 있다.

8. 과제

(1) 개인소득은 공공 정보인가

인구 1천만의 나라 스웨덴은 정보공개가 발달한 나라다. 개인의 소득과 납세 내역이 공개된다. 매 연말이면 스웨덴 대중지나 지역지에 단골로 등장하는 기사가 있다. “올해

스웨덴에서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을까?”, “우리 동네 재산세 최고 납부자 30인”, “이 구역 최고의 부자는?” 등의 제목이다. 매체 성격에 따라 2018년 최고 소득자, 금융권 최고 소득자, 스포츠계 최고 소득자, 스톡홀름 최고 소득자부터, 지역지는 도시를 구단 위 동단위로 쪼개가며 그 구역 최고 소득자에 대한 기사를 낸다. 거대 기업의 대표가 얼마를 벌었는지야 별다른 뉴스거리가 아니지만 우리 동네 누군가가 얼마나 벌었는지 실린다면? 재미는 있을 것 같다. 만약 내가 그 중 하나라면? 그다지 유쾌하지 않을 것이다.

한스 스토올그렌(Hans Ståhlgren)은 사업가다. 스토올그렌은 2007년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 동쪽 구 중 하나인 리딩외(Lidingö)에서 네 번째로 수익이 많은 사람으로 ‘아프톤블라데트’에 실렸다.

“끔찍한 기분이었습니다. 범죄자 하다못해 성범죄자 이름도 공개하지 않는 나라잖아요. 매번 “스물세 살짜리”니 “스물네 살짜리”니 하면서. 나는 숨으려면 옷이라도 머리에 쓰고 다녀야 할 판이라고요. 왜 선량한 시민이 그 정도 존중도 못 받는 것인가요? 소득은 사적인 문제고 이를 공표하는 것은 해당자에게 피해만 줄 뿐입니다. 나는 대중의 관심을 얻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남의 재산이 무슨 뉴스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¹⁹⁾ 소득이 공개된 이후 경호원을 둔 사람도 있다. 심지어 누가 얼마를 버는지는 도둑에게나 유용한 정보 아니냐는 사람도 있다.

(2) 정보 공개 Vs. 개인정보

스웨덴은 정보공개가 매우 투명하고 폭넓게 이뤄지는 나라다. 누구나 공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 최고 소득자가 아니어도 이웃의 누가 얼마를 버는지 궁금하면 누구나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 소득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스웨덴 북쪽 인구 3,000명의 도시 아르예플로그(Arjeplog)의 지역지에 실린 “아르예플로그 10대 부자”에 오른 사람의 소득은 50만 크로나, 한화로 6,500만 원 정도다.

이것이 사생활 침해인지 여부에 대해 사회 각층에서 토론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너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 같은 사람의 경우만 공개하면 되는 것이 아니

19) Hans Ståhlgren in O'Mahony, P. (2009, 2, 6). Newspaper rich lists: public service or invasion of privacy?. <The Local>. <https://www.thelocal.se/20090206/17408>

냐는 주장도 있다. 스웨덴 언론노조 의장인 아그네타 린드블롬 홀텐(Agneta Lindblom Hulthén)은 개인 소득 공개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공공문서 열람을 제한하려는 반복된 시도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마감에 쫓기는 기자들이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부자 명단을 발표할 때 우리더러 고결한 윤리를 떠올리라고 하지만 난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돈을 너무 적게 버는 사람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왜 부끄러운 일인가?”

이런 풍토이다 보니 스웨덴에서 개인이 언론사를 재산 공개를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3) 2018 스웨덴 총선 가짜 뉴스 피해와 과제

스웨덴에서도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 영국 옥스포드 인터넷 연구소에서 2018년 9월 6일에 발표한 자료 ‘뉴스와 정치적 정보 소비 행태: 2018년 스웨덴 총선 트위터 지형도(News and Political Information Consumption in Sweden: Mapping the 2018 Swedish General Election on Twitter)’²⁰⁾에 따르면 2018년 9월 9일 치른 스웨덴 총선을 앞두고 SNS를 통해 시민들이 유통한 선거 관련 트윗의 3분의 1, 즉 셋 중 하나가 가짜 뉴스라고 한다. 2018년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 간 275,000건의 트윗을 분석한 것으로 선거 직전 SNS에 선거 관련 정보가 활발하게 유통되던 시점이다.

스웨덴의 가짜 뉴스 유통비율은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 가장 높으며, 최근 치른 선거 중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양의 가짜 뉴스가 유통되었다.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주요 웹사이트로는 삼힐스뉴트(Samhällsnytt), 다투헤테르 이닥(Nyheter Idag), 프리아 티데르(Fria Tider)가 있는데, 극우 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의 구 소속 당원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짜 뉴스의 85%가 이 세 사이트를 발원지로 삼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민자와 이슬람, 이슬람 혐오, 외국인 혐오에 대한 것이다²¹⁾.

20) ‘뉴스와 정치적 정보 소비 행태: 2018년 스웨덴 총선 트위터 지형도’ 보고서 다운로드:

<http://comprop.oii.ox.ac.uk/wp-content/uploads/sites/93/2018/09/Hedman-et-al-2018.pdf>

21) Cuddy, A. (2018, 9, 6). 1 in 3 news articles shared about Sweden election are fake, finds study. <Euronews>. <https://www.euronews.com/2018/09/06/1-in-3-news-articles-shared-about-sweden-election-are-fake>

가짜 뉴스의 주요 내용은 양극화, 분열, 음모론이다.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해 극단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 오해나 불신을 조장하는 내용을 담는다. 아래에 가짜 뉴스로 구분하는 조건 다섯 가지²²⁾ 중 세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가짜 뉴스로 본다.

- 전문성

전문적인 저널리즘 글쓰기의 기준이나 관행에 벗어났을 때. 정확한 정보(기자, 편집자, 발행인, 소유주)를 기재하지 않았을 때. 잘못된 정보에 대해 바로잡지 않는 등 투명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때

- 스타일

감정적으로 선동하는 언어, 공격,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목, 과장, 성급한 일반화, 인신공격성 글쓰기, 움직이는 이미지, 과도한 사진, 특정인의 표정으로 만든 이미지 등이 주를 이룰 때

- 신뢰성

거짓 정보와 음모론을 전략적으로 퍼뜨릴 때. 다양한 정보원을 참고하지 않고, 팩트체크를 하지 않은 경우로, 정보제공자가 확실하지 않거나 믿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신뢰성이 결여된 경우

- 편향성

지나치게 편파적이거나 이론적으로 편향된, 지극히 당파적인 뉴스로 정보보다는 강한 의견이나 논평이 중심을 이룬 경우

- 위조

폰트, 제목, 스타일 등 언론을 위조해 뉴스처럼 글을 쓰는 경우. 논평이나 가짜 정보를 뉴스인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 글 안에 정보원이나 뉴스 출처도 표기하되 취사선택해 왜곡하고 제목, 날짜, 지리 정보를 넣어 글쓰기의 톤이 기존의 뉴스인 것처럼 거짓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가짜 뉴스가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뚜렷하게 밝혀진 연구결과는 아직

22) Hedman, F & Sivnert, F. et al. (2018, Sep 6). News and Political Information Consumption in Sweden: Mapping the 2018 Swedish General Election on Twitter, *Oxford Internet Institute*, pp.2-3

없다. 하지만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 중 하나인 리사 마리아 노이데르트(Lisa-Maria Neudert)에 따르면 스웨덴 총선을 비롯해 가짜 뉴스가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진 2017년 미국 대선이나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등은 매우 적은 표 차이로 결과가 갈린 만큼 아주 적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선거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²³⁾.

가짜 뉴스를 배포하는 사이트는 등록된 언론은 아니지만 유사 언론의 역할을 한다. 1인 미디어의 확산과 유명 인사의 SNS 내용이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면 등록된 언론이 아니더라도 언론과 비슷한 역할과 영향력을 지닌 매체에 대해서는 규제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거짓 정보와 혐오, 선동 등을 담고 있는 가짜 뉴스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사회 전체와 민주주의에 큰 해악을 끼친다. 미디어 채널과 미디어의 역할을 하는 주체가 늘어감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

IV. 핀란드의 언론 동향과 피해 구제 판례 연구

1. 핀란드 언론 관련 법과 규제

(1)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핀란드 헌법²⁴⁾에 의해 보장된 기본권으로, 집회, 결사권과 함께 사회의 근간이 된다. 기본권과 자유를 다룬 핀란드 헌법 제2장 제6항부터 제23항 중 12개 항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열람권을 다루고 있다.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표현의 자유는 사전검열 없이 정보, 의견, 기타 의사소통을 표현, 배포, 수신할 수 있는 자유를 내포한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보다 상세한 조항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아동 보호에 필요한 그림을 포함한 프로그램들에 관련된 제한 조항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23) Cuddy, A. (2018, 9, 6). 1 in 3 news articles shared about Sweden election are fake, finds study. <Euronews>. <https://www.euronews.com/2018/09/06/1-in-3-news-articles-shared-about-sweden-election-are-fake>

24) 핀란드 헌법 비공식 영문 번역본: <https://www.finlex.fi/fi/laki/kaannokset/1999/en19990731.pdf>

상당한 이유로 법률에 의해 특별히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국이 소장하고 있는 문서와 녹음물은 공공의 것이다. 모든 사람은 공개된 문서와 녹음물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²⁵⁾

핀란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에 서명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기본권처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을 둔다. 정보열람권도 표현의 자유와 똑같이 중요히 여겨져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다. 방해 없이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사전검열이 없다. 다만 공개된 정보가 불법일 경우, 표현의 자유가 소급적으로 간섭을 받을 수 있다(The Union of Journalists in Finland, n.d.).

(2) 대중매체의 표현의 자유 행사에 관한 법

‘대중매체의 표현의 자유 행사에 관한 법’²⁶⁾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완하고 언론에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때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한다. 이 법은 모든 언론을 기술과 상관없이 규제하려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 해당 법에서 다루는 일부 규제로는 출판물에 대한 책임, 정보를 바로잡을 권리, 정보 출처의 익명성 보장 등이 있다(Ylönen & Nordenstreng, 2006). ‘대중매체의 표현의 자유 행사에 관한 법’의 일부 내용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출판사는 출판물의 책임 편집자를 지정해야 하고 출판물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책임 편집자는 15세가 넘는 파산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며, 위법한 출판 정보에 대해 벌금을 낼 수도 있다. 개인이 출판물의 메시지로 모욕을 당했다고 볼 수 있다면, 그는 동일한 출판물에 메시지에 대한 반론을 올릴 권리가 있다. 개인이나 조직은 자신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권리가 있으며, 정정이나 반론은 무료로 지연 없이 게재되어야 한다. 또 책임 편집자는 필요시 반론이나 정정을 기술적으로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출판사는 정보의 출처를 밝히지 않을 권리가 있다.

25) ‘정부활동 공개에 관한 법’

비공식 영문 번역본: <https://www.finlex.fi/en/laki/kaannokset/1999/en19990621.pdf>

26) ‘대중매체의 표현의 자유 행사에 관한 법’

비공식 영문 번역본: <https://www.finlex.fi/en/laki/kaannokset/2003/en20030460.pdf>

(3) 명예훼손·모욕 관련 법²⁷⁾

형법 제24장 제9조 - 명예훼손: 타인에 대한 허위 정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에게 피해나 고통을 야기하거나 무시당하도록 했을 때, 또는 타인을 이미 언급한 방식과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 폄하했을 때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사자의 경우는 사자에 대한 허위 정보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사자와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고통을 야기하면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공인을 적정선에서 비판하는 경우는 명예훼손이 아니다. 일반적인 중요한 문제를 논의할 때 타인의 권리와 기타 상황을 명백하게 침해하지 않을 경우는 명예훼손이 아니다.

형법 제24장 제10조 - 가중된 명예훼손: 명예훼손에 의해 상당한 고통 또는 특히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전체적으로 명예훼손이 가중되었을 때 가해자는 벌금형 또는 최대 징역 2년에 처한다.

형법 제24장 제12조 -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가중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 한 검사가 임의로 기소할 수 없다. 그러나 대중매체를 통해 범죄가 발생했고 특별히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검찰총장이 기소를 명할 수 있다.

형법 제11장 제10조 - 민족적 선동: 공개적으로 인종, 피부색, 출생 상태, 국가 또는 민족 출신, 종교 또는 믿음, 성적 취향, 장애 등에 근거하여 특정 집단을 위협, 명예훼손, 모욕하는 사람은 벌금형 또는 최대 징역 2년에 처한다.

(4) 언론 관련 규제 당국

핀란드의 대중매체 시장에는 주로 자율규제가 적용된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면허는 정부가 부여하고 있다. 핀란드 공영방송인 YLE는 예외적으로 방송 면허가 필요 없으며 자체 법에 의해 규제된다. 언론 시장은 외국인 소유에 법적 제한을 두지 않으며, 신문을 포함한 출판물과 온라인 미디어에 대한 면허, 허가, 등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정부는 언론사의 운영에 개입하지 않지만, 보조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언론 활동은 통제하고 규제한다(Jyrkiainen, 2018).

27) 핀란드 '형법' 비공식 영문 번역본:

<https://www.finlex.fi/en/laki/kaannokset/1889/en18890039.pdf>

통신 정책과 입법은 교육문화부와 운송통신부에서 집행한다. 정부는 3년 단위로 저작권위원회(Copyright Council)를 구성하는데 위원회는 저작권법²⁸⁾ 적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교육문화부를 지원한다. 운송통신부는 전자통신 네트워크와 정보 보안을 감독하는 FICORA(Finnish Communication Regulatory Authority)를 통해 전자통신, 운영권, 언론 보조금 시스템을 감독한다(ibid.).

핀란드에는 두 개의 데이터 보호 관련 기구가 있다. 법무부와 연계된 독립 기관인 데이터 보호 이사회(Data Protection Board)는 개인 정보 관련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 기관이다. 해당 주체의 필수적인 이익이 보호된다는 전제하에 이사회는 개인 정보 처리를 승인할 수 있다. 데이터 보호 옴부즈맨(Data Protection Ombudsman)은 개인 정보 처리에 대한 방향과 안내를 제공하고, 개인데이터법(Personal Data Act)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감독하며, 데이터 접근, 수정, 삭제의 권리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ibid.; 3.3.2 사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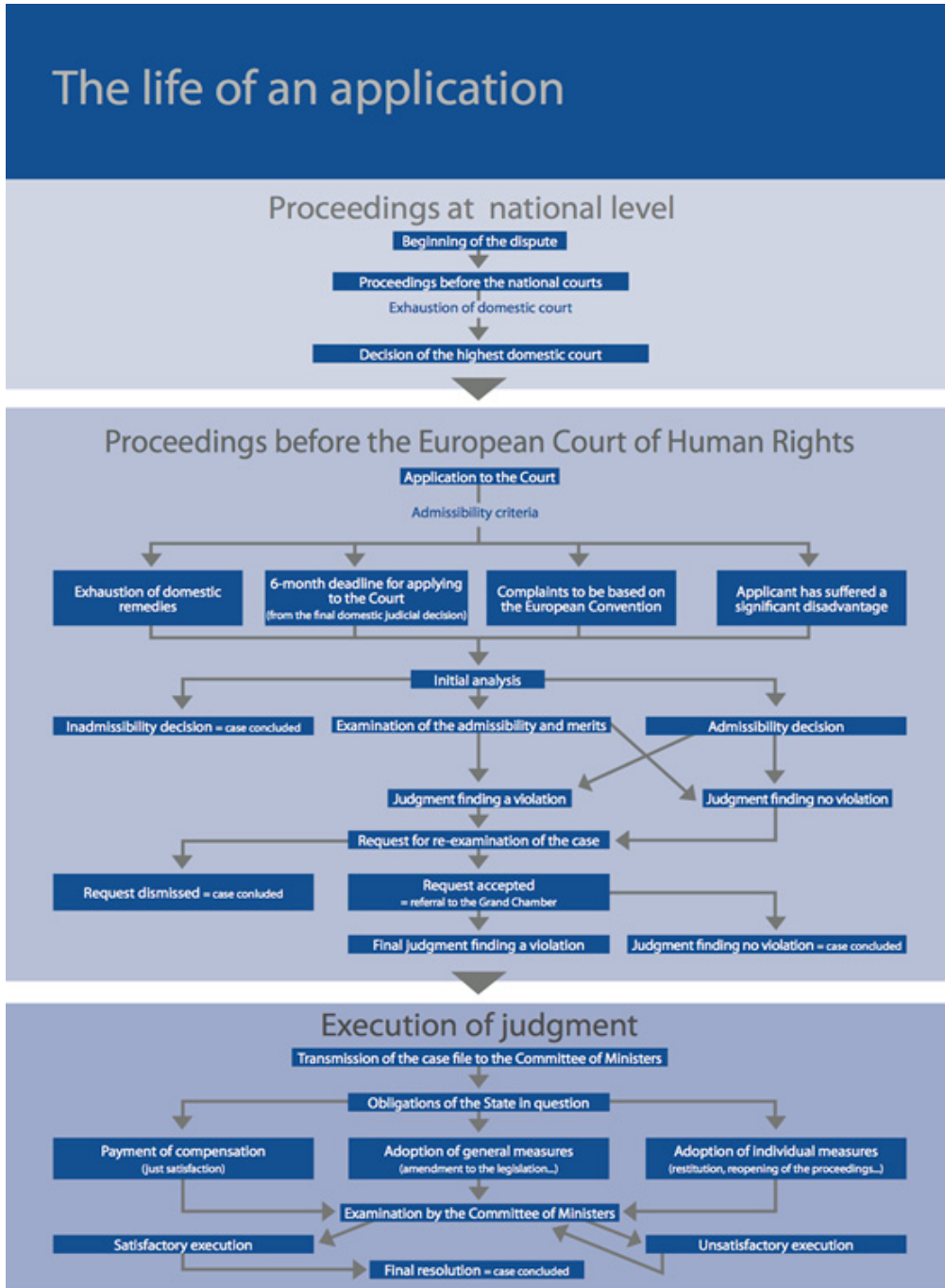
통신과 대중매체 관련해서는 총 25개의 법이 있는데, 헌법부터 통신시장법까지 다양한 규제와 권리조항을 포함한다. 이전의 언론자유법과 라디오방송책임법을 개정해 2004년에 발효된 ‘대중매체의 표현의 자유 행사에 관한 법’은 출판과 프로그램 제작에 적용된다. 이 법은 정기 출판과 프로그램 제작에 수많은 특별 요구 사항을 규정하지만, 개인 웹페이지는 범죄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만 적용된다(ibid.).

대중매체협의회(Council for Mass Media)는 대중매체 콘텐츠를 자율규제하는 기관으로 출판사, 언론인, 해당 협회들이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법적 강제성을 띠지 않지만 유해 인터넷 콘텐츠를 감시하는 여러 단체 중 하나다(ibid.; 1.5 참조).

언론 관련 사건은 핀란드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유럽평의회의 각료위원회는 재판소의 판결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 또한 회원국은 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야 하고 종종 재판 결과에 따라 법 개정을 요구받기도 한다. 그러나 재판소의 판결이 국가의 결정이나 국내법을 기각할 권리는 없다(International Justice Resource Center, n.d.).

28) 저작권법 비공식 영문 번역본: <https://www.finlex.fi/en/laki/kaannokset/1961/en19610404.pdf>

[그림 4] 유럽인권재판소 사건 처리 과정(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n.d.)
The flow chart by © ECHR-CEDH



www.echr.coe.int

(5) 대중매체협의회(Council for Mass Media, CMM)

1) 대중매체협의회(Council for Mass Media, 이하 CMM)

1968년에 설립된 자체 규제 기관인 CMM은 언론인을 위한 지침을 발표하고 준수하여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 현행 언론인을 위한 지침은 201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11년 웹사이트에 대한 불임을 추가했다. CMM은 법적 강제성을 가지지 않지만, 언론이 윤리를 위반했다고 느끼면 누구나 협의회에 이의를 제기²⁹⁾할 수 있다. 위반이 확인되면, 위반 당사자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익명으로 제출된 항의와 발표된 지 3개월이 지난 사항은 조사하지 않는다. 제기된 이의는 5개월 이내에 무료로 처리되며, 서명을 포함한 서면제출을 요하고 온라인 양식을 통한 접수가 가장 일반적이다(Council for Mass Media, 2008).

2) 언론인을 위한 지침

언론인을 위한 지침은 언론에 책임감을 부여하고 직업윤리에 대한 담론을 장려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크게 언론인의 자격, 정보 취득과 공개, 인터뷰 진행자와 대상자의 권리, 정정과 반론권, 사생활과 공공성으로 나눌 수 있는 35개의 지침과 별도의 불임이 있다. 언론인을 위한 지침과 불임은 협회 회원과 기본 협약에 서명한 단체에 적용되며, 변경사항은 CMM 관리 그룹의 만장일치로 승인되어야 한다(Council for Mass Media, 2014).

불임은 언론인을 위한 지침과 중요성과 구속력 측면에서 동일하며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임은 언론이 관리하는 웹사이트에서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에 관한 처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언론인을 위한 지침이 6~13년 간격으로 개정되는 데 반해, 온라인 환경의 빠른 변화를 따라 잡기 위해 지침을 수정하지 않고 온라인에 관한 규정만 수정하기 위해 불임을 도입했다(ibid.).

정정과 반론권에 해당하는 20번째 지침에 따르면 본질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는 지체 없이 이미 정보를 접한 사람들의 관심을 최대한 끌 수 있도록 정정되어야 한다. 정정은 해당 매체 웹사이트뿐 아니라 잘못된 정보가 게시되었던 출판물에도 공개되어야 한다(ibid.; 3.1. 참조).

29) CMM에 접수된 불만에 대한 평결 결과 사례 참조:

<https://journalistiliitto.fi/en/council-for-mass-medias-first-verdicts-of-2016/>

2. 핀란드 언론의 현주소

(1) 언론 지형과 디지털 환경

핀란드의 언론 환경은 강력한 지역 언론과 공영방송(YLE), 중요한 전국적인 일간지(Helsingin Sanomat, 이하 HS), 구독자가 성인 인구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두 개의 인기 석간 타블로이드(Ilta-Sanomat, Iltalehti)로 특징된다(Reunanen, 2018). 1990년대 후반 여러 번의 합병으로 인해 HS와 일파-싸노맷(Ilta-Sanomat)을 소유한 싸노마(Sanoma)와 아아무레흐띠(Aamulehti)와 일파레흐띠(Iltalehti)를 가진 알마 미디어(Alma Media)가 대부분의 신문 배포를 통제하고 있다(Freedom House, 2016). 중견 언론사들은 핀란드어의 특수성과 작은 시장 탓에 외국 언론사와의 경쟁을 피할 수 있었다(Reunanen, 2018).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을 통한 디지털 환경의 활성화로 인쇄 매체에 대한 소비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열독률이 시장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있다. 시장 변화에 언론사들은 무료 온라인 콘텐츠 제공(특히 석간 타블로이드와 YLE), 합리적인 온·오프라인 묶음 구독료, 사용자 데이터와 마케팅 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모색(자동차, 주택, 구인구직 온라인 마켓), 디지털 유료 기사 서비스 강화 등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ibid.).

젊은 독자들이 디지털 서비스 구매에 익숙한 데다 유료화 벽(Paywall)을 강화한 덕에 2017년에는 디지털 유료 고객이 소폭 상승했으며, 유료 구독에 대한 의향 또한 소폭 증가하였다. 특히 HS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온라인 서비스 구독자를 포함해 구독자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묶음 구독 시 저렴한 추가 비용도 다른 나라들보다 핀란드가 높은 온라인 뉴스 구매율을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언론은 정부가 디지털 미디어 부가세(24%)를 인쇄물 부가세(10%)와 같은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허용할 EU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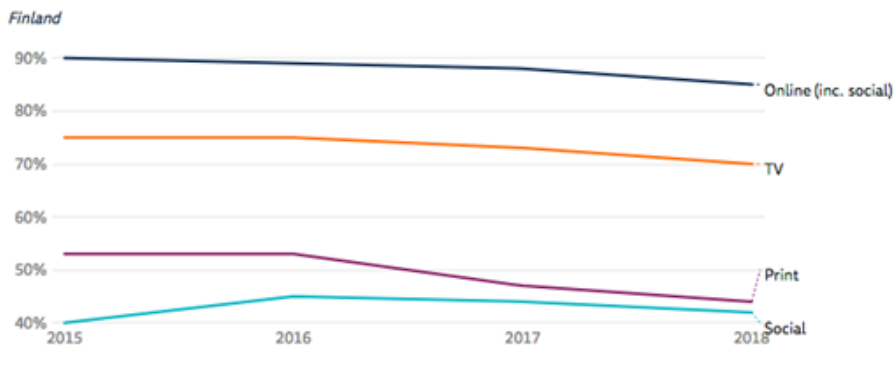
핀란드 언론 기관들은 구글의 디지털 뉴스 계획(Google's Digital News Initiative, DNI)으로부터 혁신적인 디지털 언론 프로젝트를 위해 자금 지원을 받는다. 49만 유로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HS는 지원금을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에 의한 최적의 기사 추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투자할 예정이다. DNI혁신기금은 현재까지 29개 유

럽연합 국가들의 450개가 넘는 프로젝트에 9천만 유로 이상을 지원하였다(Good News from Finland, 2017).

Digital News Report 2018에 따르면 주로 검색, 소셜 미디어 또는 뉴스 큐레이팅을 통해 간접적으로 온라인 뉴스를 접하는 대부분의 나라와 달리, 핀란드(65%)와 노르웨이(62%)는 해당 언론 서비스에서 직접 뉴스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은 주로 검색(47%)과 뉴스 큐레이팅 서비스(30%)를 통해 온라인 뉴스를 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Newman et al., 2018, 14-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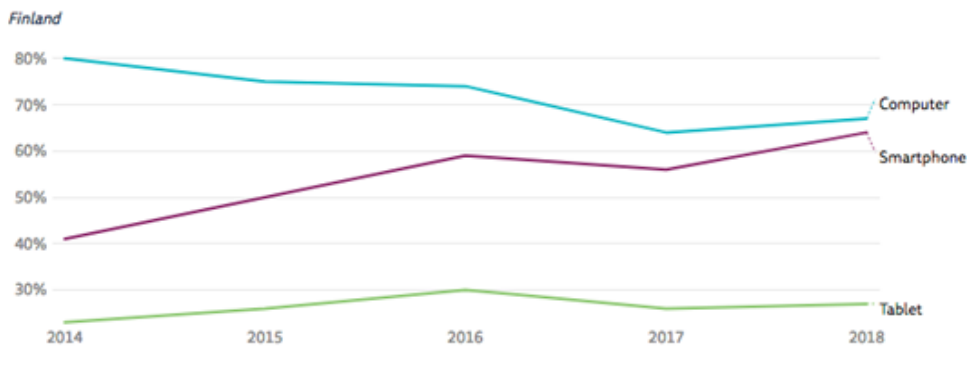
[그림 5] 핀란드 뉴스 매체 소비 트렌드 (Reunanen, 2018)
The chart by Reuters Institute Digital News Report under CC BY 3.0

SOURCES OF NEWS: 2015-2018



[그림 6] 핀란드 뉴스 소비를 위한 사용 기기 트렌드 (Reunanen, 2018)
The chart by Reuters Institute Digital News Report under CC BY 3.0

DEVICES FOR NEWS: 2014-2018



(2) 2018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 2년 연속 하락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가 매년 발행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에 서 핀란드는 5년 연속 1위(2010년부터 2016년까지, 2012년 보고서는 2011년과 2012년 통합 보고서)를 기록했지만 2017년에 노르웨이와 스웨덴에게 밀려 3위를 차지하였다. 2018년에는 네덜란드에게 3위 자리를 내주며 4위로 밀려났다(Reporters without borders, 2018).

‘씨피래게이트(Sipilägate)’ 추문이 핀란드의 2017 세계언론자유지수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12월 총리 유하 씨피래(Juha Sipilä)가 YLE에 자신과 관련된 사건 보도를 수정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YLE는 두 기자와 편집장 간의 내부 논쟁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후에 관련자 모두 사임했다.³⁰⁾ 2017년 12월에는 핀란드 정보기관의 러시아 감시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 HS 기자의 집이 수색당했다.³¹⁾ 법원은 수색이 합법이라 보았고 기자와 그녀의 동료가 군사 기밀을 공개한 것이 위법인지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듯 언론에 대한 잇따른 추문이 핀란드의 2018년 순위를 결정짓게 한 주요한 요소이다(ibid.).

(3) 가짜 언론과 혐오 발언(Hate Speech)

1) 가짜 언론

2016년 3월 1일, 핀란드 주요 언론 매체의 편집장 21명은 가짜 언론에 대한 공동 성명서³²⁾,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이 비판한 가짜 언론은 엠베-레흐띠(MV-Lehti)를 비롯한 몇몇의 신생 온라인 언론으로 2015년 말과 2016년 초에 주요 언론 매체의 대안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이 가짜 언론들은 주요 언론 매체들이 친정부적인 자세로 이민자와 소수민족에 대한 편파 보도를 통해 그들

30) Yle Uutiset (2017, 5, 29). Editor-in-chief Atte Jääskeläinen departs Finnish public broadcaster. <Yle Uutiset> https://yle.fi/uutiset/osasto/news/editor-in-chief_atte_jaaskelainen_departs_finnish_public_broadcaster/9637595

31) Yle Uutiset (2017, 12, 18). Monday's papers: Intelligence documents leak, heavy concert accident, the job's in your genes. <Yle Uutiset> https://yle.fi/uutiset/osasto/news/mondays_papers_intelligence_documents_leak_heavy_concert_accident_the_jobs_in_your_genes/9981816

32) 가짜 언론에 대한 공동 성명서 전문: <https://yle.fi/uutiset/3-8709207>

이 초래할 잠재적인 범죄의 가능성을 숨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극우파의 주장과 일치하며, 신뢰할 수 있는 대안 매체로서 잠재 고객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European Centre for Press and Media Freedom, 2016).

보통의 뉴스 웹사이트처럼 보이는 이들 가짜 언론은 주류 매체에 대한 비판과 이민자와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로 점철되어 있는데, 일부 뉴스는 기사와 상관없이 피부색이 짙은 사람의 사진이 첨부되기도 한다. 이들 매체는 독자에게 의도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사회적인 의사소통에 악영향을 미친다. 성명서는 다원주의와 언론의 자유는 다양한 의견을 허용하지만, 일정한 기준 없이 아무 말이나 퍼뜨려도 된다는 말은 아니며, 새로운 언론이 언론의 도덕과 윤리 기준을 따르지 않고 지나치게 편향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ibid.).

공동 대응은 가짜 언론이 거짓말쟁이, 광대, 악마, 선동 기계 등으로 묘사하며 공격하고 있는 기자들의 활동을 지지했다. 기자들은 가짜 언론의 공격에 영향 받지 않고 계속 일을 할 것이라 발표했고, 민주주의의 기둥이자 시민사회의 중요한 부분으로 언론의 역할을 강조했다. 성명서에 서명한 편집장들은 서로 강력한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직업윤리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가짜 언론의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는 반증이다(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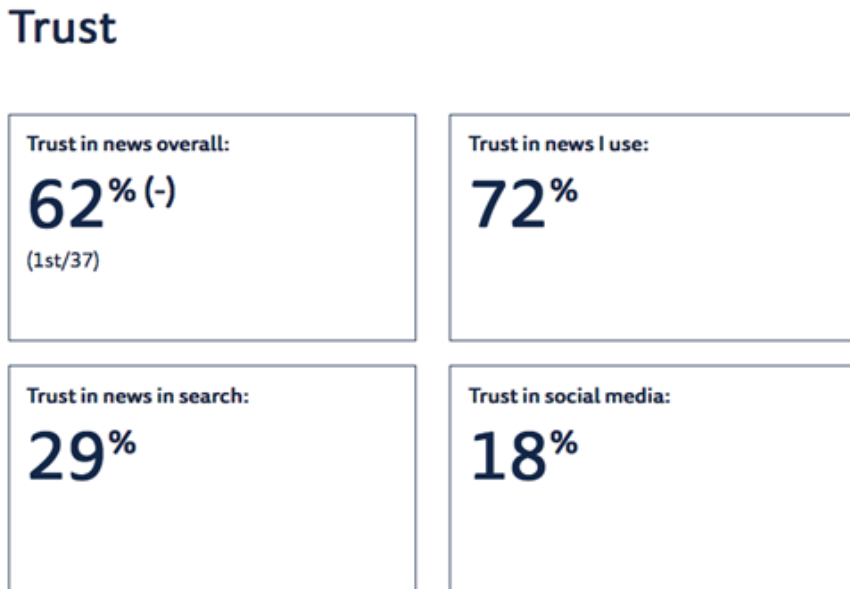
반이민 정서와 기존 매체에 대한 비판을 다루는 내용을 제공하는 엠베-레흐띠(MV-Lehti)는 핀란드의 가장 인기 있는 선동 사이트다. 엠베-레흐띠는 민족 선동 및 기타 혐의에 따른 경찰 조사로 2018년 초에 엠베-미디어(MV-media)로 명칭과 경영진을 변경하였다(Reunanen, 2018). 엠베-레흐띠와 우베르 우우띠셀(Uber Uutiset, 엠베-레흐띠와 비슷한 반이민 선동 사이트)의 설립자인 일야 야닐스킨(Ilja Janitskin)은 2018년 10월에 해당 사이트들에 대한 16개의 범죄 혐의로 헬싱키 지방법원에서 1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Yle Uutiset, 2018g).

2016년 1월에는 9개의 정치적인 청소년, 학생 단체들이 모여 기업들에게 가짜 매체인 엠베-레흐띠와 우베르 우우띠셀에 광고를 통한 금전적 지원을 거부하도록 촉구했다. 이들 단체의 활동으로 가짜 언론 웹사이트가 인종차별적이고 개인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댓글을 허용해서 이를 장려한 것은 아닌지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Yle Uutiset, 2016). 댓글 관련 조사 촉구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가진다. 온라인 출판물의

독자 논평 부분이 뉴스와 분명하게 구분된다면, 해당 사이트에 책임이 없지만, 일반적인 댓글에 대한 책임은 편집장에게 있다. 책임 소재 판단에서 사이트가 댓글을 미리 확인했는지도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주로 상업적 용도의 큰 웹사이트에만 해당된다 (Uusi Suomi, 2015).

대안 언론이라고 주장하는 온라인 뉴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기존 언론은 신뢰를 잃지 않고 있다. 핀란드 사회와 언론의 낮은 양극화 수준과, 객관성과 독립성을 중시하는 언론인들의 강한 직업 문화가 기존 언론에 대한 신뢰를 유지시키고 있다(Reunanen, 2018).

[그림 7] 핀란드 대중의 뉴스에 대한 신뢰(Reunanen, 2018)
The chart by Reuters Institute Digital News Report under CC BY 3.0



2) 온라인 괴롭힘, 혐오 발언

이민, 망명, 러시아의 개입과 관련된 기사들이 기자들에 대한 온라인 공격을 가장 많이 부추겼다.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400명의 응답자 중 6분의 1이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40%는 위협이 이민과 망명에 대한 기사와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2015년과 2016년에 망명 신청자들의 핀란드 유입이 증가하면서 이민과 망명을 주제로 한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 대한 괴롭힘도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경우는 가짜 뉴스 웹사이트인 엠베-레흐띠가 중심에 있었으며, 일부는 극우 정치인의 지지가 발단이 되었다. 이로 인해 온라인 괴롭힘이 일반화되고 있다(Onali, 2018).

혐오 발언은 직업상 비판으로 이해하기엔 사생활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어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주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기자들은 개인을 브랜드화하려는 노력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독자와 가까워졌다. 그 결과 더 많은 공인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직업적 역할과 사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기자들에 대한 사생활 공격을 쉽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ibid.).

온라인 공격이 증가하고 있지만, 언론사의 대응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 언론사일수록 대응이 빨랐으며, 규모가 있는 언론사일수록 위협에 대한 정보가 주변 동료 사이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기자들에 따르면 동료들의 지지와 대화가 가장 흔하고 효과적인 사회정신적 지원이다. 회사의 공개적 지원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해당 기자가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어 괴롭힘이 심해질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다. 편집자나 발행인이 공개적으로 지원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언론사 측의 기자에 대한 확고한 지지는 기자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ibid.).

기자를 향한 온라인 괴롭힘에 대해 경찰은 개개인의 관점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혐오 발언을 구분했고 이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났다. 일부 경찰은 혐오 발언을 직업에 따른 비판으로 여겨 대응하지 않았다. 심지어 경찰 스스로가 혐오 발언과 연관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설령 경찰이 혐오 발언에 대해 적극 대응하더라도 검사가 조사를 중지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는 온라인 괴롭힘에 대한 법체계가 존재함에도 법의 적용이 현실과 거리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증거다(ibid.).

온라인 폭력, 위협, 공격적인 반응들은 기자들의 직업관을 변화시켰다. 기자들은 자기 검열까지는 아니지만, 기사 제목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며, 정확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기사를 바라봄으로써 해석의 여지나 실수를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는 엄청난 비판을 초래해서 일이 느려지는 것을 예방하려는 노력이다. 기사에 댓글 문제로 이민이나 인종범죄에 대한 기사를 쓰는 것을 피하게 된다는 기자들도 있다. 온라인 괴롭힘은 기자뿐만 아니라 인터뷰 대상자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학자나 일반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얼굴이 기사에 언급되는 것을 거절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열린 사회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ibid.).

조사에 따르면 남녀 기자에 대한 위협의 수는 비슷하지만, 여기자가 유독 성폭력 위협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의 지원이 부족한 프리랜서 기자의 경우 온라인 괴롭힘에 홀로 대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을 수 있다.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언론사와의 계약에 영향을 미쳐 일이 줄어들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ibid.). 언론에 보도되는 심각한 온라인 괴롭힘 사례는 대체로 여기자를 향한 혐오 발언 사건들이다.

3) 혐오 발언에 대한 언론사와 정부의 대응

언론사 자체 웹사이트에서는 본인 인증이 괴롭힘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으로 간주되지만, 언론사마다 댓글 인증의 요구 사항이 다양하다. 한 언론사는 현재 본인 인증 없이 댓글을 달 수 있지만, 본인 인증을 포함하는 서비스로 변경할 계획이다. 언론사들은 혐오 발언 예방 차원에서 언론사 웹사이트 댓글에 대한 운영자 사전 검토를 하는데, 작은 언론사는 인력과 예산 문제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대부분의 토론이 오가는 페이스북의 경우는 언론사의 중재가 매우 어렵다. 언론사는 중재 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애쓰고 있다. 중재에 의한 댓글 차단이 다른 플랫폼에서의 공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언론사의 주의가 요구된다(Onali, 2018).

YLE는 대부분의 핀란드 언론사와는 달리 새로운 온라인 토론 문화를 이끌고 운영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전문 직원을 두어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청중들과 소통하고 있다³³⁾. 이로써 온라인 혐오에 대한 하나의 대응책으로 건강한 토론 문화를 이끌고 있다. 대화를 통해 청중은 언론에 대한 오해를 풀고 언론의 역할과 접근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언론은 청중의 언론에 대한 생각에 대해 알게 된다(ibid.).

핀란드 혁신기금 씨프라(Sitra)에서 진행하는 ‘중간 휴식’이라는 뜻의 ‘에래따우꼬(Erätauko) 프로젝트’는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사회의 대중적 담론을 보다 건설적이고 덜 공격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대화를 유도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도록 도와주는 툴박스³⁴⁾를 만들었으며, HS를 포함한 언론과 정부

33) IPI(International Press Institute)가 진행한 YLE 청중 대화 책임자와의 인터뷰:

<https://ipi.media/at-finlands-yle-helping-audiences-see-journalisms-role/>

34) 에래따우꼬 대화 도구를 참조: <https://www.sitra.fi/en/timeout/#dialogue-tools>

기구 등과 함께 건설적인 대화를 유도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Personal communication with Kareinen, J. Specialist, Erätauko, Sitra. 2018, 6, 6). 이 실험에서 HS는 특수교육이나 이민자 통합 같은 주제에 집중해서, 부정적인 논쟁이 아닌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일정 시간 동안 생산적인 대화를 위한 규칙 아래 주제에 어긋나지 않는 토론을 중재자가 이끌어가는 시도를 하고 있다(Onali, 2018).

4) 혐오 발언하는 정치인들

핀란드에서 정치인들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권자들과 소통하는 게 일반적이다. 정치인들의 소셜 미디어 영향력을 고려하면 그들의 인터넷 활동을 1인 미디어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들의 인터넷 활동이 종종 개인이나 단체를 공격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유독 극우파 정당인 핀란드인당(Finns party) 소속 정치인들이 인터넷에서 혐오 발언을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많다.

핀란드 주류 언론은 기사에서 정치인을 언급할 때 과거 그가 물의를 일으킨 사건과 함께 정치인을 소개한다. 언론 보도를 통한 정치인의 과거 잘못에 대한 지속적인 소개는 정치인이 과오를 돌아보게 하고, 당사자는 물론 다른 정치인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예방한다. 예를 들어 2018년 9월 30일, 학생들의 이름이 포함된 포스터 과제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며 학교가 혐오 발언을 조장한다는 주장을 했던 핀란드인당 국회의원 라우라 후따싸아리(Laura Huhtasaari)를 다룬 기사는 그녀를 “최근 석사논문 표절 의혹으로 주목을 받은”이라고 소개했다. 그녀가 트위터에 올린 사진은 그녀를 이민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녀의 게시글은 핀란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녀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학생들의 이름이 포함된 사진을 공개해 미성년 학생들을 온라인 학대와 혐오 발언의 표적이 되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해당 학교는 이메일과 전화 위협이 도가 지나쳐 경비를 고용했으며, 법무부 장관에게는 후따싸아리를 지지하는 내용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다(Yle Uutiset, 2018e; Yle Uutiset, 2018f).

한편 2012년 6월 대법원은 핀란드인당 국회의원 유씨 할라-아호(Jussi Halla-aho)가 2008년에 올린 이슬람교를 소아성애와 비교하고,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들이 복지 혜택을 훔치거나 복지 혜택에 기대어 살아가는 성향이 있다고 한 블로그 글에 대해 민

족 그룹에 대한 혐오 선동과 종교 명예훼손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명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혐오 발언은 언론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Yle Uutiset, 2012). 같은 당 오울우 시의원인 세바쓰피안 뎀뎀넨(Sebastian Tynkkynen)³⁵도 같은 죄목으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2015년 당시 핀란드인당 정치인이었던 올리 싸데미에쓰(Olli Sademies)는 페이스북에 아프리카계 남성의 강제 중성화를 주장하는 혐오 발언 글을 올려 민족 집단에 대한 선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그는 핀란드인당에서 제명되었고 그의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가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기각되었다(Yle Uutiset, 2018b). 핀란드인당에서 제명된 정치인 테르히 끼에문끼(Terhi Kiemunki)³⁶와 핀란드인당 소속 국회의원 테우보 하카라이넨(Teuvo Hakkarainen)³⁷도 민족 집단에 대한 선동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 핀란드 언론 피해 사례

(1) 오보와 정정보도 사례: 뚜르꾸 테러리스트 칼부림 사건

핀란드 타블로이드 신문 일따레흐띠(Iltalehti)는 2017년 8월 18일 저녁에 발생한 뚜르꾸 테러리스트 칼부림 사건에 대해 제보 받은 비디오를 신문사 웹사이트에 올리면서 비디오 제목에 목격자의 제보에 따라 ‘여러 명의 칼을 든 사람들’이라는 언급을 하였다. 기사³⁸는 18일 17시 18분에 보도되었으며, 같은 날 20시 10분,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내무부 장관에 의해 칼을 든 사람은 한 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따레흐

35) Teivainen, A. (2017, 12, 14). Tynkkynen denied leave to appeal against ethnic agitation sentence. <Helsinki Times>. <http://www.helsinkitimes.fi/finland/finland-news/domestic/15199-tynkkynen-denied-leave-to-appeal-against-ethnic-agitation-sentence.html>

36) Yle Uutiset (2018, 7, 11). Finns Party politician denied leave to appeal ethnic agitation conviction. <Yle Uutiset>. https://yle.fi/uutiset/osasto/news/finns_party_politician_denied_leave_to_appeal_ethnic_agitation_conviction/10299153

37) Yle Uutiset (2017, 1, 4). Three Finns Party politicians in court over online hate speech. <Yle Uutiset> https://yle.fi/uutiset/osasto/news/three_finns_party_politicians_in_court_over_online_hate_speech/9388039

38) Iltalehti (2017, 8, 18). Lukijan video turkulaisen kerrostalon ikkunasta: Ihmiset juoksivat kadulla puukotuksen jälkeen. <Iltalehti>. <https://www.iltalehti.fi/iltvuutiset/201708180171813>

떠는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 공고³⁹⁾를 다음날인 19일 12시 54분에 웹사이트에 올렸고, 해당 기사의 내용도 정정하였다.

(2) 명예훼손 사례

1) 요한나 베흐꼬오(Johanna Vehkoo)

2018년 10월에 오울우 시의회 의원 유네스 로까(Junes Lokka)가 언론인 요한나 베흐꼬오(Johanna Vehkoo)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베흐꼬오가 로까를 자신의 비공개 페이스북에 인종차별주의자이자 나치라고 묘사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올가을 초로까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소수자들에 대한 증오를 조장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그는 수년 동안 여러 방법으로 베흐꼬오를 공개적으로 비난해왔으며, 그의 Youtube 채널에서도 베흐꼬오에 대한 비난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The Union of Journalists in Finland, 2018b).

참고로 2017년 겨울 검찰은 경찰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 내의 인종차별적인 게시물에 대해 공개적인 열람을 의도하지 않았으며 기소를 하지 않은 바 있다. 문제의 경찰 페이스북 그룹에는 2800명의 회원이 있었다. 현재 베흐꼬오는 비공개 페이스북에 게시된 발언에 대한 기소를 앞두고 있는데 그녀의 게시물은 300명 미만의 사람들만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의 비공개 페이스북 그룹의 게시물 불기소와 비교되어 귀추가 주목된다(The Union of Journalists in Finland, 2018b).

2) 니씨까싸아리(Nisikasaari) 사건

니씨까싸아리는 오타바메디아(Otavamedia)가 발행하는 주요 주간지에서 일하는 기자다. 2002년 5월 발행된 기사에서 니씨까싸아리는 1998년 3월과 2001년 11월에 방영된 고평이로 오염된 집과 삼림 보호에 관한 문제를 다룬 두 편의 TV 다큐멘터리를 비판했다. 그는 기사에서 다큐멘터리에 사용된 일부 수치가 조작되었으며, 취재 기자들 중 한 사람이 거짓임을 알고 있음에도 한 연구자의 증언을 다큐멘터리에 넣었다고 주장

39) Iltalehti (2017, 8, 19). Oikaisu Iltalehden julkaiseman videon otsikosta. <Iltalehti>. <https://www.iltalehti.fi/kotimaa/201708192200337181>

했다(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015).

해당 기자는 니씨까싸아리와 오파바메디아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하여 기소했다. 2007년 1월 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으나, 2009년 1월 고등법원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여 240유로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동시에 니씨까싸아리에게는 기자의 손해에 대해 2,000유로를, 오파바메디아에게는 해당 기자의 손해 금액과 비용 및 경비에 대해 4,000유로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009년 12월에 대법원은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ibid.).

니씨까싸아리와 오파바메디아는 유럽인권재판소에 대법원 판결이 유럽인권협약 제 10조(표현의 자유) 위반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타당한 이유가 없었고, 특히 그와 회사에 대한 제재가 불균형적이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소송 절차 기간으로 인해 제6조 제1항(적정한 시간 내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이 위반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재판소는 제6조 제1항에 대한 주장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유로 기각하였다. 그러나 제10조 위반으로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핀란드로 하여금 니씨까싸아리와 회사에게 31,942.29유로, 비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그에게 1,500유로, 비용과 경비 측면에서는 양측에게 3,000유로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ibid.).

3) 리쓰따매끼(Ristamäki)와 꼬르보라(Korvola) 사건

방송사 편집자 리쓰따매끼와 그의 상관인 꼬르보라는 2006년 2월 27일 국영방송 채널에서 당국 간의 협력 부족을 비판하면서 스포츠센터를 공동 운영하고 있는 두 회사에 대해 국가수사국이 요청한 세무감사를 세무당국이 거부한 사실을 보도하였다. 방송은 경찰이 그 당시 경제사범으로 재판 중이었던 유명한 사업가 K.U.의 돈이 스포츠센터 구매에 사용되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다음날 프로그램은 새로 방송되면서 스포츠센터에 쓰인 돈이 사실 K.U.가 아닌 보험회사에서 나온 돈이라는 K.U.의 동업자의 설명을 추가했다(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014a).

2007년 12월 10일 검찰은 두 사람에게 대해 리쓰따매끼가 프로그램을 편집하고 꼬르보라가 방송을 승인함으로써 둘이 협조해서 고의로 K.U.에 대해 오해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에게 고통과 경멸을 유발하여 손해를 끼쳤다고 기소했다. 꼬르보라와 같이 두 번

재 방송을 허락한 해당 방송사의 편집장도 비슷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해당 내용이 퍼져 K.U.에게 큰 고통이 야기되었다며, 피고인들에게 가중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K.U.는 해당 재판에서 정신적 피해와 법적 비용에 대해 배상을 청구했다. 피고인들은 혐의에 이의를 제기하며 해당 방송이 세무당국과 경찰의 협력 문제를 다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ibid.).

2008년 5월 9일 헬싱키 지방법원은 해당 프로그램이 진실만을 보도했지만, K.U.가 스포츠센터에 투자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듯한 인상을 주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편집자들이 해당 내용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했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가중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K.U.가 이미 비슷한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암시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리쓰따매끼와 꼬르보라는 K.U.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에 처해졌으며, 두 사람과 편집장은 K.U.의 피해와 법적 비용을 배상하도록 명령받았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각기 이 사건의 상소를 기각했다(ibid.).

리쓰따매끼와 꼬르보라는 이 판결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에 제10조(표현의 자유)와 제41조(Just Satisfaction) 위반으로 제소하였고 2013년에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인정받았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핀란드 정부에게 리쓰따매끼와 꼬르보라가 지불한 비용과 경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ibid.).

4) 싸루매끼(Salumäki) 사건

2004년 7월 8일 일따-싸노맷(Ilta-Sanomat)의 기자 띠이나 요한나 싸루매끼(Tiina Johanna Salumäki)가 한 살인 사건 수사에 관한 기사를 썼다. 신문 첫 면에 핀란드의 유명한 사업가 K.U.와 희생자의 관계 여부를 묻는 제목과 함께 K.U.의 사진이 실렸다. 기사 옆에는 K.U.의 이전 경제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언급한 별도의 칼럼이 있었다. 2006년 8월 25일 헬싱키 지방법원은 비록 해당 기사의 본문에서 K.U.가 살인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했지만, 기사의 제목이 K.U.가 살인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암시했다며, 싸루매끼와 당시 신문 편집장 H.S.가 K.U.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싸루매끼에게 편집장과 공동으로 K.U.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령했다. 해당 사건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다. 싸루매끼는 정부와 K.U. 양측 다 명예훼손 소송 도중에 한 번도 기사의 내용이 틀렸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유럽인권재판소에 제10조(표현의 자유) 위반으로 제소하였지만 2014년에 기각되었다(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014b).

(3) 사생활 침해 판례

1) 잊힐 권리: 구글이 해당 데이터를 지워야 한다는 판례

2018년 핀란드 대법원은 구글에게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한 남자의 범죄 정보(살인)를 검색 엔진 데이터에서 지우라고 요청했다. 이는 핀란드 역사상 최초로 인터넷에서 개인 정보를 포함한 링크를 지우라는 판결이며, 2014년 5월에 도입된 EU의 '잊힐 권리에 대한 법'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이다. 이 법은 부정확하고, 불필요한 또는 누락된 정보나 오래된 정보를 지워달라는 요청을 가능하게 했다(Yle Uutiset, 2018d).

해당 사건은 핀란드 데이터 보호 옴부즈맨의 삭제 요청을 구글에서 거부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잊힐 권리를 요구한 남자는 정신적 문제로 '한정 책임 살인'으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살인은 2012년에 발생했고 남자는 2017년 7월에 석방되었다. 법원은 해당 범죄는 심각하지만 건강 문제로 살인에 대해 부분적인 책임만을 진 사실은 민감한 정보로, 개인 사생활 존중이 대중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ibid.).

구글 검색 결과를 통해 위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지만 남자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는다. 구글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공인으로 봐야 하므로 데이터 삭제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검색 결과에서 데이터를 지워야 한다(ibid.).

2) 싸파꾼난 마르끼나뵈르씨(Satakunnan Markkinapörssi)와 싸파메디아(Satamedia) 사건

싸파꾼나 마르끼나뵈르씨와 싸파메디아는 세금 정보를 보도하는 베로뵈르씨(Veropörssi) 신문을 발행했다. 2003년, 싸파메디아는 2002년에 베로뵈르씨에 실린 120만 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개인에 대한 세금정보를 제공하는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시작했다. 2003년 4월, 데이터 보호 옴부즈맨은 두 회사의 과세 데이터 처리와 범위에 대해 행정 질

차를 요청했으나, 데이터보호이사회는 해당 회사가 언론사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법의 부분적 침해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기각했다(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017).

2009년 4월, 법원은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공개는 언론 활동이 아닌 개인정보의 처리로, 두 회사는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데이터보호이사의 결정을 각하하고 데이터보호이사회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같은 해 11월에는 데이터 보호 이사회가 언론사가 세금 정보를 2002년처럼 공개하는 것과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2012년 6월에는 대법원이 상소를 기각했다(ibid.).

두 회사는 유럽인권협약 제10조(표현의 자유), 제14조(차별 금지)에 의거하여 유럽인권 재판소에 제소하였고, 제6조 제1항(합리적 시간 안에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에 기대어 절차상 기간이 과도한 데 대해서도 제소하였다. 2015년 7월 21일 유럽인권재판소는 6대 1로 유럽협약 제10조를 위반한 점은 없었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만장일치로 절차 기간에 대해 제6조 제1항을 위반했지만, 제14조에 의거한 불만은 명백히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였다(ibid.).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세금 정보이지만 언론사의 대대적인 정보 공개는 사생활 침해로 결론이 난 것이다.

(4) 가짜 언론에 의한 혐오 발언 사례

1) 예씨까 아로(Jessikka Aro)와 가짜 언론(러시아 트롤)

공영방송 YLE 기자인 아로는 2014년 9월 YLE 뉴스 사이트에 러시아 트롤이 이용하는 전술과 웹사이트, 그들의 허위 정보 공격에 대한 독자들의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 트롤은 나토에 협력하는 스파이인 아로가 핀란드에 사는 러시아인들을 박해하고, 불법적인 친푸틴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허위 정보를 가짜 뉴스 사이트에 퍼뜨렸다. 또한 아로의 정신 건강과 러시아 트롤 취재에 의문을 제기했고, 아로의 연락처를 인터넷에 공개해 그녀를 심각한 온라인 괴롭힘에 노출시켰다⁴⁰⁾. 2016년 2월에는 아로의 12년 전 약물 남용에 대한 벌금 판결 전력을 공개했고, 아로를 약에 취해 기사를 쓰는 정신질환자 마약상이라는 허위 기사를 가짜 언론⁴¹⁾과 극우 음모론 사이트

40) 아로를 나토 트롤로 포함하는 뮤직비디오: <https://www.youtube.com/watch?v=igOa1EXKzTI>

41) 아로를 마약상으로 묘사한 MV-lehti 가짜 기사:

<https://mvlehti.net/2016/02/24/natos-information-expert-jessikka-aro-turned-out-to-be>

에 게재했다(Aro, 2016).

아로는 온라인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트롤 공장 잠입 취재⁴²⁾를 하였고, 독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트롤이 활동하는 온라인 포럼 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녀의 조사에 따르면, 공격적인 친러시아 선동이 다수의 핀란드인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러시아 정치에 대한 온라인 토론을 멈추거나, 러시아 관련 정보에 대한 판단력을 상실했다. 심각한 경우에는 허위 정보에 현혹되어 사실 관계 확인 없이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기도 했다. 이에 동요한 사람들은 심지어 YLE 본사 앞에서 시위를 하기도 했다. 아로는 이 취재로 2016년에 핀란드 본니에르 언론상(Bonnier Journalism Prize)을 받았다(ibid.).

엠베-레흐피와 우베르 우우피쉴의 설립자인 일야 야니쓰킨(Ilja Janitskin)은 2018년 10월에 해당 사이트들에 대한 16개의 범죄 혐의⁴³⁾로 헬싱키 지방법원에서 1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에게 다른 두 명의 피고인들과 함께 괴롭힘 피해자들에게 13만6천 유로를 배상할 것을 명령하였다. 또한 그는 아로에게 개인적으로는 3만5천 유로를, 백크만(Bäckman)과 함께로는 1만 유로를 지급해야 한다. 백크만은 아로를 괴롭히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다른 사람들에게 그녀를 모욕하도록 선동한 혐의로 1년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백크만은 아로가 마약중독자였고, 러시아 정부의 적이자 스파이였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으며, 야니쓰킨에게 아로에 대한 기만적인 기사를 게재하도록 부추긴 바 있다(Yle Uutiset, 2018g).

야니쓰킨의 가중된 명예훼손은 아로, 반이민자 뉴스 사이트 광고주에 대한 보이콧 캠페인을 주도한 학생 운동가, 난민 문제를 다루는 사람 등 세 명의 고발에 의한 것이었다. 가중된 민족 선동은 이슬람교와 유대인에 관한 것이었으며 HS와 한 언론사의 자료를 자신의 사이트에 무단 게재한 혐의로 저작권 위반 판결을 받았다. 한편 야니쓰킨은 엠베-레흐피와 우베르 우우피쉴 사이트를 차단을 위한 헬싱키 경찰 수사 기밀문서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기밀유지 위반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또한 웹사이트에서 불법적으로 도박 게임을 판매하고, 허가 없이 기금 모금을 한 그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ibid.).

-a-convicted-drug-dealer/

42) 아로의 러시아 트롤 공장 잠입 취재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Jh59Zfcne48>

43) 가중된 명예훼손 3건, 가중된 민족 선동 2건, 저작권 침해 3건, 기밀유지 위반 2건, 불법 도박 혐의 2건, 불법 기금 모금 혐의 4건

2) 린다 뵈꼬넨(Linda Pelkonen)

린다 뵈꼬넨은 2015년에 온라인 뉴스 사이트 우씨 수오미(Uusi Suomi)에 올라온 기사에서 14살 소녀 강간 사건 용의자에 대해 평소와 달리 경찰이 이민자 출신이라고 언급한 점을 지적했다. 이를 빌미로 엠베-레흐띠가 그녀에 대한 온라인 괴롭힘을 주도해 강간과 살인 협박을 받게 했다. 뵈꼬넨은 이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지역 검사가 언론인의 직업 특성상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비판을 견뎌야 한다는 이유로 기소를 거부했다. 뵈꼬넨은 핀란드 언론인 노조와 함께 온라인 위협 조사를 포기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이의를 제기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였다(International Press Institute, 2017). 결국 2018년 초 뵈꼬넨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 받은 3명 중 2명이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는 언론인을 향한 온라인 위협에 대한 핀란드 법정의 첫 번째 유죄 판결로 예씨가 아로 사건을 포함한 다른 사건들의 선례가 되었다(Onali, 2018).

3) 레벡카 해르피넨(Rebekka Härkönen)

투룬 싸노맷(Turun Sanomat)의 기자 해르피넨은 2017년 8월 사망자 2명, 부상자 8명을 낸 투르쿠 테러리스트 칼부림 사건(3.1과 같은 사건)에서 부상자 한 명을 돕고 범인을 추격했던 망명 신청자인 18세 아프간 청년 아흐마드 호세이니의 인터뷰 기사를 썼다. 기사는 당시 도움을 주었던 핀란드인들에 대한 언급과 함께 호세이니의 행동을 강조하며, 이슬람 국가 출신의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지적했다(The Union of Journalists in Finland, 2018a).

핀란드인당 대표 유씨 할라-아호(2.3.4 참조)가 해당 기사가 날조라는 엠베-레흐띠의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그녀에 대한 온라인 학대를 야기했다(The Union of Journalists in Finland, 2018a). 해르피넨은 살인 위협을 포함한 수많은 협박을 받았고, 공공장소에서까지 괴롭힘을 당했다. 그녀는 결국 회사의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위협을 견디다 못해 헬싱키의 자매회사로 이직했다(International Press Institute, 2018; Yle Uutiset, 2018a).

위협이 심각해지면서 해르피넨은 증오 표현에 대한 형사처벌 요구를 철회했지만, 공

익을 위해 피해자의 고소 없이 사건이 기소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2018년 3월 검찰 총장은 이 사건이 공익과 무관하다 판단하여 기소를 각하했다. 이에 대해 언론은 법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촉구하였다(The Union of Journalists in Finland, 2018a).

(5) 학교 총격 사고에 대한 언론의 태도 변화: Jokela vs. Kauhajoki

2007년 11월 7일 핀란드 남부, 헬싱키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투우수라(Tuusula) 지역의 요켈라(Jokela) 마을에서 18세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총을 난사해, 6명의 학생, 교장 선생님, 학교 간호사가 사망했다. 범인은 학교에 불을 지르려 했으나 실패했으며, 결국 자신에게 총을 쏘서 치명상으로 그날 저녁 사망했다. 또 2008년 9월 23일 헬싱키에서 300km 떨어진 도시, 까우하요끼(Kauhajoki)에서 22세 응용과학대학교 학생이 아침에 등교하여, 9명의 동급생과 시험 감독 선생님을 총으로 쏘 죽였다. 범인은 학교 건물에 여러 번 불을 질렀으며, 자신에게도 총을 쏘서 치명상으로 나중에 사망했다. 두 건의 총기 폭력 사건이 1년 사이에 연이어 발생했지만, 총기 폭력 사건은 핀란드 학교에서 흔한 일이 아니다. 이전 사건으로는 1989년 핀란드 서쪽 라우마(Rauma)에서 14살 소년이 두 명의 동급생을 쏜 사건이 유일하다(Raittila, Koljonen & Väliverronen, 2010).

두 범인의 상황과 범행 방식은 비슷한 점이 많다. 둘 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 콜럼바인 고교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을 존경했고,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고, 범행 전 범행 예고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게다가 합법적으로 취득한 총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 한 가지 큰 차이는 까우하요끼 범인이 올린 영상에 대해 범행 하루 전날 경찰이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아쉽게도 경찰의 의문 제기는 총기 허가를 철회할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구두 경고로 그쳤다. 그러나 두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 자세는 상당히 달랐다. 언론이 요켈라 사건에서 신속한 보도에 중점을 두어 생존자와 희생자의 가족에게 무리하게 접근해서 큰 비판을 받은 반면, 까우하요끼 사건에서는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대중의 비판을 피했다(ibid.).

요켈라 사건은 핀란드에서 인터넷이 주요한 정보 출처가 된 최초의 사건이었다. 대중은 인터넷을 통해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접했고, 언론인들도 인터넷의 정보를 이용하였다. 인터넷 보도에 대한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속보에만 신경을 썼고, 경험이 적은 기

자가 현장에 파견돼, 편집장이 상황을 원격으로 관리하면서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으로 상황을 악화시켰다. 일부 언론은 독자들에게 사진과 영상을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보도하였다. 일부 기자들은 전화 소리 때문에 위치가 알려져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학생들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기도 했으며, 성인 희생자들의 미성년 자녀에게도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다(Investigation Commission of the Jokela School Shooting, 2009).

2007년 11월 21일 요켈라의 청소년들은 총리와 4명의 장관들에게 요켈라 총격 사건의 언론 보도 행위가 적절했는지를 묻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는 위기 센터 앞 카메라를 이용한 스토킹과 무리한 인터뷰 시도,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삶을 파헤쳐 비극적인 삶을 그리려 한 시도, 몰래 찍은 사진의 무단 게재, 취재 명목의 무단 주거침입, 토론 도청, 허락 없이 추도식에 난입해 카메라를 들이댄 행동 등의 언론의 부당한 행위가 그들의 슬픔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의 청원은 정치적인 대응까지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충분한 주의를 끌었다(ibid.).

대중매체협의회(CMM)는 요켈라 사건 관련 4건의 불만을 접수했다. 2건은 범인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사진들과 비디오 장면에 관한 것으로 사생활 침해로 결론이 내려졌다. 세 번째 불만은 가해자 부모에 대한 개인 정보 노출로, 실명을 배제한 보도는 사건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한 독자의 알 권리에 부합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마지막 불만은 4만 명이 이용하는 인터넷 포럼에 게재된 글과 사진을 바탕으로 쓰인 잡지 기사에 관한 것이었다. 해당 글을 쓴 사람은 범인의 아버지였는데, 저자가 자신에 대해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게시한 글은 민감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판단과 함께 잡지가 출처를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 받았다(ibid.).

CMM은 요켈라 사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청원서를 제출한 청소년들이 직접 불만을 제기하도록 권유했다. 청소년들은 이미 언론의 지나친 관심에 지쳐 불만 제기를 포기했다. CMM은 언론 발표를 통해 요켈라 희생자와 목격자가 상당수 미성년자였기에 언론이 더 조심했어야 했으며, 슬픔과 충격에 빠진 사람들을 대면하는 일은 어려우며, 그들에게 인터뷰를 부추기거나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견해를 구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인터뷰를 할 경우 그 내용이 여론에 공개되어 개인의 통제를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설명해야 한다고 하였다(ibid.).

사건 당시 언론은 보도할 공식 정보가 없어서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정보를 얻으려 노력하다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요켈라 사건 후 대부분의 언론은 사건을 분석했고, 위기 상황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으며,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시간을 가졌다. 인터넷과 전통적인 언론매체에 관한 수많은 지역 패널 토론을 열었으며, 주요 주제는 편집자와 기자의 역할뿐 아니라 누가 무엇을 결정할지를 포함했다. 워싱턴 대학교의 저널리즘과 트라우마를 위한 닛 센터(Dart Center for Journalism & Trauma)에서 만든 언론인, 편집자, 관리자를 위한 웹가이드 '트라우마와 저널리즘(Trauma and Journalism)'⁴⁴⁾이 요켈라 사건 이후 핀란드어로 번역되었다(ibid.).

까우하요끼 사건에서 언론은 요켈라 사건의 비판을 감안하여 한 발 물러서서 신중한 보도 태도를 유지하였다. 헬싱키와 가까웠던 요켈라는 당국, 의료진, 위기관리 노동자들이 현장 대처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기자들이 도착한 반면, 까우하요끼는 헬싱키와 상대적으로 멀어서 당국이 현장을 정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까우하요끼까지 오는 동안 기자들도 업무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었다(Investigation Commission of the Kauhajoki School Shooting, 2010).

언론은 사건과 연루된 사람 중 학교 관리인과만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응용과학대학은 각지에서 몰려온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로, 주민들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해 그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했다. 따라서 언론 보도는 당국이 제공한 공식 정보에 의지하게 되었다. 언론은 현장과 거리를 두고 취재했으며, 요켈라 사건의 비판을 고려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려 노력했다. 요켈라 사건과 비교해서 범인에 대한 보도의 양에는 차이가 없었다. 다만 상대적으로 범인에 대한 보도가 집중되면서 범인을 영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언론 보도에 대해 CMM에 불만이 한 건 제기되기도 했으나 혐의 없음 판단이 내려졌다(ibid.).

44) Dart Center (2009). Trauma & Journalism.

https://dartcenter.org/sites/default/files/DCE_JournoTraumaHandbook.pdf

4. 결론: 핀란드 언론의 자부심

보고서를 쓰면서 주변 핀란드인들에게 가볍게 언론분쟁에 대해 떠오르는 사례를 물었지만, 아무도 쉽게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대부분 질문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였다. 핀란드에서는 언론분쟁이 매우 드문 일이라 질문이 매우 낯설게 느껴진 듯하다. HS의 한 기자에게 뚜르쿠 테러리스트 칼부림 사건 오보에 대해 이메일로 문의를 하자, 속보 상황에서 발생한 한 언론사의 실수로 금방 정정보도가 났다는 답변과 함께 당시 다른 언론사들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HS는 오보가 매우 드물며, 있다 하더라도 금방 정정된다면서, 자찬이 아닌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목격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기자에게서는 언론의 가짜 뉴스 보도는 거의 없으며, 언론분쟁은 주로 정치인과 사생활 문제에 관련되어 있지만 딱히 사례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언론의 자율규제기관인 대중매체협의회(CMM) 회장은 열린사회연구소(Open Society Institute)가 최근 수행한 연구에서 핀란드가 유럽에서 가짜 뉴스 대처를 선도하는 국가로 꼽혔으며, 언론을 규제하는 법률이 있지만 자율적이며, 언론은 거의 고소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연속적인 정부의 언론 압박 추문으로 다년간 1위를 차지해왔던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핀란드의 순위가 최근 2년 연속 밀려났지만, 관련 언론 압박 사례에 대해 당당히 보도할 수 있는 현실은 국제 언론 연구기관들의 주요 연구 대상으로 관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같은 맥락에서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국제언론인협회(International Press Institute),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등과 같은 기관에서 작성한 핀란드의 언론 현실을 다룬 보고서들이 이 보고서 작성의 주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주기도 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출신의 어느 한 기자는 ‘핀란드: 언론인들의 유토피아(Finland — a utopia for journalists)’⁴⁵⁾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HS는 2018년 7월, 헬싱키에서 개최되는 트럼프와 푸틴의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의미로 두 정상이 공항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장소까지 오는 길에 볼 수 있도록 300여 개의 광고판에 두 정상과 그들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뉴스의 제목으로 만

45) Finland — a utopia for journalists: <http://www.media.ba/en/magazin/finland-utopia-journalists>

든 포스터⁴⁶⁾를 붙였다. HS는 이를 통해 두 정상과 전 세계에 민주시민사회의 초석으로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상기시킴은 물론, 힘든 상황에서 싸워야 하는 미국과 러시아의 동료 언론인들에게 지지를 보냈다. 또한 이로써 HS는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핀란드 언론인들의 자부심을 보여주었고, 언론의 자유를 거침없이 침해하는 두 정상에게 진정한 언론다운 일침을 가한 것이다.

핀란드 언론인들의 자부심이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기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대중의 언론에 대한 믿음을 유지시키는 원동력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선순환은 2015년 말과 2016년 초 망명 신청자들의 급작스러운 증가에 따른 가짜 뉴스 사이트의 범람을 막아내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가짜 언론 사이트에 대한 대응으로 서로 경쟁하던 언론사들이 힘을 모아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이라는 성명서를 낸 것도 가짜 언론이 흠집 내는 것을 허용하지 못하는 언론의 자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한다. 이는 또한 오보와 소셜미디어의 왜곡된 여론 형성을 통한 러시아의 정보전쟁 공격에서 핀란드가 선전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의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처럼 자율과 신뢰로 설명 가능한 핀란드 언론의 저력은 한국의 언론계가 참고할 지점이라 할 것이다.

46) “HS: The Land of Free Press 2018” Youtube 영상: https://youtu.be/cTfon2qTM_Y

- Goldberg, D. (2017). Who Was Peter Forsskål?. In: Carlsson, U. & Goldberg, D. (eds.) *The Legacy of Peter Forsskål - 250 Years of Freedom of Expression*. Sweden, Nordicom, 13-25. Available from: <http://www.nordicom.gu.se/en/publikationer/legacy-peter-forsskal>
- Helsingin Sanomat Foundation & Anders Chydenius Foundation (n.d.). *Press Freedom 250 years*. Available from: <http://www.painovapaus250.fi/en/press-freedom-250-years>
- Nordenstreng, K. (2017). Freedom of Speech in Finland 1766-2016 - A Byproduct of Political Struggles. In: Carlsson, U. & Goldberg, D. (eds.) *The Legacy of Peter Forsskål - 250 Years of Freedom of Expression*. Sweden, Nordicom, 71-91. Available from: <http://www.nordicom.gu.se/en/publikationer/legacy-peter-forsskal>
- Standish, R. (2017). Why Is Finland Able to Fend Off Putin's Information War?. Available from: <https://foreignpolicy.com/2017/03/01/why-is-finland-able-to-fend-off-putins-information-war>
-
- Aro, J. (2016). The cyberspace war: propaganda and trolling as warfare tools. *European View*, 15(1), 121-132. Available from: <https://doi.org/10.1007/s12290-016-0395-5>
- Council for Mass Media (2008). The Council for Mass Media in Finland. Available from: https://www.jsn.fi/en/Council_for_Mass_Media/the-council-for-mass-media-in-finland
- Council for Mass Media (2014). Guidelines for Journalists and an Annex. Available from: https://www.jsn.fi/en/guidelines_for_journalists
- European Centre for Press and Media Freedom (2016). Finnish editors speak out against defamatory 'fake media'. Available from: <https://ecpmf.eu/news/threats/archive/finnish-editors-speak-out-against-defamatory-fake-media>
-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014). CASE OF RISTAMÄKI AND KORVOLA v. FINLAND. Available from: <http://hudoc.echr.coe.int/eng?i=001-127395>

-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014). Judgments concerning Finland, Latvia, Lithuania and Serbia. Available from: <http://hudoc.echr.coe.int/eng-press?id=003-4743367-5767110>
-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015). Judgments of 23 June 2015. Available from: <https://hudoc.echr.coe.int/app/conversion/pdf/?library=ECHR&id=003-5115638-6308816&filename=003-5115638-6308816.pdf>
-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017). Banning the mass publication of personal tax data in Finland did not violate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vailable from: <https://hudoc.echr.coe.int/app/conversion/pdf?library=ECHR&id=003-5767838-7331982&filename=Grand%20Chamber%20judgment%20Satakunnan%20Markkinaporssi%20Oy%20and%20Satamedia%20Oy%20v.%20Finland%20-%20ban%20on%20publishing%20tax%20data.pdf>
-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n.d.). Life of an application. Available from: https://www.echr.coe.int/Documents/Case_processing_ENG.pdf
- Freedom House (2016) Freedom of the Press 2016: Finland. Available from: <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press/2016/finland>
- Hubber, A. (2017, 12, 14). Finnish news goes robotic with Google funding. <Good News from Finland>. Available from: <http://www.goodnewsfinland.com/finnish-news-goes-robotic-with-google-funding>
- International Justice Resource Center (n.d.).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vailable from: <https://ijrcenter.org/european-court-of-human-rights>
- International Press Institute (2017). Journalists in Finland face ‘unprecedented’ levels of online abuse. Available from: <https://ipi.media/journalists-in-finland-face-unprecedented-levels-of-online-abuse>
- International Press Institute (2018). How a Finnish regional newspaper took on online abuse. Available from: <https://ipi.media/how-a-finnish-regional-newspaper-took-on-online-abuse>
- Investigation Commission of the Jokela School Shooting (2009). Jokela School Shooting on 7 November 2007 – Report of the Investigation Commission. Available from: <http://urn.fi/URN:ISBN:978-952-466-804-0>
- Investigation Commission of the Kauhajoki School Shooting (2010). Kauhajoki School Shooting on 23 September 2008 – Report of the Investigation

- Commission. Available from: <http://urn.fi/URN:ISBN:978-952-466-515-5>
- Jyrkiäinen, J. (2018). Finland - Media Landscape. European Journalism Centre (EJC). Available from: <https://medialandscapes.org/country/pdf/finland>
- Karjalainen (2014, 8, 14). Urpo Airaksiselle puoli vuotta ehdollista ja yli 130 000 euroa maksettavaa. <Karjalainen>. Available from: <https://www.karjalainen.fi/uutiset/uutis-alueet/kotimaa/item/54269>
- Newman, N., Fletcher, R., Kalogeropoulos, A., Levy, D. A. L. & Nielsen R. K. (eds.) (2018). *Reuters Institute Digital News Report 2018*.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Available from: <http://media.digitalnewsreport.org/wp-content/uploads/2018/06/digital-news-report-2018.pdf?x89475>
- Onali, A. (2018). Countering Online Harassment in Newsrooms: Strategies and Best Practices Implemented in Finland. International Press Institute (IPI). Available from: <https://ipi.media/programmes/online/countering-online-harassment-in-newsrooms-finland>
- Raittila, P., Koljonen, K. & Väliverronen, J. (2010). Journalism and School Shootings in Finland 2007-2008. Tampere, University of Tampere. Available from: <http://urn.fi/urn:isbn:978-951-44-8257-1>
- Reunanen, E. (2018). Finland. in: Newman, N., Fletcher, R., Kalogeropoulos, A., Levy, D. A. L. & Nielsen R. K. (eds.) *Reuters Institute Digital News Report 2018*.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76-77. Available from: <http://media.digitalnewsreport.org/wp-content/uploads/2018/06/digital-news-report-2018.pdf?x89475>
- Reporters without borders (2018). Finland | RSF. Available from: <https://rsf.org/en/finland>
- The Union of Journalists in Finland (2018). Prosecutor General decides not to press charges on hate speech targeting journalist. Available from: <https://journalistiliitto.fi/en/prosecutor-general-decides-not-to-press-charges-on-hate-speech-targeting-journalist>
- The Union of Journalists in Finland (2018). UJF: persecution of journalists must stop. Available from: <https://journalistiliitto.fi/en/ujf-persecution-of-journalists-must-stop>
- The Union of Journalists in Finland (n.d.). Freedom of expression. Available

- from: <https://journalistiliitto.fi/en/ground-rules/freedom-of-expression>
- Uusi Suomi (2015). Verkkajulkaisut jatkossa vastuussa lukijoiden kommentaista?. Available from: <http://markofobbaforss.puheenvuoro.uusisuomi.fi/197215-verkkajulkaisut-jatkossa-vastuussa-lukijoiden-kommenteista?fbclid=IwAR2LJSWd8G6Y7ndcsXaSKxAyNw60xAhKP2M4XKeSmfKigNOSwuY4woEUd4k>
- Yle Uutiset (2012, 6, 8). Supreme Court orders Halla-aho to pay for hate speech. <Yle Uutiset>. Available from: https://yle.fi/uutiset/osasto/news/supreme_court_orders_halla-aho_to_pay_for_hate_speech/6171739
- Yle Uutiset. (2016, 1, 28). Police to investigate anti-immigrant MV-Lehti website. <Yle Uutiset>. Available from: https://yle.fi/uutiset/osasto/news/police_to_investigate_anti-immigrant_mv-lehti_website/8632899
- Yle Uutiset. (2018, 4, 25). Helsinki politician's hate speech conviction upheld. <Yle Uutiset>. Available from: https://yle.fi/uutiset/osasto/news/helsinki_politicians_hate_speech_conviction_upheld/10176704
- Yle Uutiset. (2018, 8, 17). Finnish court issues precedent "right to be forgotten" decision for Google to remove data. <Yle Uutiset>. Available from: https://yle.fi/uutiset/osasto/news/finnish_court_issues_precedent_right_to_be_forgotten_decision_for_google_to_remove_data/10358108
- Yle Uutiset. (2018, 10, 1). Finns Party MP at centre of storm over immigration-themed school project. <Yle Uutiset>. Available from: https://yle.fi/uutiset/osasto/news/finns_party_mp_at_centre_of_storm_over_immigration-themed_school_project/10432479
- Yle Uutiset. (2018, 10, 7). Complaint to Chancellor of Justice over school's controversial immigration-themed project. <Yle Uutiset>. Available from: https://yle.fi/uutiset/osasto/news/complaint_to_chancellor_of_justice_over_schools_controversial_immigration-themed_project/10444034
- Yle Uutiset. (2018, 10, 18). Anti-immigrant agitator Ilja Janitskin gets 22-month jail sentence. <Yle Uutiset>. Available from: https://yle.fi/uutiset/osasto/news/anti-immigrant_agitator_ilja_janitskin_gets_22-month_jail_sentence/10463931
- Ylönen, O. & Nordenstreng, K. (2007). Annex 4: Media Systems (Country Reports). In: Hans-Bredow-Institut for media research. (eds.) *Final Report: Study on*

Co-Regulation Measures in the Media Sector. Hamburg, Germany, the European Commission, 127-141. Available from: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news/study-co-regulation-measures-media-sector-2007>

I. 호주의 인쇄매체와 언론 보도 규제 배경

호주의 신문은 전국 단위로 발행되는 전국지와 특정 주에서만 발행되는 지역지로 구성된다. 뉴스 코퍼레이션(News Corporation)의 뉴스 리미티드(News Limited)와 페어팩스(Fairfax) 두 미디어 재벌이 대부분의 일간지를 소유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호주 신문 구독률 보고서(Roy Morgan Research, 2018)에 따르면, 종이 신문이나 온라인(웹사이트 또는 앱) 구독자 수는 1,590만여 명으로 이는 14세 이상 호주 인구의 79%에 해당한다. 호주의 대표 일간지로는 전국지인 디 오스트레일리안(The Australian),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Australian Financial Review), 더 새터데이 페이퍼(The Saturday Paper)가 있으며, 일정 주(state)에서 발간되는 시드니 모닝 헤럴드(Sydney Morning Herald), 디 에이지(The Age), 데일리 텔레그래프(Daily Telegraph), 헤럴드 선(Herald Sun), 디 오스트레일리안(The Australian), 쿠리어 메일(Courier-Mail),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Australian Financial Review)가 있으며, 그 밖에 주말판 신문으로는 텔레그래프(Telegraph), 선데이 헤럴드 선(Sunday Herald Sun), 더 선데이 메일(The Sunday Mail), 디 에이지(The Age), 디 오스트레일리안(The Australian)이 있다.

몇 년 전, 영국 뉴스 코퍼레이션의 신문사인 뉴스 오브 더 월드(News of the World)의 기자들이 정치인, 프로축구선수, 연예인들의 전화 도청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영국 정부는 2011년 7월 언론사 직원 및 기자들의 언론 보도와 윤리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Leveson Inquiry: Culture, practice and ethics of the press)에 착수하게 되었다. 영국의 이 사건은 호주 정부에 미디어의 뉴스 기능과 저널리즘 윤리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불러일으켰다. 상원의원 밥 브라운(Bob Brown)이 신문 산

* 캔버라대학교 뉴스 미디어 연구 센터 연구원(커뮤니케이션 박사). Jee.Lee@canberra.edu.au

** 캔버라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조교수. Yoonmo.Sang@canberra.edu.au

업 전반을 대상으로 저널리즘 윤리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를 계기로 2011년 9월 14일 호주 정부는 전 연방 법원 재판관 레이 핀켈스타인(Ray Finkelstein)에게 호주 미디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의뢰하였다. 그 결과 2012년에는 이러한 조사의 결과물인 ‘미디어와 그 규제에 관한 보고서(Report of the Independent Inquiry into the Media and Media Regulation)’¹⁾가 발간되기에 이르렀다. 해당 보고서는 변화하는 신문 산업에 따른 당시의 규제와 지원에 관련된 이슈 및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보고서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현재 자율규제체제로 운영되는 호주의 언론보도윤리 및 기준의 실행력이 상당히 약하다는 점이다. 또한 일부 신문사에서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여 독자의 불만을 처리하고 있지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따른 윤리 및 기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도 지적되었다. 이와 더불어, 언론위원회가 언론중재 역할을 하기에는 통제권이 약하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호주의 신문사들은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보도윤리와 기준은 보도의 공정함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 1944년 호주 언론예능예술협회(Media Entertainment Arts Alliance)는 기자윤리강령(Journalist Code of Ethics, Box 1 참조)을 마련하여 언론예능예술협회에 가입한 언론사들이 모두가 규범을 준수하게 하였으나,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언론사들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어 한계점이 노출되었다. 이에 호주의 각 주는 사법윤리위원회(Ethics of Judiciary Committee)를 설치하고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 비회원 언론사들의 경우, 호주언론위원회(Australian Press Council)가 직업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언론 보도와 관련된 대중의 불만을 처리해왔으며, 잡지를 포함한 모든 인쇄매체가 보도윤리 준수 등의 감독 대상이다. 한편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사에 대한 관리감독은 정부 산하 호주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이 수행하고 있어 여기에서 방송 내용에 대한 시청자 불만의 접수·처리를 담당한다. 그 밖의 미디어 기관들은 자체 윤리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1) 자세한 보고서 내용은 정필운(2012) 참조.

Box 1 기자 윤리강령

기자 윤리강령은 1984년에 수정되었고, 1999년 한 차례 더 수정 과정을 거쳐 총 12개의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1. 사실에 대해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하며, 관련 사실을 누락하지 않으며,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개인 혹은 집단의 인종, 성별, 연령, 종교, 민족, 출신국가, 성적취향, 장애, 연령에 대해 불필요하게 언급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3. 정보원의 정보 제공의 목적을 파악하고 다른 대안적 정보에 대한 고려를 우선시한다.
4. 보도의 정확성, 공정성,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금품 및 어떠한 사적 이익도 허용하지 않는다.
5. 보도로 야기되거나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이익 갈등 사실도 누락하지 않으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기자 신분을 이용하지 않는다.
6. 보도의 정확성, 공정성, 독립성을 해치는 광고 및 다른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7. 보도를 위한 인터뷰, 사진, 정보의 대가로 지급된 직·간접적인 금전적 보상을 공개한다.
8. 보도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밝히며, 인터뷰 대상자에 어떠한 권력 및 힘을 행사하지 않는다.
9. 진실되고 정확한 이미지 및 음성 자료를 제공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어떠한 조작 가능성에 대한 사실을 누락하지 않는다.
10. 표절하지 않는다.
11. 기자는 개인적 애도 및 프라이버시를 침범할 어떠한 충동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12. 잘못된 보도 내용을 정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II. 호주언론위원회(The Australian Press Council)²⁾

1. 배경 및 목적

최초의 인쇄 매체 자체 규율 기구인 호주언론위원회는 호주에서 전통적인 언론의 자유를 보전하고 자유로운 언론이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고 행동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6년 7월 22일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호주의 위원회 설립 헌법 및 규제에 의거하여 인쇄매체 발행인들과 호주기자협회(Australian Journalists Association)의 협회에 따라 설립되었는데, 호주기자협회³⁾는 언론위원회를 설립하는 데 20년 넘게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위원회는 다음의 세 가지 주요 업무 — 언론보도 윤리표준 마련, 보도불만처리, 정책적 사안처리 — 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올바른 언론보도윤리표준 개발과 시민들의 보도불만에 대한 처리 및 협상 업무 담당
- 신문, 잡지, 디지털 뉴스 미디어의 보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및 피해 처리
- 이해 관련 영역의 정책적 사안에 대한 성명 발표, 국회 및 정부 위원회/기관들에 관련 자료 제출

호주언론위원회의 세부적인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다.

- 언론매체(신문, 잡지, 기타 인쇄 매체 및 디지털 매체)의 보도 내용에 대한 불만의 심사 및 처리
- 독자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인쇄 및 디지털 언론 매체에 대한 정책 지원과 격려
- 공익에 관련된 정보 배포, 대중의 알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한 검토 및 압력 행사
-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 관련 사안들에 대해 정부 및 공공 조사 진정

2) 호주언론위원회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은 호주언론위원회 웹사이트(<https://www.presscouncil.org.au>)를 참조하였다.

3) 1910년에서 1992년까지 운영된 호주기자연맹으로, 1992년 배우 연합(Actors Equity, AE), 호주 극장 & 오락 고용인 협회(Australian Theatrical & Amusement Employees Association, ATAEA)와 함께 미디어 연맹(Media Alliance(노동조합))으로 병합되었다.

- 표현의 자유와 및 관련 이슈들에 대한 공중의 인식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수행 및 컨설팅
- 포럼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이해 증진

2. 연혁 및 구성

언론위원회 설립 당시 회원사로 일간신문협회(Association of Daily Newspaper), 지방언론협회(Provincial Press Association), 기자협회(Journalist Association)가 참여하였다. 언론사들이 언론위원회에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은 없다. 2016/2017년 위원회 미디어 기업 및 언론 회원사로는 호주 최대 미디어 재벌 페어팩스 미디어(Fairfax Media)와 뉴스 코퍼레이션(News Corporation Australia), 디지털 네이티브 뉴스 미디어 허핑턴포스트(The Huffington Post), 지역언론협회(Country Press Australia) 등이 있다. 최근 회원사로 가입한 미디어 기관으로는 에코 퍼블리케이션(Echo Publication), 인디펜던트 오스트레일리아(Independent Australia, 2016년 7월 13일 가입)가 있다.

[그림 1] 호주언론위원회 미디어 기업 및 언론 회원사 (2016/2017년)



위원회의 정관은 위원으로서 의장, 신문 발행인 대표, 현직 언론인 대표, 일반 시민 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초대 의장으로는 언론 경력이 전혀 없는 고등법원 판사 출신인 프랭크 키토(Frank Kitto)가 임명되었다. 이후 호주언론위원회 의장으로는 법조인 출신이 줄곧 선출되었으나 학자 출신 켄 맥किन(Ken Mckinnon)이 2000년 12월 1일 의장에 취임한 바 있다. 그 이후에는 학자 출신 의장이 줄곧 선출되어 왔으며 2015년 법학교수 출신인 데이비드 웨이스브롯(David Weisbrot)이 2017년까지 의장직을 맡았다. 2018년부터는 전직 공무원 출신 네빌 스티븐스(Neville Stevens)가 선출되어 현재까지 의장직을 맡고 있다.

언론위원회 설립 당시 위원으로는 일반 시민 대표 3인, 발행인 대표 6인, 호주기자협회에서 추천한 3인을 합해 총 13인이었으나, 현재는 의장 포함 25인의 대표 위원이 존재한다. 모두가 의장의 추천에 의해 평의회 전체 회의에서 임명된다. 의장 이외에는 부의장 2인, 일반시민 대표 8인, 언론 출판계 대표 10인, 독립 언론인 대표 4인을 합해 총 24인으로 구성된다. 일반시민 대표 8인은 언론사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는데, 전직 관리자, 대학 강사 및 교수, 건강 보건 검토위원회 의장, 고등학교 교사, 현직 수의사, 컨설턴트,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업군의 종사자 및 은퇴자들이 선출되었다. 일반 시민 대표와 독립 언론인 대표는 의장의 추천에 의해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임명되며, 출판계 대표는 언론사들에 의해 선출된다.

언론위원회는 그 산하에 보도불만위원회⁴⁾, 미디어기관자금위원회(Constituent Funding Sub-Committee), 행정/재정위원회(Administration and Finance Sub-Committee)를 두고 있다. 보도불만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혹은 임명된 패널 의장, 시민 대표 3인, 언론 출판계 대표 3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디어기관자금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그리고 각 언론 출판사의 지명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회원사의 기부금 액수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행정/재정위원회는 의장, 시민 대표 2인, 출판인 2인, 언론인 1인 혹은 언론예능예술협회의 지명자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 언론위원회에는 총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4) 혹은 평결패널(Adjudication Panel)이라 명명하기도 한다.

3. 정책 및 규제

호주언론위원회는 언론불만 제소 건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4가지 주요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현재의 보도 주요 원칙은 2014년 한 차례 개정을 거친 후 지금까지 적용되어 오고 있다.

보도 주요 원칙 (The General Principles)

정확성/명확성(Accuracy and clarity)

1. 정확한 사실만을 보도하며, 오피니언 등과 같은 의견 기사와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
2. 잘못된 사실이 보도되었을 경우, 수정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공정성/균형성(Fairness and balance)

3.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자료(사진 등)를 사용하며, 의견을 피력할 시,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중요한 사실 정보를 누락하지 않는다.
4. 보도내용이 특정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아야 하며, 후속 보도 시 특정인의 답변에 대한 내용이 공정하게 다뤄질 기회를 부여한다.

개인 사생활 보호(Privacy and avoidance of harm)

5. 공공의 이익과 충분히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6. 공공의 이익과 충분히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공격적이며, 편견을 포함하고, 안정과 건강에 대한 위협의 소지가 있는 보도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진실성/투명성(Integrity and transparency)

7. 공공의 이익과 충분히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집된 보도 자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8. 이해상충 소지를 피하며, 보도 자료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실을 누락하지 않는다.

보도 주요 원칙과 더불어, 위원회는 보도의 사생활보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사생활보호 원칙은 총 7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개인정보 취합
- 개인정보 이용 및 공개
- 개인정보 내용
- 개인정보 보안
- 취재원 익명 보도
- 정정, 공정 및 균형
- 민감한 개인 정보

〈특정 보도지침 마련〉

2011년 언론위원회는 ‘자살보도지침’이라는 새로운 보도원칙을 정하고 이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언론사, 정신건강 전문가 및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심층적 논의를 통해 자살 보도, 개인적 견해 보도, 자살 방법 및 장소에 대한 보도, 사건 책임 소재에 관련된 보도, 관련 자료 공개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도지침을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보도지침에서는, 자살의 구체적인 방법과 장소를 언급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자살 보도 기사 경우,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4년에는 보도를 위해 환자와 접촉 시 지켜야 할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적용해오고 있다.

한편, 언론위원회는 자문기구의 가이드라인을 보도 주요 원칙, 특정 보도지침과 함께 언론 보도 불만에 대한 평결에 참조하고 있는데, 현재의 자문기구 가이드라인은 1977년 마련된 가이드라인으로 현재 언론위원회는 자문기구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자문기구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가정폭력
- 난민/망명/불법 이민자
- 약물
- 나치수용소

- 설문조사
- 헤드라인 종교적 용어 사용
- 선거보도
- 인종 관련 보도
- 기사형 광고
- 편견/성향
- 에디터에게 보내는 편지
- 디지털 이미지 변경 행위

4. 최근 보도불만 평결 사례

2018년 상반기 제기된 보도불만에 대한 평결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최근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보도의 공정성, 정확성,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도지침 조항을 위반했다는 평결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1) 개인 프라이버시

○ 2018. 7. 시드니 모닝 헤럴드 (평결 1746)

2017년 10월 17일 호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2015년 12월 10일 발생한 뉴사우스 웨일즈의 한 살인사건에 대한 법정 공판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이 기사에 대해 제기된 보도불만 평결 결과, 희생자의 두 자녀의 사진을 공개한 점에 대해 위원회는 보도지침 5. ‘공공의 이익과 충분히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평결을 내렸다. 아울러 희생자가 어떤 방식으로 살해당했는지 자세히 공개한 점에 대해 위원회는 보도지침 6. ‘공공의 이익과 충분히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공격적이며, 편견을 포함하고, 안정과 건강에 대한 위협의 소지가 있는 보도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평결을 내렸다. 다만 일반 장례식장에서 배포된 팸플릿에 게재된 자녀들의 사진을 이용한 점은 장례식 행사가 사적인 행사가 아닌 점과 더불어 기자가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밝힌 후 팸플릿을 받았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이는 보도지침 조항 7. ‘공공의 이익과 충분히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집된 보도 자료는 사용하지 않는다’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 2018. 5. 우먼스 데이(Woman’s Day) (평결 1718)

2017년 3월 27일 매거진 우먼스 데이(Woman’s Day)에 실린 “맥도널드의 행복한 하루(It’s McHappy day!)” 제하의 기사에 대해 호주 방송 호스트 크리스 스완(Chrissie Swan)이 불만을 제기했다. 이 기사는 크리스가 세 자녀와 맥도널드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사진과 함께 아이들의 이름과 나이를 언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크리스는 자신도 모르게 사진에 찍혔으며, 아무리 자신이 유명인사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그녀와 아이들의 사생활 노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당 기사가 사생활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도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보도지침 5. ‘공공의 이익과 충분히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위배된다는 평결을 내렸다. 또한 기사에 실린 사진들에 대해서도 보도지침 6. ‘공공의 이익과 충분히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공격적이며 편견을 포함하고, 안정과 건강에 대한 위협의 소지가 있는 보도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위배된다는 평결을 내렸다.

○ 2018. 5. 더 선데이 텔레그래프(The Sunday Telegraph) (평결 1736)

아이에게 폐렴성쌍구균이 옮겨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엄마에 대한 ‘더 선데이 텔레그래프(The Sunday Telegraph)’ 2017년 7월 30일자 신문 및 온라인 기사에 대해 레이첼 페트랙(Rachael Petrak)이 언론불만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기사 정보원이 병원이라는 신뢰할 만한 기관이지만 한 정보원에만 의지하여 추측성 기사를 내보낸 점에서 보도지침 1. ‘정확한 사실만을 보도한다’ 및 보도지침 3.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에 위배된다는 평결을 내렸다. 아울러 위원회는 사망자와 그 아이의 백신접종 기록을 그대로 기사에 실은 점에 대해 공중보건과 관련한 공익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사망자의 보기 드문 의료상황을 고려하면 공공의 이익과의 관련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해 보도지침 5. ‘공공의 이익과 충분히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조항에 위배된다는 평결을 내렸다. 하지만 기사의 정보원 수집 과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공정한 방법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도지침 7. '공공의 이익과 충분히 관련되지 않은 이상,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집된 보도 자료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평결했다.

(2) 보도 공정성/정확성

○ 2018. 6. 뉴스(News.com.au.) (평결 1739)

2017년 9월 8일 인터넷 신문인 뉴스(News.com.au)는 “동성결혼 지지자들, 교회신자들과 충돌하다”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올렸다. 이 기사는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동성결혼 찬반 우편투표⁵⁾ 전 폭력적 충돌에 차량이 무기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다”라는 부제목으로 시작하는데, 위원회는 이 기사에 사용된 여러 표현들, “충돌(clash)”이라는 용어와 “차량이 무기로 사용되다(cars were used as weapons)” 등은 이날 일어난 충돌이 폭력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이는 보도지침 1. ‘정확한 사실만을 보도하며, 오피니언 등과 같은 의견 기사와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는 조항과 보도지침 3.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자료(사진 등)를 사용하며, 의견을 피력할 시,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중요한 사실 정보를 누락하지 않는다’에 위배된다는 평결을 내렸다.

○ 2018. 6. 헤럴드 선(Herald Sun) (평결 1742)

호주의 스포츠 사격 협회는 2017년 6월 20일 헤럴드 선(Herald Sun)의 “온라인 사격단체, 트롤(troll) 자선단체 겨냥” 제하의 기사 및 온라인에 보도된 “총기 로비, 총기 반대 입장에 있는 알라나-매들린(Alannah & Madeline) 자선재단 겨냥하다” 제하의 기사에 불만을 제기하였다. 기사는 최근 알라나-매들린 재단 직원들이 온라인 총기 로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밝히면서 재단 총책임자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여 총기산업 관련자들은 “무기를 소유할 권한이 제한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

5) 2017년 9월 호주 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찬반을 묻는 우편투표가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뒤, 국민들에게 동성결혼 합법화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실시함.

있다”는 프레임으로 총기 소유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이 불만 건에 대해 위원회는 기사에서 다른 총기 관련 일반단체와 온라인의 트롤(trolls) 간에 관련성이 없음에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아 대중에게 총기단체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총기 로비단체 등과 같은 일반단체들이 마치 이번 온라인 트롤링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묘사된 점은 보도지침 제1조에 위배되고, 기사가 나간 후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었던 점에 대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도지침 제2조에도 위배되었다는 평결을 내렸다. 아울러 다른 일반 단체들의 의견이나 답변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보도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평결을 내렸다.

○ 2018. 4. 더 큐리어메일(The Courier-Mail) (평결 1731)

2017년 4월 20일 ‘더 큐리어메일(The Courier-Mail)’ 온라인 기사 “원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퀸즐랜드 레스토랑 새우 가격 인상”에 대해 로살리(Thai Terrace Rosalie)가 불만을 제기하였다. 기사는 퀸즐랜드에서 발생한 백색점병으로 인해 현지 새우 출하가 금지됨에 따라 어부들이 새우 가격 인하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불만접수자인 로살리는 새우 가격이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스토랑에서 판매하는 새우의 가격이 오히려 인상된 이유는, 정부의 수입산 새우 사용금지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기사 내용이 레스토랑 종사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인식을 줄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보도지침 1. ‘정확한 사실만을 보도하며, 오피니언 등과 같은 의견 기사와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는 평결을 내렸다. 또한 호주 정부의 수입산 새우 금지가 호주 전반의 새우 가격 증가 요인이라는 점이 널리 알려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보도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도지침 3.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자료(사진 등)를 사용하며, 의견을 피력할 시,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중요한 사실 정보를 누락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위배된다는 평결을 내렸다. 아울러 보도 후 수정이나 특정인의 답변서를 다루는 추후보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에서 보도지침 2. ‘잘못된 사실이 보도되었을 경우, 수정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및 보도지침 4. ‘보도내용이 특정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아야 하며, 후속 보도 시 특정인의 답변에 대한 내용이 공정하게 다뤄질 기회를 부여한다’에 위배된다는 평결을 내렸다.

○ 2018. 2. 엔티뉴스(NT News) (평결 1733)

위원회는 2017년 4월 20일 엔티뉴스(NT News) 1면 기사에 제기된 불만접수 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였다. 해당 기사는 백패커 살인사건을 다루면서, 시신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하였다. 특히 해당 기사는 살인자의 시신처리를 도운 사람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익명의 편지내용을 실고 있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엔티뉴스가 익명의 편지내용에 대해 경찰에 제대로 확인하고 기사를 실었다는 점을 들어, 보도지침 1. '정확한 사실만을 보도하며, 오피니언 등과 같은 의견 기사와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 및 지침 3.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자료(사진 등)를 사용하며, 의견을 피력할 시,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중요한 사실 정보를 누락하지 않는다'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평결을 내렸다. 그러나 기사에 실린 자료와 내용이 상당히 자극적이며, 독자들에게 부정적 자극과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보도지침 6. '공공의 이익과 충분히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공격적이며, 편견을 포함하고, 안정과 건강에 대한 위협의 소지가 있는 보도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에는 위배된다는 평결을 내렸다.

(3) 자살 보도/공격성 보도

○ 2018. 6. 데일리 메일 오스트레일리아 (평결 1744)

2017년 5월 30일 데일리 메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보도한 시드니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한 남자의 자살사건 관련 기사에 대해 불만이 접수되었다. 기사에 실린 여러 장의 사진에 대한 설명에 사용된 용어가 일부 독자들에게 심리적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불만에 대해 위원회는 다소 과격한 표현이지만 심각한 정도의 심리적 불안을 일으키는 정도는 아니라는 평결을 내렸다. 하지만 신문사가 보도를 내보내기 위해 사전에 가족과 가까운 친지나 친구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살보도 지침' 조항에 위배된다는 평결을 내렸다. 또한 자살 장소가 공공장소라는 점에서 자세한 장소의 공개는 허용되나, 자살 시도 방법이 자세히 묘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살보도 지침' 조항에 위배된다는 평결을 내렸다. 아울러 본 기사 내용이 대중교통 혼란보다는 자살 자체를 과도하게 부각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살보도 지침' 조항에 위배된다는 평결을 내렸다.

○ 2018. 2. 뉴스(News.com.au) (평결 1732)

위원회는 2017년 5월 31일 인터넷 신문인 ‘뉴스(news.com.au)’에 실린 “IS 테러 가이드 검트리와 이베이(Gumtree, eBay) 통해 피해자들 유인” 제하의 기사가 보도지침 조항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였다. 기사의 도입단락은 IS가 어떻게 비신자들을 살해하는지에 대한 단계별 가이드를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호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검트리(Gumtree)나 이베이(eBay)에서 유포되고 있는 거짓광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원회는 보도 내용이 테러리즘을 지지하는 의도는 없으나 제한된 분석과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IS의 자료를 대부분 그대로 옮김으로써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등, IS 선전의 소지가 일정 부분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 내용이 테러리즘에 대한 것이고 이는 공공의 이익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도지침 6. ‘공공의 이익과 충분히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공격적이며, 편견을 포함하고, 안정과 건강에 대한 위협의 소지가 있는 보도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에는 위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불만 건에 대해 위원회는 테러리스트 선전과 관련된 보도 시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공공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함을 촉구하였다.

5. 불만처리절차: 접수·협상·처리

언론위원회에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는 인쇄매체(종이신문, 잡지)와 디지털 플랫폼(웹사이트, 소셜 미디어)에 게재된 모든 내용이 포함된다. 사설, 독자투고(기고), 만평, 사진 등이 모두 해당되며, 광고와 기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내용은 제외한다. 명확한 광고물은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는다.

대상 매체는 언론위원회의 회원사로 가입된 모든 언론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호주의 전체 매체의 약 90%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가입 회원사뿐만 아니라 호주 내 모든 신문사, 잡지사 및 온라인 매체의 각 보도 내용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지만 언론사들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

불만 신청 시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불만 제기

〈해당 매체 접촉〉

불만 신청 당사자는 해당 매체에 불만을 제기한 다음, 혹은 동시에, 혹은 해당 매체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도 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위원회에 바로 불만이 제기된 경우에는 위원회는 불만 접수 대상인지 여부가 먼저 검토된다. 위원회는 불만 신청이 접수되면, 경우에 따라 불만대상 매체와 먼저 접촉하게 하고, 그 매체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원만한 해결로 성사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에 재차 불만을 제기하도록 권고한다.

〈시간 제한〉

불만 신청은 관련 내용이 보도된 후 3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법적 절차〉

당사자가 직접 법적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지만 법적 절차를 이미 진행한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법적 절차 진행 시, 불만 제기 당사자와 해당 언론사는 위원회와 직접 의사소통을 해야 하며 변호사를 대변인으로 내세울 수 없다.

(2) 불만 처리

불만사항이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이후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한다.

- 불만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사
- 불만 제기자와 해당 매체가 모두 수락할 수 있는 결과물 제시
- 해당 불만사항과 관련된 보도 주요 원칙에 대한 정보 제공
- 평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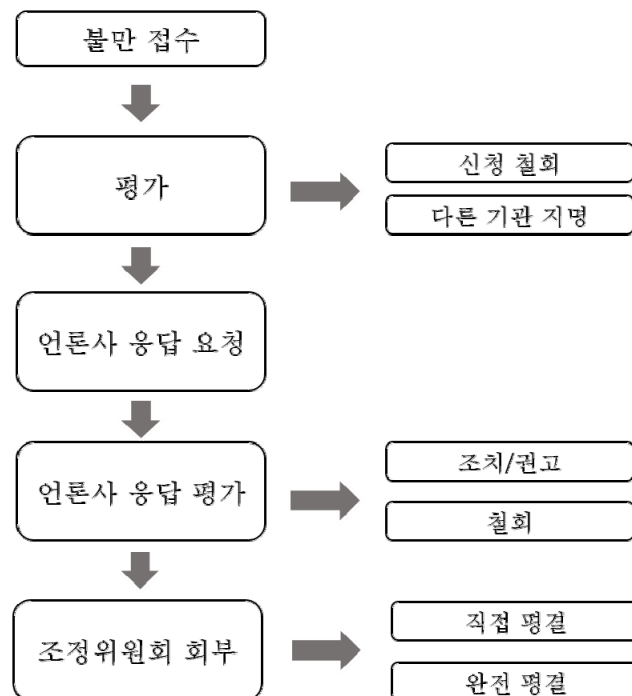
불만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위원회는 벌금 등과 같은 금전적 배상을 명령할 권한은 없지만, 사과 및 정정보도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해당 매체에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의 불만 처리 절차를 살펴보면(그림 2 참조), 접수된 불만 사항은 위원회 직원들

에 의해 예비심사 단계를 거치는데, 이는 1단계 과정으로 불만처리위원회의 책임감독과 직원들이 비공식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보도 불만 내용에 대해 해당 매체와 협상을 거친 결과, 보도된 내용에 대한 설명과 언론사의 비공식적인 유감표명, 관련 기사 내용에 대한 정정, 삭제,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 및 교육약속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 과정에서 불만 사항이 해결되거나, 불만 제기 당사자가 그 신청을 철회하거나, 결과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불만처리위원회의 책임감독은 불만 건을 종료한다.

1단계에서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한 경우 불만처리위원회(사무처)는 정식으로 해당 매체에 대한 불만 신청을 접수하고 불만 신청인이 제출한 기록 전부를 매체에 통보하며, 2단계 평결 과정 단계로 넘어가 조정위원회에 정식 회부된다. 평결 절차는 불만 제기 내용의 그 심각성과 복잡성, 그리고 얼마나 새로운 안전인지에 따라, 불만 제기자와 해당 언론사의 별도 구두 진술 필요여부가 정해지는데, 별도의 구두 진술을 요하지 않고 서류상의 자료만으로 평결이 가능한 직접평결과 관련 당사자의 구두 진술이 필요해 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회의를 거쳐 평결을 내려야 하는 완전평결로 나뉜다. 최종 평결내용은 언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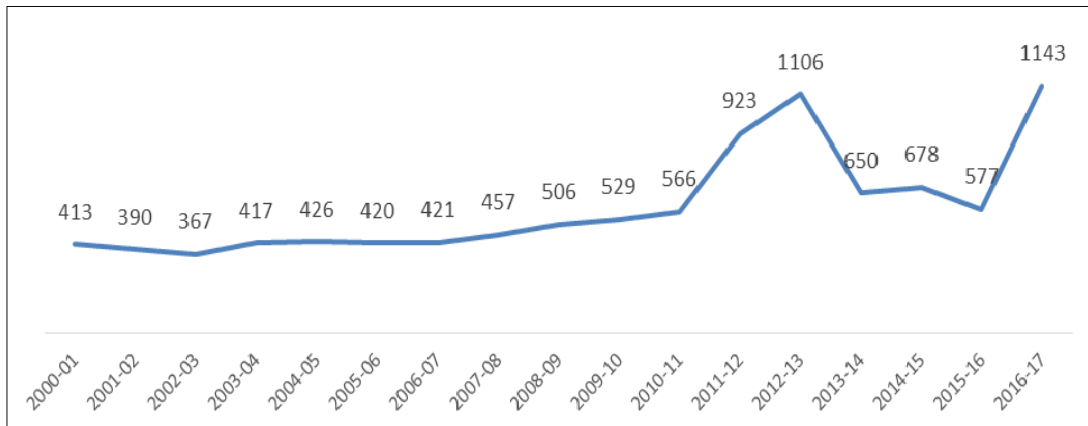
[그림 2] 불만 신청 절차



(3) 불만처리현황

2016/2017년 접수된 불만 건수는 총 1,143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전년 577건 대비 98%의 증가율을 보였다. 언론위원회에 접수된 불만 건수는 지난 17년간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6/2017년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그림 3). 2016/2017년에 접수된 1,143건의 불만사항 중 평결이 내려진 경우는 565건으로 나타났다으며, 나머지는 평결단계에 이르기 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종결되었다. 이 중 공식적인 평결이 내려진 경우는 36건이었으며, 그중에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인정 평결이 내려진 경우는 26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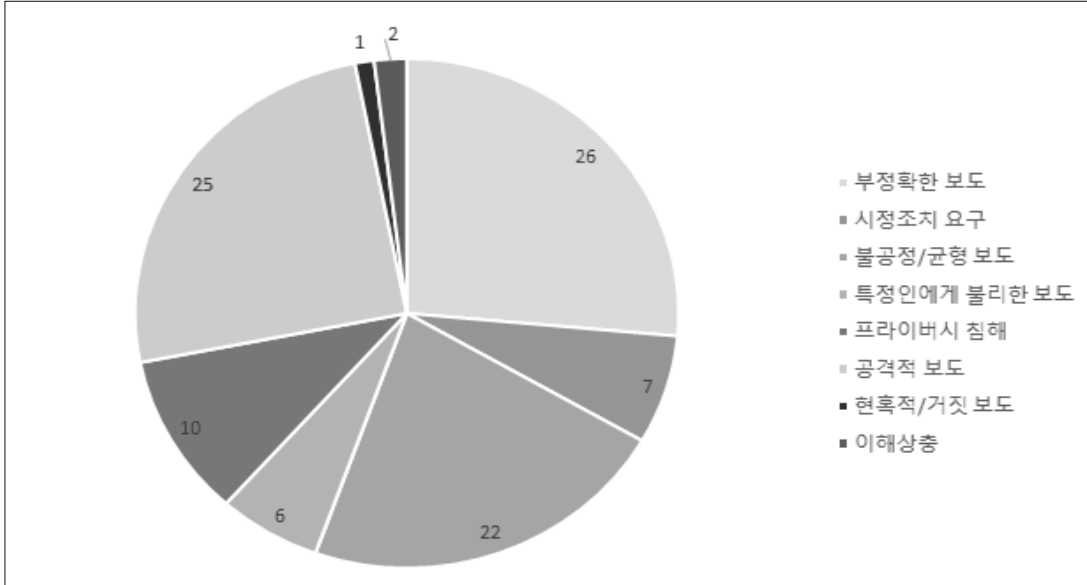
[그림 3] 연간 언론불만제소 건수 (2000-2017)



* 출처: 언론위원회 연간보고서(APC Annual report) 2000-2017 자료 재구성

불만 신청에서 제기된 이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정확한 보도가 302건(2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격적 보도 286건(25%), 불공정/불균형 보도 253건(2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4). 전년 대비 부정확한 보도에 관한 불만 건수 비율은 절반 정도 줄어든 반면(52%, 2015/2016), 불공정/불균형 보도의 경우 2015/2016년 10%에서 두 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공격적 보도에 대한 불만건수의 비율도 증가하였다(18%, 2015/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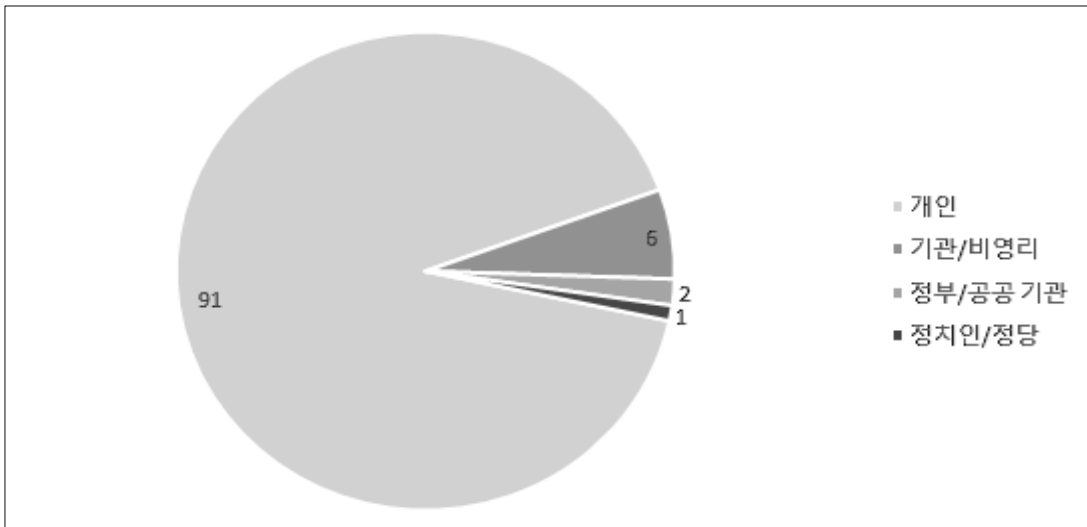
[그림 4] 불만 신청에서 제기된 이슈 (%)



* 출처: 언론위원회 연간보고서(APC Annual report) 2016/2017

대부분의 불만 신청인은 개인(616건, 91%)이었으며, 기관 및 비영리 단체가 41건 (6%), 정부 및 공공기관이 12건(2%). 정치인 및 정당이 7건(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언론불만신청자 분류별 비율(%)



* 출처: 언론위원회 연간보고서(APC Annual report) 2016/2017

불만 신청 건수의 절반 이상(69%)은 신문(종이/온라인) 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이 중 주(state) 신문이 289건(42%)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농촌(regional/rural) 104건(15%), 전국지(national) 74건(11%), 지방지(suburban) 12건(2%)으로 나타났다(표 1). 잡지(종이/온라인)의 경우 13건(2%)에 불과하였다. 한편, 온라인 전용 매체의 보도 내용에 대한 불만은 181건(26%)으로 집계되었는데, 2015/2016년 81건(16%) 대비 두 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종이/온라인)에 대한 불만은 작년 대비(82%) 상당히 감소하였다.

〈표 1〉 매체별 불만제기 건수

| 매체 분류 | | 건수 | 비율(%) |
|----------------|--------------|-----|-------|
| 신문 (종이/온라인) | 전국 | 74 | 11 |
| | 주 | 289 | 42 |
| | 지역/농촌 | 104 | 15 |
| | 지방(Suburban) | 12 | 2 |
| 잡지(종이/온라인) | | 13 | 2 |
| 온라인 전용 | | 181 | 26 |
| 기타 | | 23 | 3 |
| 총계 | | 696 | 100 |

* 출처: 언론위원회 연간보고서(APC Annual report) 2016/2017

이러 플랫폼별 불만제기 건수를 자세히 살펴보면(표 2), 인쇄매체의 경우 121건으로 전체 건수의 1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 근소한 감소치를 보였다(107건, 21%, 2015/2016). 온라인 전용의 경우 331건으로 불만제기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5/2016년 164건(33%) 대비 두 배 가량 증가한 수치였다. 한편, 2016/2017년 불만 제기 관련 자료에서 주목할 점은 최초로 소셜 미디어가 플랫폼별 세부 통계에 포함되어 집계되었다는 점이다. 소셜미디어 전용의 경우 총 9건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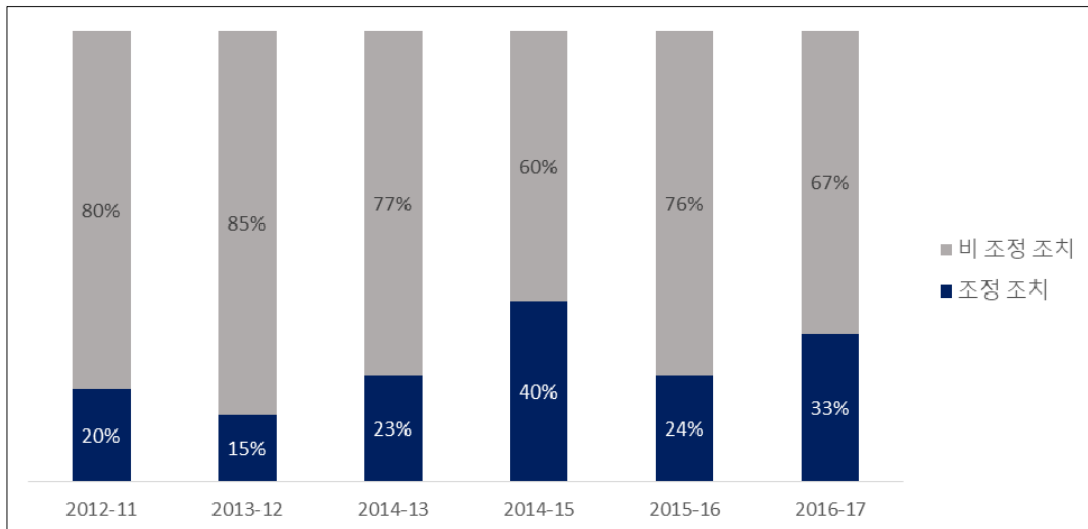
〈표 2〉 플랫폼별 불만제기 건수

| 플랫폼 | 건수 | 비율(%) |
|--------------|------------|------------|
| 온라인 전용 | 331 | 48 |
| 온라인/소셜미디어 | 11 | 2 |
| 인쇄 | 121 | 17 |
| 인쇄/온라인 | 216 | 31 |
| 인쇄/온라인/소셜미디어 | 3 | 0 |
| 소셜미디어 | 9 | 1 |
| 기타 | 5 | 1 |
| 총계 | 696 | 100 |

* 출처: 언론위원회 연간보고서(APC Annual report) 2016/2017

2016/2017년 불만접수 건 중, 36건(33%)은 공식적 조정으로 해결되었으며, 74건(67%)은 불만 제기 후 적절한 대응으로 조정 없이 해결되었다. 지난 5년간의 조치별 분포를 살펴보면(그림 6), 전반적으로 비조정 조치 건수는 다소 줄어든 반면, 조정 조치 건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조정 조치 방법별로 살펴보면, 기사 수정(amendment to article)이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련 내용 삭제 13건, 사과 7건, 철회/정정 6건, 후속보도 2건, 기타 7건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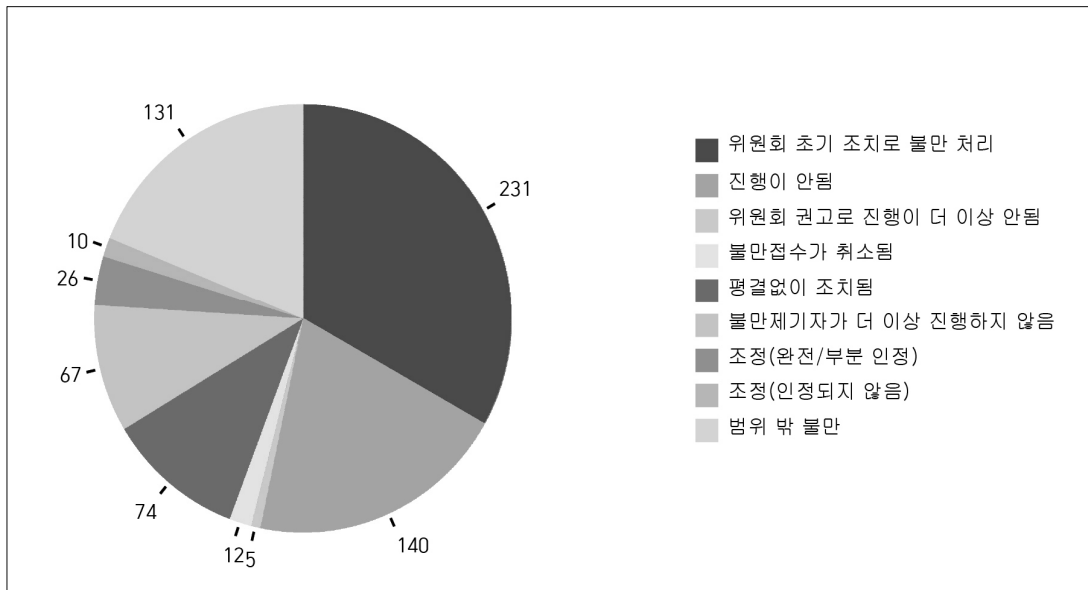
[그림 6] 불만접수 후 조치 현황 (2011-2017년)



* 출처: 언론위원회 연간보고서(APC Annual report) 2011-2017 자료 재구성

2016/2017년 696건의 불만제기 처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그림 7), 대부분 위원회의 접수 초기 단계에서 처리되거나 조정 단계 전에서 종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1건은 위원회의 초기 조치로 마무리되었으며, 140건도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4건은 평결 없이 조치되었으며, 67건은 불만 제기자가 더 이상 진행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건수는 총 36건에 불과했으며, 이 중 인정 평결을 받은 건수가 26건이었고 인정되지 않은 건수가 10건이었다. 그 밖에 상당수의 불만(131건)이 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는 범위로 분류되었다.

[그림 7] 불만접수 후 처리 결과 (2016/2017년)



III. 최근 이슈: 명예훼손

호주에서는 최근 대중의 관심을 끈 명예훼손 사건 및 판결들을 계기로 명예훼손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Whitbourn, 2018). 그중에서도 주목을 끌고 있는 건 ‘호주통일명예훼손법(National Uniform Defamation Law)’에 대한 재검토 논의이다. 호주 정부는 각 주가 상이한 명예훼손법을 적용하는 데서 오는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2006년부터 ‘통일명예훼손법’을 시행해오고 있다(Rolph, 2008). 명예훼손법 개혁으로 사실이 적시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이 공익에 관계된 것인지의 여부와 상관 없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Dwyer, 2012). 한편, ‘사과(apologies)’와 ‘무고한 배포(innocent dissemination)’ 법리가 범령상의 방어(defense) 논리로 작용하고,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었으며, 공정정보도의 특권에 해당하는 경우가 확대되었다(Dwyer, 2012). 통일명예훼손법의 제정으로 호주 각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명예훼손법의 전반적인 내용이 유사해졌으나 구체적인 조항들은 여전히 각 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Rolph, 2008).

수정헌법 1조에 따라 언론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는 미국에서는 명예훼손 소송에서 언론보도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피고인 언론사에게 잘못이 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반면, 호주에서는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피고가 자신에게 잘못이 없음을 입증할 것이 요구된다. 즉, 호주의 명예훼손법은 언론사의 보도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기보다는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측에게 유리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Maley, 2018).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중에 누가 진실(truth)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밝히기 힘든 경우에 일반적으로 피고가 지는 구조가 된 것이다(Carter & Carrick, 2017).

최근 호주에서는 유명 연예인의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호주 사상 최고 액수의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져 상당한 파장이 일어났는데, 이는 명예훼손법 개정 담론에 더욱 불을 지폈다. 호주 법원은 최근 바우어 미디어(Bauer media)에 호주 출신의 할리우드 배우 레블 윌슨(Rebel Wilson)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이유로 450만 달러가 넘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레블 윌슨(Rebel Wilson)은 2015년 ‘Woman’s Day’의 출판사인 바우어 미디어(Bauer media)가 게재한 여덟 건의 기사가 본인의 명

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바우어 미디어는 월슨이 연기 경력을 위해 나이와 배경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소송을 당하였다. 이 사건의 배심원단은 2017년 6월 출판사 측이 월슨을 거짓말쟁이로 묘사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림 8] 승소 후, 법원에서 나오는 레블 월슨(Rebel Wilson)



* 사진 출처: Media Entertainment & Arts Alliance

재판을 맡은 디슨(Dixon) 판사는 바우어 미디어가 월슨이 상습적인 거짓말쟁이라는 의혹에 적절한 조사 없이 정보를 제공한 정보원에게 돈을 지불했다는 점, 의혹이 거짓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사한 기사를 내보낸 점, 월슨의 반론을 상쇄시키려는 의도가 보이는 후속 기사들을 계속 내보낸 점 등을 들어 해당 기사가 악의적이고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월슨 사건은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호주 내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호주미디어협회는 비경제적 손실에 대해 38만 달러의 배상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그 액수를 훨씬 뛰어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이 판결은 호주 미디어들에게 경고를 보낸 셈이었다. 이에 채널나인(Channel Nine), 채널세븐(Channel Seven), 페어팩스미디어(Fairfax Media), 에비씨(ABC) 등 몇몇 미디어 기관들이 공동 항소를 하였으나 빅토리아 상소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를 살펴보면 호주에서 명예훼손 분쟁으로 법원까지 가는 사례는 드문 편이다. 호

주 시드니공과대학교(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미디어 전환 센터(Centre for Media Transition)의 최근 보고서⁶⁾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명예훼손 소송 건수는 189건이었으며, 관련된 법원 결정 건수는 609건으로 나타났다.

〈표 3〉 2013-2017년 명예훼손 사건 통계

| 년도 | 소송 건수 | 결정 건수 |
|------|-------|-------|
| 2013 | 28 | 113 |
| 2014 | 40 | 120 |
| 2015 | 47 | 132 |
| 2016 | 44 | 143 |
| 2017 | 30 | 101 |
| 총계 | 189 | 609 |

* 출처: Trends in Digital Defamation: Defendants, Plaintiffs, Platforms 4페이지

5년 동안 집계된 총 189건의 명예훼손 사건 중, 97건(51.3%)이 디지털 상에서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건들이었고, 2014년부터 디지털 명예훼손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2013-2017년 디지털 명예훼손 건수

| 년도 | 디지털 명예훼손 건수 | 전체 건수 대비 디지털 명예훼손 비율(%) |
|------|-------------|----------------------------|
| 2013 | 13 | 46.4 |
| 2014 | 20 | 50.0 |
| 2015 | 24 | 51.1 |
| 2016 | 24 | 54.5 |
| 2017 | 16 | 53.3 |
| 총계 | 97 | 51.3 |

* 출처: Trends in Digital Defamation: Defendants, Plaintiffs, Platforms 63페이지

6) Centre for Media Transition (2018). Trends in Digital Defamation: Defendants, Plaintiffs, Platforms. <https://www.uts.edu.au/sites/default/files/article/downloads/Trends%20in%20Digital%20Defamation.pdf>

한편, 고소인의 유형을 살펴보면, 21%만이 공인⁷⁾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명예훼손 건은 일반인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할리우드 배우 레블 윌슨의 사례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가장 유명한 공인 관련 명예훼손 사건이었으며, 그 밖에 호주 정치인 조 하키(Joe Hockey), 기업인 클리브 팔머(Clive Palmer)가 미디어 기업(TV, 라디오, 온라인을 포함한 신문 및 잡지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역시 눈여겨 볼 만하다고 보고서는 기술하였다.

피고인의 유형을 보면, 미디어 기업이 피고인(defendant publishers)인 경우는 2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사건이 3건이었고, 페이스북은 16건으로 집계됐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원고의 승소율은 낮은 편인데, 지난 5년간 집계된 총 189건 명예훼손 사건 중 66건(34.9%)에서만 원고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5〉 2013-2017년 명예훼손 사건에서의 원고 승소 건수

| 연도 | 원고 승소 건수 | 전체 건수 중 원고 승소 비율(%) |
|-----------|-----------|---------------------|
| 2013 | 9 | 32.1 |
| 2014 | 16 | 40.0 |
| 2015 | 16 | 34.0 |
| 2016 | 12 | 27.3 |
| 2017 | 13 | 43.3 |
| 총계 | 66 | 34.9 |

* 출처: Trends in Digital Defamation: Defendants, Plaintiffs, Platforms 64페이지

5) 보고서에서 공인(public figure)이라 지칭하는 대상에는 연예인, 고위 정치인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원 및 시장, 대사, 고위 전문직 종사자(high profile doctors, lawyers and businessmen/women) 등이 해당됨

IV. 결론: 호주언론위원회의 나아갈 길

호주언론위원회는 2017년 3월 원주민(Indigenous)과 비원주민(non-Indigenous) 간 화해 도모 및 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언론위원회 화해사업계획(RAP, Reconciliation Action Plan)’을 발표하고 관련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 사업계획은 호주 미디어들이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토착호주인(Torres Strait Islander Australians)에 관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양질의 보도를 증진하고, 원주민들이 위원회 및 미디어 관련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보도지침이 호주 원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의 일환으로 언론위원회는 원주민 출신 카라 맥그라스(Carla McGrath)를 시민대표 위원으로 지명했다. 위원회는 지명 과정에서 카라 맥그라스가 최초의 원주민 출신 위원이라고 발표했는데, 원주민 출신 위원이 선출된 선례⁸⁾가 있었음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정정 성명서를 내고, 공개적인 사과를 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한편 카라 맥그라스의 지명은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는데, 그가 진보시민단체인 갯업(GetUp!)의 부대표라는 점 때문이었다.

카라 맥그라스가 지명되자마자 호주의 보수성향 신문사 디 오스트레일리안은 맥그라스가 뉴스 코퍼레이션 인쇄/출판물을 반대하는 사회운동과 관련된 기금 마련을 위해 활동해왔다고 지적하며, 그녀가 일찍이 호주 주요 신문사들의 선거보도를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언론위원회 시민대표로서의 자질과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카라 맥그라스 지명 논란은 사실상 디 오스트레일리안과 언론위원회 간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디 오스트레일리안은 뉴스 코퍼레이션의 대표 신문사이기 때문이다. 디 오스트레일리안의 책임에디터인 폴 위타커(Paul Wittaker)는 언론위원회의 카라 맥그라스 지명을 두고 ‘영타리(mockery)’라 표현하며, 향후 카라 맥그라스가 참여하는 어떠한 보도 불만 평결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보이콧을 선언하였다. 회원사의 기부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언론위원회에게 최대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는 미디어그룹인 뉴스 코퍼레이션의 디 오스트레일리안이 이러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상당히 난감한 일이었다. 결국 카라 맥그라스를 위원으로 지명한 지 1년 뒤인 2018년

8) 콜린 버크(Colin Bourke): 1982 - 1991, 나타샤 맥나마라(Natascha McNamara): 1997 - 2003.

5월 11일 위원회는 그녀의 시민대표 위원직 취소를 결정하고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일찍이 정필운(2012)이 소개한 호주의 ‘미디어와 그 규제에 관한 보고서’는 자율적인 규제기구로서의 언론위원회의 제한적인 기능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안정적인 재정 확보의 어려움과 실행력 부재를 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그 개선안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는데,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언론위원회의 독립성은 여전히 취약한 부분으로 남아있다.

[그림 9] ABC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Media Watch ‘Australian Press Council v News Corp’ 보도 내용



한편, 언론위원회는 새로운 회원사 가입 홍보를 위해 ‘가짜 뉴스(Fake news)’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언론위원회의 회원사 매체들은 보도의 정확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비회원사들의 회원가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언론위원회의 전(前) 의장 데이비드 웨이스브롯(David Weisbrot)은 언론위원회 비회원사는 호주의 자율규제에 대한 언론사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거저먹기식(freeloading)’은 정부의 규제에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고 비판하였다. 이 캠페인은 더 가디언(The Guardian), 버즈피드(Buzzfeed), 준키(Junkee) 등의 디지털 네이티브 뉴스 기관들의 회원가입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존 회원사들은 매우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일부 비회원사들은 향후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비회원사 중 가장 큰 규모인 더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옴부즈맨 제도가 언론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림 10] 언론위원회 홍보물



호주언론위원회는 정부로부터의 어떠한 재정적 지원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자율규제기구로서의 입장을 지금까지 고수해 오고 있다. 앞서 위원회의 캠페인 내용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호주 언론계는 정부의 개입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언론위원회의 이러한 자율규제 시스템과 회원사 기부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재 재정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언론위원회의 모든 결정과 평결은 사실상 해당 매체에 강제적 효력을 미칠 권한이 없다. 그 때문에 실행력 부재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위원회는 회원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재정 시스템으로 인해 회원사로부터 완벽하게 독립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 역시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향후 언론위원회가 풀어 나가야 할 숙제로 보인다.

참고 문헌 REFERENCE

- 정필운 (2012). 호주 '미디어와 그 규제에 관한 보고서'의 내용과 시사. <방송통신전파저널>, 4월 통권48호, 68-73.
- Australian Government (2012). Report of the Independent Inquiry into the Media and Media Regulation. http://www.abc.net.au/mediawatch/transcripts/1205_finkelstein.pdf
- Australia Press Council (2010-2017). Annual Report 2010-2017. <http://www.australiacouncil.gov.au/news/media-centre/reports>
- Australian Press Council (2017). Strategic Plan 2016-2020. https://www.presscouncil.org.au/uploads/52321/ufiles/Fact_Sheets/Australian_Press_Council_SP_booklet_FINAL_22-09-16.pdf
- Australian Press Council (2017). Reconciliation Action Plan 2017. https://www.presscouncil.org.au/uploads/52321/ufiles/APC_Innovate_RAP_2016-2018.pdf
- Australia Press Council (2018). Media release: Press Council member is asked to resign after conflict of interest review. 2018. 5. 11. Australia Press Council.
- Australian Press Council (2017). Council Fact Sheets.
- Carter, J. S., & Carrick, D. (2017, 12, 7). Do Australia's strict defamation laws help protect high-profile abusers? <ABC News>. Retrieved from <https://www.abc.net.au/news/2017-12-07/do-australias-strict-defamation-laws-help-protect-abusers/9228018>
- Centre for Media Transition (2018). Trends in Digital Defamation: Defendants, Plaintiffs, Platforms. Univeristy of Technology Sydeny. Retrieved from <https://www.uts.edu.au/sites/default/files/article/downloads/Trends%20in%20Digital%20Defamation.pdf>
- Dwyer, T. (2012). *Legal and ethical issues in the media*.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Maley, J. (2018, 11, 9). When #metoo meets defamation law, and a brutal political culture. <The Sydney Morning Herald>. Retrieved from <https://www.smh.com.au/politics/federal/when-metoo-meets>

- defamation-law-and-a-brutal-political-culture-20181109-p50f3j.html
- Bingemann, M. (2017, 6, 2). Oz will boycott decisions of 'political stack'. *The Australian*.
- Rolph, D. (2008). A critique of the national, uniform defamation laws. *Torts Law Journal*, 16(3), 207-248.
- Roy Morgan Research (2018). Newspaper masthead readership grows to 15.9 million. <http://www.roymorgan.com/findings/7496-australian-newspaper-print-readership-and-cross-platform-audiences-december-2017-201802080408>
- Whitbourn, M. (2018, 6, 22). The new battleground emerging in defamation feuds. <The Sydney Morning Herald>. Retrieved from <https://www.smh.com.au/national/the-new-battleground-emerging-in-defamation-feuds-20180618-p4zm87.html>
- Zoe Samios (2018, 5, 12). Getup's Carla McGrath declines request to resign from Press Council. *Mumbrella*.

온라인 자료

Australia Press Council. URL: www.presscouncil.org.au

I. 서론

이 글에서는 디지털 단일시장의 흐름과 함께 유럽연합의 미디어 및 언론법제 동향을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유럽연합 회원국인 네덜란드에서는 관련 쟁점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각 주제별로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최근 유럽연합은 디지털 단일시장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미디어 및 언론에 관한 법적 조치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특히 새로운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안의 통과를 바로 눈앞에 둔 시점에서, 지침안의 통과는 유럽연합뿐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전 세계 국가에 큰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에서도 온라인상의 허위정보와 혐오표현의 확산이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에서는 구속력 있는 지침(Directive)부터 거대 IT기업의 자율규제 방안까지 다양한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련의 제도적인 조치들은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유럽연합이 제시한 관련 법제들과 이에 대한 거대 IT기업, 언론인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검토하는 것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한 문제들에 대처 방향을 제시하여 제도적인 입안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주로 유럽연합에서 발간한 보고서, 각종 규정 및 법률들을 살펴보았으며, 유럽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 분야 쟁점들을 찾아보기 위해 다양한 뉴스 기사들을 참고했다.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gayeon2014@gmail.com

II. 유럽연합의 디지털 단일시장(EU Digital Single Market)

1. 유럽 단일시장(European Single Market)

유럽연합에서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단일시장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유럽연합에서의 ‘단일시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의 오랜 역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시장 정책은 단일시장(single market)이다. ‘단일시장(single market)’이란 하나의 영토로서 사람, 물건의 자유이동(free movement of persons, goods, services, and capital)에 대한 국경이나 규제 장벽이 없는 유럽연합을 가리킨다(Craig&Brurca, 2015). 단일시장은 유럽연합의 시초인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가 창건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 내의 자유이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장벽을 없애고 유럽 정책의 통합이 요구되며, 각 유럽연합 회원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2.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

단일시장의 개념은 온라인 시장으로 넘어와 디지털 단일시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2010년 당시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었던 호세 마누엘 바로소(Jose Manuel Barroso)의 요청에 따라 전 유럽집행위원인 마리오 몬티(Mario Monti)는 ‘단일시장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Monti, 2010). 이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단일시장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마리오 몬티는 보고서에서 유럽연합 내의 강력하고 완전한 단일시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디지털 단일시장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유럽은 새로운 기술 발전에 있어 미국보다 그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유럽의 디지털 산업시장을 성장시키려면 수많은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새로운 유럽연합 저작권법 및 그 운영지침에 관한 규정들이 필요하며, 온라인 시장의 법적 체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이란 유럽연합의 역내시장(internal market)

의 중요 가치인 사람, 서비스, 자본의 자유이동(free movement of persons, services, and capital)이 온라인 활동에서도 보장되는 것을 가리키며, 이는 국경과 장소에 관계 없이, 개인과 사업체가 공정한 경쟁과 높은 수준의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환경 속에서 균일한 접근과 참여가 보장됨을 말한다.¹⁾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The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은 2015년 5월 6일에 수립되었는데, 이러한 전략에 맞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현재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단일시장은 새로운 신생기업을 위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으며, 현존하는 기업들도 5억 명이 넘는 인구가 참여하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디지털 단일시장의 완성은 유럽경제에 연간 약 1,000억 유로의 기여를 할 수 있고, 직업창출 및 공공서비스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디지털 단일시장의 경제적 파급력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디지털 단일시장은 세 개의 기둥(The Pillars)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는 1) 접근성, 2) 환경, 3) 경제와 사회이며, 이 세 개의 기둥은 디지털 단일시장의 정책을 세우는 큰 틀이 된다. 먼저 첫 번째 기둥인 ‘접근성(access)’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유럽 내의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에 더 좋은 접근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기둥인 ‘환경(Environment)’은 디지털 네트워크와 혁신적인 서비스가 번창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건과 수준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세 번째 기둥은 ‘경제와 사회(Economy&Society)’이며, 이는 디지털 경제의 잠재적 성장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연합 내에서 이러한 디지털 단일시장의 추구로 만들어진 몇 개의 성과들이 있다. 먼저 유럽연합은 로밍 요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였으며, 마침내 2017년 6월 15일부로 유럽연합 및 유럽경제구역 회원국가 내의 모바일 로밍요금 제도의 전면 폐지를 이끌어 내었다.²⁾ 이로써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자유이동(freedom of movement)이 디지털 단일시장 내에서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본국에서 다른 유럽지역에 갈 때에도 추가적인 요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자 유럽연합 및 유럽경제구역 회원국가 내의 전화 빈도가 약 2.5배 증가하기도 하였다.³⁾

1) European Commission (2018, 8, 24). Shaping the Digital Single Market. Retrieved from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policies/shaping-digital-single-market>

2) Regulation 2017/92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17 May 2017 amending Regulation (EU) No531/2012 as regards rules for wholesale roaming markets.

디지털 단일시장의 또 다른 성과로는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규정(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을 꼽을 수 있다.⁴⁾ 2018년 5월부터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규정이 발효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사생활침해에 관한 유럽연합의 단일한 규정이 생겼다. 이는 ‘유럽연합 운영에 관한 조약(Treaty of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288조에 따라 유럽연합법의 한 종류인 규정(Regulation)의 형태로, 국내에 적용할 때 그 형태와 방식을 당국이 선택하는 지침(Directive)과는 달리 규칙 그 자체로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기 때문에 더 구속력이 큰 법적 성격을 띤다.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규정이 발효됨에 따라,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IT기업 및 온라인 시장에 관여하는 많은 기업들이 크게 영향을 받아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디지털 시장이 전 세계로 연결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3. 디지털 단일시장과 표현의 자유

유럽연합은 디지털 단일시장 정책에 있어 미디어의 자유와 다원성 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⁵⁾ 특히 유럽의 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의 투명성, 자유, 다양성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유럽집행위원회는 이를 위한 미디어의 자유와 다원성을 존중하기 위해 여러 규정과 연구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는 표현의 자유이며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오로지 자유롭고 다원적인 미디어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구현될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 환경에 관한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표현의 자유는 ‘유럽연합 기본권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다. 해당 조항은 표현 및 정

3) European Commission (2018, 7, 27). Enjoy your new digital rights across Europe during summer holidays. Retrieved from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8-4681_en.pdf

4) Regulation(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5) European Commission (2018, 6, 8). Media Freedom and Pluralism. Retrieved from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policies/media-freedom-and-pluralism>

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으며, 이 권리는 견해의 자유와 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국경과 관계없이 정보와 견해를 주고받을 자유를 포함한다. 동조 제2항에서는 언론매체의 자유와 그 다원성은 존중된다고 규정하고 있다.⁶⁾ 제11조에 대한 유럽 기본권헌장 주석에서, 제11조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이하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 부합한다고 언급하고 있듯이(Oster, 2015), 유럽인권협약의 제10조 또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⁷⁾

먼저 유럽인권협약 제10조 제1항에서는, 유럽연합 기본권헌장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의견을 가질 자유와 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 및 사상을 주고받는 자유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조항이 방송·텔레비전 또는 영화 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허가 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그 한계 또한 명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유럽인권협약 제10조 제2항에서는 전항에서 규정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2항은 앞서 언급한 자유의 행사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므로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국가안보, 영토의 일체성이나 공공의 안전, 무질서 및 범죄의 방지, 보건과 도덕의 보호, 타인의 명예나 권리의 보호, 비밀리에 얻은 정보의 공개 방지, 또는 사법부의 권위와 공정성의 유지를

6)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Article 11 (Freedom of expression and information)

1.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This right shall include freedom to hold opinions and to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without interference by public authority and regardless of frontiers.
2. The freedom and pluralism of the media shall be respected.

7)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rticle 10 (Freedom of expression)

1.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This right shall include freedom to hold opinions and to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without interference by public authority and regardless of frontiers. This article shall not prevent States from requiring the licensing of broadcasting, television or cinema enterprises.
2. The exercise of these freedoms, since it carries with it duties and responsibilities, may be subject to such formalities, conditions, restrictions or penalties as are prescribed by law and ar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territorial integrity or public safety, for the prevention of disorder or crime, for the protection of health or morals, for the protection of the reputation or rights of others, for preventing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received in confidence, or for maintaining the authority and impartiality of the judiciary.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형식, 조건, 제약에 따르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명시하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미디어의 자유와 다양성을 위한 방향으로 디지털 단일시장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입법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⁸⁾ 특히 저작권에 관한 규제체제를 확실하게 함으로써 언론인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았다. 거대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의 경우 저작권 규제에는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온라인 허위정보 및 불법 혐오표현의 확산을 막기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에는 함께하겠다고 하였다. 이하에서는 디지털 단일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입법으로 최근 논란 중인 저작권 지침안과 허위정보에 관한 유럽연합의 정책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형법상의 통합을 추구한 혐오표현에 관한 규제를 알아보기로 한다.

III. 유럽연합의 디지털 단일시장 속 저작권법

1. EU 저작권 지침안(EU Copyright Directive)

현재 유럽연합과 거대 글로벌 기업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유럽연합의 혁신적인 저작권 지침안이다. 2016년 6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 지침안(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이하 저작권 지침안)’을 발의하였다.⁹⁾ 이후 해당 지침안은 유럽의회에 의해 지난 2018년 7월에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두 달 뒤인 9월 12일, 마침내 유럽의회에서 438표의 찬성과 226표의 반대, 그리고 39표의 무효표로 저작권 지침안의 수정안이 승인되었다. 해당 지침안은 2019년 1월에 있을 유럽회회의 마지막 투표만을 남겨두고 있다. 마지막 투표 전까지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3자간의 협의인 ‘Trilogue’가 진행 중인 상태이다. 마지막 투표에서 최종적으로 저작권 지침안이 통과될 경우, ‘유럽연합 운영에 관한 조

8) European Commission (2018, 8, 7). Supporting media and digital culture. Retrieved from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policies/supporting-media-and-digital-culture>

9)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2016/0280, COM(2016) 593 final (2016).

약(Treaty of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288조에 따라, 각 유럽연합 회원국은 해당 지침(directive)을 국내에 시행하며, 그 형태와 방식은 회원국이 선택한다.

2. EU 저작권 지침안: 제11조 및 제13조

저작권 지침안에서 가장 논쟁적인 조항은 지침안 제11조의 일명 ‘링크세’(link tax)와 제13조의 ‘업로드 필터(upload filter)’이다. 제11조는 구글과 같은 회사가 저작물을 온라인 플랫폼에 공유할 경우, 창작자가 유료 라이선스를 요구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창작자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라디오 방송에서 음악 재생 시 저작자에게 저작물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듯이, 구글과 같은 회사가 뉴스 저작물을 자사플랫폼으로 끌어와 사용한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¹⁰⁾ 제13조의 경우, 유튜브와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서비스 회사들이 라이선스와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막도록 한다. 이러한 규제는 플랫폼 서비스에서 미리 사전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차단하는 ‘업로드 필터(upload filter)’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저작권 지침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제11조의 경우, 기사 공유를 하는 구글 뉴스와 같은 플랫폼에 ‘링크세’를 부과하는 시도는 이미 스페인과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있었지만 실패하였으며, 이러한 시스템은 오히려 저작권에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는 2014년에 구글 뉴스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에 한토막(snippet)의 뉴스 소식을 포함한 모든 언론 출판이 노출될 경우, 플랫폼 회사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게 하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다.¹¹⁾ 그러나 구글은 구글 뉴스 서비스로 그 어떤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스페인에서의 구글 뉴스 서비스를 종료하였다.¹²⁾

10) Politico (2017, 2, 15). Plan to make Google pay for news hits rocks. Retrieved from <https://www.politico.eu/article/plan-to-make-google-pay-for-news-hits-rocks-copyright-reform-european-commission/>

11) BOE (2014, 11, 5). Boletín Oficial Del Estado. Retrieved from <https://www.boe.es/boe/dias/2014/11/05/pdfs/BOE-A-2014-11404.pdf>

12) Google Europe Blog (2014, 12, 11). An update on Google News in Spain. Retrieved from <https://europe.googleblog.com/2014/12/an-update-on-google-news-in-spain.html>

제13조 또한 업로드 필터가 말 그대로 감시와 검열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저작권 지침안이 유럽의회를 통과하자 2018년 10월 22일, 유튜브 최고경영자 수잔 보이스키(Susan Wojcicki)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에게 유럽연합이 통과시키려는 새로운 저작권법에 대한 저항을 촉구하기도 하였다.¹³⁾ 특히 문제시되는 제13조 조항을 언급하며, 전 세계인들 및 크리에이터의 일상과 소통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유튜브의 경우 현재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삭제를 요구하면 이에 응하는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안이 통과된다면 삭제 요구 이전에 업로드 필터를 통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차단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게시한 동영상 콘텐츠를 유럽연합 지역에서는 볼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제13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업로드 필터로 밈(meme)과 같은 패러디 콘텐츠를 자동으로 걸러낸다면 플랫폼 서비스 회사에서 과잉 규제를 할 수 있게 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거대 미디어 플랫폼 기업의 주장과는 상반되게, 해당 저작권 지침안은 유럽연합의 수많은 작가와 예술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그동안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IT기업이 저작권을 침해하며 콘텐츠를 무단으로 가져와 혜택을 누렸던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지침이라는 것이다. 최근 유럽의회가 저작권 지침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 유럽 및 국제 저널리스트 연방(The European and International Federations of Journalists, 이하 EFJ-IFJ)은 환영을 표하며 해당 투표결과는 저널리스트의 생계 및 민주사회에서 보도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¹⁴⁾ 특히 EFJ-IFJ는 저작권 지침안 제11조를 환영하며, 그동안 거대 IT기업에게 침해받았던 언론인과 작가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큰 발전이라고 하였다. 또한 언론인들은 자신들의 저작물의 사용에 대해 반드시 통보받아야 하며,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 Youtube Creator Blog (2018, 10, 22). A Final Update on Our Priorities for 2018. Retrieved from <https://youtube-creators.googleblog.com/2018/10/a-final-update-on-our-priorities-for.html>

14) European Federation of Journalists (2018, 9, 12). European Parliament approves new Copyright Directive. Retrieved from <https://europeanjournalists.org/blog/2018/09/12/european-union-european-parliament-approves-new-copyright-directive/>

3. EU 저작권법 관련 네덜란드 사례: ‘GeenStijl’ 사건

온라인 환경에서 저작권법의 적용에 관해서는 이미 유럽연합 회원국 법원에서 선결적 판단(preliminary ruling)을 요청하며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에 많은 사건들이 제기된 바 있다. 최근에는 전자물, 링크의 사용, 스트리밍 등에 대한 법적 제한을 어디까지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Sobczak, Skrzypczak, & Kakareko, 2017). 특히 새로운 저작권 지침안의 통과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저작권법과 관련한 종전의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디어 환경에 대한 판례로는 네덜란드의 ‘GeenStijl’ 사건이 있다.¹⁵⁾ 본 판결에서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하이퍼링크의 실용적 작동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으며, 쟁점이 되었던 저작권과 관련한 지침은 2001년에 제정된 ‘정보사회에서 특정 영역의 저작권 및 관련한 권리의 조화에 관한 지침(Directive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이었다.¹⁶⁾

네덜란드의 온라인 뉴스서비스 매체인 ‘GeenStijl’은 ‘GS Media’라는 미디어회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웹사이트에 기재된 정보에 따르면 ‘GeenStijl’은 ‘뉴스, 스캔들 폭로 및 탐사 저널리즘’¹⁷⁾을 다루며, 네덜란드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10개의 뉴스 사이트 중 하나이다.¹⁸⁾ 본 사건에서 ‘GeenStijl’은 네덜란드 TV쇼의 진행자인 브릿 데커(Britt Dekker)가 플레이보이 잡지활동 중 촬영한 사진을 여러 번 하이퍼링크를 통해 게시하였고,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사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하이퍼링크와 연결된 사진들은 온라인에 불법적으로 게시된 것이었다. 따라서 플레이보이 잡지의 출판사인 ‘Sanoma’를 비롯한 사진의 권리자들은 ‘GeenStijl’을 운영하는 ‘GS Media’에 하이퍼링크를 지워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GS

15) CJEU Judgment in C-160/15 *GS Media BV v Sanoma Media Netherlands BV, Playboy Enterprises International Inc., Britt Geertruda Dekker* (2016).

16)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2001/29/EC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OJ L 167 (2001).

17) “news, scandalous revelations and investigative journalism with lighthearted items and wacky nonsense”

18) Geenstijl. Retrieved from <https://www.geenstijl.nl/>

Media’는 하이퍼링크 지우기를 거절하였으며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제1심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청구인의 요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제2심 법원은 제1심 법원에서의 판결을 뒤집었고, 결국 청구인들의 항소로 네덜란드 대법원(Hoge Raad der Nederlanden)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었다. 대법원은 해당 사안에서 적용되는 유럽연합법의 저작권법 중 하나인 ‘정보사회에서 저작권 및 관련한 권리의 특정 영역에서의 조화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하이퍼링크의 사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선결적 판단(preliminary ruling)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요청하였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공중에 노출되는 모든 전달 활동은 저작권자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네덜란드 대법원은 인터넷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게시되는 것들로 넘쳐나고 있으며, 따라서 웹사이트 운영자가 권리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가 항상 쉽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선결적 판단을 다루면서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이 게시된 웹사이트로 접속하는 하이퍼링크의 게시가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지, 그리고 이것이 해당 지침 제3조 제1항19)에서 말하는 ‘공중전달(Communication to the public)’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 중점을 두었다.²⁰⁾ 유럽사법재판소는 해당 지침조항에 따라 회원국은 저작자에게 저작물의 모든 ‘공중전달’을 허락 또는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동시에 해당 지침은 저작권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정보 및 공익에 관한 표현의 자유와 같은 다른 권리들 사이의 공정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지난 판례들을 언급하면서, 자유롭게 접속 가능한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를 게시하는 것은 ‘공중전달’이 아닌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와 더불어, 유럽사법재판소는 ‘공중전달’의 개념이 성립되기 위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기준은 개입의 고의적인 성질로, 이는 행

19) Article 3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works and right of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other subject-matter), Directive 2001/29

1. Member States shall provide authors with the exclusive right to authorise or prohibit any communications to the public of their works, by wire or wireless means, including the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of their works in such a way that members of the public may access them from a place and at a time individually chosen by them.

20)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2016, 9, 8). Press release No 92/16. Retrieved from <https://curia.europa.eu/jcms/upload/docs/application/pdf/2016-09/cp160092en.pdf>

위의 결과에 대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용자에게 저작물에 접근하게 하는 전달행위를 말한다. 두 번째로 ‘공중’의 개념은 확인가능하지 않은 많은 수의 잠재적 시청자를 말한다. 세 번째 기준으로는 그 ‘공중전달’이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²¹⁾ 위 세 가지 요건이 성립하면 ‘공중전달’로 간주된다. 즉, 해당 사건에서는 하이퍼링크가 사적이익의 추구 없이 게시되었는지, 게시자가 저작물이 다른 웹사이트에 불법적으로 게시된 것을 몰랐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되었다. 반대로 말하자면, 하이퍼링크가 사적이익의 추구로 게시된 경우에는 저작물이 불법적으로 게시된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 반드시 간주되어야 ‘공중전달’이 성립된다.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하이퍼링크의 게시가 해당 지침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중전달’에 해당하며, 따라서 하이퍼링크 속 저작물 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본 사건에서는 ‘GeenStijl’를 운영하는 ‘GS Media’가 사적이익 추구를 위하여 사진을 다운받을 수 있는 하이퍼링크를 제공하였으며, 저작권자인 ‘Sanoma’는 해당 사진이 인터넷에 게시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네덜란드 대법원에 따르면, ‘GS Media’는 하이퍼링크에 연결된 웹사이트에 사진이 불법적으로 공개되어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결국 ‘GS Media’가 불법적인 공개임을 완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이퍼링크를 게시하였다는 가정은 반박할 수 없었다. 이러한 유럽사법재판소의 선결적 판단에 따라, ‘GS Media’가 하이퍼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는 해당 지침의 ‘공중전달’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GS Media’ 사건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에 우려가 제기되었다. 방대한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이 합법적으로 게시되었는지에 대한 개별적인 확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하이퍼링크가 저작자의 의도에 맞게 전해지는 것인지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뉴스 기사를 작성하고 외부 출처들을 표시하는 언론인들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최근 유럽의회를 통과한 저작권 지침안에서는 언론출판의 범위에서 ‘공중전달’에 해당하지 않은 하이퍼링크의 경우 저작권 지침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지만²²⁾, ‘공중전

21) CJEU Judgment in C-466/12, *Nils Svensson and Others v Retriever Sverige AB* (2014).

22) Proposal for a Directive 2016/0280

“This protection does not extend to acts of hyperlinking which do not constitute

달'의 확인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저작권에 관한 문제들은 언론 및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부딪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유럽의 디지털 단일시장의 흐름 속에서 입법·사법적으로 계속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IV. 유럽연합과 온라인 허위정보(Disinformation)

1. 유럽연합의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현황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허위정보의 제공은 오랫동안 지속된 현상이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으로 이를 통해 잘못된 정보가 더 넓게 생산되며 전파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²³⁾ 따라서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이러한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성하기 위해 전략팀을 구성하였다. 이는 'East StratCom Task Force(이하 '대책위원회'라고 한다)'이며,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의 요청에 따라 설립되었다. 2015년 3월 유럽 동쪽 지역, 특히 러시아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허위정보 캠페인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대외행동국(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의 유럽연합 외교문제·안보정책 고위대표(High Representative of the European Union for Foreign Affairs)인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의 지휘 하에 조직되었으며, 14명의 러시아어 구사 및 소통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대책위원회에서는 허위정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EUvsDisinfo'라는 웹사이트에 매주 허위정보에 관련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11월 8일에 발표한 논평을 살펴보면, 러시아의 주요 미디어에서 나토(NATO)와 서구를 적으로 왜곡하여 묘사한 것에 대해 허위정보라고 규정했으며, 이에 대한 팩트체크를 통해 이는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였다.²⁴⁾

communication to the public".

23) European Commission (2018, 10, 16). Factsheet on Tackling online disinformation. Retrieved from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news/factsheet-tackling-online-disinformation>

24) EUvsDisinfo (2018, 11, 8). "Funeral Teams for NATO Soldiers"-a Week of Disinformation Scare-Mongering, Exaggeration and Mockery. Retrieved from <https://euvsdisinfo.eu/funeral-teams-for-nato-soldiers-a-week-of-disinformation-scare-mongering-exaggeration-and-mockery/>

2015년 10월에는 허위정보를 검토하는 데 있어 인터넷 정보공간에서 친러정부 성향의 프로-크렘린(pro-kremlin)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왜곡된 관점이나 해석을 통해 전달하는 주요 정보를 찾아내었으며, 4,400개의 허위정보가 매일 여러 언어로 퍼져나간 점을 발견하였다. 이후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집행위원회는 허위정보에 관한 디지털 미디어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허위정보에 대항하는 새로운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공공자문(public consultation)을 진행하였다.²⁵⁾ 공공자문을 통해 시민과 법인들로부터 약 삼천여 개의 응답을 받았는데, 이 중 85%의 유럽 시민은 허위정보가 자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68%의 유럽 시민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러한 허위정보에 노출된다고 응답하였다.

공공자문을 통해 유럽 내의 허위정보에 관한 심각성을 확인한 후, 2018년 4월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온라인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8년 9월에는 기존 실천계획안에서 더 구체적인 허위정보에 관한 실천강령(Code of Practice)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유럽집행위원회의 빠른 조치는 2019년 봄에 있을 유럽연합 선거에 대비하여, 해당 실천강령에 따라 각국에서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미디어 영역에서의 자유 및 다원성과 마찬가지로, 양질의 저널리즘을 옹호하는 것은 신뢰할 만한 정보로 허위정보의 확산을 상쇄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최근 유럽연합의 저작권 규정을 현대화하기 위해 제안한 저작권법 지침안은 저작자의 온라인 권리를 새롭게 부여하면서 높은 수준의 저널리즘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25) European Commission (2018, 3, 12). Summary report of the public consultation on fake news and online disinformation. Retrieved from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news/summary-report-public-consultation-fake-news-and-online-disinformation>

2. 허위정보에 관한 다차원적 접근 보고서(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disinformation)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단일시장의 추진에 속도를 내며, 온라인상의 허위정보(disinformation), 혹은 가짜뉴스(fake news)라고 불리는 현상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속해서 이에 대한 대응을 구상하며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말부터 허위정보 대응에 관한 정책을 구상하기 위해 전문가 단체인 High Level Experts Group(HLEG)을 조직하였다. 해당 단체는 관련 학계, 시민사회, 언론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매체에서 허위정보의 확산과 관련한 이슈와 사회 및 정치적 파장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HLEG는 조직된 지 몇 달 만인 2018년 3월, 유럽연합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적절한 대응을 고려한 ‘허위정보에 관한 다차원적 접근(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disinformation)’ 보고서를 공개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8).

구체적인 내용에 앞서 해당 보고서에서는 ‘가짜뉴스(fake news)’라는 용어의 사용을 공개적으로 피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는 먼저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허위정보의 복잡한 문제들을 파악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허위정보의 범위에는 완전한 ‘가짜’는 아니지만 사실과 함께 날조된 정보들도 포함되며, ‘뉴스’의 형태뿐만 아닌 비디오, 가짜 네트워크 사용자, 꾸며낸 시민운동(astroturfing) 등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짜뉴스’라는 용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해당 용어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몇몇 정치인들과 지지자들에 의해서 선택된 단어이며, 정보의 유통을 방해하고 독립적인 뉴스매체를 침해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보고서에서 정의하는 ‘허위정보’란 모든 형태의 잘못된, 부정확한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포함하며 이러한 정보는 고의적으로 공익을 해치거나 이익을 위해서 고안·제안·촉진된 것을 말한다. 물론 유럽연합법이나 국내법의 규제를 받는 명예훼손, 혐오 표현, 폭력에 대한 조장과 같은 불법적인 온라인 콘텐츠의 창작이나 유포는 허위정보에 관한 이슈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풍자와 패러디와 같은 고의적이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는 사실의 왜곡 또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불어 보고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게 간단한 해결방안을 피하라고 조언하였다. 따라서 공적이든 사적이든 그 어떠한 형태의 검열은 명확하게 피해야 하며, 가장 시급한 문제해결을 위한 단기적인 대응과 허위정보에 대한 사회적 회복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대응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증거 기반의 대처가 개발되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보고서에서 소개된 이런 다차원적 접근 방식은 5개의 기둥(Pillars)을 중심으로 고안되었다. 첫 번째 기둥은 온라인 뉴스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온라인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에 대해 적절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이터를 공유함을 포함한다. 두 번째 기둥은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literacy)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사용자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활동하고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세 번째 기둥은 사용자와 언론인이 허위정보에 맞서고,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기술에 긍정적인 참여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다. 네 번째 기둥은 유럽연합 뉴스미디어 생태계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둥은 유럽에서의 허위정보 영향력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며, 이는 다양한 행위자에 의한 방안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다.

이 5개 기둥의 원칙은 HLEG의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18년 4월에 제시한 실천계획에서도 언급되었으며, 특히 허위정보에 관한 실천강령의 발전 방향에 이와 같은 원칙이 반영되었다.

3.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계획(Tackling online disinformation: a European Approach)

HLEG의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2018년 4월 2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하며 허위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실천계획 및 규제방안을 내놓았다.²⁶⁾ 실

26)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Tackling online disinformation: a European Approach, COM/2018/236 final (2018).

천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셜미디어 뉴스의 영향력이 매우 큰 점을 강조하였다. 서문에서는 유럽연합 내의 온라인 뉴스 사용자의 57%가 소셜미디어 뉴스제공 웹사이트 및 검색엔진을 통해 주로 뉴스를 읽으며, 만 18세에서 24세 사이에 있는 사용자 3분의 1은 소셜미디어가 가장 주요한 뉴스 출처라고 밝힌 통계를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소셜미디어, 비디오 공유 서비스 및 검색엔진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온라인 허위정보의 확산과 유출의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발생한 페이스북/캠브리지 아날리티카 폭로 사태를 언급하며, 플랫폼 서비스가 승인되지 않은 개인정보의 사용으로부터 사용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었다.

실천계획에서는 ‘허위정보에 관한 다차원적 접근 보고서’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허위정보에 대항하는 단 하나의 해결방안은 있을 수 없다고 보았다. 대신 허위정보에 대항하는 행동 목표를 네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로 정보의 출처 및 해당 정보가 어떻게 생산되고, 지원되고, 파생되고, 무엇을 향하는지에 대한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여론조작의 시도를 밝혀낼 수 있다. 둘째로 시민들이 비판적 사고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저널리즘과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 그리고 정보생산자와 배포자의 관계를 균형 맞추기 위한 지원을 통해 정보의 다양성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로 정보의 추적가능성 및 영향력 있는 정보 제공자의 입증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정보의 신뢰성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넷째로 포괄적인 방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해결방안에는 공공기관, 온라인 플랫폼 회사, 언론인, 미디어 집단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실천계획에서는 실천 분야를 크게 5가지로 구분했다.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 더 투명하고 신뢰할만하고 책임 있는 온라인 생태계를 만드는 것, 2)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 대비하여 안전하고 회복 가능한 선거 과정을 갖는 것, 3) 교육 및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를 함양하는 것, 4) 민주사회의 중요한 요소로서 높은 수준의 저널리즘을 지원하는 것, 5) 전략적인 소통을 통해 내부 및 외부의 허위정보 위협에 맞서는 것이다.

4.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강령(EU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실천계획을 내놓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2018년 9월 2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온라인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강령(EU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을 발표하였다.²⁷⁾ 실천강령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자율규제 방안을 소개하였다. 강령에서는 앞서 살펴본 보고서 및 실천계획을 바탕으로, 정치적 선전의 투명성부터 가짜 계정의 폐쇄 및 악의적인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금지까지 다양한 공약을 다루었다. 실천강령에서 제안하는 주요 내용에는 1) 허위정보를 퍼트리는 회사의 광고수익에 지장을 주는 것, 2) 가짜 계정과 온라인 봇에 대항하는 것, 3) 정치광고를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것, 4) 사용자가 허위정보를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5) 온라인상의 허위정보 확산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더 나은 체계를 제공하는 것 등이 있다.

이에 대해 거대 IT기업들(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모질라)은 허위정보에 관한 실천강령을 준수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²⁸⁾ 세계 최초로 주요 기업이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율규제 방안에 동의한 것이다.²⁹⁾ 물론 IT기업에서 실천강령에 쉽게 동의하는 것에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실천강령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풍자, 패러디, 보도실수와 함께 오도하는 광고(misleading advertising) 또한 허위정보 개념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³⁰⁾ 이러한 이유로 거대 IT기업들은 해당 실천강령이 광고수익에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IT기업들은 1년에 한 번씩 실천강령 준수에 대한 평가를 받으며, 필요한 경우 앞으로의 관련 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다. 실천강령에 동의함에 따라 해당 기

27) European Commission (2018, 9, 26).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Retrieved from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news/code-practice-disinformation>

28) European Commission (2018, 10, 16). Roadmaps to implement the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Retrieved from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news/roadmaps-implement-code-practice-disinformation>

29) European Commission (2018, 9, 26).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Retrieved from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news/code-practice-disinformation>

30) "The notion of 'Disinformation' does not include misleading advertising..."

업들은 집행위원회의 요청 시 적합한 정보를 준비해야 하며, 집행위원회의 질문과 회의 요청에 응하여야 하고, 평가와 리포트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이와 같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집행위원회를 참석시켜야 한다.

그러나 거대 IT기업들이 실천강령에 대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반해, 미디어 및 시민사회 대표들로 구성된 포럼모임(multistakeholder forum on disinformation)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다. 참고로 해당 포럼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실천강령이 발표되기 전인 5월에 함께 모여 회의를 가진 바 있다.³¹⁾ 이들은 고안된 실천강령에 그 어떠한 공통적인 접근방안, 의미 있는 약속, 측정 가능한 목표, 강제적 이행 및 시행과정에서의 모니터링 방안이 없다고 보았다. 언론인들은 최근 알고리즘으로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콘텐츠를 조종하는 행위는 이미 이뤄지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허위정보를 가려내는 알고리즘에 있어 더욱 투명해야 한다고 주의를 표한 것이다. 그리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 4월에 내놓았던 실천계획에 있던 목표들에 실천강령이 저촉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³²⁾

5. 허위정보에 관한 네덜란드 사례: 또 다른 ‘GeenStijl’ 사건

허위정보에 대항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이러한 움직임들은 언론인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았다. 이에 대하여 앞서 언급한 ‘East Stratcom 대책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이들의 활동이 기본권으로 보호받는 표현의 자유 및 정당한 법의 절차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미디어 웹사이트인 ‘GeenStijl’ 외 다른 네덜란드 언론사들이 함께 제기한 허위정보 사건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2017년 12월, ‘EUvsDisinfo’ 웹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에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몇

31) European Commission (2018, 7, 11). Meeting of the Multistakeholder Forum on Disinformation. Retrieved from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news/meeting-multistakeholder-forum-disinformation>

32) Euractiv (2018, 9, 26). The Sounding Board of the Forum on Disinformation issues their unanimous final opinion on the so-called code of practice. Retrieved from <https://www.euractiv.com/wp-content/uploads/sites/2/2018/09/Joint-Press-Statement-Sounding-Board-Issues-Opinion-on-Code-of-Practice-EMBARGO.pdf>

개의 네덜란드 뉴스 기사가 허위정보로 소개되었다. 해당 언론사는 앞서 저작권 사례에서 살펴보았던 ‘GeenStijl’를 포함하여 ‘De Gelderlander’와 ‘ThePostOnline’이었다. 언론사들은 자신들이 허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된 사실에 대해 항의하였고, 웹사이트는 언론사와 관련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언론사들은 ‘EUvsDisinfo’를 운영하는 유럽대외행동국이 오히려 허위정보를 배포하였다며 암스테르담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데이터베이스에 자신의 회사 이름이 올라간 날마다 2만 유로의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하였다. 이후 해당 언론사들은 상호 심의를 거친 뒤 유럽연합이 공개적으로 실수를 인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법적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소송을 철회하였다.³³⁾ 하지만 2018년 3월 네덜란드 의회는 국민청원을 받아들여 ‘EUvsDisinfo’ 웹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하였으며, 네덜란드 내무부 장관인 카사 올롱그렌(Kajsa Ollongren)에게 유럽연합에 대한 로비를 하도록 압박하였다.³⁴⁾ 그러나 네덜란드 정부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으며, ‘EUvsDisinfo’ 웹사이트는 지금도 운영 중이다.³⁵⁾

이 사건으로 인해 유럽 언론에서는 어떻게 허위정보에 대항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유럽연합의 대표 언론인 ‘Euobserver’의 사설은 언론의 자유에는 비판적인 견제가 함께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Nijeboer, 2018). 이에 따르면 견제는 자유 언론, 전문가, NGO 및 비정부 미디어 단체로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오히려 미디어가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위 사설은 유럽연합 의회(European Parliament) 의원인 예페 코포드(Jeppe Kofod)가 ‘EUvsDisinfo’가 찾은 3,500건의 허위정보를 예로 들며 내년엔 있을 유럽의회 선거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우려한 것에 대해 3,500건의 허위정보에 비해 유럽과 미국의 약 130조 개에 달하는 웹페이지 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으며, 그에 비하면 허위정보의 비율은 거의 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중에게 허위정보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것은 유럽의 민주주의에 오히

33) NOS (2018, 3, 13). Media trekken kort geding tegen EU om nepnieuws in. Retrieved from <https://nos.nl/artikel/2222185-media-trekken-kort-geding-tegen-eu-om-nepnieuws-in.html>

34) Hoax-alert (2018, 3, 6). Breaking: Dutch Parliament Approves Motion Calling to Disband EUvsDisinfo. Retrieved from <https://hoax-alert.leadstories.com/3469003-dutch-parliament-approves-motion-calling-to-disband-euvsdisinfo.html>

35) Euromaidanpress (2018, 3, 15). Why are the Dutch demanding to shut down the EU's only anti-propaganda service? Retrieved from <http://euromaidanpress.com/2018/03/15/why-are-the-dutch-demanding-to-shut-down-europes-only-anti-propaganda-service/>

려 해를 끼치는 전형적인 음모론에 가깝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사건의 연장선상으로 2018년 3월에는 유럽 옴부즈만(European Ombudsman) 제도를 통해 'EUvsDisinfo' 웹사이트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Alemanno, Fischer-Zernin, & Morrow, 2018). 유럽 옴부즈만이란 유럽연합 운영에 관한 조약(Treaty of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228조에 의거하여, 유럽연합 회원국의 시민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가 심사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연합기관, 기구 또는 기타 부서의 잘못된 활동에 관해 민원을 제기하여 접수하는 제도이다. 민원인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발간한 허위정보에 관한 논평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하였고, 허위정보를 판별하는 팩트체크 방법론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민원에 대해 유럽대외행동국은 팩트체크는 '임시변통적(ad-hoc)' 방법으로 이뤄진다는 다소 추상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이 제기된 가장 큰 이유는 허위정보에 대한 논평이 자칫하면 언론인에게 선불리 허위정보 제공자라는 꼬리표를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론인에게 꼬리표를 붙이는 행위는 유럽인권재판소가 세운 언론의 자유 기본원칙에 반하는 행위이며, 유럽연합 기본권헌장의 제11조 제1항 및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유럽대외행동국이 밝힌 허위정보 논평의 '임시변통적' 방법론에 대한 설명은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제41조에서 보장하는 '바른 행정을 요구할 권리(Right to good administration)'를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받았다.

V. 유럽연합과 불법 혐오표현(Hate Speech)

1. 인종차별주의와 외국인혐오주의의 특정 형태 및 표현에 형법으로 대항하기 위한 결정(Framework Decision on combating certain forms and expressions of racism and xenophobia by means of criminal law)

불법 혐오표현이란 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민족·소수민족 출신을 근거로 정의된 집단의 구성원 혹은 개인을 향한 공개적인 폭력 혹은 혐오를 조장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은 혐오표현은 2008년 11월에 유럽 이사회(the Council)가 채택한 '인

종차별주의와 외국인혐오주의의 특정 형태 및 표현에 형법으로 대항하기 위한 결정 (Framework Decision on combating certain forms and expressions of racism and xenophobia by means of criminal law)'에서 정의되었다.³⁶⁾ 해당 결정은 유럽연합에서 심각한 특정 인종차별주의 및 외국인 혐오주의의 징후에 대해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강제적인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또한 유럽연합 내의 사법 협력을 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결정에서는 어떤 혐오발언 행위가 범죄로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조항을 규정하였다. 불법 혐오표현은 1) 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민족·소수민족 출신을 근거로 정의된 집단의 구성원이나 개인을 향한 폭력 혹은 혐오를 공개적으로 조장하는 것이며, 2) 이러한 행위는 글, 사진 또는 다른 형태의 자료로서 공개적으로 보급 및 배포될 때 수행되며, 3)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국제군사재판소 헌장 제6조에서 정의하는 인종학대, 인도주의에 반한 범죄 및 전쟁범죄를 공개적으로 묵인·부인하거나 심각하게 비하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는 해당 집단 및 집단 구성원에 대한 폭력이나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수행된다. 한편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위임을 유도·조력 및 조장하는 행위 또한 처벌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각 유럽연합 회원국이 이러한 위법행위를 처벌할 때에는 그 처벌이 효과적이고 비례적이어야 하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19개의 유럽연합 회원국은 유럽연합법의 보충성 및 비례성 원칙을 준수하여 해당 결정을 국내법으로 전환하였다.³⁷⁾

그러나 해당 결정의 초안이 만들어질 때부터 이미 여러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비판이 제기되었다. 각 회원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서로 다른 법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형사적 법리로 조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Kucs, 2013). 예를 들어, 본 결정에서 홀로코스트나 다른 국제범죄를 부인하는 표현을 조항에 삽입한 것에 대해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이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36) European Union,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8/913/JHA, on combating certain forms and expressions of racism and xenophobia by means of criminal law, OJ L 328/55 (2008).

37) European Union (2018). Retrieved from EUR-Lex: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NIM/?uri=celex:32008F0913>

2. 불법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 on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

유럽연합은 2016년 5월에는 2008년의 혐오표현 결정을 체계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주요 IT기업(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함께 ‘불법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 on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을 발표하였다.³⁸⁾ IT기업들은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안과 다르게, 혐오표현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협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연합 회원국의 온라인 불법 혐오표현에 대항해야 할 책무에 함께하기로 한 것이다. 물론 IT기업들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의 필요성 또한 강조하였다. 온라인에서 불법 혐오표현이 확산되면 혐오표현에서 겨냥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영감을 줄 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유, 관용 그리고 차별금지를 외치는 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행동강령이 발표되었을 당시, 브뤼셀 테러공격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혐오표현에 대한 경계가 더욱 컸다. 특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여러 IT기업들과 함께 테러리스트의 선전에 대항하고,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항하는 행동강령을 더욱 보강하겠다는 성명을 내놓기도 하였다.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IT기업들은 혐오표현의 금지를 표명하는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혐오표현을 검토하는 서비스에 있어 명확하고 효과적인 과정을 통해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막아야 한다. 혐오표현 삭제요청을 받을 시에는 기업 자체규정이나 국내법으로 받아들인 2008년의 혐오표현 결정의 규정에 어긋나는지 검토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혐오표현 콘텐츠에 대한 삭제를 검토하는 시간이다. 혐오표현이 등장하면 24시간 안에 검토해야 하고, 혐오표현으로 판명되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막아야 한다.

2016년 5월 이후 행동강령이 적용됨에 따라, 온라인 불법 혐오표현 감시에 참여하는 NGO 및 공공기관이 IT기업에 신고하는 과정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매년 모니터링 절차를 통해 발표되었다.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38) European Commission (2016, 5, 31). Code of Conduct on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 Retrieved from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code_of_conduct_on_countering_illegal_hate_speech_online_en.pdf

2018년 기준으로 신고접수를 받은 불법 혐오표현의 약 70%가 IT기업에 의해 삭제되었으며, 2016년 제1차 모니터링에서 28%, 그리고 2017년 제2차 모니터링에서 59%가 IT기업에 의해 삭제되었음을 보았을 때, 점점 증가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³⁹⁾ 또한 불법 혐오표현 신고 중 평균 81% 이상이 24시간 이내로 검토되었으며, 이는 2차 모니터링에서의 검토율보다 약 30% 증가한 수치이다. 따라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재까지 행동강령의 규정들이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하였고, 기존에 참여했던 IT기업 이외에 인스타그램과 구글플러스가 혐오표현 행동강령 준수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개선점으로는 사용자에게 혐오표현에 관한 정보나 피드백이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온라인상의 혐오표현이 IT기업뿐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 되었지만, 기소율은 매우 미진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관계없이 법규상 불법적인 혐오표현이라면 효과적인 기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혐오표현에 관한 행동강령은 IT기업이 불법성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하게 만들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IT기업의 자체적인 혐오표현 검토 시스템은 기업에게만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새롭게 도입된 혐오표현 규정에 따라서 소셜미디어 회사가 불법적인 콘텐츠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뒤 24시간 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천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⁴⁰⁾ 따라서 IT기업에서 이러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엄격하지 않은 기준으로 신고받은 콘텐츠를 빠른 시간 안에 삭제해나간다면, 이는 IT기업에 의한 '사후 검열'이 되고 이로 인해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가 쉽게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3. 혐오표현에 관한 네덜란드 사례: 헤이르트 빌더르스 사건

네덜란드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시점은 2015년 네덜란드 우파 정치인 헤이르트 빌더르스(Geert Wilders)의 혐오발언 사건이

39) European Commission (2018, 1, 19).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 - Commission initiative shows continued improvement, further platforms join. Retrieved from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8-261_en.htm

40) Politico (2018, 1, 4). Free speech vs. Censorship in Germany. Retrieved from <https://www.politico.eu/article/germany-hate-speech-netzdg-facebook-youtube-google-twitter-free-speech/>

벌어지면서였다(Howard, 2017). 물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년에 유럽연합의 혐오표현에 관한 결정(Framework Decision 2008/913/JHA)이 있었지만, 네덜란드 형법의 경우 이미 혐오표현에 관한 규정이 있었고 해당 결정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개정이 필요하지 않았다(Colson & Field, 2016). 더 나아가, 네덜란드의 혐오표현에 대한 기소 및 선고는 사회구조적인 맥락에서 보았을 때 유럽연합에서 제시한 결정의 내용과는 달랐다. 네덜란드는 1930년부터 이미 부분적으로 혐오표현에 관한 형법 조항이 존재하였으며 몇 번의 개정 끝에 이성애·동성애 지향 및 장애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이 추가되었다. 또한 네덜란드 형법상 혐오표현 여부를 가릴 때에는 차별을 근거로 특정한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는지를 주로 살펴본다. 이에 대하여 네덜란드 형법의 혐오표현 규정과 네덜란드 법원의 해석 방법을 더 알아보기 위해 혐오표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헤이르트 빌더르스 사건을 통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헤이르트 빌더르스(Geert Wilders)는 네덜란드 우파성향의 자유당인 PVV(Partij voor de Vrijheid)의 대표이다. 그는 네덜란드가 이슬람화된다는 정치적 발언을 자주 하였고 이슬람교에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었다. 그의 입장에서 이슬람교는 서구문명을 해치려 하는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종교라는 것이다. 심지어 이슬람교 경전인 꾸란을 아돌프 히틀러의 책 ‘나의 투쟁(Mein Kampf)’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네덜란드 국경에서 무슬림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빌더르스는 수많은 인터뷰와 온라인상의 미디어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자주 피력하였다. 2008년에 그가 만든 ‘Fitna’라는 단편영화에서도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의 발언에 대해 시민단체와 개인들이 네덜란드 검찰에 혐오발언을 문제 삼아 형사 고발하였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해당 사안이 유죄까지 이끌어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표현이 단지 정치적 논쟁의 일부이고, 무슬림을 향해서가 아니라 이슬람교에 대한 표현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청구인들이 항소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2009년 1월, 암스테르담 항소법원에서는 네덜란드 형법 제137c조⁴¹⁾를 근거로 빌더르

41) Artikel 137c

1. Hij die zich in het openbaar, mondeling of bij geschrift of afbeelding, opzettelijk beledigend uitlaat over een groep mensen wegens hun ras, hun godsdienst of

스가 의도적으로 인종(비서구 이민자 및 모로칸) 또는 종교(무슬림)를 기반으로 특정 집단을 공격한 혐의, 그리고 형법 제137d조⁴²⁾를 근거로 그들 집단에 대해 혐오, 차별 혹은 폭력을 하게끔 조장한 혐의로 기소하도록 결정하였다.

〈혐오표현에 관한 네덜란드 형법 조항〉

형법 제137c

1. 공개적으로 말·글 또는 이미지를 통해 인종, 종교·신념, 이성·동성애 지향,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를 이유로 의도적으로 해당 집단에 대해 모욕적인 공표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세 번째 유형⁴³⁾에 따른 벌금형에 처한다.

형법 제137d

1. 공개적으로 말·글 또는 이미지를 통해 인종, 종교·신념, 이성·동성애 지향,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를 이유로 사람에게 대한 혐오 혹은 차별을 조장하거나,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해 폭력을 조장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세 번째 유형에 따른 벌금형에 처한다.

암스테르담 항소법원은 이와 같은 명령을 3가지의 주장으로 설명하였다. 첫 번째로 빌더르스의 표현의 범위는 매우 과격하며, 혐오에 대한 선동적 발언이 지속적으로 더 격렬해졌다. 이러한 표현은 무슬림의 존엄성을 해치기 때문에 모욕적인 데다 이슬람교의 상징인 쿠란을 모욕함으로써 무슬림 또한 모욕하였다고 보았다. 두 번째로 항소법원은 본 사건의 기소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과 일치한다고 보았는데, 유럽인권재판소의 관련 재판에서 정치인은 혐오를 조장하지 않을 특별한 책임을 가진다고 했기 때문이

levensovertuiging, hun hetero- of homoseksuele gerichtheid of hun lichamelijke, psychische of verstandelijke handicap, wordt gestraft met gevangenisstraf van ten hoogste een jaar of geldboete van de derde categorie.

42) Artikel 137d

1. Hij die in het openbaar, mondeling of bij geschrift of afbeelding, aanzet tot haat tegen of discriminatie van mensen of gewelddadig optreden tegen persoon of goed van mensen wegens hun ras, hun godsdienst of levensovertuiging, hun geslacht, hun hetero- of homoseksuele gerichtheid of hun lichamelijke, psychische of verstandelijke handicap, wordt gestraft met gevangenisstraf van ten hoogste een jaar of geldboete van de derde categorie.

43) 네덜란드 형법 제2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의 유형 중 세 번째 유형을 말한다. 2018년 1월 기준으로 세 번째 유형의 벌금액은 8,300유로이다.

다. 세 번째로, 민주주의 사회의 공적 토의 과정에서 생기는 혐오 조장에 대한 정확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에서는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다양한 의견에 대한 관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무슬림 이민자들이 이러한 타인의 발언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이 네덜란드의 전통적 가치와 EU의 가치가 충돌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

마침내 2011년, 빌더르스는 혐오발언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에서는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빌더르스에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전 판례에서 종교에 관한 혐오표현은 특정 종교를 믿는 종교인들을 모욕할 수는 있지만 종교집단 자체에 대한 혐오표현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표현은 강한 비판일 뿐이므로 네덜란드 형법 제137c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형법 제137d조에 대해서도 빌더르스의 발언은 해당 조항의 범위를 벗어난 표현이라고 보았다. 한편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에 관해서는, 정치인은 민주사회에서 다른 정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발언은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되었을 뿐 차별을 조장하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은 빌더르스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빌더르스에 대한 기소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4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지방선거가 끝난 뒤 PVV 지지자들과의 만남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이다. 빌더르스는 지지자들에게 “당신이 사는 지역과 네덜란드에 더 많은 모로칸을 원하냐, 아니면 더 적은 모로칸을 원하냐?”고 물었고, 지지자들은 “적게, 적게, 적게”를 외쳤다. 이를 들은 빌더르스는 웃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하자 지지자들은 크게 환호하였다.⁴⁴⁾ 해당 발언 및 동영상은 뉴스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자, 모로칸 단체를 포함한 약 6,500여 명의 청구인들이 검찰에 소를 제기하며 큰 파장이 일었다.

결국 검찰은 빌더르스를 특정 인종에 대한 명예훼손과 혐오 및 차별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기소하였다. 검찰은 표현의 자유는 정치인에게 있어 발언을 하고 싶을 때 제약을 받는 감정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지만, 그것이 차별적인 발언일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

44) Youtube (2014, 3, 20). Dutch politician Wilders promises ‘fewer Moroccans’. Retrieved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t_YEpoG5N8k

다고 보았다. 그리고 2016년 12월, 헤이그 지방법원은 빌더르스가 지방선거 이후 가진 모임에서 한 발언에 대해, 집단을 향한 명예훼손 및 차별 조장이라고 보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특히 모임에서 빌더르스의 발언 이후 사람들의 환호는 이미 계획된 것이었으며, 당시 지지자들은 환호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점이 강조되었다. 사건을 조사하면서, 발언에서의 ‘모로칸’을 ‘모로칸 범죄자’라고 지칭할지의 여부에 대한 회의 또한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당시의 발언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뉴스 방송에서 주요보도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었다. 빌더르스의 발언은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전체 모로칸 집단을 겨냥한 것이었기 때문에 유죄선고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법원은 유럽인권협약의 제10조 표현의 자유에 관한 조항을 언급하며,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막는 행위는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빌더르스는 해당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선고받지 않았다. 비록 검사가 피고인에게 5천 유로의 벌금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받은 유죄선고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⁴⁵⁾ 유죄선고 이후 빌더르스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법원에 항소하였으며, 2018년 5월 17일 헤이그 항소법원에서 다시 공판이 시작된 뒤로 현재까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⁴⁶⁾

처음 네덜란드에 혐오표현에 관한 형법조항이 제정됐을 때만 해도 혐오표현이 실제로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여겨졌다(Noorloos, 2014). 그러나 80년대부터 90년대 사이, 네덜란드 정부가 차별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혐오표현 조항이 다뤄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1세기에 와서는 디지털 시장의 확대와 함께 인터넷 미디어를 통한 혐오표현 확산이 더 쉽게 이뤄지면서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판단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네덜란드의 빌더르스의 사례와 유럽연합의 온라인 혐오표현에 관한 정책을 보았을 때, 혐오표현에 대항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이에 혐오표현의 불법성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인 형사적 조치로 이어가는 것은 아직까지 어려운 문제로 파악된다.

45) Politico (2016, 12, 9). Geert Wilders guilty of incitement. Retrieved from <https://www.politico.eu/article/geert-wilders-guilty-of-incitement-encouraging-discrimination-no-penalty/>

46) Politico (2018, 5, 17). Geert Wilders begins appeal of discrimination conviction. Retrieved from <https://www.politico.eu/article/geert-wilders-begins-appeal-of-discrimination-conviction-netherlands/>

VI. 결론

이 글에서는 언론 및 미디어에 관련한 유럽연합의 최근 법제 동향을 살펴보았다. 유럽연합의 중요한 가치인 단일시장이 디지털 단일시장으로 그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온라인 디지털 공간에 맞는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유럽연합은 자유로운 미디어 환경의 구축이 미디어의 투명성, 다양성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새로운 저작권 지침안은 논쟁 끝에 유럽의회를 통과하며 마지막 투표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며, 해당 지침안에서 문제시되는 제11조와 제13조에 대해서는 언론과 거대 IT기업들이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저작권법에 대한 네덜란드 언론 'GeenStijl' 사례는 복잡하고 방대한 온라인 공간에서 유럽연합 저작권법의 영향을 보여주었다. 유럽연합은 저작권법과 같은 법제들을 통해 디지털 환경의 수준을 높여 온라인 허위정보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허위정보의 또 다른 표현인 '가짜뉴스'의 용어는 왜곡되어 사용될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하며, 허위정보에 대항하는 간단한 해결책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거대 IT기업들이 허위정보에 대한 실천강령에 준수하겠다고 동의한 것에 대해서는, 실천강령이 '오도하는 광고'를 허위정보 범위에서 제외시켜, 광고수익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추측하였다. 또 다른 네덜란드의 'GeenStijl' 사례를 통해, 러시아발 허위정보를 견제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대항활동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침해받은 문제를 다뤘으며, 이는 2019년에 있을 유럽의회 투표에 대비하며 허위정보에 대한 지나친 우려일 수 있다는 입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유럽연합의 결정이 형사적 사법협력을 이끌어내어 19개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전환시킨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불법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항하는 행동강령이 등장하고, 거대 IT기업들이 이에 협조하여 이행 중인 점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24시간 안에 혐오표현에 대한 신고를 검토하는 방침은 IT기업의 재량에 의존한 사후검열이 될 수 있으며, 결국 표현의 자유를 침해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음을 알아보았다. 또한 온라인상 혐오표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매우 낮음을 살펴보았다. 네덜란드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혐오표현에 대한 형법조항이 존재하였으며, 유럽연합의 결정 내용과는 다소 다르게 차별을 근거로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 주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한 빌더르스 사례를 통해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유럽연합과

네덜란드에서는 온라인상에서 혐오표현의 확산이 쉽고 빠르게 이뤄지면서 법적 판단의 문제가 자주 야기되지만, 불법성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규제 및 자율규제 방안들을 고안해내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온라인상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유럽연합과 유사한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규제방안들과 언론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국내의 관련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제도적인 입안에도 힘을 써야 할 것이다.

단행본

- Colson, R., & Field S. (2016). *EU Criminal Justice and the Challenges of Divers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aig, P., & Burca, G. (2015). *EU Law Texts, Cases and Materials* (6th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Oster, J. (2015). *Media Freedom as a Fundamental Right*. 한영학·이재진 (역) (2017). <미디어 자유는 기본권이다>.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Sobczak, J., Skrzypczak, J., & Kakareko, K. (2017). *Media Law in the time of liquid modernity: Hot Topics in the European and Polish Media Law*. Berlin: Logos Verlag Berlin GmbH.

학술자료

- Alemanno, A., Brogi, J., & Fischer-Zernin, M., & Morrow, P. (2018). Is the EU disinformation review compliant with EU Law?: Complaint to the European Ombudsman about the EU anti-fake news initiative. *HEC Paris Research Paper, 2018*(1273).
- Howard, E. (2017). Freedom of Speech versus Freedom of Religion? The Case of Dutch Politician Geert Wilders. *Human Rights Law Review, 17*(2), 313-337.
- Kucs, A. (2013). The European Union's Framework Decision on the Use of Criminal Law to Combat Specific Types and Manifestations of Racism and Xenophobia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Decision in the Latvian Law. *Juridiska zinātne, 5*.
- Noorloos, M. V. (2014). Politicisation of Hate Speech Bans in the Twenty-first-century Netherlands: Law in a Changing Context.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40*(2), 249-265.

유럽연합법 및 관련자료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Tackling online disinformation: a European Approach, COM/2018/236 final (2018).

Consolidated Version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2008 OJ C 115/47 (2008).

Council of Europ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s amended by protocols Nos.11 and 14 (1950).

CJEU Judgment in C-160/15 *GS Media BV v Sanoma Media Netherlands BV, Playboy Enterprises International Inc., Britt Geertruda Dekker* (2016).

CJEU Judgment in C-466/12, *Nils Svensson and Others v Retriever Sverige AB* (2014).

European Commission (2018).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disinformation, Report of the independent high level group on fake news and online disinformation, Directorate-General for Communication Networks, Content and Technology. *Luxembourg: Publication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2001/29/EC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OJ L 167 (2001).

European Union,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2010 OJ, C83/02 (2010).

European Union,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8/913/JHA, on combating certain forms and expressions of racism and xenophobia by means of criminal law, OJ L 328/55 (2008).

Monti, M. (2010). A new strategy for the single market. Report to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2016/0280, COM(2016) 593 final (2016).

Regulation(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Regulation 2017/92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17 May 2017 amending Regulation (EU) No531/2012 as regards rules for wholesale roaming markets.

온라인 자료

BOE (2014, 11, 5). Boletín Oficial del Estado. Retrieved from <https://www.boe.es/boe/dias/2014/11/05/pdfs/BOE-A-2014-11404.pdf>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2016, 9, 8). Press release No 92/16. Retrieved from <https://curia.europa.eu/jcms/upload/docs/application/pdf/2016-09/cp160092en.pdf>

Euractiv (2018, 9, 26). The Sounding Board of the Forum on Disinformation issues their unanimous final opinion on the so-called code of practice. Retrieved from <https://www.euractiv.com/wp-content/uploads/sites/2/2018/09/Joint-Press-Statement-Sounding-Board-Issues-Opinion-on-Code-of-Practice-EMBARGO.pdf>

Euromaidanpress (2018, 3, 15). Why are the Dutch demanding to shut down the EU's only anti-propaganda service? Retrieved from <http://euromaidanpress.com/2018/03/15/why-are-the-dutch-demanding-to-shut-down-europes-only-anti-propaganda-service/>

European Commission (2016, 5, 31). Code of Conduct on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 Retrieved from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code_of_conduct_on_countering_illegal_hate_speech_online_en.pdf

European Commission (2018, 9, 26).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Retrieved from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news/code-practice-disinformation>

European Commission (2018, 1, 19).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 Commission initiative shows continued improvement, further platforms join. Retrieved from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8-261_en.htm

European Commission (2018, 7, 27). Enjoy your new digital rights across Europe during summer holidays. Retrieved from [.http://europa.eu/rapid/press-](http://europa.eu/rapid/press-)

release_IP-18-4681_en.pdf

- European Commission (2018, 10, 16). Factsheet on Tackling online disinformation. Retrieved from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news/factsheet-tackling-online-disinformation>
- European Commission (2018, 6, 8). Media Freedom and Pluralism. Retrieved from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policies/media-freedom-and-pluralism>
- European Commission (2018, 7, 11). Meeting of the Multistakeholder Forum on Disinformation, Retrieved from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news/meeting-multistakeholder-forum-disinformation>
- European Commission (2018, 10, 16). Roadmaps to implement the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Retrieved from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news/roadmaps-implement-code-practice-disinformation>
- European Commission (2018, 8, 24). Shaping the digital Single Market. Retrieved from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policies/shaping-digital-single-market>
- European Commission (2018, 3, 12). Summary report of the public consultation and on fake news and online disinformation. Retrieved from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news/summary-report-public-consultation-fake-news-and-online-disinformation>
- European Commission (2018, 8, 7). Supporting media and digital culture. Retrieved from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policies/supporting-media-and-digital-culture>
- European Federation of Journalists (2018, 9, 12). European Parliament approves new Copyright Directive. Retrieved from <https://europeanjournalists.org/blog/2018/09/12/european-union-european-parliament-approves-new-copyright-directive/>
- European Union (2008). Retrieved from EUR-Lex: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NIM/?uri=celex:32008F0913>
- EUvsDisinfo (2018, 11, 8). “Funeral Teams for NATO Soldiers”-a Week of Disinformation Scare-Mongering, Exaggeration and Mockery. Retrieved from <https://euvsdisinfo.eu/funeral-teams-for-nato-soldiers-a-week-of->

- disinformation-scare-mongering-exaggeration-and-mockery/
Geenstijl. Retrieved from <https://www.geenstijl.nl/>
- Google Europe Blog (2014, 12, 11). An update on Google News in Spain. Retrieved from <https://europe.googleblog.com/2014/12/an-update-on-google-news-in-spain.html>
- Hoax-alert (2018, 3, 6). Breaking: Dutch Parliament Approves Motion Calling to Disband EUvsDisinfo. Retrieved from <https://hoax-alert.leadstories.com/3469003-dutch-parliament-approves-motion-calling-to-disband-euvsdinfo.html>
- Nijeboer, A. (2018, 3, 28). Why the EU must close EUvsDisinfo. *Euobserver*. Retrieved from <https://euobserver.com/opinion/141458>
- NOS (2018, 3, 13). Media trekken kort geding tegen EU om nepnieuws in. Retrieved from <https://nos.nl/artikel/2222185-media-trekken-kort-geding-tegen-eu-om-nepnieuws-in.html>
- Politico (2018, 1, 4). Free speech vs.Censorship in Germany. Retrieved from <https://www.politico.eu/article/germany-hate-speech-netzdg-facebook-youtube-google-twitter-free-speech/>
- Politico (2018, 5, 17). Geert Wilders begins appeal of discrimination conviction. Retrieved from <https://www.politico.eu/article/geert-wilders-begins-appeal-of-discrimination-conviction-netherlands/>
- Politico (2016, 12, 9). Geert Wilders guilty of incitement. Retrieved from <https://www.politico.eu/article/geert-wilders-guilty-of-incitement-encouraging-discrimination-no-penalty/>
- Politico (2017, 2, 15). Plan to make Google pay for news hits rocks. Retrieved from <https://www.politico.eu/article/plan-to-make-google-pay-for-news-hits-rocks-copyright-reform-european-commission/>
- Youtube (2014, 3, 20). Dutch politician Wilders promises 'fewer Moroccans'. Retrieved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t_YEpoG5N8k
- Youtube Creator Blog (2018, 10, 22). A Final Update on Our Priorities for 2018. Retrieved from <https://youtube-creators.googleblog.com/2018/10/a-final-update-on-our-priorities-for.html>

2018년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언론분쟁 해결을 위한 각국의 제도와 동향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ISSN 2635-8522

2018년 제1·2호

2018년 12월 19일 발행

편집·발행 : 언론중재위원회

02)397-3042~5

www.pac.or.kr

인 쇄 : 더크리홍보 주식회사

2018년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